승인번호
제 752002 호

발간등록번호
78-5010000-000081-12

2024년
신안군 노인복지통계
Shinan Senior Welfare Statistics

1004 신안군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발간사

고령화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역시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목전에 있어,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안군은 2024년 12월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약 40%에 달하여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초고령화 지역으로서, 노령인구 구성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24 신안군노인복지통계」는 이러한 사회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통계 자료는 우리 군이 노인복지 정책 수립에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이번 통계 자료는 신안군의 노인복지 현황을 5개 주요 부문과 66개 지표를 통해 꼼꼼히 분석한 결과물로, 앞으로의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부문은 어르신들의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면밀히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검토하고, 모든 신안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부문은 생활지원, 건강관리, 사회참여, 안전망 강화, 고립 및 정서 지원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분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안군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호남지방통계청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번 통계 제작에 참여한 모든 분의 노력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신안군수 **박우량**

이용자를 위하여

1. 「신안군 노인복지통계」의 각종 지표는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생산·공유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각 통계표마다 출처 및 유의사항을 표기하였음

2.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 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3. 「신안군 노인복지통계」는 시의성 제고를 위하여 가능한 최신 자료를 수록하였으며, 지표의 성격에 따라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노인 연령층은 「신안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따라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정의함

5. 「신안군 노인복지통계」에서 사용한 산업분류는 2017년 개정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였고, 직업분류는 자료원에 따라 2018년 개정한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한국고용직업분류를 구분하여 사용함

6. 통계표에 사용된 아래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0」: 해당 단위 미만

   「-」: 해당 수치 없음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수치가 k 미만인 경우 마스킹 처리

   (기준값(k): 인구·가구·주택 5, 사업체 3)

7. (자료문의처)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 전화 : 061-240-8207

   - 주소 : (58827)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목 차

Ⅰ 작성 개요 ····· 1

Ⅱ 주요 결과 요약 ····· 7

Ⅲ 부문별 결과 ····· 19

1. 인구·가구 ····· 21

1-1. 연도별 인구규모 ····· 23
1-2. 성별·연령별 인구규모 ····· 24
1-3. 성별·지역별 인구규모 ····· 25
1-4. 지역별 독거노인 인구 ····· 27
1-5. 가구유형별 노인가구 ····· 28
1-6. 거처종류별 노인가구 ····· 29
1-7. 점유형태별 노인가구 ····· 30
1-8. 전남 시·군별 노인인구 및 가구 ····· 31
1-9. 연도별 사망률 ····· 32
1-10. 사망원인별 사망률 ····· 33
1-11. 연도별 순이동 ····· 34
1-12. 전입인구 ····· 35
1-13. 전입사유 ····· 36
1-14. 전출인구 ····· 37
1-15. 전출사유 ····· 38
1-16. 연도별 전입인구 ····· 39
1-17. 연도별 전출인구 ····· 40
1-18. 가구원수별 노인가구 ····· 41

목 차

2. 경제 ····· 43

2-1. 가구 월평균 소득 ····· 45
2-2. 개인소유 주택 현황 ····· 46
2-3. 거주지 기준 주택 소유 현황 ····· 47
2-4. 자동차 소유 ····· 48

3. 일자리 ····· 49

3-1. 경제활동인구 현황 ····· 51
3-2. 연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 52
3-3. 가입기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 53
3-4. 연도별 고용보험 자격 취득 상실자 ····· 54
3-5. 연도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 55
3-6. 연도별 구직신청건수 ····· 56
3-7. 구직희망 고용형태 ····· 57
3-8. 구직희망 근무지역 ····· 58
3-9. 구직희망 월평균 임금금액 ····· 59
3-10. 연도별 사업자등록 현황 ····· 60
3-11. 연도별 공공일자리 참여 현황 ····· 61
3-12. 일자리 만족도(하는일) ····· 62
3-13. 일자리 만족도(임금/가구소득) ····· 63
3-14. 일자리 만족도(근로시간) ····· 64
3-15. 일자리 만족도(근무환경) ····· 65

4. 복지 ····· 67

4-1.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 69
4-2. 장애인등록 인구 ····· 70
4-3.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인구 ····· 71
4-4. 수혜유형별 기초연금 수급인구 ····· 72

4-5.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 73
4-6.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 74
4-7.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 75
4-8.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격별 신청판정 현황 ····· 76
4-9.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인정자 ····· 77
4-10. 노인시설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 78
4-11. 연금종류별 공적연금 수급인구 ····· 79
4-12. 급여종류별 국민연금 수급인구 ····· 80
4-13. 노인복지사업 ····· 81
4-14.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 82
4-15. 노인대학 교육 희망강좌 ····· 83
4-16. 노인 삶에 대한 만족도 ····· 84

5. 건강 ····· 85

5-1. 건강보험 적용인구 ····· 87
5-2. 요양급여 실적 ····· 88
5-3. 만성질환(8종) 진료인원 ····· 89
5-4. 만성질환(8종) 1인당 연간 진료비 ····· 90
5-5. 주요 암(6종) 진료인원 ····· 91
5-6. 주요 암(6종) 1인당 연간 진료비 ····· 92
5-7. 연도별 노인 교통사고 건수 ····· 93
5-8.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건수 ····· 94
5-9. 가해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 95
5-10. 운전면허증 반납 ····· 96
5-11.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및 효과 여부(걷기운동 건강교실) ····· 97
5-12.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및 효과 여부(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 98
5-13.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및 효과 여부(경로당 중심 낙상예방 및 심뇌혈관질환예방) ····· 99

목 차

Ⅳ 통계표 ····· 101

1. 인구·가구 ····· 105
2. 경제 ····· 131
3. 일자리 ····· 137
4. 복지 ····· 151
5. 건강 ····· 165

Ⅴ 주요 용어 정의 및 행정자료 서식 ····· 181

1. 주요 용어 정의 ····· 183
2. 행정자료 서식 ····· 197

2024년 신안군 노인복지통계

인구

노인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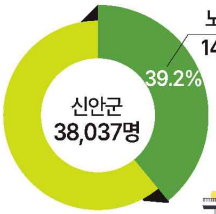

연도별 노인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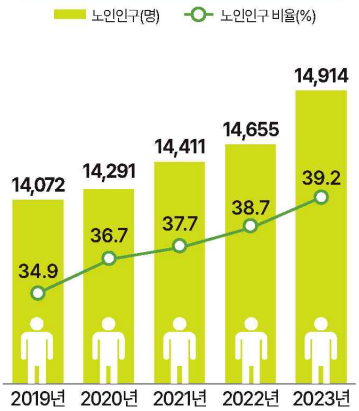

권역별 노인인구

가구

독거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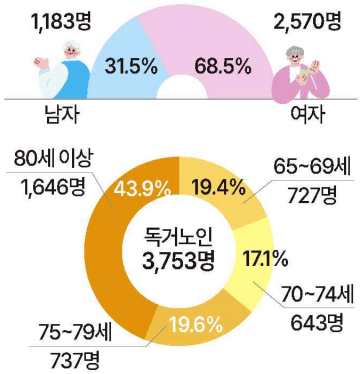

가구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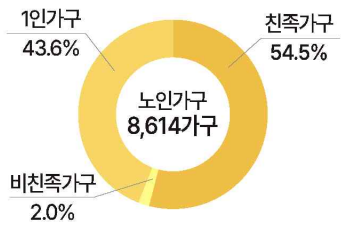

사망

노인 사망률

노인 사망원인

1위 악성신생물

2위 순환계통 질환
호흡기계통 질환

전라남도 노인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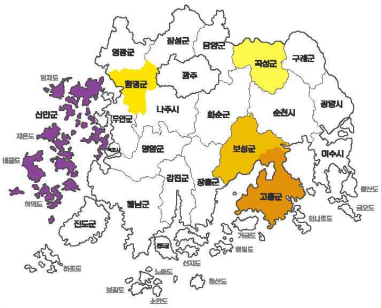

1004 신안군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2024년 신안군 노인복지통계

경제

노인 월평균소득

연령대별 평균소득

65~70세	200~300만원 미만
71~74세	100~200만원 미만
75~79세	50~100만원 미만
80세 이상	50~100만원 미만

자동차 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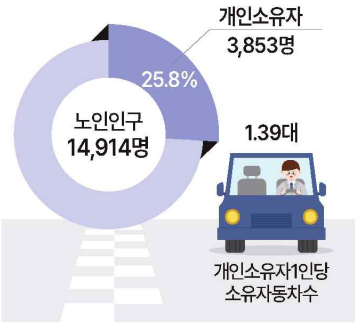

구직

경제활동 현황

노인인구
(65세 이상)

참가율	71.1%
고용률	71.1%
구직신청 건수	54건

구직희망 월평균 임금

1위 200~250만원 미만

2위 250만원 이상

구직희망 고용행태

일자리

공공일자리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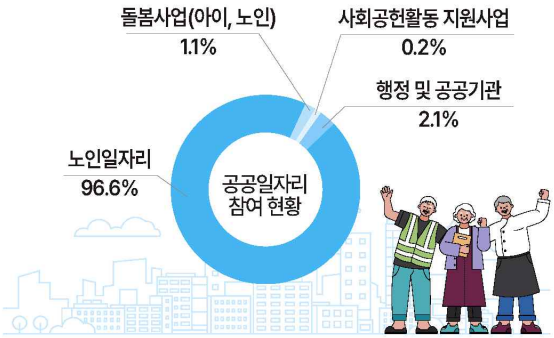

노인 사업자 등록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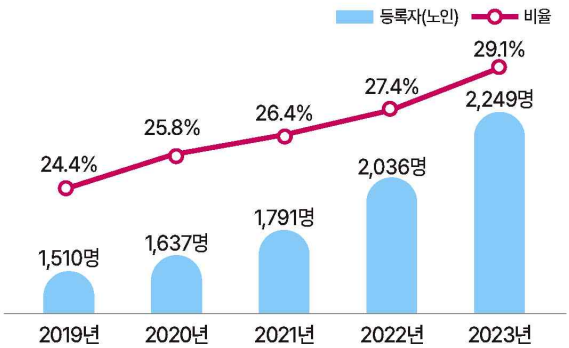

1004 신안군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2024년 신안군 노인복지통계

연금

노인 기초연금 수급인구

노인 수급인구 비율
8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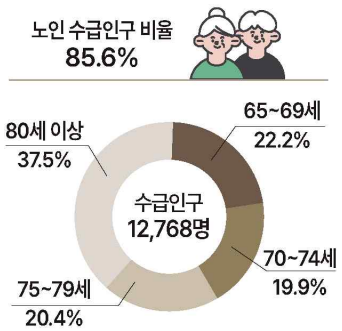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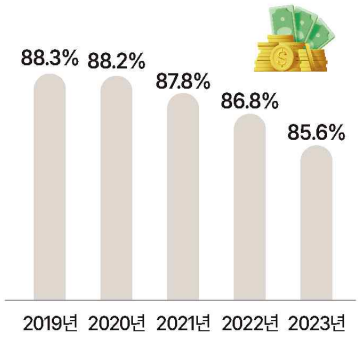

수혜 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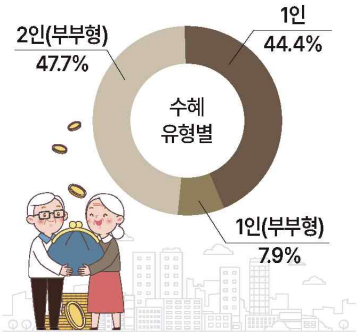

복지

장기요양보험

신청인원	2,852
판정인원	2,606
등급인정자	2,218

주요 노인복지사업

80세 이상	의료서비스를 쉽게 받도록 서비스제공
70대	소득보장 일자리제공

건강

만성질환(8종)

진료인원

고혈압 > 치주질환 > 관절염

1인당 진료비

정신질환 > 당뇨 > 간질환

주요 암(6종)

진료인원

폐암 > 위암 > 간암

1인당 진료비

간암 > 폐암 > 대장암

교통(운전)

가해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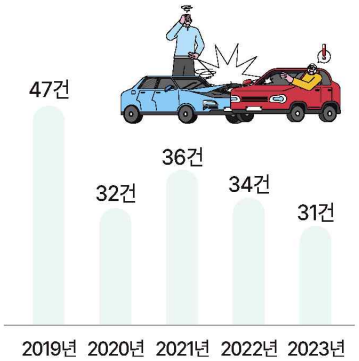

운전면허증 반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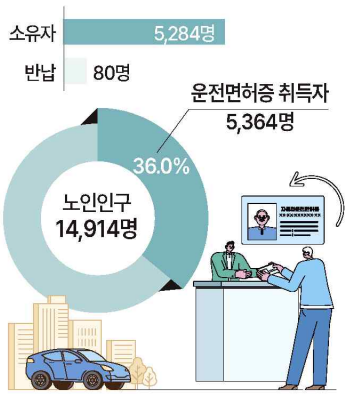

1004 신안군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2024년 신안군 노인복지통계

Shinan Senior Welfare Statistics

Ⅰ. 작성 개요

1004 신안군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1 작성 개요

□ 작성목적

○ 신안군 노인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생산·분석하여 노인관련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국가승인통계(제752002호), 일반·가공통계

□ 작성연혁 및 주기

○ (작성연혁) 2024년 신안군 노인복지통계 최초 작성

○ (작성주기) 3년

□ 작성 기준시점 및 대상

○ (기준시점) 2023. 12. 31.

※ 일부 항목은 작성 기초가 되는 행정·통계 자료 영향으로 기준시점 차이가 있음

○ (작성대상) 2023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65세 이상 신안군 인구

※「신안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따름

□ 작성항목: 5개 부문 66개 항목(공통 24개, 선택 28개, 자율 14개)

○ 인구·가구 18개, 경제 4개, 일자리 15개, 복지 16개, 건강 13개

□ 작성방법

○ 신안군,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 행정 및 통계자료를 가공·분석

□ 작성체계: 신안군(위탁) → 호남지방통계청(대행) → 신안군(공표)

□ 결과공표: 2024. 12. 19.

○ (공표방법) 신안군/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보고서 발간

2 작성 과정

□ 작성방법

○ 「신안군 노인복지통계」는 신안군 내부 행정자료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외부 행정기관에서 작성한 통계자료, 통계청 데이터융복합관리시스템자료(가구·기업통계등록부 등)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 개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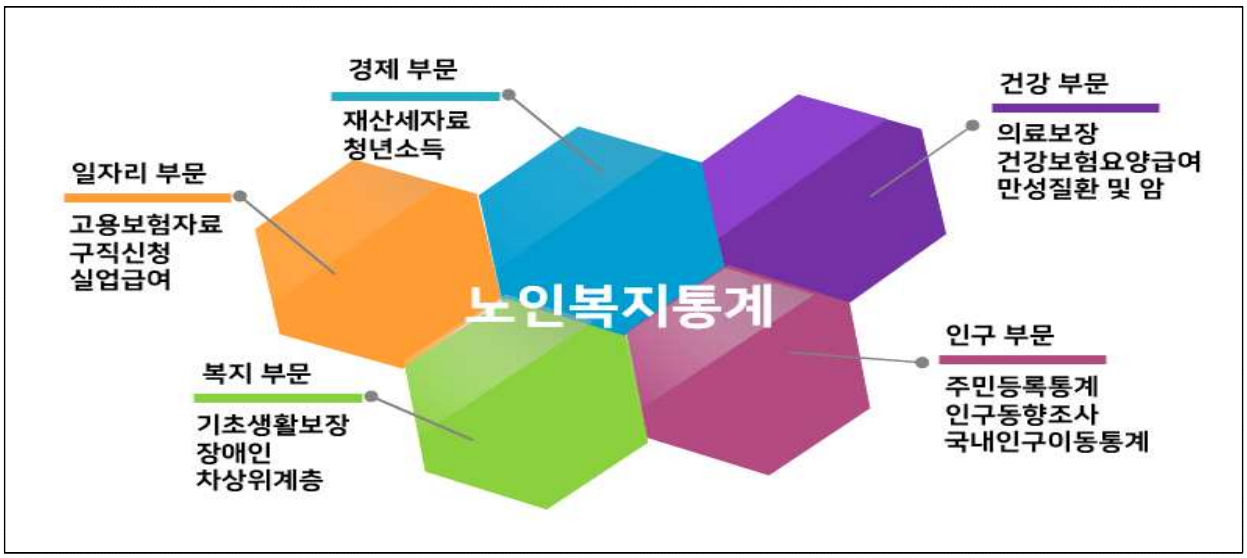

□ 노인복지통계 작성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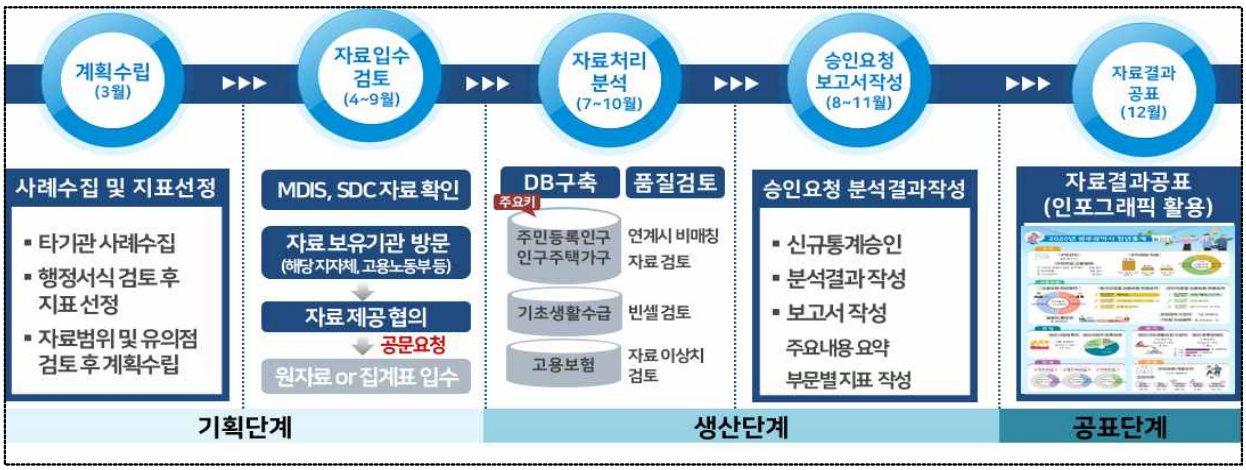

3 부문별 지표 구성, 기초 자료 및 제공기관

영역	지표명	구분	자료명	제공기관
인구/가구 (18)	연도별 인구규모	공통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성별·연령별 인구규모	공통		
	성별·지역별 인구규모	선택		
	지역별 독거노인인구	공통	가구통계등록부	통계청
	가구유형별 노인인구	선택		
	거처종류별 노인가구	선택		
	점유형태별 노인인구	공통	인구총조사	
	전남 시.군별 노인인구 및 가구	자율	가구통계등록부	
	연도별 사망률	선택	인구동향조사	
	사망원인별 사망률	선택	사망원인통계	
	연도별 순이동	선택	국내인구이동통계	
	전입인구	공통		
	전입사유	공통		
	전출인구	공통		
	전출사유	공통		
	연도별 전입인구	공통		
	연도별 전출인구	선택		
	가구원수별 노인가구	공통	가구통계등록부	
경제 (4)	가구 월평균 소득	자율	신안군 사회조사	신안군
	개인소유 주택 현황	선택	주택소유통계	통계청
	거주지 기준 주택 소유 현황	공통	재산세	신안군
	자동차 소유	선택	자동차세	
일자리 (15)	경제활동인구 현황	공통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연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공통	고용보험자료	고용노동부
	가입기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공통		
	연도별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자	선택		
	연도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선택		
	연도별 구직신청건수	공통	구직신청자료	
	구직희망 고용형태	선택		
	구직희망 근무지역	선택		
	구직희망 월평균 임금금액	선택		
	연도별 사업자등록 현황	공통	기업통계등록부	통계청
	연도별 공공일자리 참여 현황	선택	공공일자리 참여 현황 자료	신안군
	일자리 만족도(하는일)	자율	신안군 사회조사	
	일자리 만족도(임금/가구소득)	자율		
	일자리 만족도(근로시간)	자율		
	일자리 만족도(근무환경)	자율		

영역	지표명	구분	자료명	제공기관
복지 (16)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공통	기초생활보장수급자료	신안군
	장애인등록 인구	공통	장애인등록인구자료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인구	선택	기초연금수급자료	
	수혜유형별 기초연금 수급인구	선택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선택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선택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선택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격별 신청·판정 현황	선택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인정자	선택		
	노인시설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선택		
	연금종류별 공적연금 수급인구	공통	공적연금 및 국민연금 수급자료	국민·공무원·사학 연금공단
	급여종류별 국민연금 수급인구	선택		
	노인복지사업	자율	신안군 사회조사	신안군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자율		
	노인대학 교육 희망강좌	자율		
	노인 삶에 대한 만족도	자율		
건강 (13)	건강보험 적용인구	공통	건강보험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적	선택		
	만성질환(8종) 진료인원	선택		
	만성질환(8종) 1인당 연간 진료비	선택		
	주요암(6종) 진료인원	선택		
	주요암(6종) 1인당 연간 진료비	선택		
	연도별 노인 교통사고 건수	공통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도로교통공단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건수	선택		
	가해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선택		
	운전면허증 반납	자율	운전면허 관련 자료	신안군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및 효과 여부(걷기운동 건강교실)	자율	신안군 사회조사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및 효과 여부(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자율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및 효과 여부(경로당 중심 낙상예방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자율		

2024년 신안군 노인복지통계

Shinan Senior Welfare Statistics

Ⅱ. 주요 결과 요약

1004 신안군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1 인구·가구

(인구) 노인인구(65세 이상)는 14,914명으로 신안군 전체 인구(38,037명)의 39.2%임

- 2023년 신안군 노인인구는 14,914명으로 신안군 전체 인구(38,037명)의 39.2%임
- 노인인구 비율은 2019년 34.9%에서 2023년 39.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남자는 6,564명(44.0%), 노인 여자는 8,350명(56.0%)이며, 성비는 78.6명임
- 중부권이 5,876명(39.4%)으로 가장 많고, 북부권, 서부권, 남부권 순임

【노인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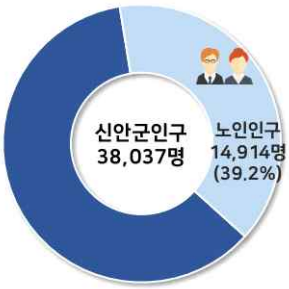

【연도별 노인인구】

(가구) 노인(65세 이상) 일반가구는 8,614가구로 신안군 전체 일반가구의 50.5%를 차지

- 2023년 신안군 노인 일반가구(가구주 연령 65세 이상)는 8,614가구로 신안군 전체 일반가구(17,055가구)의 50.5%를 차지함
- 노인가구 유형은 「친족가구(54.5%)」, 「1인 가구(43.6%)」, 「비친족가구(2.0%)」 순임
- 노인가구가 거주하는 거처종류는 단독주택이 96.7%로 가장 높음

【노인 가구 수 및 친족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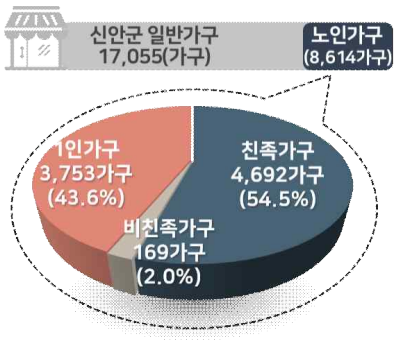

【거처 종류별 노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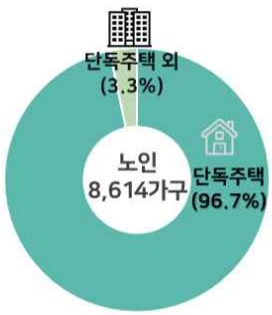

(독거노인) 독거노인(65세 이상)은 3,753명으로 신안군 전체 노인의 25.2%를 차지

- 2023년 신안군 독거노인(65세 이상)은 3,753명으로 신안군 전체 노인의 25.2%임
- 독거노인 중 여자는 68.5%로 3명 중 2명 정도가 여자이고, 80세 이상이 43.9%임
- 노인가구는 「1인 가구(43.6%)」가 가장 많고, 「2인 가구(41.7%)」, 「3인 이상 가구(14.8%)」 순임

【노인 1인 가구】

【노인 가구원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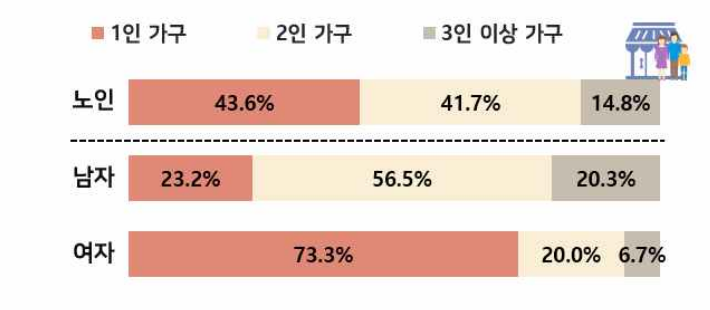

(사망률) 신안군 노인(65세 이상) 사망률은 4,124.1명으로 전년(3,998.3명) 대비 125.8명 증가 (사망원인별 사망률) 악성신생물(540.9명), 순환계통의 질환(508.8명), 호흡기계통의 질환(508.8명)

- 2023년 신안군 노인(65세 이상) 사망률은 4,124.1명으로 전년(3,998.3명) 대비 125.7명 증가함
- 사망률은 2019년 3,527.2명에서 2023년 4,124.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사망원인별 사망률은 악성신생물(540.9명), 순환계통의 질환(508.8명), 호흡기계통의 질환(508.8명) 순임

【연도별 노인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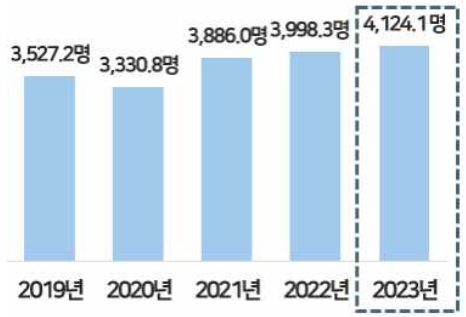

【사망원인별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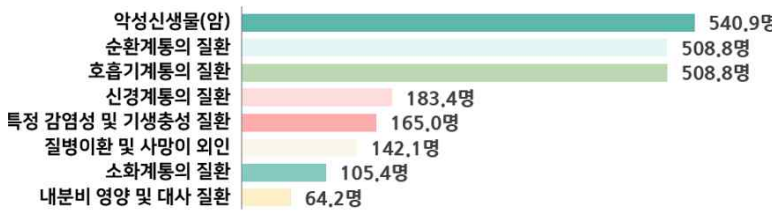

2 경제

(가구소득) 노인가구(65세 이상)의 월평균 소득은 「50만 원~100만 원 미만」 28.9%, 「100만 원~200만 원 미만」 21.5% 순임

- 2023년 신안군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0만원~100만원 미만」 28.9%, 「100만원~200만원 미만」 21.5%, 「200만원~300만원 미만」 15.3% 순임
- 남자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200만원 미만」과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각각 24.8%, 22.3% 순이고 여자는 「50만원~100만원 미만」이 46.9%임
- 80세 이상은 90.3% 이상이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임

【월평균 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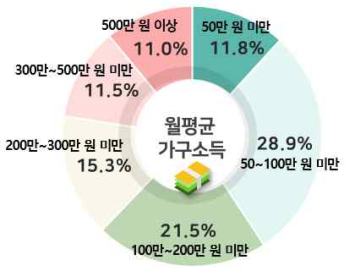

【연령대별 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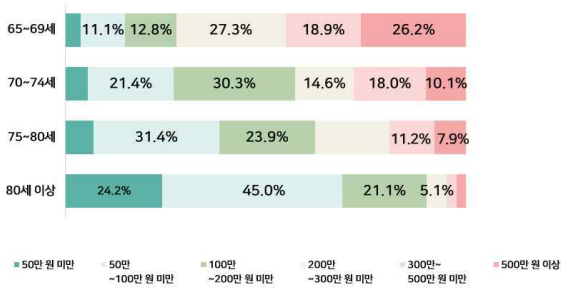

(주택) 2023년 신안군 내 주택 개인소유자 중 노인은 8,425명이고, 그 중 신안군 거주자는 7,010명임
(자동차) 신안군 노인 중 자동차 소유자는 3,853명으로 노인인구의 25.8%임

- 2023년 신안군 내 주택 개인 소유자 중 노인은 8,425명으로 군내 거주자는 7,010명임
- 2023년 신안군 노인 중 자동차 소유자는 3,853명으로 노인인구의 25.8%를 차지하며, 소유 자동차는 5,360대로 1인당 소유 자동차 수는 1.39대임
- 연령대별 자동차 소유자는 「65~69세」가 1,834명, 「70~74세」 1,067명, 「75~79세」 626명, 「80세 이상」 326명 순임

【소유 유형별 노인 소유 주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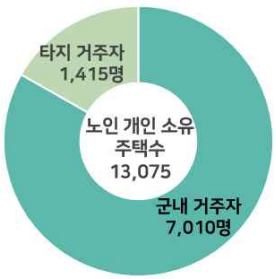

【노인 자동차 소유】

3 일자리

(경제활동) 노인(65세 이상) 취업자는 9천5백 명, 고용률은 71.1%임

- 2023년 하반기 신안군 취업자는 노인 9천5백 명, 노인 고용률은 71.1%임
- 고용률은 남자 76.0%, 여자 67.1%로 남자가 여자보다 8.9%p 높음
- 연령대별 고용률은 「65~69세」 86.5%, 「70~74세」 80.5%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함

【노인 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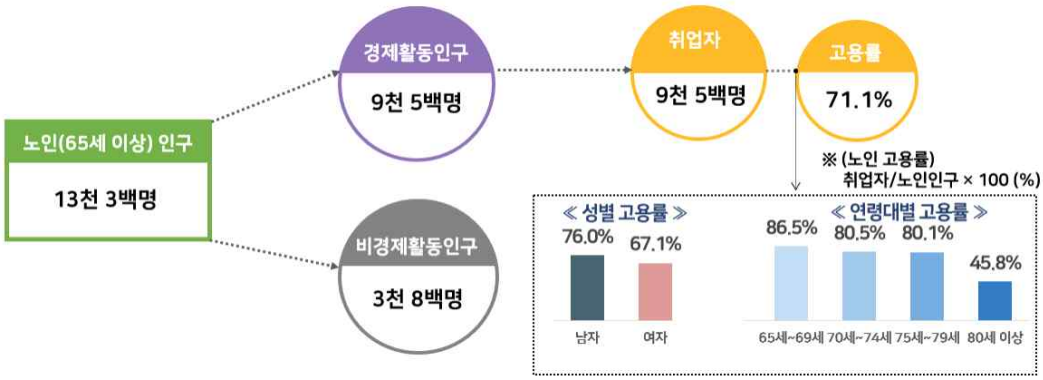

(고용보험 피보험자) 노인(65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727명이며, 가입 기간은 「1년~3년 미만」이 36.2%로 가장 많음

- 2023년 신안군 노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727명으로 전체 피보험자의 12.4%를 차지하며, 연령대는 「65세~69세」가 445명(7.6%)으로 가장 많음
- 가입기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년~3년 미만」이 263명(36.2%), 「1년 미만」 243명(34.1%), 「3년~5년 미만」 91명(12.5%) 순임
-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476명으로 전년(441명)대비 7.9%(35명) 증가, 자격 상실자는 480명으로 전년(353명) 대비 36.0%(127명) 증가함

【노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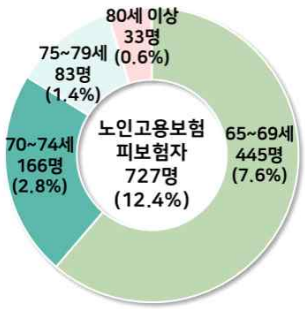

【종사산업별 노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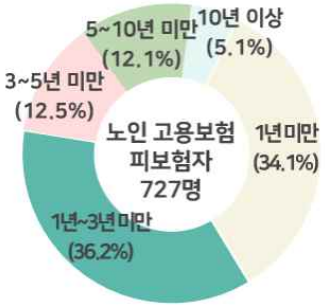

【노인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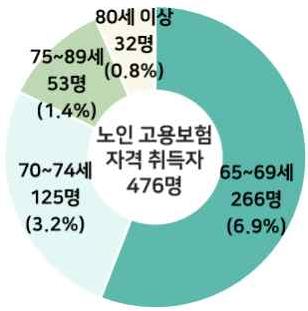

(사업자등록) 노인(65세 이상) 중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는 2,455명(28.7%)임 (공공일자리) 신안군 공공일자리 참여 인원은 「노인일자리」 2,121명(96.6%), 「행정 및 공공기관」 46명(2.1%) 순임

- 2023년 신안군 노인 중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는 2,455명으로 사업등록자 중 28.7%임
- 사업등록자 중 노인의 비율은 2019년 23.3%에서 2023년 28.7%로 꾸준히 증가
- 연령대별로는 「65세~69세」가 1,008명(11.8%)으로 가장 많음
- 2023년 신안군 공공일자리 참여 인원은 「노인일자리」 2,121명(96.6%), 「행정 및 공공기관」 46명(2.1%) 순임

【신안군 노인 사업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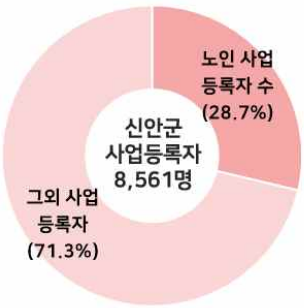

【공공일자리 참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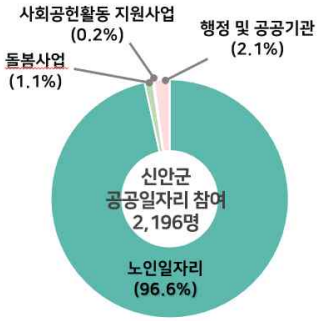

(일자리 만족도) 노인(65세 이상) 중 하는일에 대한 일자리 만족도 인식은 「보통」 67.7%, 「만족」 22.1%, 「불만족」 10.2%로 순임

- 2023년 신안군 노인 중 하는일에 대한 일자리 만족도 인식은 「보통」 67.7%, 「만족」 22.1%, 「불만족」 10.2% 순임
- 성별로는, 「만족」은 남자(23.5%)가 여자(20.8%)보다 2.7%p 높으며, 「불만족」은 여자(11.6%)가 남자(8.8%)보다 2.8%p 높음
- 연령대별로는, 「만족」은 「80세 이상(28.0%)」에서 가장 높고 「불만족」은 「75~79세(15.4%)」에서 가장 높음

【일자리 만족도(하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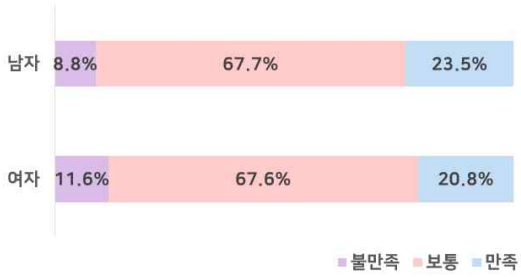

4 복지

(기초연금) 노인(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인구는 12,768명으로 노인인구(14,914명) 대비 85.6%임

- 2023년 신안군 노인 기초연금 수급인구는 12,768명으로 노인인구(14,914명) 대비 85.6%임
- 기초연금 수급인구는 2019년 12,426명에서 2023년 12,768명으로 증가하고, 수급인구 비율은 88.3%에서 85.6%로 감소함

【연령대별 노인 기초연금 수급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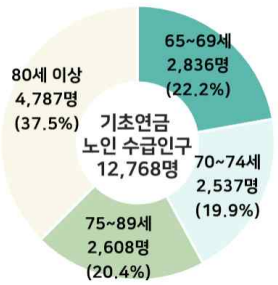

【수혜유형별 기초연금 수급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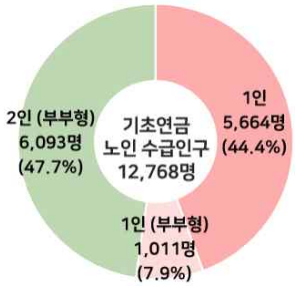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인원은 2,852명, 판정 인원은 2,606명이고, 등급 인정자는 2,218명으로 판정자 대비 85.1%임

- 2023년 신안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인원은 2,852명, 판정 인원은 2,606명으로 신청인원 대비 판정 비율은 85.1%로 나타남
- 2023년 신안군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자는 2,852명으로, 인정자는 2,218명으로 판정자(2,606명) 대비 85.1%임
- 판정 등급별로 보면, 「4등급」 1,187명, 「3등급」 455명, 「5등급」 309명 순임

【장기요양보험 판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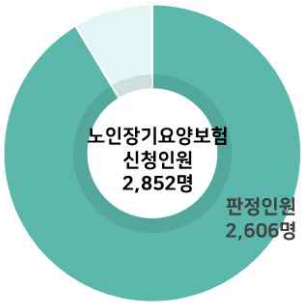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판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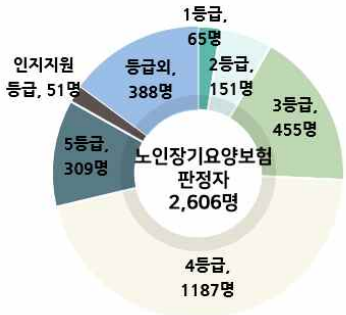

(공적연금) 노인(65세 이상)의 공적연금 수급인구는 9,015명으로 노인인구(14,914명)의 60.4%임

- 2023년 신안군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인구는 9,015명으로 전체 노인인구(14,914명)의 60.4%임
- 종류별로는 국민연금 8,641명, 공무원연금 347명, 사학연금 27명 순임
-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인구는 6,625명으로 국민연금 수급인구(8,641명) 중 76.7%이고, 1인당 수급액은 4,174천원임

【공적연금 노인 가입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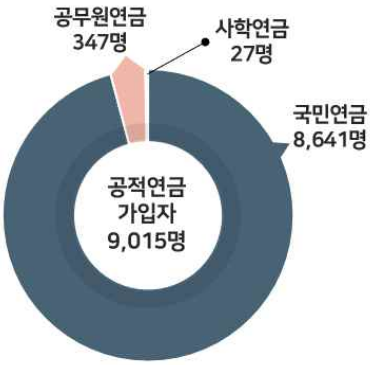

【연령대별 국민연금 노인 가입인구】

마스킹

(어려움)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중 「건강문제」가 44.3%로 가장 많음
(노인복지사업) 신안군 노인복지사업 중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은 「의료서비스를 쉽게 받도록 서비스 제공」 응답이 39.4%로 가장 많음

- 2023년 신안군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건강문제」가 44.3%로 가장 많고 「경제적 어려움」 13.2%, 「외로움, 소외감」 11.9% 순임
- 2023년 신안군 노인복지사업의 중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 응답은 「의료서비스를 쉽게 받도록 서비스 제공」 39.4%, 「소득보장 일자리제공」 35.0%, 「노인요양시설 확충」 18.5% 순임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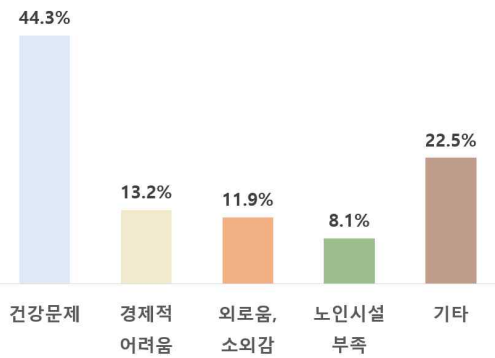

【노인 복지사업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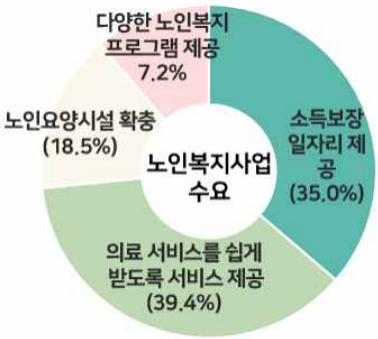

5 건강

(건강보험) 노인의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14,158명이며, 「지역」이 47.4%를 차지

- 2023년 신안군 노인의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14,158명이며, 이 중 「지역」은 6,706명(47.4%), 「직장」은 6,097명(43.1%),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은 1,335명(9.6%) 순
- 노인 연간 진료비 중 「외래」 진료비는 287억원, 「입원」 진료비는 193억원, 「약국」 진료비는 72억 순임

【건강보험 적용 노인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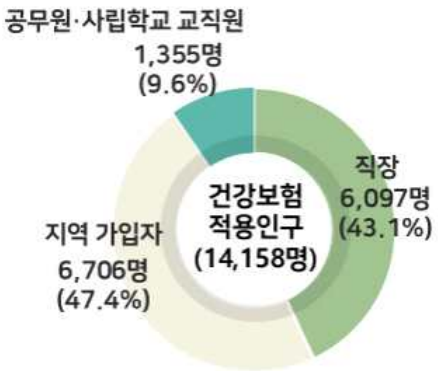

【요양급여실적 진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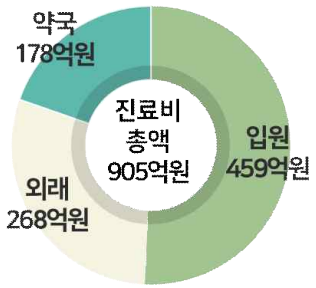

(만성질환 8종) 노인(65세 이상)의 만성질환(8종) 진료인원은 「고혈압(6,573명)」,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정신질환(2,753천 원)」이 가장 많음
(주요 암 6종) 노인(65세 이상)의 주요 암(6종) 진료 인원은 「폐암(135명)」, 1인당 연간 진료비는 「간암(8,130천 원)」이 가장 많음

- 2023년 신안군 노인의 진료인원은 29,676명으로「고혈압(6,573명)」이 가장 많고, 「치주질환(6,546명)」, 「관절염(6,463명)」 순임
- 2023년 신안군 노인의 주요 암(6종) 진료 인원은 526명으로 「폐암(135명)」이 가장 많고, 「위암(134명)」, 「간암(117명)」 순임

【만성질환 진료인원】

【주요 암 진료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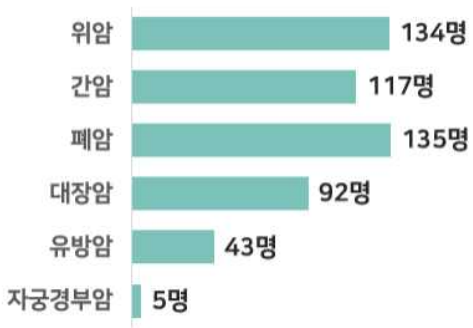

(교통사고) 2023년 신안군 노인 교통사고 건수는 53건으로, 부상자는 64명임 (운전면허 반납) 2023년 신안군 노인 운전면허증 취득자 5,364명 중 운전면허증 반납은 80명(1.5%)로 나타남

- 2023년 신안군 노인 교통사고 건수는 53건으로 사망자 5명, 부상자 64명 중 중상자는 27명으로 나타남
- 가해자가 노인인 경우 교통사고 건수는 31건으로 2019년(47건) 대비 2023년(31건) 34.0% 감소함
- 2023년 신안군 노인 운전면허증 취득자 5,364명 중 운전면허증 소유는 5,284명(98.5%), 운전면허증 반납은 80명(1.5%)로 나타남

【신안군 노인 교통사고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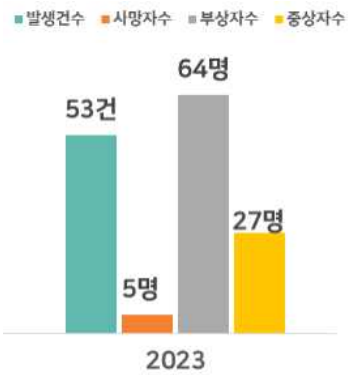

【노인 운전 면허증 취득자 및 반납인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2023년 신안군 보건소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걷기운동 건강교실, 건강관리 서비스, 낙상예방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은 효과가 있다고 나타남

- 2023년 신안군 보건소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걷기운동 건강교실(5.8%)」,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8.7%)」, 「경로당 중심 낙상예방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10.3%)」을 알고 있고 참여한다고 응답함

【걷기운동 건강교실】

【건강관리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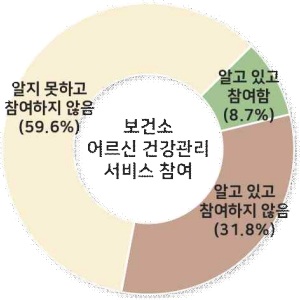

【낙상예방·심뇌혈관질환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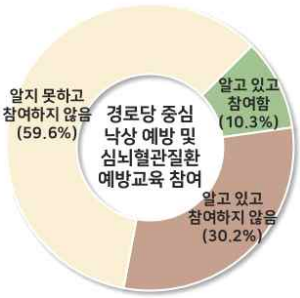

2024년 신안군 노인복지통계

Shinan Senior Welfare Statistics

Ⅲ. 부문별 결과

1. 인구·가구
2. 경제
3. 일자리
4. 복지
5. 건강

1004 신안군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2024년 신안군 노인복지통계

1 인구·가구

1-1. 연도별 인구규모

1-2. 성별·연령별 인구규모

1-3. 성별·지역별 인구규모

1-4. 지역별 독거노인 인구

1-5. 가구유형별 노인가구

1-6. 거처종류별 노인가구

1-7. 점유형태별 노인가구

1-8. 전남 시·군별 노인인구 및 가구

1-9. 연도별 사망률

1-10. 사망원인별 사망률

1-11. 연도별 순이동

1-12. 전입인구

1-13. 전입사유

1-14. 전출인구

1-15. 전출사유

1-16. 연도별 전입인구

1-17. 연도별 전출인구

1-18. 가구원수별 노인가구

1-1. 연도별 인구규모

신안군 노인인구는 14,914명으로 신안군 전체 인구(38,037명)의 39.2%임

□ 2023년 신안군 노인인구는 14,914명으로 신안군 전체 인구 38,037명의 39.2%임

○ 노인인구 비율은 2019년 34.9%(14,072명)에서 2023년 39.2%(14,914명)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신안군 전체 인구는 2019년 40,274명에서 2023년 38,037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그림1-1】 노인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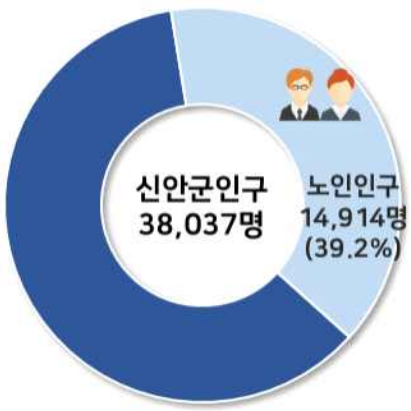

【그림1-2】 연도별 노인인구

【표1-1】 연도별 노인인구

(단위: 명, %)

구분	신안군 총인구		노인(65세 이상)	
		구성비		노인인구 비율
2019	40,274	100.0	14,072	34.9
2020	38,938	100.0	14,291	36.7
2021	38,217	100.0	14,411	37.7
2022	37,858	100.0	14,655	38.7
2023	**38,037**	**100.0**	**14,914**	**39.2**

자료: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주1) 각 해당연도 12.31. 기준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
주2) 노인인구 비율 = (노인인구/주민등록인구) × 100(%)

1-2. 성별·연령별 인구규모

신안군 노인인구는 남자가 6,564명(44.0%), 여자가 8,350명(56.0%)이며, 성비는 78.6명임

□ 2023년 신안군 노인인구는 남자가 6,564명(44.0%), 여자는 8,350명(56.0%)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786명 더 많고 성비는 78.6명임

○ 연령대별 노인인구는 「80세 이상(33.1%)」, 「65~69세(26.8%)」, 「70~74세(20.8%)」, 「75~79세(19.3%)」 순임

○ 연령대별 성비는 「65~69세(124.9명)」, 「70~74세(100.5명)」, 「75~79세(82.7명)」, 「80세 이상(43.1명)」 순임

□ 신안군 전체 인구 중 남자는 20,514명(53.9%), 여자는 17,523명(46.1%)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2,991명 더 많고 성비는 117.1명임

【그림1-3】 연령대별 노인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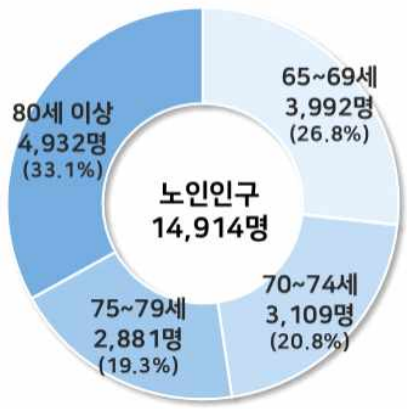

【그림1-4】 연령대별 노인인구 성비

【표1-2】 성별 노인인구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남자		여자		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전체	**38,037**		**100.0**	**20,514**	**53.9**	**17,523**	**46.1**	**117.1**
노인(65세 이상)	**14,914**	**(100.0)**	**100.0**	**6,564**	**44.0**	**8,350**	**56.0**	**78.6**
65~69세	3,992	(26.8)	100.0	2,217	55.5	1,775	44.5	124.9
70~74세	3,109	(20.8)	100.0	1,558	50.1	1,551	49.9	100.5
75~79세	2,881	(19.3)	100.0	1,304	45.3	1,577	54.7	82.7
80세 이상	4,932	(33.1)	100.0	1,485	30.1	3,447	69.9	43.1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주1) 2023.12.31. 기준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

주2) 성비 = (남자인구 / 여자인구) × 100

1-3. 성별·지역별 인구규모

노인인구는 중부권(5,876명)이 가장 많고, 북부권(3,694명), 서부권(3,516명), 남부권(1,828명) 순임

□ 2023년 노인인구는 중부권(5,876명)이 가장 많고, 북부권(3,694명), 서부권(3,516명), 남부권(1,828명) 순임

○ 노인인구 비율은 중부권(41.1%), 남부권(39.8%), 북부권(38.6%), 서부권(36.7%) 순임

○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읍·면 지역은「압해읍(2,240명)」이고「지도읍(1,863명)」,「비금면(1,382명)」,「안좌면(1,327명)」순임

□ 노인인구 성비(여자 100명 당 남자의 수)는 중부권이 83.5명으로 가장 높고, 남부권(78.3명), 서부권(76.1명), 북부권(73.8명) 순으로 나타남

○ 노인인구 성비가 높은 읍·면 지역은「자은면(89.8명)」,「압해읍(89.2명)」,「안좌면(79.6명)」,「하의면(79.1명)」순임

【그림1-5】 신안군 지역별 노인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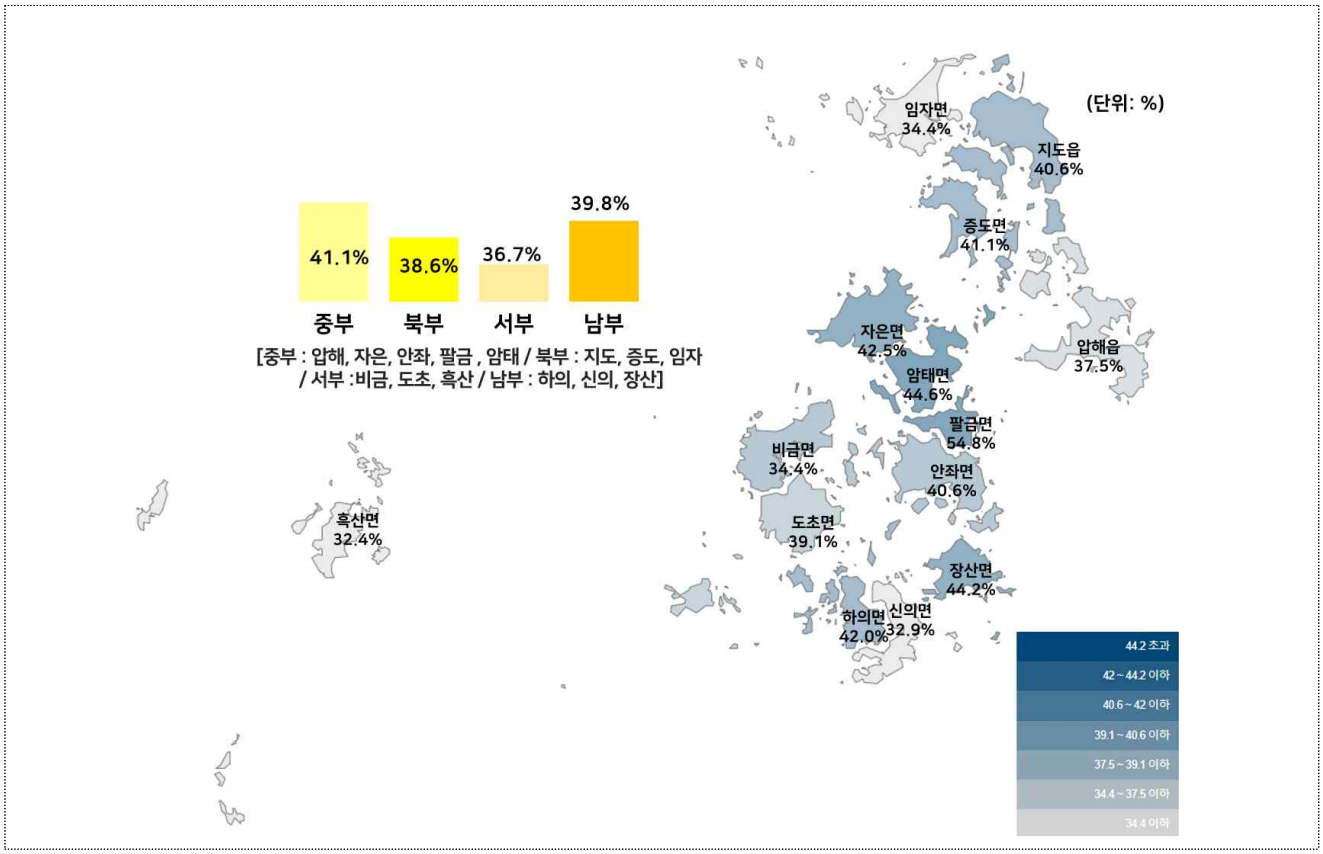

【표1-3】 성별·지역별 인구규모

(단위: 명, %)

구분	주민등록 인구	노인인구 (65세 이상)		남자		여자		성비	노인인구 비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전체	**38,037**	**14,914**	**100.0**	**6,564**	**44.0**	**8,350**	**56.0**	**78.6**	**39.2**
중부	14,308	5,876	100.0	2,673	45.5	3,203	54.5	83.5	41.1
압해읍	5,966	2,240	100.0	1,056	47.1	1,184	52.9	89.2	37.5
자은면	2,240	953	100.0	451	47.3	502	52.7	89.8	42.5
안좌면	3,270	1,327	100.0	588	44.3	739	55.7	79.6	40.6
팔금면	909	498	100.0	206	41.4	292	58.6	70.5	54.8
암태면	1,923	858	100.0	372	43.4	486	56.6	76.5	44.6
북부	9,567	3,694	100.0	1,569	42.5	2,125	57.5	73.8	38.6
지도읍	4,583	1,863	100.0	805	43.2	1,058	56.8	76.1	40.7
증도면	1,748	719	100.0	297	41.3	422	58.7	70.4	41.1
임자면	3,236	1,112	100.0	467	42.0	645	58.0	72.4	34.4
서부	9,570	3,516	100.0	1,519	43.2	1,997	56.8	76.1	36.7
비금면	3,527	1,382	100.0	608	44.0	774	56.0	78.6	39.2
도초면	2,630	1,029	100.0	446	43.3	583	56.7	76.5	39.1
흑산면	3,413	1,105	100.0	465	42.1	640	57.9	72.7	32.4
남부	4,592	1,828	100.0	803	43.9	1,025	56.1	78.3	39.8
하의면	1,632	686	100.0	303	44.2	383	55.8	79.1	42.0
신의면	1,474	485	100.0	213	43.9	272	56.1	78.3	32.9
장산면	1,486	657	100.0	287	43.7	370	56.3	77.6	44.2

자료: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주1) 성비 = (남자인구 / 여자인구) × 100
주2) 노인인구 비율 = (노인인구/주민등록인구) × 100(%)

1-4. 지역별 독거노인 인구

독거노인은 3,753명으로 전체 노인(14,914명) 대비 25.2%임

□ 2023년 신안군 독거노인은 3,753명으로 전체 노인(14,914명)의 25.2%임

- ○ 성별 독거노인 인구는 「남자 1,183명(31.5%)」, 「여자 2,570명(68.5%)」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1,387명 많음
- ○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상(43.9%)」, 「75~79세(19.6%)」, 「65~69세(19.4%)」, 「70~74세(17.1%)」 순임
- ○ 지역별로는 「중부권(1,467명)」, 「북부권(968명)」, 「서부권(832명)」, 「남부권(486명)」 순임

【그림1-6】 지역별 독거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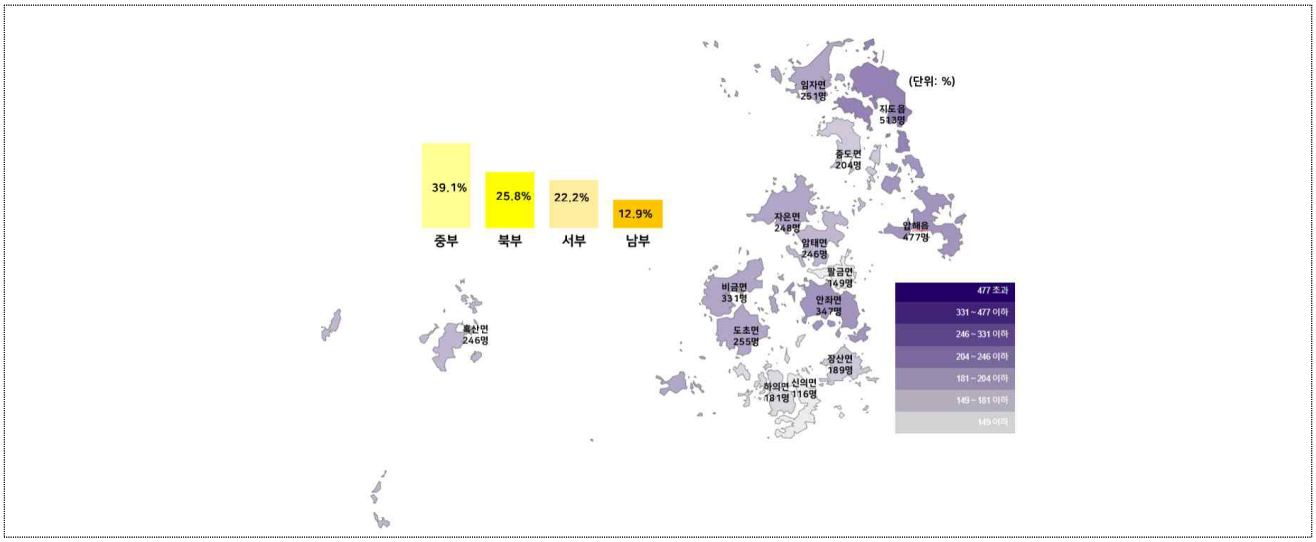

【표1-4】 지역별 독거노인 인구

(단위: 명, %)

구분	독거노인 (65세이상,1인가구)										성별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남자		여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3,753**	**100.0**	**727**	**19.4**	**643**	**17.1**	**737**	**19.6**	**1,646**	**43.9**	**1,183**	**31.5**	**2,570**	**68.5**
중부	1,467	100.0	283	19.3	246	16.8	282	19.2	656	44.7	497	33.9	970	66.1
북부	968	100.0	184	19.0	176	18.2	207	21.4	401	41.4	294	30.4	674	69.6
서부	832	100.0	157	18.9	132	15.9	166	20.0	377	45.3	235	28.2	597	71.8
남부	486	100.0	103	21.2	89	18.3	82	16.9	212	43.6	157	32.3	329	67.7

자료: 통계청「가구통계등록부」
주1) 2023.11.1. 일반가구 가구주 기준
주2) (중부) 압해읍, 자은면, 안좌면, 팔금면, 암태면 (북부)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 (서부) 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남부)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1-5. 가구유형별 노인가구

노인일반가구는 친족가구(54.5%), 1인 가구(43.6%), 비친족가구(2.0%) 순임

□ 2023년 신안군 노인(65세 이상) 일반가구는 친족가구(54.5%), 1인 가구(43.6%), 비친족가구(2.0%) 순임

○ 성별 주된 가구유형은 남자는 「친족가구(75.1%)」, 여자는 「1인 가구(73.3%)」임

○ 연령대별 주된 가구유형은 「65~69세(61.1%)」, 「70~74세(62.0%)」 및 「75~79세(56.8%)」는 「친족가구」, 「80세 이상(54.1%)」은 「1인 가구」임

【그림1-7】 가구유형별 노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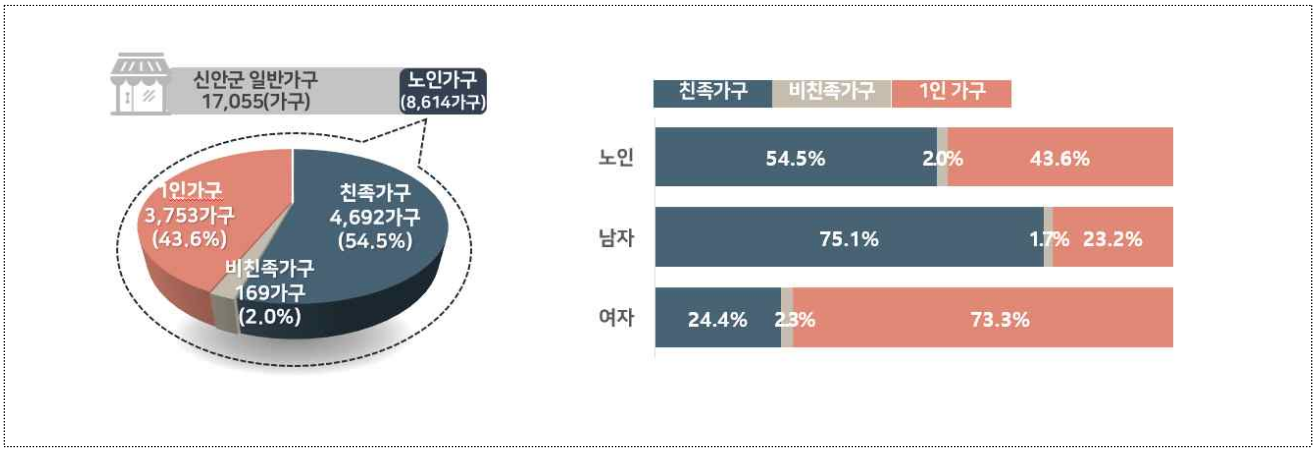

【표1-5】 가구유형별 노인가구

(단위: 명, %)

구분	노인(65세 이상) 일반가구		친족가구		비친족가구		1인 가구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8,614**	**100.0**	**4,692**	**54.5**	**169**	**2.0**	**3,753**	**43.6**
남자	5,106	100.0	3,835	75.1	88	1.7	1,183	23.2
여자	3,508	100.0	857	24.4	81	2.3	2,570	73.3
중부	3,412	100.0	1,877	55.0	68	2.0	1,467	43.0
북부	2,138	100.0	1,134	53.0	36	1.7	968	45.3
서부	1,981	100.0	1,106	55.8	43	2.2	832	42.0
남부	1,083	100.0	575	53.1	22	2.0	486	44.9
65~69세	2,010	100.0	1,229	61.1	54	2.7	727	36.2
70~74세	1,786	100.0	1,108	62.0	35	2.0	643	36.0
75~79세	1,777	100.0	1,009	56.8	31	1.7	737	41.5
80세 이상	3,041	100.0	1,346	44.3	49	1.6	1,646	54.1

자료: 통계청「가구통계등록부」
주) 2023.11.1. 일반가구 가구주 기준

1-6. 거처종류별 노인가구

신안군 노인가구의 거처종류는 단독주택(96.7%), 주택이외 거처(2.3%),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0.8%) 순임

□ 2023년 신안군 거처종류별 노인가구는 단독주택 8,333가구(96.7%), 주택이외 거처 202가구(2.3%),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67가구(0.8%) 순임

○ 연령대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거처종류 중 「단독주택」의 비율은 증가하고, 「주택이외 거처」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전체가구의 거처종류는 「단독주택」 15,604가구(91.5%), 「주택이외 거처」 1,026가구(6.0%),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241가구(1.4%) 순임

【그림1-8】 일반가구 거처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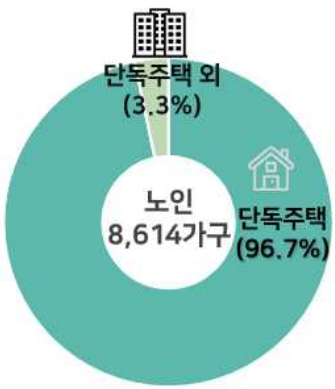

【그림1-9】 연령대별 단독주택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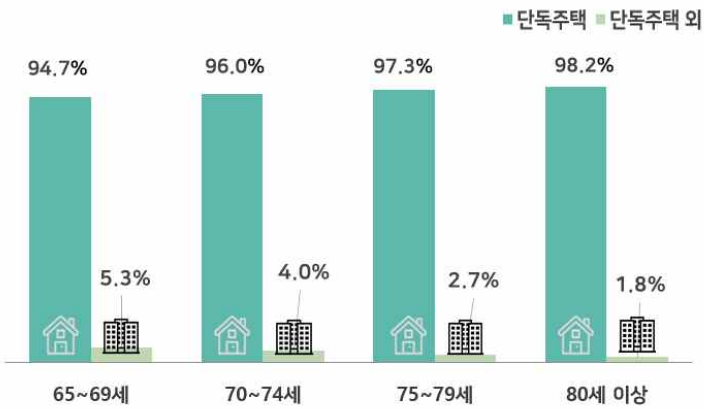

【표1-6】 거처종류별 노인가구

(단위: 가구, %)

구분	일반가구		단독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주택이외 거처		아파트 외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17,055**	**100.0**	**15,604**	**91.5**	**241**	**1.4**	**1,026**	**6.0**	**184**	**1.1**
노인(65세 이상)	**8,614**	**100.0**	**8,333**	**96.7**	**67**	**0.8**	**202**	**2.3**	**12**	**0.1**
65~69세	2,010	100.0	1,903	94.7	19	0.9	84	4.2	4	0.2
70~74세	1,786	100.0	1,714	96.0	18	1.0	52	2.9	2	0.1
75~79세	1,777	100.0	1,729	97.3	19	1.1	27	1.5	2	0.1
80세 이상	3,041	100.0	2,987	98.2	11	0.4	39	1.3	4	0.1

자료: 통계청 「가구통계등록부」
주1) 2023.11.1. 일반가구 가구주 기준
주2) 아파트 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7. 점유형태별 노인가구

신안군 노인가구의 점유형태는 자기집(94.1%)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20년 노인(65세 이상)가구의 점유형태는 「자기 집」이 7,800가구(9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상」 395가구(4.8%), 「보증금 없는 월세」 54가구(0.7%) 순임

○ 「자기 집」의 경우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일반가구중 차지하는 구성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신안군 전체 가구의 점유형태는 「자기 집」 13,849가구(82.7%), 「무상」 2,243가구(13.4%), 「보증금 없는 월세」 300가구(1.8%) 순임

【그림1-10】 점유형태별 노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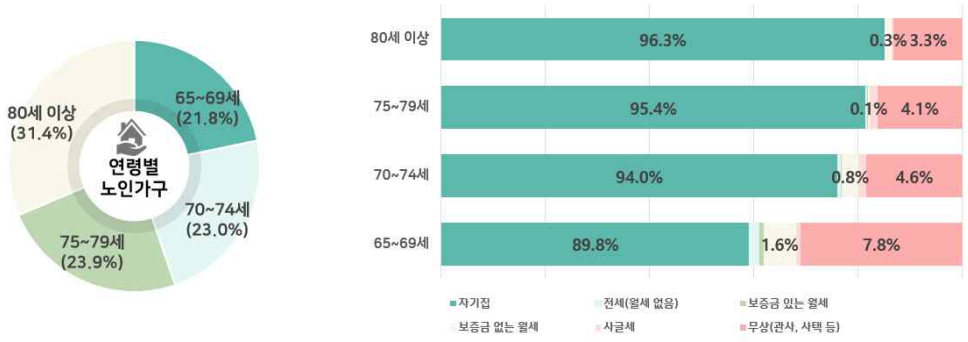

【표1-7】 점유형태별 노인가구

(단위: 가구, %)

구분	일반가구		자기 집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관사, 사택 등)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16,742**	**100**	**13,849**	**82.7**	**300**	**1.8**	**2,243**	**13.4**
노인(65세 이상)	**8,287**	**100**	**7,800**	**94.1**	**54**	**0.7**	**395**	**4.8**
65~69세	1,803	100	1,619	89.8	28	1.6	140	7.8
70~74세	1,903	100	1,789	94.0	15	0.8	88	4.6
75~79세	1,981	100	1,889	95.4	*	*	81	4.1
80세 이상	2,600	100	2,503	96.3	*	*	86	3.3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0 인구총조사 표본부문)
주) 연령대별 일반가구(집단가구 및 외국인가구 제외) 가구주 기준으로 산정

1-8. 전남 시·군별 노인인구 및 가구

신안군 노인인구는 14,914명이고 노인가구는 8,614가구임

□ 2023년 신안군 노인(65세 이상)인구는 14,914명이고 노인가구는 8,614가구임

○ 노인인구 비율은 전남 22개 시군에서 5번째로 높음

□ 전라남도 전체 노인인구는 470,874명이고 노인가구는 282,070가구임

□ 전국 노인인구는 9,730,411명이고 노인가구는 5,655,260가구임

【그림1-11】 전라남도 노인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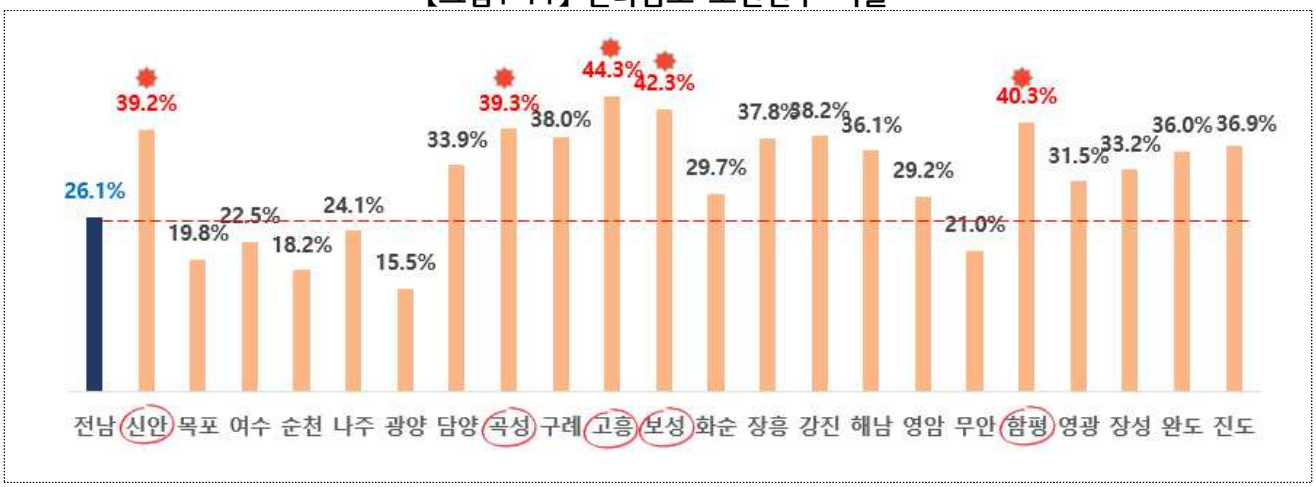

【표1-8】 전남 시·군별 노인인구 및 가구

(단위: 명, 가구)

구분		노인인구	노인가구
전국		9,730,411	5,655,260
전라남도		470,874	282,070
	신안군	**14,914**	**8,614**
	목포시	42,446	26,779
	여수시	61,135	36,177
	순천시	50,517	30,054
	나주시	28,254	16,390
	광양시	23,650	13,994
	담양군	15,373	8,767
	곡성군	10,576	6,391
	구례군	9,246	5,574
	고흥군	27,061	16,867
	보성군	15,952	9,768
	화순군	18,185	11,014
	장흥군	13,264	8,335
	강진군	12,505	7,786
	해남군	23,293	14,190
	영암군	15,298	9,150
	무안군	19,000	10,615
	함평군	12,326	7,128
	영광군	16,281	9,697
	장성군	14,143	7,955
	완도군	16,776	10,107
	진도군	10,679	6,718

자료: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가구통계등록부」
주) 2023.11.1. 일반가구 가구주 기준

1-9. 연도별 사망률

노인 사망률은 4,124.1명으로 전년(3,998.3명) 대비 125.8명 증가함

□ 2023년 신안군 노인(65세 이상) 사망률은 4,124.1명으로 전년(3,998.3명) 대비 125.8명 증가함

○ 노인 사망률은 2019년 3,527.2명에서 2023년 4,124.1명으로 21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임

□ 신안군 전체 사망률은 1,802.3명으로 전년(1,726.2명) 대비 76.1명 증가함

○ 신안군 사망률은 2019년 1,430.0명에서 2023년 1,802.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1-12】 연도별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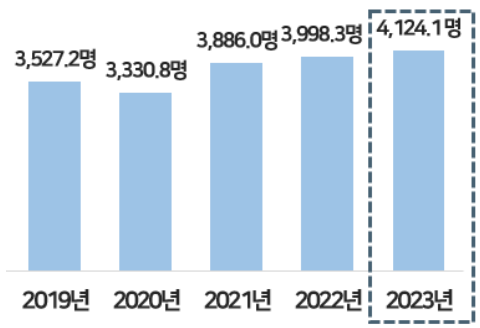

【그림1-13】 연령대별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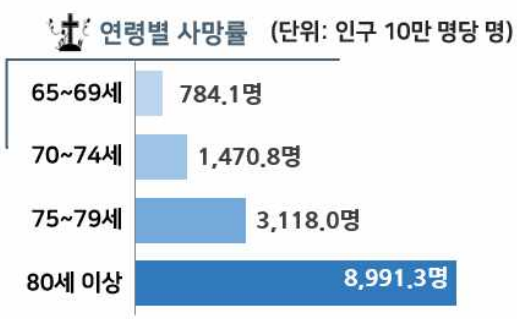

【표1-9】 연도별 사망률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구분	신안군	노인 (65세이상)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2019	1,430.0	3,527.2	1,015.7	1,426.6	2,703.1	7,913.9
2020	1,466.8	3,330.8	662.3	1,429.7	3,049.9	7,031.4
2021	1,637.9	3,886.0	954.0	1,788.0	2,778.7	8,348.0
2022	1,726.2	3,998.3	805.9	1,645.8	2,870.2	8,649.3
2023	**1,802.3**	**4,124.1**	**784.1**	**1,470.8**	**3,118.0**	**8,991.3**

자료: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주1) 각 해당연도 1.1. ~ 12.31. 사망신고서 기준
주2) 연령별 사망률 = (해당연령 사망자수 / 해당연령 연앙인구) × 100,000

1-10. 사망원인별 사망률

노인의 사망원인별 사망률은 악성신생물(540.9명), 순환계통의 질환(508.8명)·호흡기계통의 질환(508.8명) 순임

□ 2023년 신안군 노인(65세 이상)의 사망원인별 사망률은 악성신생물(540.9명), 순환계통의 질환(508.8명)·호흡기계통의 질환(508.8명) 순임

□ 신안군 전체의 사망원인별 사망률은 악성신생물(356.8명), 순환계통의 질환(330.3명), 호흡기계통의 질환(298.6명) 순임

【그림1-14】 사망원인별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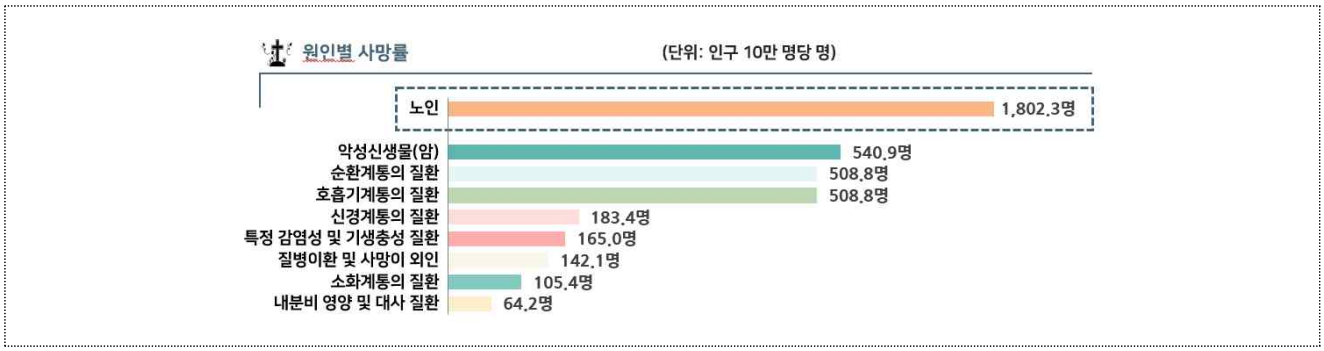

【표1-10】 사망원인별 사망률

(단위: 10만명당 명)

구분	전체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악성신생물(암)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신경계통의 질환	
			호흡기 결핵	패혈증		위암	간암	폐암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신안군	**1,802.3**	**97.8**	**18.5**	**39.6**	**356.8**	**23.8**	**39.6**	**79.3**	**42.3**	**34.4**	**113.6**	**76.6**
노인	**2,791.8**	**165.0**	**32.1**	**68.8**	**540.9**	**41.3**	**59.6**	**123.8**	**64.2**	**50.4**	**183.4**	**132.9**
남자	3,493.8	213.9	71.3	71.3	974.5	83.2	83.2	273.3	83.2	59.4	166.4	107.0
여자	2,350.9	134.3	7.5	67.2	268.7	14.9	44.8	29.9	52.2	44.8	194.0	149.3

구분	순환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계통의 질환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고혈압성 질환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만성 하기도		간 질환		운수 사고	고의적 자해
신안군	**330.3**	**21.1**	**182.3**	**111.0**	**298.6**	**187.6**	**60.8**	**81.9**	**34.4**	**132.1**	**26.4**	**42.3**
노인	**508.8**	**32.1**	**288.8**	**165.0**	**508.8**	**325.5**	**105.4**	**105.4**	**27.5**	**142.1**	**18.3**	**41.3**
남자	522.9	11.9	320.9	190.1	665.5	356.5	166.4	118.8	47.5	213.9	35.7	71.3
여자	500.0	44.8	268.7	149.3	410.5	306.0	67.2	97.0	14.9	97.0	7.5	22.4

자료: 통계청「사망원인통계」
주) 발췌코드: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A00-B99), 호흡기결핵(A15-A16),패혈증(A40-A41),악성신생물(암)(C00-C97),위암(C16), 간암(C22), 폐암(C33-C34),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E00-E88), 당뇨병(E10-E14), 신경계통의 질환(G00-G98), 알츠하이머병(G30), 순환계통의 질환 (I00-I99), 고혈압성질환(I10-I13), 심장질환(I20-I51), 뇌혈관질환(I60-I69), 호흡계통의 질환(J00-J98), 폐렴(J12-J18), 만성 하기도 질환(J40-J47), 소화계통의 질환(K00-K92), 간질환(K70-K76),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V01-Y89), 운수사고(V01-V99), 고의적 자해(자살)(X60-X84)

1-11. 연도별 순이동

노인의 순이동은 0명으로 인구 유출과 유입이 동일

□ 2023년 신안군 노인 순이동자는 0명, 순이동률은 0.0%로 유입과 유출이 동일함

○ 2019년, 2020년은 순이동 -97명, -123명이었으나, 2021년부터는 순이동이 거의 없음

□ 신안군 전체의 순이동자는 749명, 순이동률은 2.0%로 인구 유입이 많았고, 2022년 순이동자 238명, 순이동률 0.6%와 비교하면 순유입 폭은 넓어짐

○ 연령대별로는 「20~29세(35명)」만 순유출 되었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순유입됨

【그림1-15】 연도별 순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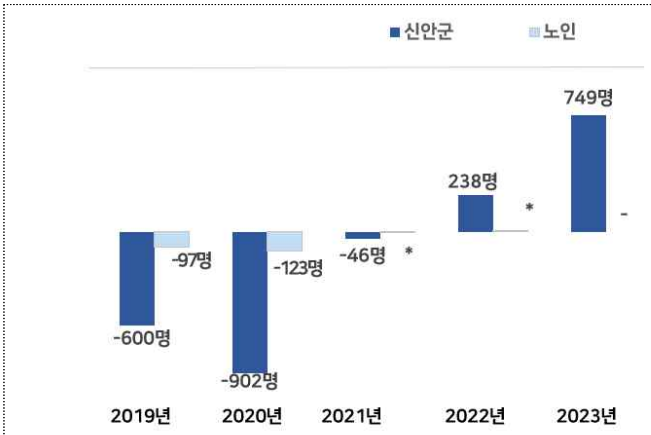

【그림1-16】 연령대별 순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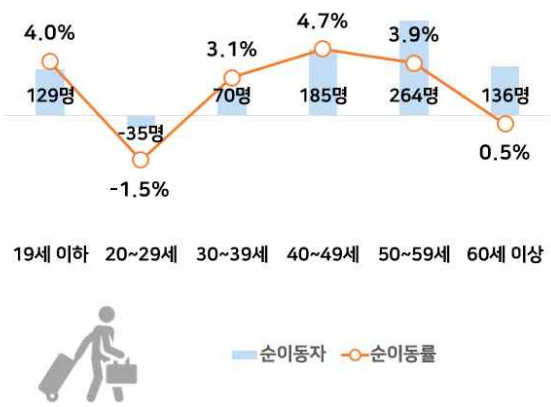

【표1-11】 연도별 순이동 및 순이동률

(단위: 명, %)

순이동	신안군 전체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노인 65세이상
2019	-600	-101	-331	-124	-29	95	-110	-97
2020	-902	-155	-415	-251	-45	79	-115	-123
2021	-46	-102	-304	-88	72	234	142	*
2022	238	-24	-129	-18	94	205	110	*
2023	**749**	**129**	**-35**	**70**	**185**	**264**	**136**	**-**

순이동률	신안군 전체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노인 65세이상
2019	-1.5	-2.5	-10.1	-4.0	-0.6	1.3	-0.5	-0.5
2020	-2.3	-4.1	-14.1	-8.9	-1.0	1.1	-0.5	-0.6
2021	-0.1	-2.9	-11.5	-3.5	1.7	3.4	0.6	*
2022	0.6	-0.7	-5.2	-0.8	2.3	3.0	0.4	*
2023	**2.0**	**4.0**	**-1.5**	**3.1**	**4.7**	**3.9**	**0.5**	**-**

자료: 통계청「국내인구이동통계」

주1) 순이동 = 총전입-총전출

주2) 순이동률 = (순이동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

주3) 주민등록연앙인구: 각 해당연도 7.1. 기준 주민등록인구

1-12. 전입인구

신안군으로 전입한 노인은 448명으로 노인인구의 3.0%임

□ 2023년 신안군에 전입한 노인은 448명으로 노인인구의 3.0%임

- ○ 신안군으로 전입한 노인 중 전라남도 외 「시·도간 전입」은 46.2%, 전라남도 내 「시·군간 전입」은 44.2%, 「신안군내 이동」은 9.6% 순임
- ○ 연령대별 노인 전입인구 비율은 「65~69세(5.4%)」, 「70~74세(3.4%)」 순임

□ 신안군에 전입한 전체 인구는 3,896명으로 전체 인구의 10.2%이며, 전라남도 내 「시·군간 전입」은 49.8%, 전라남도 외 「시·도간 전입」은 38.2%, 「신안군내 이동」은 12.0% 순임

【그림1-17】 전입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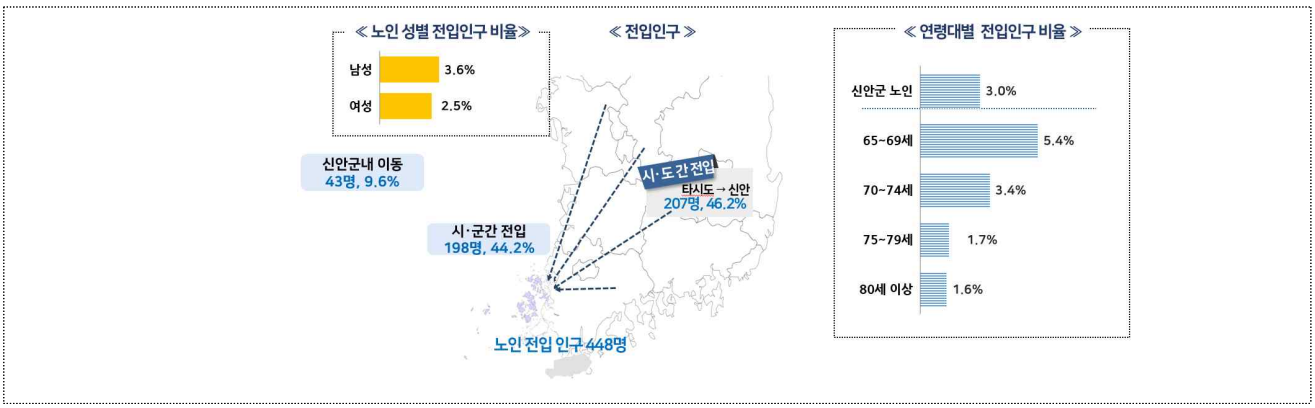

【표1-12】 전입인구

(단위: 명, %)

구분	주민등록 인구	전입이동 (총전입)		시·도내 전입		시·군내 전입		시·군간전입		시·도간전입		전입 인구 비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38,037**	**3,896**	**100.0**	**2,408**	**61.8**	**469**	**12.0**	**1,939**	**49.8**	**1,488**	**38.2**	**10.2**
노인 (65세 이상)	**14,914**	**448**	**100.0**	**241**	**53.8**	**43**	**9.6**	**198**	**44.2**	**207**	**46.2**	**3.0**
남자	6,564	238	100.0	115	48.3	20	8.4	95	39.9	123	51.7	3.6
여자	8,350	210	100.0	126	60.0	23	11.0	103	49.0	84	40.0	2.5
65~69세	3,992	215	100.0	104	48.4	16	7.4	88	40.9	111	51.6	5.4
70~74세	3,109	105	100.0	53	50.5	11	10.5	42	40.0	52	49.5	3.4
75~79세	2,881	48	100.0	28	58.3	7	14.6	21	43.8	20	41.7	1.7
80세 이상	4,932	80	100.0	56	70.0	9	11.3	47	58.8	24	30.0	1.6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주1) 2023.1.1. ~ 12.31.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기준 전입인구(외국인제외)
주2) 시·도내 전입: 전라남도 내에서 신안군으로 전입, 시·군내 전입: 신안군 내에서 읍면을 달리한 이동
시·군간 전입: 전라남도 내 타 시·군에서 신안군으로 전입, 시·도간 전입: 전라남도 외 타 시·도에서 신안군으로 전입
주3) 전입인구 비율 = (총전입 / 주민등록인구) × 100(%)

1-13. 전입사유

주된 전입사유는 「가족(35.5%)」, 「주택(19.2%)」, 「직업(17.4%)」 순임

□ 2023년 신안군에 전입한 노인의 주된 전입사유는 「가족」이 159명(35.5%)으로 가장 많고, 「주택」 86명(19.2%), 「직업」 78명(17.4%) 순임

○ 성별 전입사유는 「남자」는 「직업」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자」는 「가족」이 상대적으로 높음

□ 신안군 전체 전입자의 전입사유는 「직업」이 1,495명(38.4%)으로 가장 많고, 「가족」 1,246명(32.0%), 「주택」 356명(9.1%) 순임

【그림1-18】 주된 전입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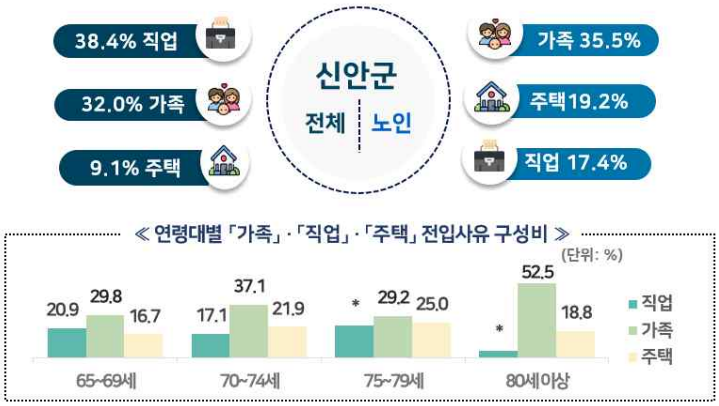

【표1-13】 전입사유

(단위: 명, %)

구분	전입인구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3,896	100.0	1,495	38.4	1,246	32.0	356	9.1	97	2.5	139	3.6	229	5.9	334	8.6
노인 (65세 이상)	448	100.0	78	17.4	159	35.5	86	19.2	-	-	33	7.4	43	9.6	49	10.9
남자	238	100.0	52	21.8	66	27.7	46	19.3	-	-	19	8.0	25	10.5	30	12.6
여자	210	100.0	26	12.4	93	44.3	40	19.0	-	-	14	6.7	18	8.6	19	9.0
65~69세	215	100.0	45	20.9	64	29.8	36	16.7	-	-	21	9.8	24	11.2	25	11.6
70~74세	105	100.0	18	17.1	39	37.1	23	21.9	-	-	6	5.7	8	7.6	11	10.5
75~79세	48	100.0	*	*	14	29.2	12	25.0	-	-	*	*	5	10.4	*	*
80세 이상	80	100.0	*	*	42	52.5	15	18.8	-	-	*	*	6	7.5	*	*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주) 2023.1.1. ~ 12.31.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기준 전입인구(외국인 제외)

1-14. 전출인구

신안군에서 전출한 노인은 448명으로 노인인구의 3.0%임

□ 2023년 신안군에서 전출한 노인인구는 448명으로 노인인구의 3.0%임

○ 전출한 노인인구 중 전라남도 내 「시·군간 전출」은 48.0%, 전라남도 외 「시·도간 전출」은 42.4%, 「신안군내 이동」은 9.6% 순임

○ 연령대별 노인 전출인구 비율은 「65~69세(4.0%)」, 「70~74세(3.0%)」 순임

□ 신안군 전체 전출인구는 3,147명으로 전체 인구의 8.3%이며, 전라남도 내 「시·군간 전출」은 48.1%, 전라남도 외 「시·도간 전출」은 37.0% 순임

【그림1-19】 전출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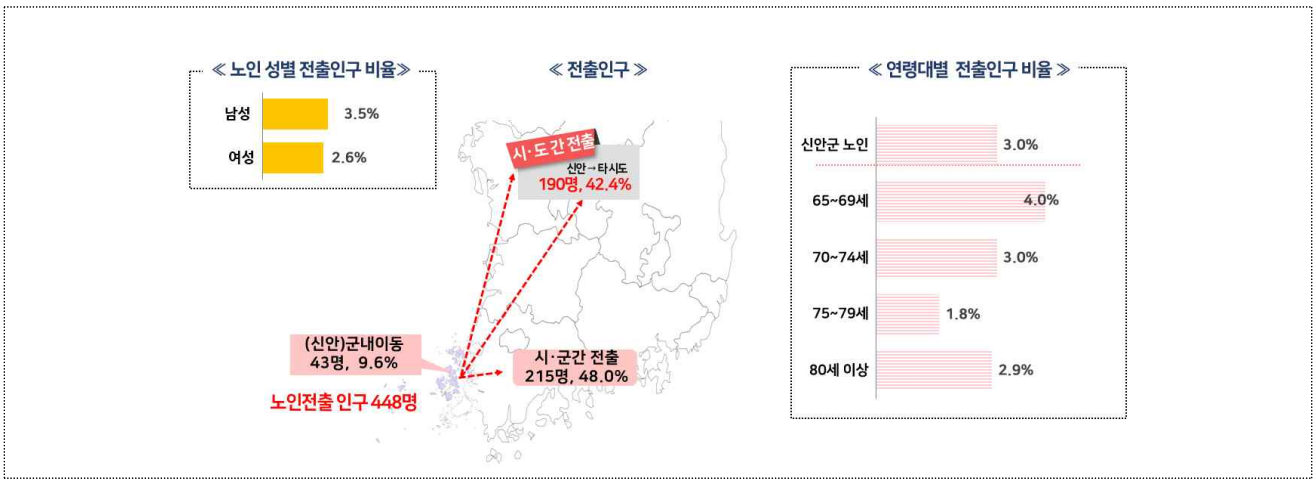

【표1-14】 전출인구

(단위: 명, %)

구분	주민등록 인구	전출이동 (총전출)		시·도내 전출		시·군내 전출		시·군간전출		시·도간전출		전출 인구 비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38,037**	**3,147**	**100.0**	**1,984**	**63.0**	**469**	**14.9**	**1,515**	**48.1**	**1,163**	**37.0**	**8.3**
노인 (65세 이상)	**14,914**	**448**	**100.0**	**258**	**57.6**	**43**	**9.6**	**215**	**48.0**	**190**	**42.4**	**3.0**
남자	6,564	232	100.0	134	57.8	20	8.6	114	49.1	98	42.2	3.5
여자	8,350	216	100.0	124	57.4	23	10.6	101	46.8	92	42.6	2.6
65~69세	3,992	160	100.0	95	59.4	16	10.0	79	49.4	65	40.6	4.0
70~74세	3,109	94	100.0	64	68.1	11	11.7	53	56.4	30	31.9	3.0
75~79세	2,881	53	100.0	30	56.6	7	13.2	23	43.4	23	43.4	1.8
80세 이상	4,932	141	100.0	69	48.9	9	6.4	60	42.6	72	51.1	2.9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주1) 2023.1.1. ~ 12.31.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기준 전입인구(외국인제외)
주2) 시·도내 전출: 전라남도 내에서 신안군으로 전입, 시·군내 전출: 신안군 내에서 읍면을 달리한 이동
시·군간 전출: 전라남도 내 타 시·군에서 신안군으로 전입, 시·도간 전입: 전라남도 외 타 시·도에서 신안군으로 전입
주3) 전출인구 비율 = (총전입 / 주민등록인구) × 100(%)

1-15. 전출사유

노인의 주된 전출사유는 「가족(38.2%)」, 「주택(17.4%)」, 「직업(13.6%)」 순임

□ 2023년 신안군에서 전출한 노인의 주된 전출사유는 「가족」이 171명(38.2%)으로 가장 많고, 「주택」 78명(17.4%), 「직업」 61명(13.6%) 순임

○ 「가족」 사유로 전출한 성별 노인 구성비는 「남자」는 38.8%, 「여자」는 37.5%로 「남자」가 1.3%p 높음

□ 신안군 전체 전출자의 전출사유는 「직업」이 1,106명(35.1%)으로 가장 많고, 「가족」 914명(29.0%), 「주택」 401명(12.7%) 순임

【그림1-20】 주된 전출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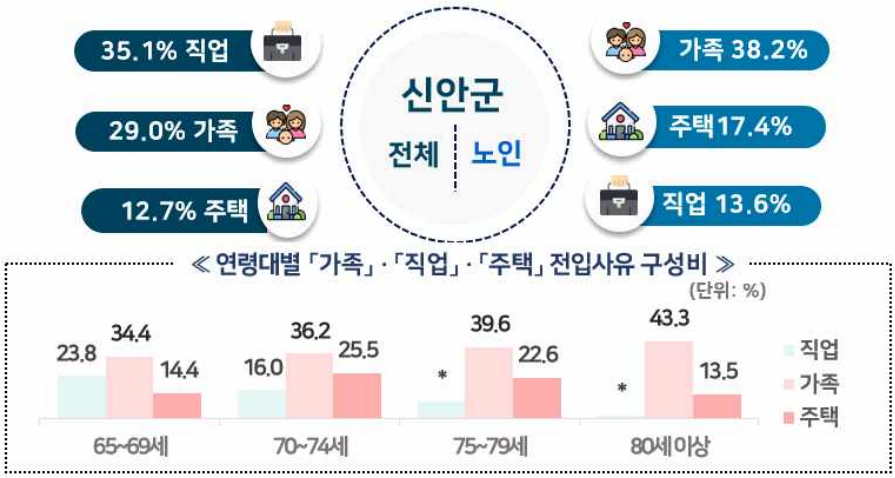

【표1-15】 전출사유

(단위: 명, %)

구분	전출인구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3,147**	**100.0**	**1,106**	**35.1**	**914**	**29.0**	**401**	**12.7**	**237**	**7.5**	**137**	**4.4**	**51**	**1.6**	**301**	**9.6**
노인 (65세 이상)	**448**	**100.0**	**61**	**13.6**	**171**	**38.2**	**78**	**17.4**	*****	*****	**43**	**9.6**	*****	*****	**65**	**14.5**
남자	232	100.0	36	15.5	90	38.8	43	18.5	*	*	18	7.8	*	*	35	15.1
여자	216	100.0	25	11.6	81	37.5	35	16.2	*	*	25	11.6	*	*	30	13.9
65~69세	160	100.0	38	23.8	55	34.4	23	14.4	*	*	11	6.9	*	*	24	15.0
70~74세	94	100.0	15	16.0	34	36.2	24	25.5	-	-	11	11.7	*	*	*	*
75~79세	53	100.0	*	*	21	39.6	12	22.6	-	-	5	9.4	*	*	6	11.3
80세 이상	141	100.0	*	*	61	43.3	19	13.5	-	-	16	11.3	14	9.9	28	19.9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주) 2023.1.1. ~ 12.31.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기준 전출인구(외국인 제외)

1-16. 연도별 전입인구

노인 전입인구는 448명으로 전년(425명) 대비 23명(5.4%) 증가함

□ 2023년 신안군 노인 전입인구는 448명으로 전년(425명) 대비 23명(5.4%) 증가함

○ 최근 3년간 전입인구 비율(노인인구 대비)은 2021년 3.3%에서 2022년 2.9%로 감소 이후, 23년 3.0%로 증가 전환하였음

□ 신안군 전체 전입인구는 3,896명으로 전년(3,656명) 대비 240명(6.6%) 증가함

【그림1-21】 연도별 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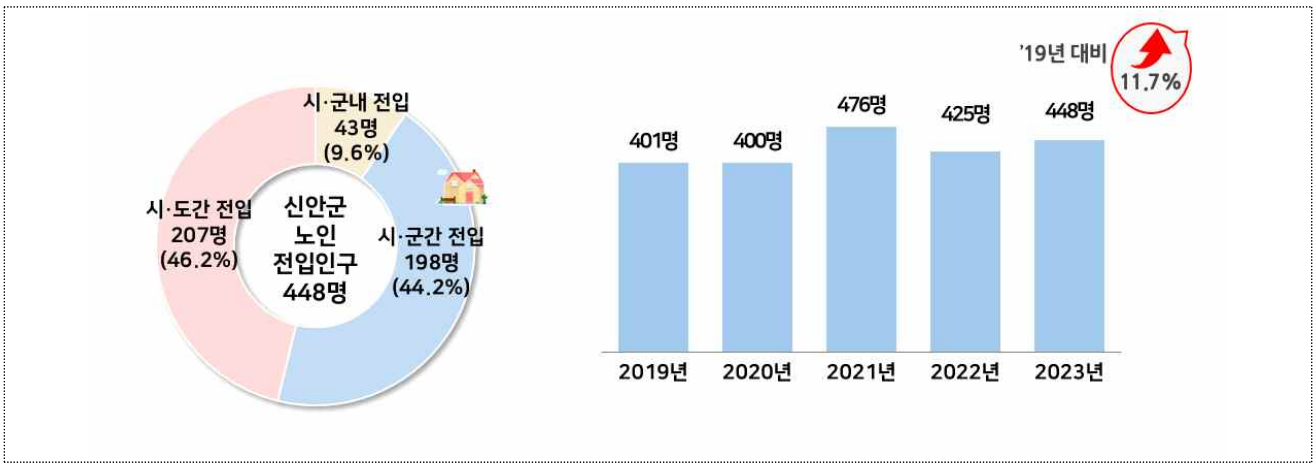

【표1-16】 연도별 전입인구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전입인구		시·군내 전입[1]		시·군간 전입[2]		시·도간 전입		전입인구 비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23년	**38,037**	**3,896**	**100.0**	**469**	**12.0**	**1,939**	**49.8**	**1,488**	**38.2**	**10.2**

구분	노인	전입인구		시·군내 전입[1]		시·군간 전입[2]		시·도간 전입		전입인구 비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19년	14,072	401	100.0	32	8.0	177	44.1	192	47.9	2.8
2020년	14,291	400	100.0	35	8.8	158	39.5	207	51.8	2.8
2021년	14,411	476	100.0	41	8.6	182	38.2	253	53.2	3.3
2022년	14,655	425	100.0	29	6.8	185	43.5	211	49.6	2.9
2023년	**14,914**	**448**	**100.0**	**43**	**9.6**	**198**	**44.2**	**207**	**46.2**	**3.0**

자료: 통계청「국내인구이동통계」
주1) 2023. 1. 1. ~ 2023. 12. 31.(1년간)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기준 전입인구 산정(외국인, 동일 행정 읍면동 전입 제외)
1) 시군구내 전입: 이동전후의 시군구는 같고 행정 읍면동이 다른 전입
2) 시군구간 전입: 이동전후의 시군구가 다른 전입

1-17. 연도별 전출인구

노인 전출인구는 448명으로 전년(422명) 대비 25명(6.2%) 증가함

□ 2023년 신안군 노인 전출인구는 448명으로 전년(422명) 대비 26명(6.2%) 증가함

○ 최근 3년간 전출인구 비율(노인인구 대비)은 2021년 3.3%, 2022년 2.9%, 2023년 3.0%로 2022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2023년 증가함

□ 신안군 전체 전출인구는 3,147명으로 전년(3,418명) 대비 271명(7.9%) 감소함

【그림1-22】 연도별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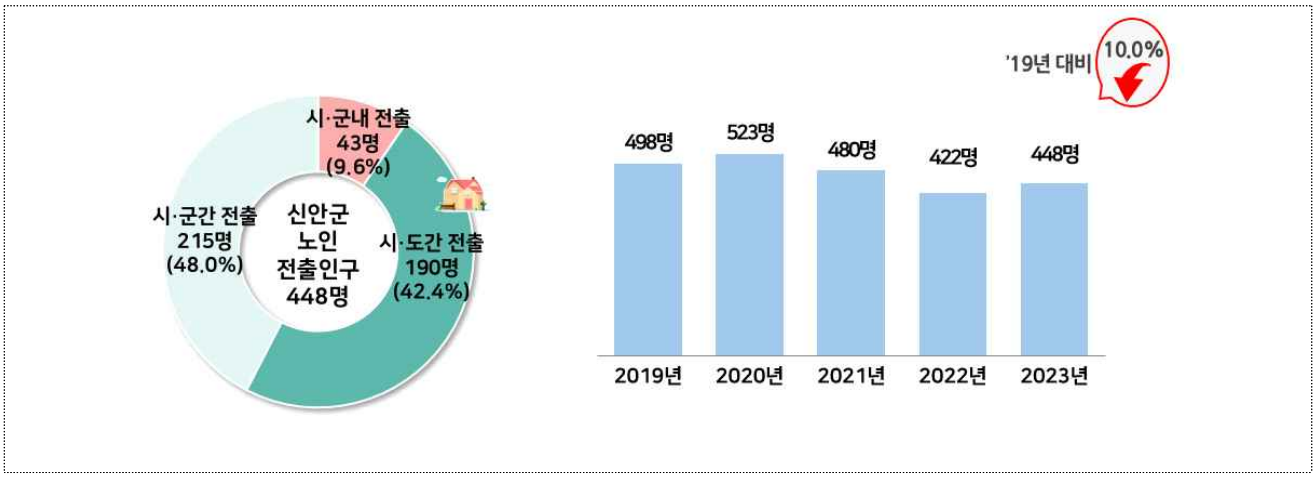

【표1-17】 연도별 전출인구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전출인구		시·군내 전출[1]		시·군간 전출[2]		시·도간 전출		전출인구 비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23년	**38,037**	**3,147**	**100.0**	**469**	**14.9**	**1,515**	**48.1**	**1,163**	**37.0**	**8.3**

구분	노인	전출인구		시·군내 전출[1]		시·군간 전출[2]		시·도간 전출		전출인구 비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19년	14,072	498	100.0	32	6.4	235	47.2	231	46.4	3.5
2020년	14,291	523	100.0	35	6.7	257	49.1	231	44.2	3.7
2021년	14,411	480	100.0	41	8.5	199	41.5	240	50.0	3.3
2022년	14,655	422	100.0	29	6.9	189	44.8	204	48.3	2.9
2023년	**14,914**	**448**	**100.0**	**43**	**9.6**	**215**	**48.0**	**190**	**42.4**	**3.0**

자료: 통계청「국내인구이동통계」
주1) 2023. 1. 1. ~ 2023. 12. 31.(1년간)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기준 전출인구 산정(외국인, 동일 행정 읍면동 전입 제외)
1) 시군구내 전출: 이동전후의 시군구는 같고 행정 읍면동이 다른 전입
2) 시군구간 전출: 이동전후의 시군구가 다른 전입

1-18. 가구원수별 노인가구

가구원수별 노인가구는 「1인가구(43.6%)」가 가장 많고, 「2인가구」 41.7%, 「3인 이상 가구」 14.8% 순임

□ 2023년 신안군 노인가구는 8,614가구로, 「1인 가구」가 3,753가구(43.6%)로 가장 많고, 「2인 가구」 3,588가구(41.7%), 「3인 이상 가구」 1,273가구(14.8%) 순임

○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3인 이상 가구」 비중은 감소하고, 「1인 가구」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남자는 「2인 가구」, 「1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순이고, 여자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그림1-23】 가구원수별 노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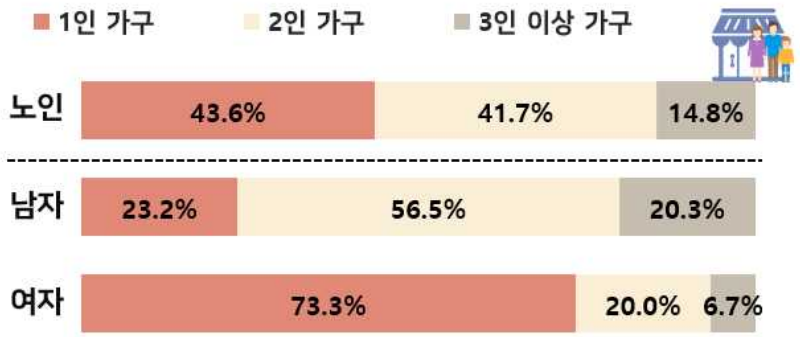

【표1-18】 가구원수별 노인가구

(단위: 가구, %)

구분	노인(65세 이상) 일반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8,614**	**100.0**	**3,753**	**43.6**	**3,588**	**41.7**	**1,273**	**14.8**
남자	5,106	100.0	1,183	23.2	2,885	56.5	1,038	20.3
여자	3,508	100.0	2,570	73.3	703	20.0	235	6.7
65~69세	2,010	100.0	727	36.2	897	44.6	386	19.2
70~74세	1,786	100.0	643	36.0	843	47.2	300	16.8
75~79세	1,777	100.0	737	41.5	771	43.4	269	15.1
80세 이상	3,041	100.0	1,646	54.1	1,077	35.4	318	10.5

자료: 통계청 「가구통계등록부」
주) 성별, 연령대별 일반가구(집단가구 및 외국인가구 제외) 가구주 기준으로 산정

2024년 신안군 노인복지통계

2 경제

2-1. 가구 월평균 소득

2-2. 개인소유 주택 현황

2-3. 거주지 기준 주택 소유 현황

2-4. 자동차 소유

2-1. 가구 월평균 소득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0만~100만 원 미만」 28.9%, 「100~200만 원 미만」 21.5% 순임

□ 2023년 신안군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0만~100만 원 미만(28.9%)」, 「100만~200만 원 미만(21.5%)」, 「200만~300만 원 미만(15.3%)」 순임

- ○ 남자 가구는 「100만~200만 원 미만」이 24.8%로 가장 높고, 여자 가구는 「50만~100만 원 미만」이 46.9%로 가장 높음
- ○ 「50만~100만 원 미만」은 「80세 이상(45.0%)」이 가장 높고, 「100만~200만 원 미만」은 「70~74세(30.3%)」가 가장 높음

□ 신안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500만 원 미만」 24.2%, 「200만~300만 원 미만」 17.9% 순임

【그림2-1】 가구 월평균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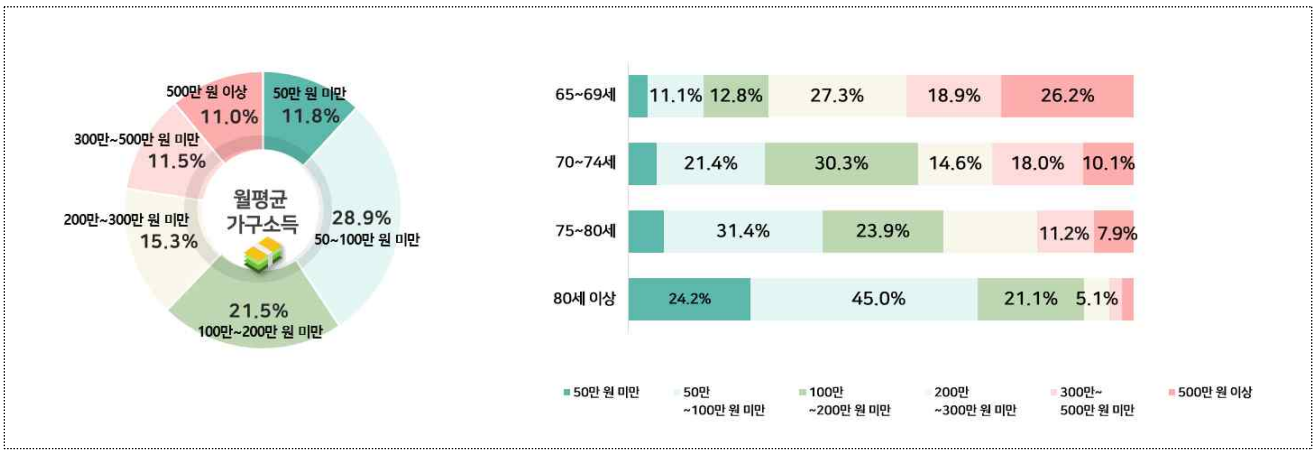

【표2-1】 가구 월평균 소득

(단위: %)

구분	계	50만 원 미만	50만~100만 원 미만	100만~200만 원 미만	200만~300만 원 미만	300만~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신안군	**100.0**	**6.0**	**15.2**	**13.7**	**17.9**	**24.2**	**22.9**
노인 (65세 이상)	**100.0**	**11.8**	**28.9**	**21.5**	**15.3**	**11.5**	**11.0**
남자	100.0	3.7	15.9	24.8	22.3	17.2	16.1
여자	100.0	23.0	46.9	17.0	5.5	3.7	3.9
65~69세	100.0	3.7	11.1	12.8	27.3	18.9	26.2
70~74세	100.0	5.6	21.4	30.3	14.6	18.0	10.1
75~79세	100.0	7.0	31.4	23.9	18.6	11.2	7.9
80 이상	100.0	24.2	45.0	21.1	5.1	2.4	2.4

자료: 신안군 「2023년 사회조사」
주) 2022.9.1. ~ 2023.8.31. 기준

2-2. 개인소유 주택 현황

개인 소유 주택수는 8,603호이고, 단독주택은 8,592호(99.9%)임

□ 개인 소유 주택수는 8,603호이고, 단독주택은 8,592호(99.9%)임

- ○ 성별로 보면, 「남자(4,940호)」가 「여자(3,663호)」 보다 1,227호 많으며 전체 개인 소유 주택 중 단독주택 비율은 「남자(36.3%)」, 「여자(26.9%)」임
- ○ 연령대별로 보면, 「80세 이상(2,952호)」, 「65~69세(1,941호)」, 「70~74세(1,878호)」, 「75~79세(1,832호)」 순임

□ 신안군 개인 소유 주택수는 13,601호이고 그 중 단독주택은 13,478호임

【그림2-2】 개인소유 주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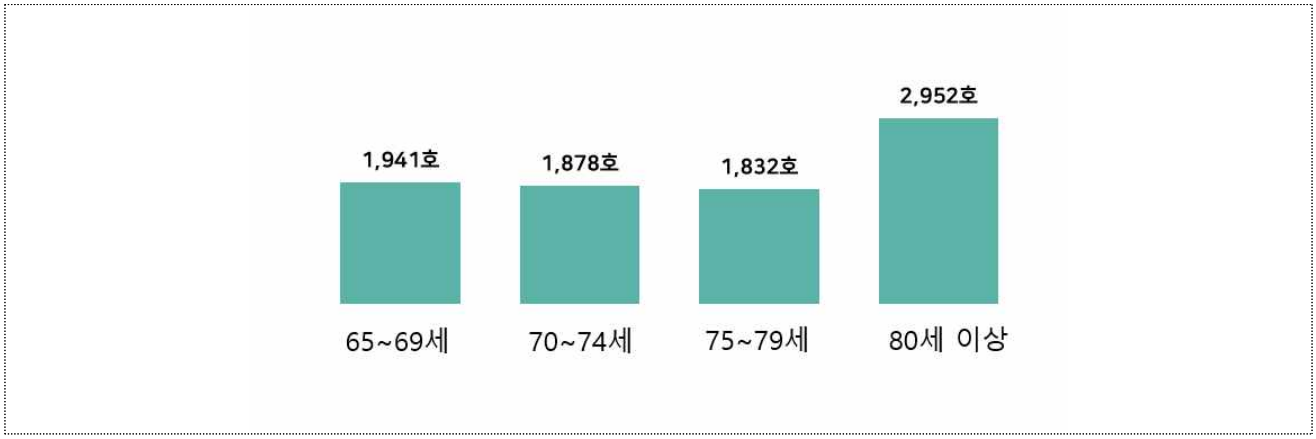

【표2-2】 개인소유 주택 현황

(단위: 호, %)

구분	개인 소유 주택수		단독주택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13,601	100.0	13,478	99.1
노인(65세 이상)	**8,603**	**100.0**	**8,592**	**99.9**
남자	4,940	100.0	4,936	36.3
여자	3,663	100.0	3,656	26.9
65~69세	1,941	100.0	1,936	14.2
70~74세	1,878	100.0	1,876	13.8
75~79세	1,832	100.0	1,832	13.5
80세 이상	2,952	100.0	2,948	21.7

자료: 신안군 「재산세자료」
주1) 개인 소유 주택수 이외의 경우는 법인, 국가, 지자체, 종중, 외국인 등이 소유한 주택을 의미
주2) 거주자 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집계됨
주3)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전업농어가주택 포함(창고 제외)
주4) 기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기숙사 제외)

2-3. 거주지 기준 주택 소유 현황

신안군 내 주택 개인 소유자 중 노인은 8,425명으로 군내 거주자는 7,010명임

□ 2023년 신안군 내 주택 개인 소유자 중 노인은 8,425명으로 군내 거주자는 7,010명임

○ 신안군 내 주택 개인 소유자 중 남자(3,927명)가 여자(3,083명)보다 833명 많음

○ 군내 거주자가 「80세 이상(35.7%)」, 「65~69세(21.5%)」, 「75~79세(21.5%)」, 「70~74세(21.4%)」 순임

【그림2-3】 주택 개인 소유자의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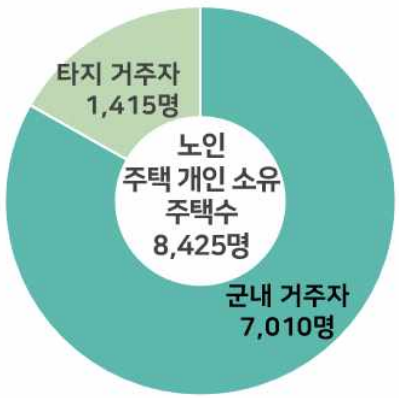

【그림2-4】 성별 주택 개인 소유 군내 거주자

【표2-3】 거주지 기준 주택 소유 현황

(단위: 명, 호, %)

구분	주택 개인 소유자수[1](A)	구성비	군내 거주자	구성비	개인 소유 주택수(B)	구성비
전체	14,693	100.0	10,932	100.0	22,451	100.0
노인 (65세 이상)	**8,425**	**100.0**	**7,010**	**100.0**	**13,075**	**100.0**
남자	4,761	56.5	3,927	56.0	6,464	49.4
여자	3,664	43.5	3,083	44.0	6,611	50.6
65~69세	2,058	24.4	1,507	21.5	3,184	68.8
70~74세	1,824	21.6	1,497	21.4	2,896	91.0
75~79세	1,706	20.2	1,504	21.5	2,665	92.0
80세 이상	2,837	33.7	2,502	35.7	4,330	162.5

자료: 신안군 「재산세자료」
1) 주택 소유자수는 1호 초과 주택을 소유할 경우 중복을 제외하여 집계
주) 주택소유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집계

2-4. 자동차 소유

신안군 노인 중 자동차 소유자는 3,853명으로 노인인구의 25.8%이며, 소유 자동차수는 5,360대로 1인당 소유 자동차 수는 1.39대임

□ 2023년 신안군 노인 중 자동차 소유자는 3,853명으로 노인인구의 25.8%이며, 소유 자동차는 5,360대로 1인당 소유 자동차 수는 1.39대임

- ○ 성별 자동차 소유자는 남자 3,253명, 여자 600명이며, 성별 1인당 소유 자동차 수는 각각 1.43대, 1.17대로 나타남
- ○ 연령대별 자동차 소유자는 「65~69세(1,834명)」, 「70~74세(1,067명)」, 「75~79세(626명)」, 「80세 이상(326명)」 순임

□ 신안군 전체 인구 중 자동차 소유자는 14,167명이며, 소유 자동차는 22,075대임

【그림2-5】 자동차 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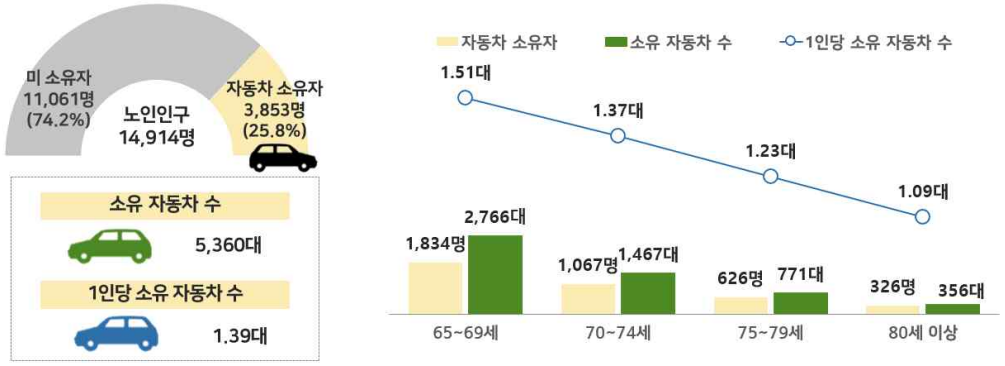

【표2-4】 유형별 소유 자동차 수

(단위: 명, 대)

구분	주민등록 인구	자동차 개인 소유자	소유 자동차수	개인소유자 1인당 소유자동차수
신안군	**38,037**	**14,167**	**22,075**	**1.56**
노인(65세 이상)	**14,914**	**3,853**	**5,360**	**1.39**
남자	6,564	3,253	4,658	1.43
여자	8,350	600	702	1.17
65~69세	3,992	1,834	2,766	1.51
70~74세	3,109	1,067	1,467	1.37
75~79세	2,881	626	771	1.23
80세 이상	4,932	326	356	1.09

자료: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신안군「자동차세 자료」
주) 2023.12.31. 신안군 소재지 기준 자동차 개인소유자 및 소유자동차 수(국가, 법인 등 단체소유자 및 영업용 제외)

2024년 신안군 노인복지통계

3 일자리

3-1. 경제활동인구 현황

3-2. 연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3-3. 가입기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3-4. 연도별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자

3-5. 연도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3-6. 연도별 구직신청건수

3-7. 구직희망 고용형태

3-8. 구직희망 근무지역

3-9. 구직희망 월평균 임금금액

3-10. 연도별 사업자등록 현황

3-11. 연도별 공공일자리 참여 현황

3-12. 일자리 만족도(하는일)

3-13. 일자리 만족도(임금/가구소득)

3-14. 일자리 만족도(근로시간)

3-15. 일자리 만족도(근무환경)

3-1. 경제활동인구 현황

신안군 노인 경제활동인구는 9천 5백 명, 경제활동 참가율은 71.1%이며, 그 중 취업자는 9천 5백 명, 노인 고용률은 71.1%임

□ 2023년 하반기 기준 신안군 노인 경제활동인구는 9천 5백 명, 경제활동 참가율은 71.1%이며, 취업자는 9천 5백 명, 노인 고용률은 71.1%임

○ 성별 고용률은 남자 76.0%, 여자 67.1%로 남자가 여자보다 8.9%p 높음

○ 연령대별 고용률은 「65~69세(86.5%)」, 「70~74세(80.5%)」, 「75~79세(80.1%)」, 「80세 이상(45.8%)」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짐

□ 신안군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23천 5백 명, 경제활동 참가율은 80.1%이며, 취업자는 23천 4백 명, 고용률은 80.0%임

【그림3-1】 경제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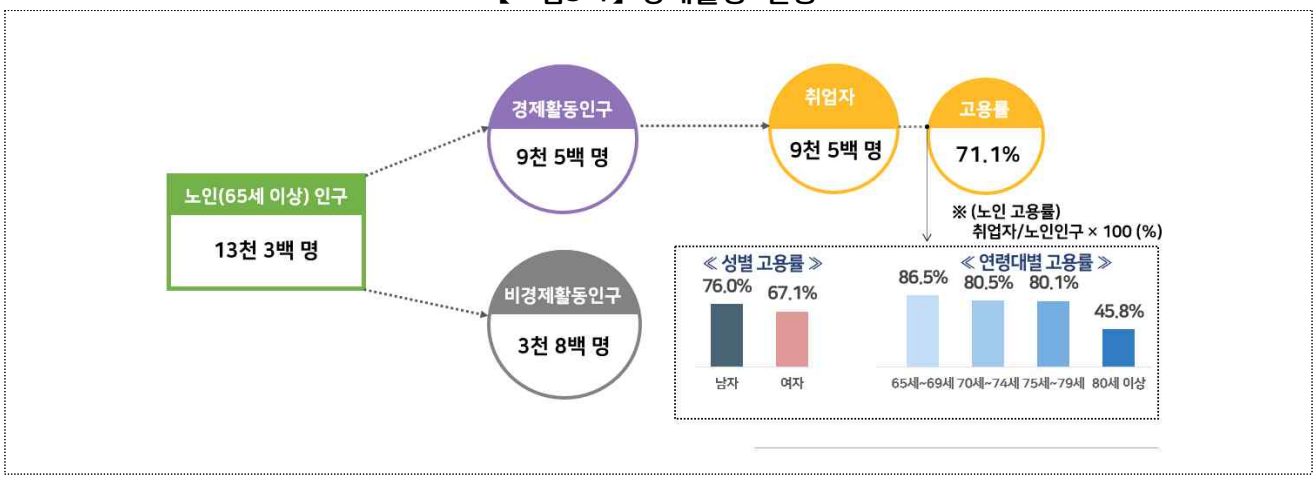

【표3-1】 경제활동인구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신안군	**29.3**	**23.5**	**80.1**	**23.4**	**80.0**	**5.8**
노인(65세 이상)	**13.3**	**9.5**	**71.1**	**9.5**	**71.1**	**3.8**
남자	6.0	4.5	76.0	4.5	76.0	1.4
여자	7.4	5.0	67.1	5.0	67.1	2.4
65세~69세	2.8	2.4	86.5	2.4	86.5	0.4
70세~74세	3.2	2.6	80.5	2.6	80.5	0.6
75세~79세	3.3	2.6	80.1	2.6	80.1	0.6
80세 이상	4.1	1.9	45.8	1.9	45.8	2.2

자료: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주1) 2023년 하반기 기준 전국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에 대한 조사자료로 시군가중치 사용 (군인,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교도소 수감자 등이 제외되므로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2)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와 실업자 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와 실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
주3)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주4) (고용률) 취업자/15세 이상 인구*100(%)

3-2. 연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727명으로 전체 피보험자의 12.4% 이며, 「65세~69세」가 445명(7.6%)으로 가장 많음

□ 2023년 신안군 노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727명으로 전체 피보험자의 12.4%를 차지하며, 연령대는 「65~69세」가 445명(7.6%)으로 가장 많음

○ 2021년 피보험자 비율은 7.7%, 2022년 10.5%, 2023년 12.4%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임

□ 신안군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5,851명이며,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3-2】 연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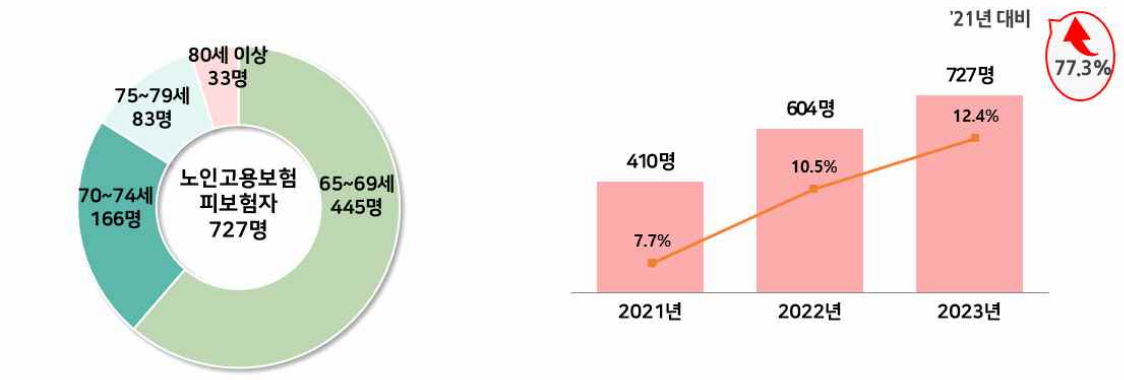

【표3-2】 연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단위: 명, %)

구분	고용보험 피보험자		노인 (65세 이상)		65세~69세		70세~74세		75~79세		80세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21년	5,341	100.0	410	7.7	274	5.1	83	1.6	42	0.8	11	0.2
2022년	5,754	100.0	604	10.5	361	6.3	137	2.4	75	1.3	31	0.5
2023년	**5,851**	**100.0**	**727**	**12.4**	**445**	**7.6**	**166**	**2.8**	**83**	**1.4**	**33**	**0.6**

자료: 고용노동부「고용보험자료」
주) 각 해당연도 1. 1. ~ 12. 31.(1년간) 신안군 소재 사업장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산정

3-3. 가입기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기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년~3년 미만」이 263명(36.2%), 「1년 미만」 248명(34.1%), 「3년~5년 미만」 91명(12.5%) 순임

□ 2023년 신안군 노인 가입기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년~3년 미만」이 263명(36.2%), 「1년 미만」 248명(34.1%), 「3년~5년 미만」 91명(12.5%) 순임

○ 남자는 「1년 미만」이 31.8%로 가장 많고 여자는 「1년~3년미만」이 41.2%로 가장 많음

○ 노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일반직이 611명, 계약직이 116명임

【그림3-3】 가입기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표3-3】 가입기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단위: 명, %)

구분	노인인구 (65세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		1년 미만		1 ~ 3년 미만		3 ~ 5년 미만		5 ~ 10년 미만		10년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727 (100.0)**	**100.0**	**248**	**34.1**	**263**	**36.2**	**91**	**12.5**	**88**	**12.1**	**37**	**5.1**
남자	386 (53.1)	100.0	127	31.8	120	31.6	51	13.4	57	15.0	31	8.2
여자	341 (46.9)	100.0	121	36.6	143	41.2	40	11.5	31	8.9	6	1.7
일반직	611 (84.0)	100.0	221	36.2	216	35.4	73	11.9	64	10.5	37	6.1
계약직	116 (16.0)	100.0	27	23.3	47	40.5	18	15.5	24	20.7	-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자료」
주) 2023. 12. 31. 신안군 소재 사업장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산정

3-4. 연도별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자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476명, 자격 상실자는 480명임

□ 2023년 신안군 노인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476명으로 전년(441명)대비 7.9%(35명)증가, 「자격 상실자」는 480명으로 전년(353명)대비 36.0% (127명) 증가함

○ 노인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 비율은 「2021년(10.8%)」, 「2022년(11.1%)」, 「2023년(12.3%)」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와 상실자 모두 「65~69세」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음

□ 신안군 전체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3,862명, 「자격 상실자」는 3,688명임

【그림3-4】 고용보험 자격 취득 상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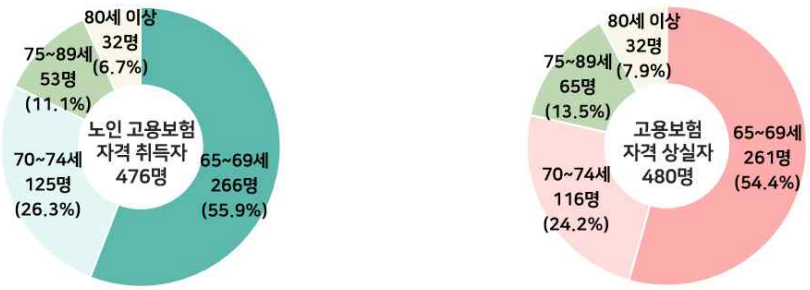

【표3-4】 연도별 고용보험 자격 취득 상실자

(단위: 명, %)

구분	자격 취득자(전체)		노인 (65세 이상)		65~69세		70~74세		75~89세		80세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21년	3,747	100.0	406	10.8	242	6.5	109	2.9	43	1.1	12	0.3
2022년	3,965	100.0	441	11.1	266	6.7	108	2.7	48	1.2	19	0.5
2023년	**3,862**	**100.0**	**476**	**12.3**	**266**	**6.9**	**125**	**3.2**	**53**	**1.4**	**32**	**0.8**

구분	자격 상실자(전체)		노인 (65세 이상)		65~69세		70~74세		75~89세		80세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21년	3,404	100.0	446	13.1	250	7.3	131	3.8	47	1.4	18	0.5
2022년	3,569	100.0	353	9.9	233	6.5	78	2.2	32	0.9	10	0.3
2023년	**3,688**	**100.0**	**480**	**13.0**	**261**	**7.1**	**116**	**3.1**	**65**	**1.8**	**38**	**1.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자료」

주) 각 해당연도 1. 1. ~ 12. 31.(1년간) 신안군 소재 사업장 기준 자격 취득•상실자 산정

3-5. 연도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인원은 23명, 1인당 수급금액은 7,009천 원임

□ 2023년 신안군 노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인원은 23명으로 2022년 대비 27.8%(5명) 증가, 2021년 대비 14.8%(4명) 감소함

○ 1인당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2021년(8,159천 원)」, 「2022년(7,108천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신안군 전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인원은 321명으로 「2022년」 대비 3.6%(12명), 「2021년」 대비 17.7%(69명) 감소함

【그림3-5】 연도별 실업급여 수급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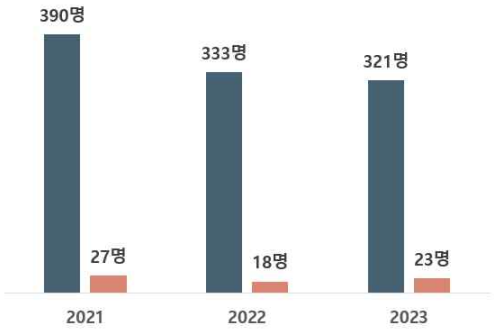

【그림3-6】 연도별 실업급여 1인당 수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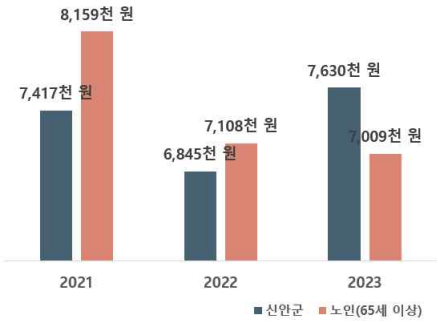

【표3-5】 연도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단위: 명, 천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수급 인원	수급금액	1인당 수급금액	수급 인원	수급금액	1인당 수급금액	수급 인원	수급금액	1인당 수급금액
신안군	**390**	**2,892,699**	**7,417**	**333**	**2,279,237**	**6,845**	**321**	**2,449,365**	**7,630**
19세 이하	*	3,848	*	*	3,367	*	*	2,401	*
20~29세	*	230,714	*	38	251,061	6,607	*	199,869	*
30~39세	43	298,162	6,934	*	189,844	*	34	238,941	7,028
40~49세	68	508,456	7,477	41	271,691	6,627	39	292,950	7,512
50~59세	108	820,323	7,596	108	725,610	6,719	93	717,698	7,717
60세 이상	128	1,031,197	27,423	117	837,664	18,657	120	997,506	20,783
노인 (65세 이상)	**27**	**220,280**	**8,159**	**18**	**127,944**	**7,108**	**23**	**161,198**	**7,009**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자료」
주1) (수급인원) 각 해당연도 1. 1. ~ 12. 31.(1년간) 신안군 소재 사업장 기준 실업급여 수급대상 인원 산정
주2) (수급금액) 각 해당연도 1. 1. ~ 12. 31.(1년간) 신안군 소재 사업장 기준 실업급여 수급 총액 산정
주3) (1인당 수급금액) 수급금액 총액 / 수급인원
주4) 구직급여(상병급여, 연장급여 포함),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 모두 포함

3-6. 연도별 구직신청건수

구직신청 건수는 54건이며, 구직신청 시기는 「4분기」가 23건으로 가장 많음

□ 2023년 신안군 노인 구직자의 구직신청 건수는 54건으로, 2021년 대비 9.3%(5명) 증가함

○ 분기별 구직신청 건수는 「4분기」 23건으로 가장 많고, 「3분기」 14건, 「1분기」 10건, 「2분기」 7건 순임

□ 신안군 전체 구직자의 구직신청 건수는 889건으로, 2021년 대비 4.6%(43명) 감소하였고, 「1분기」가 304건으로 가장 많음

【그림3-7】 신안군 구직신청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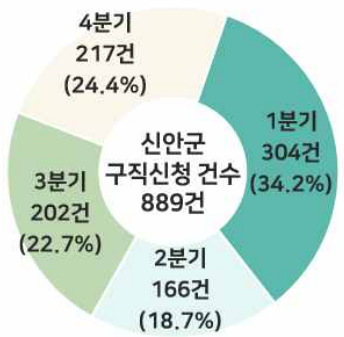

【그림3-8】 노인 구직신청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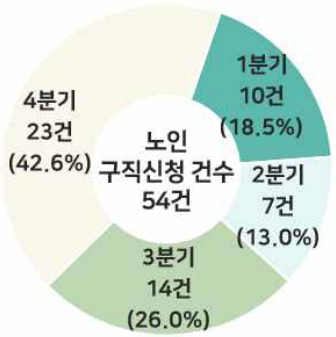

【표3-6】 연도별 구직신청건수

(단위: 건, %)

구분	구직신청건수		노인 (65세이상)	
		구성비		구성비
2021년	932	100.0	49	5.3
2022년	823	100.0	54	6.6
2023년	**889**	**100.0**	**54**	**6.1**
’23. 1/4	304	100.0	10	3.3
’23. 2/4	166	100.0	7	4.2
’23. 3/4	202	100.0	14	6.9
’23. 4/4	217	100.0	23	10.6

자료: 고용노동부「구직신청자료」
주) 2023.1.1.~12.31. (1년 간) 구직신청 건수 산정(1명이 해당연도 내에 n건 구직 신청 시 n건으로 산정)

3-7. 구직희망 고용형태

구직신청자의 희망 고용형태는 「관계없음」이 48.1%로 가장 높음

□ 2023년 신안군 노인 구직신청자의 구직희망 고용형태는 「관계없음」 26건(48.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전일제)」 15건(27.8%) 순임

○ 노인 성별로는 남자는 「관계없음(61.3%)」, 여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전일제) (34.8%)」을 가장 선호함

□ 신안군 전체 구직신청자의 구직희망 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전일제)」 330건(37.1%), 「관계없음」 324건(36.4%) 순임

【그림3-9】 구직 희망 고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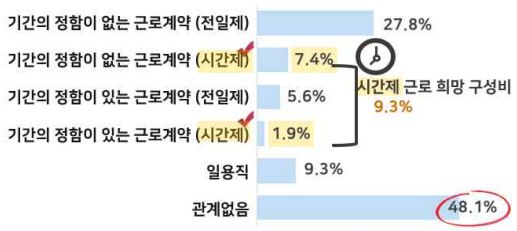

【그림3-10】 연령대별 분기별 노인 구직신청 건수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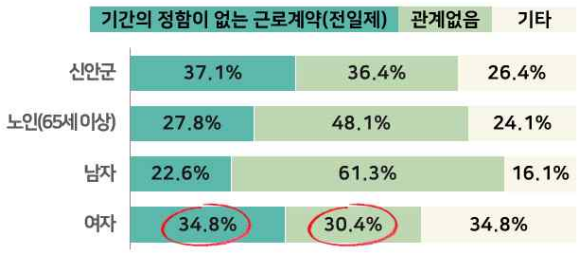

【표3-7】 구직희망 고용형태

(단위: 건, %)

구분	구직신청 건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일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시간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전일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시간제)		일용직		관계없음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889**	**100.0**	**330**	**37.1**	**46**	**5.2**	**63**	**7.1**	**30**	**3.4**	**96**	**10.8**	**324**	**36.4**
19세 이하	23	100.0	12	52.2	-	-	-	-	*	*	*	*	6	26.1
20~29세	166	100.0	63	38.0	*	*	12	7.2	*	*	*	*	67	40.4
30~39세	115	100.0	51	44.3	*	*	8	7.0	7	6.1	18	15.7	28	24.3
40~49세	125	100.0	59	47.2	*	*	8	6.4	*	*	14	11.2	28	22.4
50~59세	233	100.0	79	33.9	14	6.0	26	11.2	8	3.4	25	10.7	81	34.8
60세 이상	227	100.0	66	29.1	9	4.0	9	4.0	6	2.6	23	10.1	114	50.2
노인 (65세 이상)	**54**	**100.0**	**15**	**27.8**	*	*	*	*	*	*	**5**	**9.3**	**26**	**48.1**
남자	31	100.0	7	22.6	-	-	*	*	-	-	*	*	19	61.3
여자	23	100.0	8	34.8	*	*	*	*	*	*	*	*	7	30.4

자료: 고용노동부 「구직신청 자료」
주) 2022.1.1.~12.31. (1년 간) 구직신청 건수 산정(1명이 해당연도 내에 n건 구직 신청 시 n건으로 산정)

3-8. 구직희망 근무지역

구직신청자의 희망 근무 지역은「신안군」55.6%,「전라남도(광주, 신안 제외)」25.9%,「기타지역」11.1% 순임

□ 2023년 신안군 노인 구직신청자의 희망 근무 지역은「신안군」30건(55.6%),「전라남도(광주, 신안 제외)」14건(25.9%) 순임

○ 「신안군」근무를 희망하는 남자가 38.7%, 여자가 78.3%로 여자가 남자보다 39.6%p 높음

□ 신안군 전체 구직신청자의 희망 근무 지역은 「신안군」 449건(50.5%),「전라남도(광주, 신안 제외)」256건(28.8%),「기타지역」107건(12.0%) 순임

【그림3-11】 구직신청자 구직희망 근무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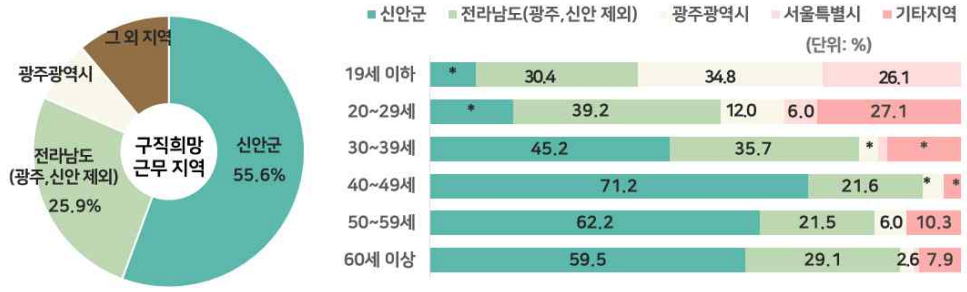

【표3-8】 구직희망 근무지역

(단위: 명, %)

구분	구직신청 인원		신안군		전라남도 (광주, 신안 제외)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기타지역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889**	**100.0**	**449**	**50.5**	**256**	**28.8**	**57**	**6.4**	**20**	**2.2**	**107**	**12.0**
19세 이하	23	100.0	*	*	7	30.4	8	34.8	*	*	-	-
20~29세	166	100.0	*	*	65	39.2	20	12.0	10	6.0	45	27.1
30~39세	115	100.0	52	45.2	41	35.7	*	*	*	*	*	*
40~49세	125	100.0	89	71.2	27	21.6	*	*	-	-	*	*
50~59세	233	100.0	145	62.2	50	21.5	14	6.0	-	-	24	10.3
60세 이상	227	100.0	135	59.5	66	29.1	6	2.6	*	*	18	7.9
노인 (65세 이상)	**54**	**100.0**	**30**	**55.6**	**14**	**25.9**	*****	*****	**-**	**-**	*****	*****
남자	31	100.0	12	38.7	*	*	*	*	-	-	*	*
여자	23	100.0	18	78.3	*	*	-	-	-	-	*	*

자료: 고용노동부「구직신청 자료」

주) 2022.1.1.~12.31. (1년 간) 구직신청 건수 산정(1명이 해당연도 내에 n건 구직 신청 시 n건으로 산정)

3-9. 구직희망 월평균 임금금액

구직신청자가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은 「200만~ 250만 원 미만」 63.0%, 「250만 원 이상」 27.8% 순임

□ 2023년 신안군 노인 구직신청자가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은 「200만~250만 원 미만」 34건(63.0%), 「250만 원 이상」 15건(27.8%) 순임

○ 「200만~250만 원 미만」을 희망하는 남자는 54.8%, 여자는 73.9%로 여자가 남자보다 19.1%p 높음

□ 신안군 전체 구직신청자가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은 「200만~250만 원 미만」 495건(55.7%), 「250만 원 이상」 324건(36.4%) 순임

【그림3-12】 구직희망 월평균 임금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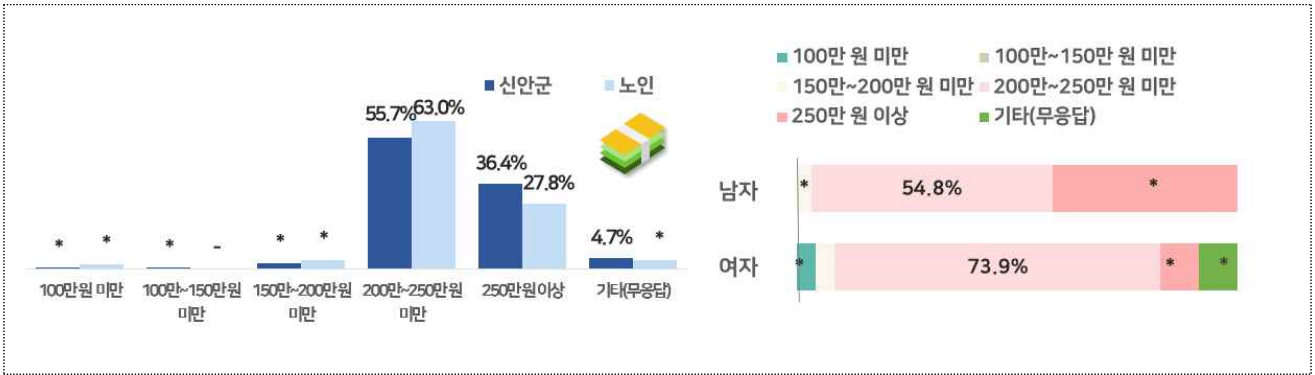

【표3-9】 구직희망 월평균 임금금액

(단위: 건, %)

구분	구직신청 건수	구성비	100만 미만	구성비	100만~150만 미만	구성비	150만~200만 미만	구성비	200만~250만 미만	구성비	250만 이상	구성비	기타(무응답)	구성비
신안군	**889**	**100.0**	*	*	*	*	**21**	**2.4**	**495**	**55.7**	**324**	**36.4**	**42**	**4.7**
19세 이하	23	100.0	-	-	-	-	-	-	17	73.9	*	*	*	*
20~29세	166	100.0	-	-	*	*	*	*	82	49.4	57	34.3	23	13.9
30~39세	115	100.0	*	*	*	*	*	*	55	47.8	50	43.5	*	*
40~49세	125	100.0	-	-	*	*	*	*	64	51.2	50	40.0	6	4.8
50~59세	233	100.0	*	*	-	-	*	*	143	61.4	83	35.6	*	*
60세 이상	227	100.0	*	*	-	-	7	3.1	134	59.0	80	35.2	5	2.2
노인 (65세 이상)	**54**	**100.0**	*	*	-	-	*	*	**34**	**63.0**	**15**	**27.8**	*	*
남자	31	100.0	-	-	-	-	*	*	17	54.8	*	*	-	-
여자	23	100.0	*	*	-	-	*	*	17	73.9	*	*	*	*

자료: 고용노동부 「구직신청 자료」
주) 2022.1.1.~12.31. (1년 간) 구직신청 건수 산정(1명이 해당연도 내에 n건 구직 신청 시 n건으로 산정)

3-10. 연도별 사업자등록 현황

사업등록자 수는 2,249명이며, 전체 사업등록자(7,736명)의 29.1%임

□ 2023년 신안군 노인 사업등록자는 2,249명이며, 신안군 전체 사업등록자(7,736)명의 29.1%임

○ 연령대별로 보면 「65~69세」 900명(11.6%), 「70~74세」 603명(7.8%), 「75~79세」 462명(6.0%) 순임

□ 신안군 전체 사업등록자 수는 2019년 6,198명, 2023년 7,736명으로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3-13】 사업등록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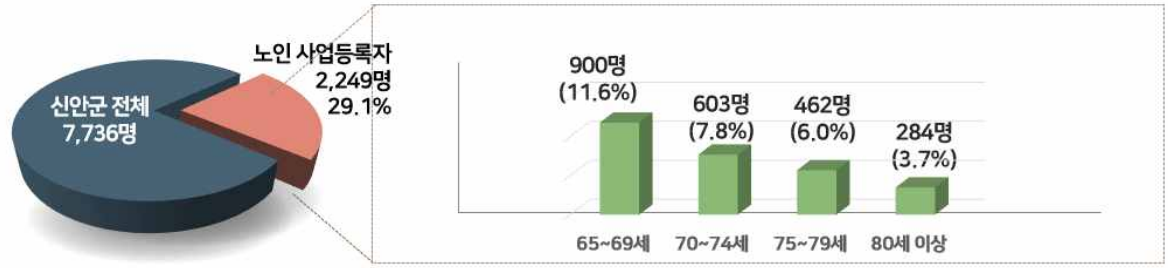

【표3-10】 연도별 사업자등록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사업등록자		노인 (65세 이상)		65~69세		70~74세		75~89세		80세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19	40,274	6,198	100.0	1,510	24.4	570	9.2	474	7.6	312	5.0	154	2.5
2020	38,938	6,339	100.0	1,637	25.8	636	10.0	504	8.0	316	5.0	181	2.9
2021	38,217	6,783	100.0	1,791	26.4	677	10.0	536	7.9	357	5.3	221	3.3
2022	37,858	7,437	100.0	2,036	27.4	775	10.4	581	7.8	421	5.7	259	3.5
2023	**38,037**	**7,736**	**100.0**	**2,249**	**29.1**	**900**	**11.6**	**603**	**7.8**	**462**	**6.0**	**284**	**3.7**

자료: 통계청「기업통계등록부」
주) 1명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등록한 경우 중복 제외(등록자 기준 집계)

3-11. 연도별 공공일자리 참여 현황

공공일자리 참여 인원은 「노인일자리」 2,121명(96.6%), 「행정 및 공공기관」 46명(2.1%) 순임

□ 2023년 신안군 공공일자리 참여 인원은 「노인일자리」 2,121명(96.6%), 「행정 및 공공기관」 46명(2.1%) 순임

○ 전체 공공일자리 참여 인원 중 노인일자리 참여 비율은 2019년 90.3%, 2020년 90.4%, 2021년 93.2%, 2022년 95.8%, 2023년 96.6%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신안군 총인구 대비 공공일자리 참여 비율은 2019년 3.4%, 2023년 5.8%로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3-14】 연도별 공공일자리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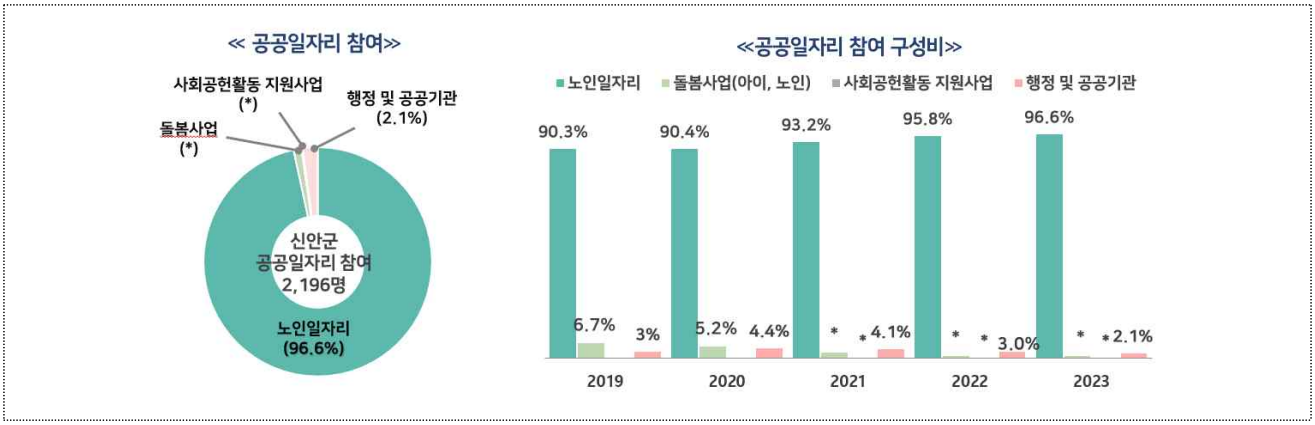

【표3-11】 연도별 공공일자리 참여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공공일자리 참여		노인일자리		돌봄사업 (아이,노인)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행정 및 공공기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19	40,274	1,376	3.4	1,243	90.3	92	6.7	-	-	41	3.0
2020	38,938	1,708	4.4	1,544	90.4	88	5.2	-	-	76	4.4
2021	38,217	1,834	4.8	1,710	93.2	*	*	*	*	76	4.1
2022	37,858	2,194	5.8	2,101	95.8	*	*	*	*	65	3.0
2023	**38,037**	**2,196**	**5.8**	**2,121**	**96.6**	*	*	*	*	**46**	**2.1**

자료: 신안군 「공공일자리 자료」

3-12. 일자리 만족도(하는일)

하는일에 대한 일자리 만족도는 「보통」 67.7%, 「만족」 22.1%, 「불만족」 10.2%로 나타남

□ 2023년 신안군 노인의 일자리 만족도(하는일)는 「보통(67.7%)」, 「만족(22.1%)」, 「불만족(10.2%)」 순임

○ 성별로 보면, 「만족」은 남자(23.5%)가 여자(20.8%)보다 2.7%p 높으며, 「불만족」은 여자(11.6%)가 남자(8.8%)보다 2.8%p 높음

○ 연령대별로 보면, 「만족」은 「80세 이상(28.0%)」에서 가장 높고, 「불만족」은 「75~79세(15.4%)」에서 가장 높음

□ 신안군 전체 인구의 일자리 만족도(하는일)는 「보통(66.6%)」, 「만족(23.6%)」, 「불만족(9.9%)」 순임

【그림3-15】 일자리 만족도(하는일)

【표3-12】 일자리 만족도(하는일)

(단위: %)

구분	전체	불만족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신안군	**100.0**	**9.9**	**0.7**	**9.2**	**66.6**	**23.6**	**18.3**	**5.3**
노인 (65세 이상)	**100.0**	**10.2**	**0.6**	**9.6**	**67.7**	**22.1**	**16.6**	**5.5**
남자	100.0	8.8	0.9	7.9	67.7	23.5	19.7	3.8
여자	100.0	11.6	0.3	11.3	67.6	20.8	13.7	7.1
65~69세	100.0	10.6	1.2	9.4	66.6	22.8	19.2	3.6
70~74세	100.0	9.5	0.0	9.5	73.6	16.9	12.0	4.9
75~79세	100.0	15.4	1.0	14.4	63.0	21.6	15.7	5.9
80세 이상	100.0	5.1	0.0	5.1	67.0	28.0	19.0	9.0

자료: 신안군 「2023년 사회조사」
주) 2022.9.1. ~ 2023.8.31. 기준

3-13. 일자리 만족도(임금/가구소득)

임금 및 가구소득에 대한 일자리 만족도는 「보통」 60.1%, 「만족」 20.0%, 「불만족」 19.8%로 나타남

□ 2023년 신안군 노인의 일자리 만족도(임금 및 가구소득)는 「보통(60.1%)」, 「만족(20.0%)」, 「불만족(19.8%)」 순임

○ 성별로 보면, 「만족」은 남자(20.9%)가 여자(19.1%)보다 1.8%p 높으며, 「불만족」은 남자(22.6%)가 여자(17.3%)보다 5.3%p 높음

○ 연령대별로 보면, 「만족」은 「65~69세(22.3%)」에서 가장 높고, 「불만족」은 「75~79세(24.4%)」에서 가장 높음

□ 신안군 전체 인구의 일자리 만족도(임금 및 가구소득)는 「보통(58.5%)」, 「만족(23.2%)」, 「불만족(18.3%)」 순임

【그림3-16】 일자리 만족도(임금/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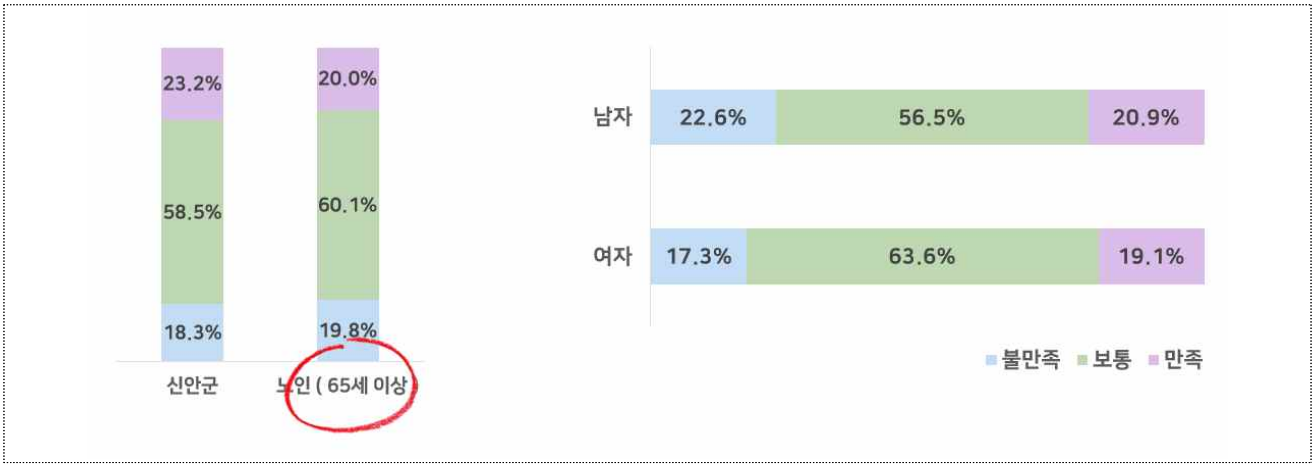

【표3-13】 일자리 만족도(임금/가구소득)

(단위: %)

구분	전체	불만족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신안군	**100.0**	**18.3**	**1.5**	**16.8**	**58.5**	**23.2**	**15.7**	**7.5**
노인 (65세 이상)	**100.0**	**19.8**	**1.5**	**18.3**	**60.1**	**20.0**	**14.1**	**5.9**
남자	100.0	22.6	1.5	21.1	56.5	20.9	15.2	5.7
여자	100.0	17.3	1.6	15.7	63.6	19.1	13.0	6.1
65~69세	100.0	17.7	2.1	15.6	60.0	22.3	16.4	5.9
70~74세	100.0	21.3	0.7	20.6	62.6	16.1	11.8	4.3
75~79세	100.0	24.4	3.0	21.4	56.0	19.6	13.0	6.6
80세 이상	100.0	16.7	0.0	16.7	61.6	21.7	14.3	7.4

자료: 신안군 「2023년 사회조사」
주) 2022.9.1. ~ 2023.8.31. 기준

3-14. 일자리 만족도(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일자리 만족도 인식은 「보통」 69.2%, 「만족」 22.9%, 「불만족」 8.0%로 나타남

□ 2023년 신안군 노인의 일자리 만족도(근로시간)는 「보통(69.2%)」, 「만족(22.9%)」, 「불만족(8.0%)」 순임

○ 성별로 보면, 「만족」은 남자(23.1%)가 여자(22.7%)보다 0.4%p 높으며, 「불만족」은 여자(8.7%)가 남자(7.2%)보다 1.5%p 높음

○ 연령대별로 보면, 「만족」은 「80세 이상(26.5%)」에서 가장 높고, 「불만족」은 「70~74세(10.7%)」에서 가장 높음

□ 신안군 전체 인구의 일자리 만족도(근로시간)는 「보통(67.5%)」, 「만족(24.2%)」, 「불만족(8.3%)」 순임

【그림3-17】 일자리 만족도(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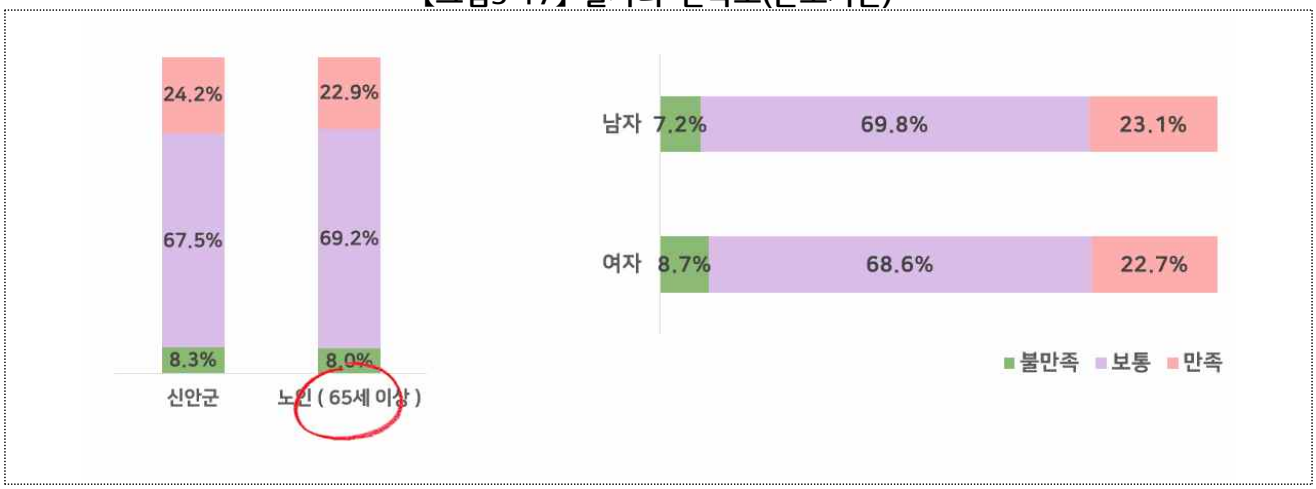

【표3-14】 일자리 만족도(근로시간)

(단위: %)

구분	전체	불만족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신안군	**100.0**	**8.3**	**0.9**	**7.4**	**67.5**	**24.2**	**19.4**	**4.8**
노인 (65세 이상)	**100.0**	**8.0**	**0.6**	**7.4**	**69.2**	**22.9**	**18.1**	**4.8**
남자	100.0	7.2	0.5	6.7	69.8	23.1	19.3	3.8
여자	100.0	8.7	0.7	8.0	68.6	22.7	17.0	5.7
65~69세	100.0	8.5	1.2	7.3	67.7	23.7	20.7	3.0
70~74세	100.0	10.7	0.0	10.7	71.0	18.3	14.1	4.2
75~79세	100.0	9.4	1.0	8.4	67.2	23.4	17.5	5.9
80세 이상	100.0	2.2	0.0	2.2	71.3	26.5	19.4	7.1

자료: 신안군 「2023년 사회조사」
주) 2022.9.1. ~ 2023.8.31. 기준

3-15. 일자리 만족도(근무환경)

근무환경에 대한 일자리 만족도 인식은 「보통」 69.9%, 「만족」 21.2%, 「불만족」 8.8%로 나타남

□ 2023년 신안군 노인의 일자리 만족도(근무환경)는 「보통」 69.9%, 「만족」 21.2%, 「불만족」 8.8% 순임

○ 성별로 보면, 「만족」은 남자(23.0%)가 여자(19.8%)보다 3.2%p 높으며, 「불만족」은 여자(9.4%)가 남자(8.2%)보다 1.2%p 높음

○ 연령대별로 보면, 「만족」은 「80세 이상(22.9%)」에서 가장 높고, 「불만족」은 「65~69세(11.6%)」에서 가장 높음

□ 신안군 전체 인구의 일자리 만족도(근무환경)는 「보통(67.8%)」, 「만족(23.2%)」, 「불만족(9.1%)」 순임

【그림3-18】 일자리 만족도 (근무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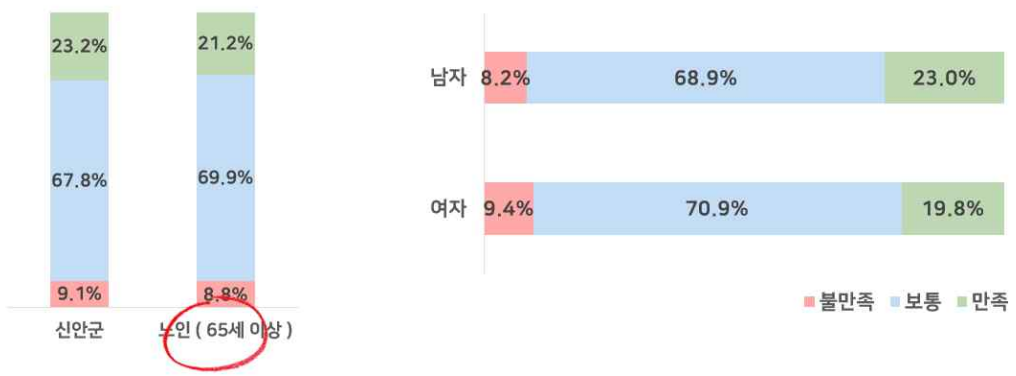

【표3-15】 일자리 만족도(근무환경)

(단위: %)

구분	전체	불만족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신안군	**100.0**	**9.1**	**1.1**	**8.0**	**67.8**	**23.2**	**18.3**	**4.9**
노인 (65세 이상)	**100.0**	**8.8**	**0.8**	**8.0**	**69.9**	**21.2**	**16.8**	**4.4**
남자	100.0	8.2	0.5	7.7	68.9	23.0	19.2	3.8
여자	100.0	9.4	1.1	8.3	70.9	19.8	14.7	5.1
65~69세	100.0	11.6	1.2	10.4	65.8	22.5	19.5	3.0
70~74세	100.0	9.1	0.0	9.1	73.1	17.8	13.6	4.2
75~79세	100.0	7.7	1.8	5.9	70.4	21.9	16.6	5.3
80세 이상	100.0	5.1	0.0	5.1	72.0	22.9	16.7	6.2

자료: 신안군 「2023년 사회조사」
주) 2022.9.1. ~ 2023.8.31. 기준

2024년 신안군 노인복지통계

4 복지

4-1.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4-2. 장애인등록 인구

4-3.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인구

4-4. 수혜유형별 기초연금 수급인구

4-5.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4-6.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4-7.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4-8.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격별 신청판정 현황

4-9.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인정자

4-10. 노인시설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4-11. 연금종류별 공적연금 수급인구

4-12. 급여종류별 국민연금 수급인구

4-13. 노인복지사업

4-14.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4-15. 노인대학 교육 희망강좌

4-16. 노인 삶에 대한 만족도

4-1.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는 1,289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14,914명)의 8.6%임

□ 2023년 신안군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는 1,289명으로 전체 노인인구(14,914명)의 8.6%이며, 이 중 「일반수급자」는 1,201명(93.2%), 「시설수급자」는 57명(4.4%)임

○ 성별 수급인구는 남자 434명, 여자 855명으로 가각 수급비율이 6.7%, 10.1%임

○ 연령대별 수급비율은 「80세 이상(13.3%)」이 가장 높고, 「65~69세(5.7%)」가 가장 낮음

□ 신안군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는 2,352명으로 전체 인구의 6.2%임

【그림4-1】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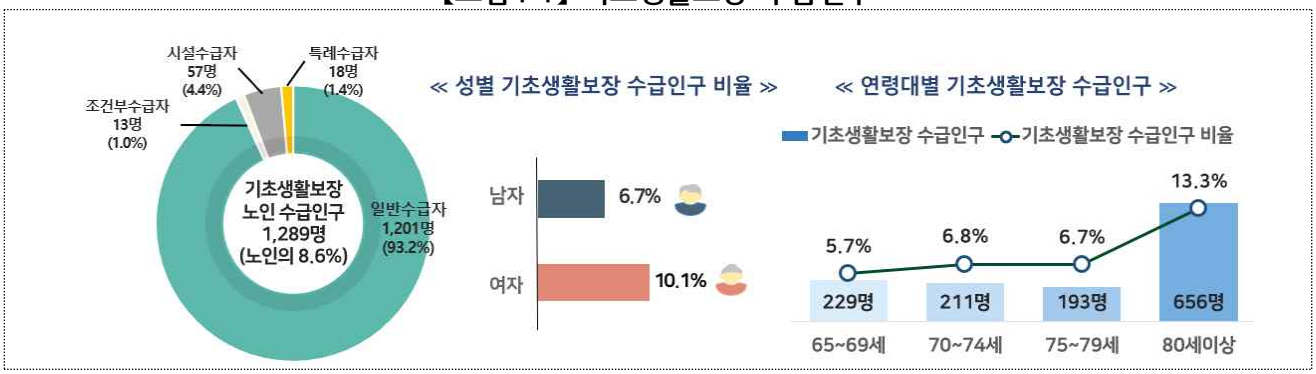

【표4-1】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단위: 명, %)

구분	주민등록인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일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시설 수급자		특례 수급자	
			구성비	수급비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38,037**	**2,352**	**100.0**	**6.2**	**2,089**	**88.8**	**103**	**4.4**	**122**	**5.2**	**38**	**1.6**
노인 (65세 이상)	**14,914**	**1,289**	**100.0**	**8.6**	**1,201**	**93.2**	**13**	**1.0**	**57**	**4.4**	**18**	**1.4**
남자	6,478	434	100.0	6.7	402	92.6	8	1.8	19	4.4	5	1.2
여자	8,436	855	100.0	10.1	799	93.5	5	0.6	38	4.4	13	1.5
65~69세	3,992	229	100.0	5.7	214	93.4	*	3.1	7	3.1	*	*
70~74세	3,109	211	100.0	6.8	198	93.8	*	0.9	7	3.3	*	*
75~79세	2,881	193	100.0	6.7	184	95.3	*	1.0	5	2.6	*	*
80세 이상	4,932	656	100.0	13.3	605	92.2	*	0.3	38	5.8	*	*

자료: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 신안군「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주) 2023.12.31.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외국인 제외)

4-2. 장애인 등록인구

장애인 등록인구는 2,76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18.5%임

□ 2023년 신안군 노인 장애인 등록인구는 2,76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18.5%이며, 남자 1,219명(44.2%), 여자 1,541명(55.8%)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322명(11.6%p) 많음

○ 지역별로 보면 장애인 등록인구 비율이 「서부권(19.4%)」, 「남부권(19.4%)」, 「북부권(18.9%)」, 「중부권(17.5%)」 순임

○ 「80세 이상」의 장애인 등록인구의 비율은 24.3%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장애인 등록인구 비율은 증가함

□ 신안군 전체 장애인 등록인구는 4,038명이며, 성별로는 남자 2,159명(53.5%), 여자 1,879명(46.5%)임

【그림4-2】 장애인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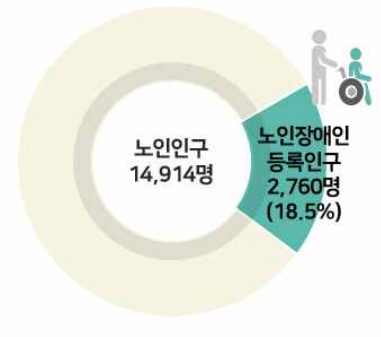

【그림4-3】 권역별·연령대별 장애인 등록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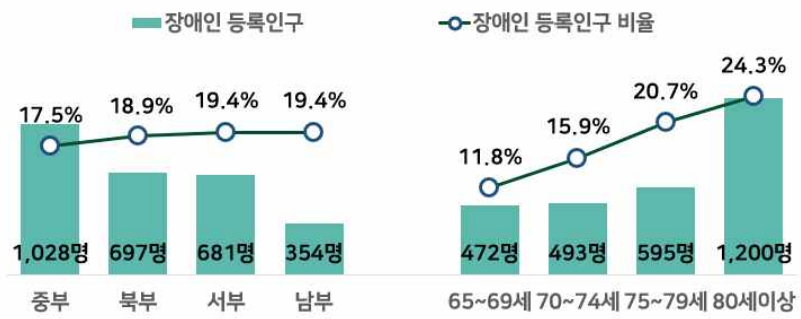

【표4-2】 장애인 등록인구

(단위: 명, %)

구분	주민등록 인구	장애인 등록인구		남자		여자		장애인 등록 인구비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38,037**	**4,038**	**100.0**	**2,159**	**53.5**	**1,879**	**46.5**	**10.6**
노인(65세 이상)	**14,914**	**2,760**	**100.0**	**1,219**	**44.2**	**1,541**	**55.8**	**18.5**
중부	5,876	1,028	100.0	493	48.0	535	52.0	17.5
북부	3,694	697	100.0	291	41.8	406	58.2	18.9
서부	3,516	681	100.0	283	41.6	398	58.4	19.4
남부	1,828	354	100.0	152	42.9	202	57.1	19.4
65~69세	3,992	472	100.0	306	64.8	166	35.2	11.8
70~74세	3,109	493	100.0	270	54.8	223	45.2	15.9
75~79세	2,881	595	100.0	272	45.7	323	54.3	20.7
80세 이상	4,932	1,200	100.0	371	30.9	829	69.1	24.3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신안군「장애인등록자료」
주1) 2023.12.31. 기준 장애인등록 인구
주2) 장애인 등록인구 비율 = (장애인 등록인구 / 주민등록인구) × 100(%)

4-3.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인구

노인 기초연금 수급인구는 12,768명으로 노인인구(14,914명)의 85.6%임

□ 2023년 신안군 노인 기초연금 수급인구는 12,768명으로 노인인구(14,914명)의 85.6%임

○ 기초연금 수급인구는 2019년 12,426명에서 2023년 12,768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수급인구 비율은 2019년 88.3%에서 2023년 85.6%로 꾸준히 감소함

○ 연령대별로 보면 「80세 이상」 4,787명(37.5%), 「65~69세」 2,836명(22.2%), 「75~79세」 2,608명(20.4%), 「70~74세」 2,537명(19.9%) 순임

【그림4-4】 기초연금 수급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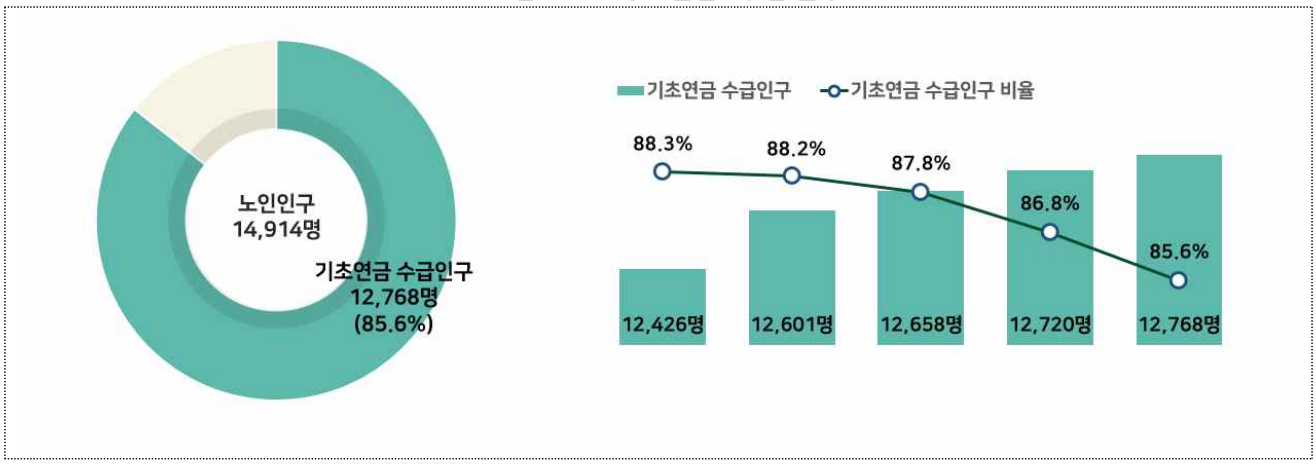

【표4-3】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인구

(단위: 명, %)

구분	65세 이상 인구	기초연금수급인구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수급인구 비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19	14,072	12,426	100.0	2,445	19.7	2,806	22.6	3,138	25.3	4,037	32.5	88.3
2020	14,291	12,601	100.0	2,552	20.3	2,770	22.0	2,977	23.6	4,302	34.1	88.2
2021	14,411	12,658	100.0	2,624	20.7	2,700	21.3	2,819	22.3	4,515	35.7	87.8
2022	14,655	12,720	100.0	2,660	20.9	2,615	20.6	2,668	21.0	4,777	37.6	86.8
2023	**14,914**	**12,768**	**100.0**	**2,836**	**22.2**	**2,537**	**19.9**	**2,608**	**20.4**	**4,787**	**37.5**	**85.6**

자료: 신안군 「기초연금 수급자료」
주) 각 해당년도 12. 31. 기준 기초연금 수급인구 산정

4-4. 수혜유형별 기초연금 수급인구

기초연금 수혜유형은 「2인(부부형)」 47.7%, 「1인」 44.4%, 「1인(부부형)」 7.9%임

□ 2023년 신안군 노인의 기초연금 수혜유형은 「2인(부부형)」 6,093명(47.7%), 「1인」 5,664명(44.4%), 「1인(부부형)」 1,011명(7.9%) 순임

-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인(부부형)」이 60.2%, 여자는 「1인」이 59.5%로 가장 높음
- ○ 연령대별로 보면 「80세 이상」은 「1인(66.2%)」이 가장 많고, 「80세 미만」은 「2인(부부형)」이 가장 많음
- ○ 1인(부부형)은 「65~69세」에서는 26.8%지만, 「75세 이상」에서는 2% 미만임

【그림4-5】 유형별 기초연금 수급인구 【그림4-6】 성별 및 연령대별 기초연금 수혜유형별 기초연금 수급인구

【표4-4】 수혜유형별 기초연금 수급인구

(단위: 명, %)

구분	노인인구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인구		1인		1인(부부형)		2인(부부형)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65세 이상	**14,914**	**12,768**	**100.0**	**5,664**	**44.4**	**1,011**	**7.9**	**6,093**	**47.7**
남자	6,564	5,212	100.0	1,166	22.4	909	17.4	3,137	60.2
여자	8,350	7,556	100.0	4,498	59.5	102	1.3	2,956	39.1
65~69세	3,992	2,836	100.0	769	27.1	761	26.8	1,306	46.1
70~74세	3,109	2,537	100.0	734	28.9	179	7.1	1,624	64.0
75~79세	2,881	2,608	100.0	993	38.1	43	1.6	1,572	60.3
80세 이상	4,932	4,787	100.0	3,168	66.2	28	0.6	1,591	33.2

자료: 신안군 「기초연금 수급자료」
주) 각 해당년도 12. 31. 기준 기초연금 수급인구 산정

4-5.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5곳,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곳임

□ 2023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은 5곳이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4곳임

- ○ 입소인원(현원)은 2019년(190명) 대비 2023년(173명) 17명 감소함
- ○ 종사자는 2019년 134명 대비 2023년 129명으로 5명 감소함
- ○ 2023년 「노인요양시설」 시설당 평균 종사자 수는 21.2명,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88.0%이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당 평균 종사자 수는 5.8명,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75.0%임

【그림4-7】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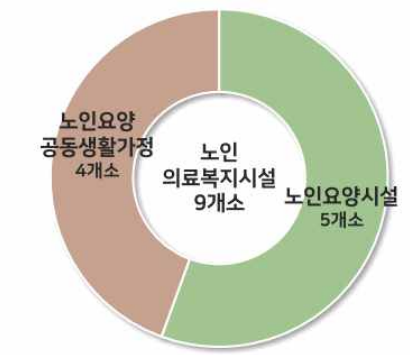

【그림4-8】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인원 및 종사자 수

【표4-5】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합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 수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 수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 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019	10	205	190	134	5	160	154	105	5	45	36	29
2020	7	91	80	64	3	55	53	38	4	36	27	26
2021	11	214	199	144	5	160	150	103	6	54	49	41
2022	11	214	186	134	5	160	150	103	6	54	36	31
2023	**9**	**202**	**173**	**129**	**5**	**166**	**146**	**106**	**4**	**36**	**27**	**23**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주) 2023. 12. 31. 기준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 시설수 집계

4-6.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노인여가복지시설은 417개소로 최근 3년 동안 증가 추세임

□ 2023년 신안군 노인여가복지시설은 417개소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이며, 경로당이 409개소, 노인교실이 8개임

○ 경로당은 2019년(402개소) 보다 2023년(409개소)에 7개소 증가하였고 노인교실은 최근 3년 동안 8개소를 유지중임

【그림4-9】 연도별 노인 여가복지시설 현황

【표4-6】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합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시설수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19	412	0	0.0	402	97.6	10	2.4
2020	413	0	0.0	403	97.6	10	2.4
2021	408	0	0.0	400	98.0	8	2.0
2022	414	0	0.0	406	98.1	8	1.9
2023	**417**	**0**	**0.0**	**409**	**98.1**	**8**	**1.9**

자료: 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 현황」
주) 2023. 12. 31. 기준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 시설수 집계

4-7.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신안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13개로 전년(11개) 대비 18.1% 증가함

□ 2023년 신안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13개로, 「방문목욕 서비스(7개)」, 「단기보호 서비스(5개)」, 「재가노인지원 서비스(1개)」 순임

○ 2019년 4개, 2020년 5개, 2021년 5개, 2022년 11개, 2023년 13개로 꾸준히 증가함

○ 입소인원은 2023년 235명으로, 2020년(15명)과 2021년(35명)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9년 대비 95.8%(115명) 증가함

【그림4-10】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표4-7】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합계			방문요양 서비스		주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시설수	입소인원 현원	종사자수	시설수	입소인원 현원	시설수	입소인원 현원	시설수	입소인원 현원	시설수	입소인원 현원	시설수	입소인원 현원
2019	4	120	20	2	120	1	0	0	0	1	0	0	0
2020	5	15	27	2	10	2	5	0	0	1	0	0	0
2021	5	35	11	2	10	2	25	0	0	1	0	0	0
2022	11	138	81	0	0	0	0	5	54	6	84	0	0
2023	**13**	**235**	**247**	**0**	**0**	**0**	**0**	**5**	**59**	**7**	**151**	**1**	**25**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주) 2023. 12. 31. 기준 노인복지시설 중 재가노인여가복지 시설수 집계

4-8.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격별 신청판정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인원은 2,852명, 판정 인원은 2,606명임

□ 2023년 신안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인원은 2,852명, 판정 인원은 2,606명으로 신청인원 대비 판정 비율은 91.4%로 나타남

○ 급여종류별로 보면, 「경감」은 신청 및 판정 각각 46.8%(1,336명), 49.4%(1,28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신청 및 판정 모두 「일반」이 가장 높고, 여자는 「경감」이 가장 높음

【그림4-11】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격별 신청/판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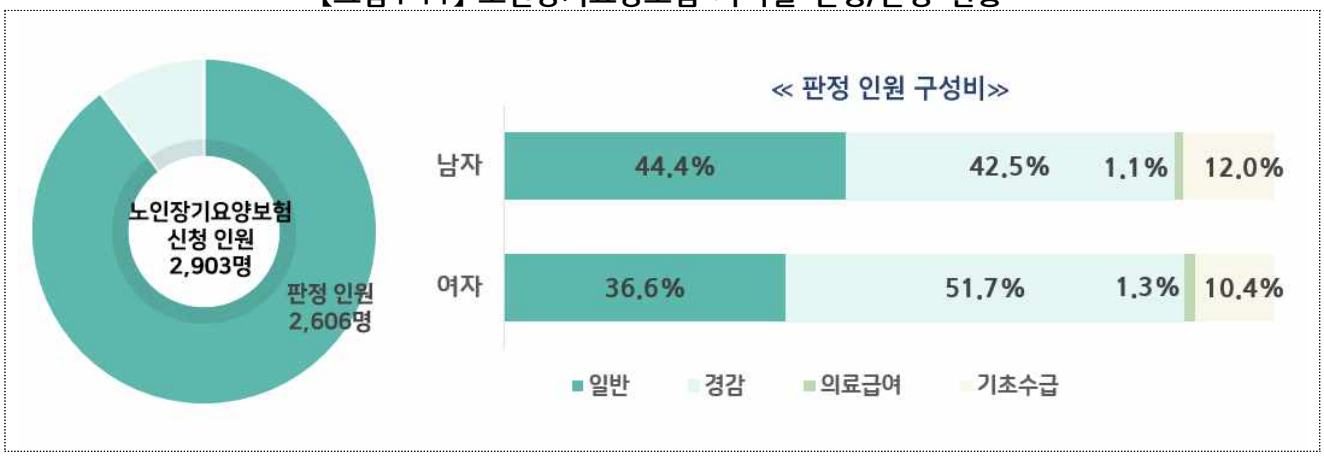

【표4-8】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격별 신청판정 현황

(단위: 명, %)

구분			합계		일반		경감		의료급여		기초수급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청	합계		2,852	100.0	1,161	40.7	1,336	46.8	34	1.2	321	11.3
	성별	남자	705	100.0	322	45.7	285	40.4	7	1.0	91	12.9
		여자	2,147	100.0	839	39.1	1,051	49.0	27	1.3	230	10.7
판정	합계		2,606	100.0	1,004	38.5	1,288	49.4	32	1.2	282	10.8
	성별	남자	644	100.0	286	44.4	274	42.5	7	1.1	77	12.0
		여자	1,962	100.0	718	36.6	1,014	51.7	25	1.3	205	10.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주) 2023.12.31. 기준(사망건제외)

4-9.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인정자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는 2,218명으로 판정자(2,606명) 대비 85.1%임

□ 2023년 신안군 노인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는 2,218명으로 판정자(2,606명) 대비 85.1%이고, 신청자(2,852명) 대비 77.8%임

○ 등급별로 보면, 「4등급」 1,187명, 「3등급」 455명, 「5등급」 309명 순임

○ 성별로 보면, 「남자」 512명, 「여자」 1,706명이고, 인정률은 「여자」는 87.0%, 「남자」는 79.5%로 여자가 남자보다 7.5%p 높음

□ 신안군 전체 장기요양 등급 신청자는 2,903명으로, 인정자는 2,254명으로 판정자(2,647명) 대비 85.2%이고, 신청자(2,903명) 대비 77.6%임

【그림4-1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인정자

【표4-9】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인정자

(단위: 명, %)

구분		신청자수	판정자수[1]	장기요양 등급인정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외	인정률[2]
신안군		2,903	2,647	2,254	70	154	463	1,203	312	52	393	85.2
	남자	743	675	540	18	40	107	274	81	20	135	80.0
	여자	2,160	1,972	1,714	52	114	356	929	231	32	258	86.9
65세 이상		2,852	2,606	2,218	65	151	455	1,187	309	51	388	85.1
	남자	705	644	512	14	37	102	260	80	19	132	79.5
	여자	2,147	1,962	1,706	51	114	353	927	229	32	256	87.0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자료」

1) 판정자: 구비서류 미충족,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미인정, 급성기 질환자, 등급판정 진행중인 자를 제외한 등급판정을 완료한 등급판정자(1등급~인지지원등급 인정자 및 등급외자를 포함)

2) 인정률: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수(1등급~인지지원등급 인정자)/판정자수

주1) 2023. 12. 31. 행망시군구 신안군 기준, 장기요양 등급이 유효한 자(사망, 중복 제외)

주2) 2023. 12. 31.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 신청자 기준이며, 연도말 자격유지자 기준(사망건제외)

4-10. 노인시설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이용자는 1,993명으로 방문요양이 1,265명으로 가장 많음

□ 2023년 신안군 노인「노인 시설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1,993명으로「방문요양(1,265명)」,「복지용구(898명)」,「방문목욕(583명)」순임

○ 등급별로 보면,「4등급(1,175명)」,「3등급(484명)」,「5등급(280명)」순임

○ 인지지원등급 10명 중 9명은「주야간 보호시설」이용

○ 1등급은「노인요양 시설」이 가장 많고, 2~5등급은「복지용구」가 가장 많음

【그림4-13】 노인시설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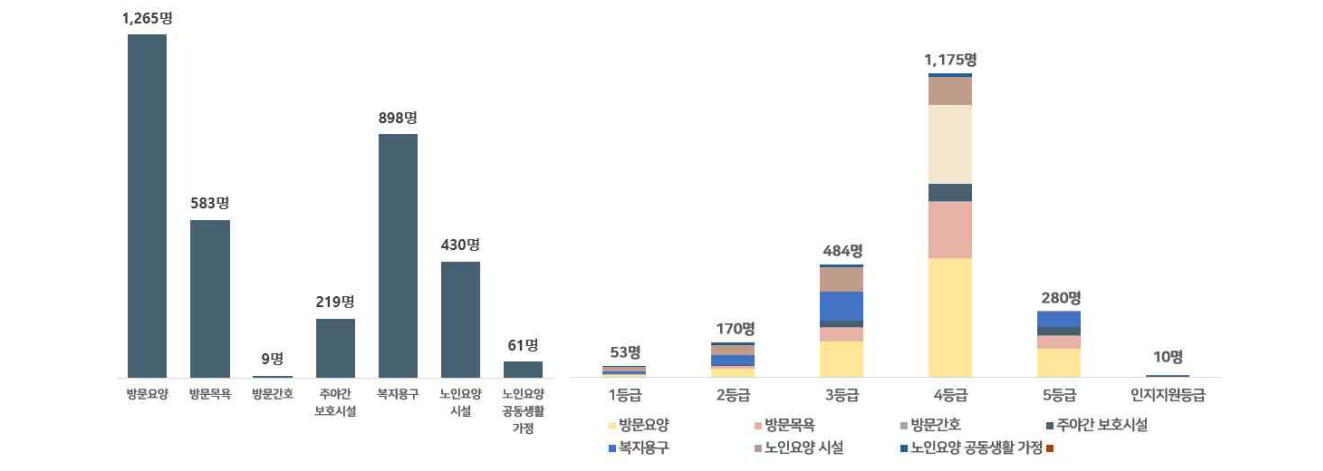

【표4-10】 노인시설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단위 : 명)

구분	급여이용 수급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시설	복지용구	노인요양 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신안군	**1,993**	**1,265**	**583**	*****	**219**	*****	**898**	**430**
1등급	53	16	5	*	-	-	18	30
2등급	170	56	23	*	*	-	70	69
3등급	484	246	100	*	46	-	201	172
4등급	1,175	829	392	*	122	*	549	195
5등급	280	197	92	*	61	-	105	*
인지지원등급	10	-	-	-	*	-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자료」
주1) 2023. 12. 31. 수진기준 산정
주2) 지급기준(사망자 급여실적 포함)
주3) 2023년 연도 말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주4) 각 분류 중복, 기타 값 제거로 이용자수와 단순합계 불일치
주5) 각 분류의 이용자수는 중복 제거값

4-11. 연금종류별 공적연금 수급인구

신안군 노인 공적연금 수급인구는 9,015명으로 전체 노인인구(14,914명)의 60.4%임

□ 2023년 신안군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인구는 9,015명으로 국민연금 8,641명, 공무원연금 347명, 사학연금 27명 순임

○ 성별로 보면, 공적연금 수급자는 「남자(5,180명)」가 「여자(3,835명)」보다 1,345명 많으며, 수급비율은 「남자(78.9%)」가 「여자(45.9%)」보다 33.0%p 높음

○ 연령대별로 보면, 공적연금 수급비율은 「75~79세(64.7%)」, 「65~69세(63.3%)」, 「70~74세(59.6%)」, 「80세 이상(56.2%)」 순임

□ 신안군 전체 공적연금 수급인구는 12,222명으로 「국민연금」 10,258명, 「공무원연금」 1,883명, 「사학연금」 81명이고, 공적연금 수급비율은 32.1%임

【그림4-14】 공적연금 수급인구 인원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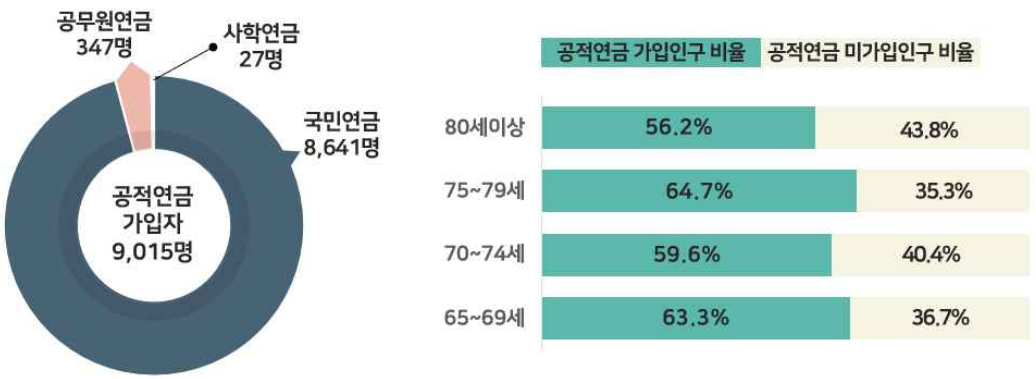

【표4-11】 연금종류별 공적연금 수급인구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공적연금합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공적연금 수급비율
신안군	**38,037**	**12,222**	**10,258**	**1,883**	**81**	**32.1**
노인(65세 이상)	**14,914**	**9,015**	**8,641**	**347**	**27**	**60.4**
남자	6,564	5,180	4,862	*	*	78.9
여자	8,350	3,835	3,779	*	*	45.9
65~69세	3,992	2,526	2,356	149	21	63.3
70~74세	3,109	1,852	1,746	*	*	59.6
75~79세	2,881	1,864	1,807	*	*	64.7
80세 이상	4,932	2,773	2,732	*	*	56.2

자료 : 통계청 「직역연금DB」, 국민연금공단 자료

4-12. 급여종류별 국민연금 수급인구

국민연금 수급인구는 8,641명이며 1인당 수급금액은 3,788천 원임

□ 2023년 신안군 노인 국민연금 수급인구는 8,641명, 수급금액은 327억 원으로 1인당 수급금액은 3,788천 원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국민연금 수급인구는 「남자(4,862명)」가 「여자(3,779명)」보다 1,083명 많으며, 1인당 수급금액은 「남자(4,679천 원)」가 「여자(2,643천 원)」보다 많음

○ 연령대별로 보면, 1인당 수급금액은 「65~69세(5,548천 원)」, 「70~74세(4,406천 원)」, 「75~79세(3,376천 원)」, 「80세 이상(2,149천 원)」 순임

□ 신안군 전체 국민연금 수급인구는 10,258명, 수급금액은 425억 원으로 1인당 수급금액은 4,148천 원임

【표4-12】 급여종류별 국민연금 수급인구

(단위: 명, 천원)

구분	국민연금 합계			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 인원	수급금액	1인당 수급금액	수급 인원	수급금액	1인당 수급금액	수급 인원	수급금액	1인당 수급금액	수급인원	수급금액	1인당 수급금액
신안군	**10,258**	**42,548,502**	**4,148**	**7,794**	**35,700,696**	**4,581**	**56**	**279,727**	**4,995**	**2,219**	**5,602,807**	**2,525**
노인 (65세 이상)	**8,641**	**32,736,336**	**3,788**	**6,625**	**27,653,788**	**4,174**	**22**	**112,826**	**5,128**	**1,962**	**4,827,685**	**2,461**
남자	4,862	22,748,057	4,679	4,743	22,464,169	4,736	*	108,456	*	87	131,843	1,515
여자	3,779	9,988,279	2,643	1,882	5,189,618	2,758	*	4,371	*	1,875	4,695,842	2,504
65~69세	2,356	13,070,170	5,548	2,138	12,404,536	5,802	*	19,397	*	194	548,571	2,828
70~74세	1,746	7,693,681	4,406	1,424	6,741,972	4,735	7	43,100	6,157	312	893,099	2,862
75~79세	1,807	6,100,634	3,376	1,315	4,820,966	3,666	9	39,895	4,433	480	1,237,959	2,579
80세 이상	2,732	5,871,852	2,149	1,748	3,686,315	2,109	*	10,434	*	976	2,148,056	2,201

구분	일시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수급인원	수급금액	1인당 수급금액	수급인원	수급금액	1인당 수급금액
신안군	**159**	**864,444**	**5,437**	**30**	**100,828**	**3,361**
노인 (65세 이상)	**20**	**86,084**	**4,304**	**12**	**55,953**	**4,663**
남자	9	40,142	4,460	*	3,447	*
여자	11	45,942	4,177	*	52,506	*
65~69세	15	79,392	5,293	*	18,274	*
70~74세	*	5,620	*	*	9,890	*
75~79세	*	519	*	*	1,295	*
80세 이상	*	552	*	*	26,495	*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자료」
주) 2023.12.31. 가입자 주소지 기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4-13. 노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중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은 「의료서비스를 쉽게 받도록 서비스 제공」이 39.4%로 가장 많음

□ 노인이 생각하는 2023년 신안군 노인복지사업의 중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 응답은 「의료서비스를 쉽게 받도록 서비스 제공(39.4%)」, 「소득보장 일자리 제공(35.0%)」, 「노인요양시설 확충(18.5%)」 순임

○ 「65~69세」, 「80세 이상」은 「의료서비스를 쉽게 받도록 서비스 제공」을 70대는 「소득보장 일자리제공」을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노인복지 사업으로 생각함

□ 신안군 전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노인복지 사업은 「의료서비스를 쉽게 받도록 서비스 제공(37.1%)」, 「소득보장 일자리제공(36.3%)」」, 「노인요양시설 확충(15.4%)」 순임

【그림4-15】 노인복지사업 수요 및 연령대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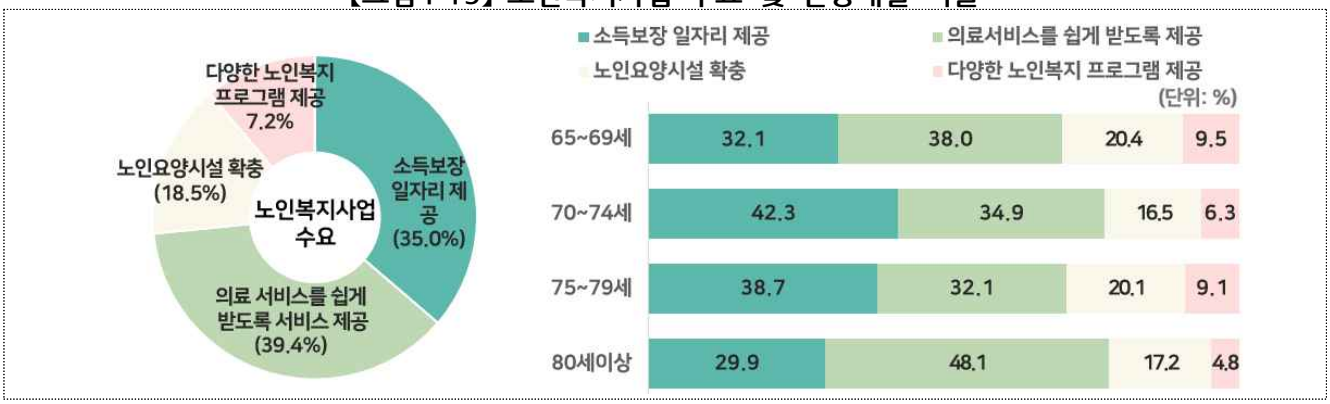

【표4-13】 노인복지사업

(단위: %)

구분	계	소득보장 일자리 제공	의료서비스를 쉽게받도록 서비스제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제공
신안군	**100.0**	**36.3**	**37.1**	**15.4**	**11.2**
노인(65세 이상)	**100.0**	**35.0**	**39.4**	**18.5**	**7.2**
남자	100.0	36.4	38.7	16.7	8.2
여자	100.0	33.8	39.9	19.9	6.5
65~69세	100.0	32.1	38.0	20.4	9.5
70~74세	100.0	42.3	34.9	16.5	6.3
75~79세	100.0	38.7	32.1	20.1	9.1
80세 이상	100.0	29.9	48.1	17.2	4.8

자료: 신안군 「2023년 사회조사」
주) 2022.9.1. ~ 2023.8.31. 기준

4-14.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들 중 「건강문제」가 53.1%로 가장 많음

□ 2023년 신안군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건강문제」가 53.1%로 가장 많고 「경제적 어려움(21.7%)」, 「소일거리가 없음(8.5%)」 순임

- ○ 성별로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소일거리가 없음」 순임
- ○ 연령대별로 보면, 모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소일거리가 없음」 순임

【그림4-16】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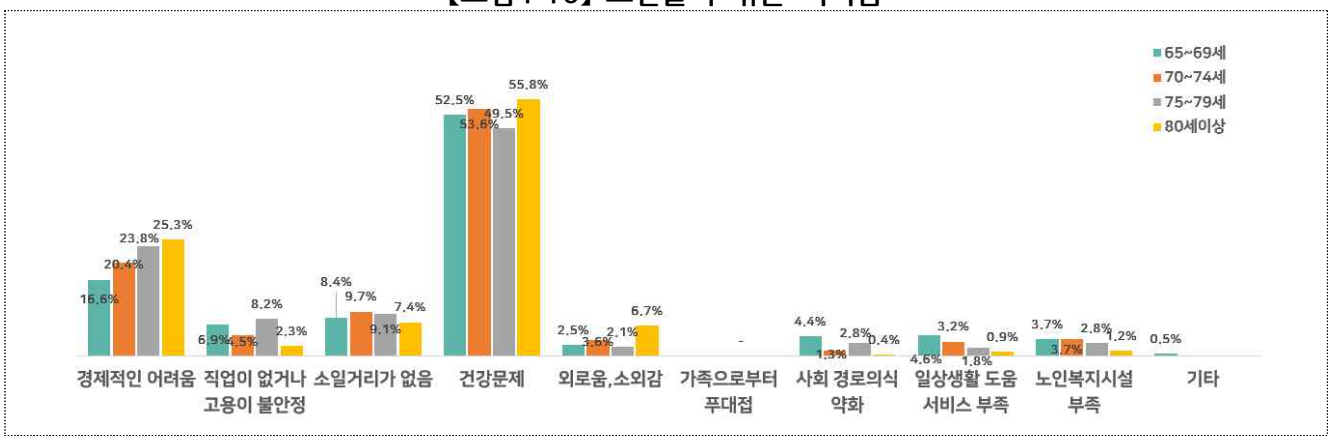

【표4-14】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단위: %)

구분	계	경제적인 어려움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	소일 거리가 없음	건강 문제	외로움, 소외감	가족으로 부터 푸대접	사회 경로의식 약화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 부족	노인 복지 시설 부족	기타
노인 (65세 이상)	**100.0**	**21.7**	**5.2**	**8.5**	**53.1**	**4.0**	**0.0**	**2.1**	**2.5**	**2.7**	**0.1**
남자	100.0	22.5	5.8	7.5	51.2	4.4	0.0	3.4	2.0	3.3	0.0
여자	100.0	21.1	4.7	9.3	54.7	3.7	0.0	1.2	3.0	2.2	0.2
65~69세	100.0	16.6	6.9	8.4	52.5	2.5	0.0	4.4	4.6	3.7	0.5
70~74세	100.0	20.4	4.5	9.7	53.6	3.6	0.0	1.3	3.2	3.7	0.0
75~79세	100.0	23.8	8.2	9.1	49.5	2.1	0.0	2.8	1.8	2.8	0.0
80세 이상	100.0	25.3	2.3	7.4	55.8	6.7	0.0	0.4	0.9	1.2	0.0

자료: 신안군 「2023년 사회조사」
주) 2022.9.1. ~ 2023.8.31. 기준

4-15. 노인대학 교육 희망강좌

노인이 가장 희망하는 노인대학 강좌는 「스마트폰 교육(31.5%)」임

□ 2023년 신안군 노인대학 교육 희망강좌는 「스마트폰 교육(31.5%)」, 「풍물 및 난타(19.3%)」, 「한글교실(15.4%)」 순임

- ○ 성별로 보면, 여자는 「한글교실」·「풍물 및 난타」, 「스마트폰 교육」 순이고, 남자는 「스마트폰 교육」, 「게이트볼」, 「풍물 및 난타」순임
- ○ 연령대별로 보면, 「65~69세」는 「풍물 및 난타」, 「70~79세」는 「스마트폰교육」, 「80세 이상」은 「한글교실」를 가장 희망함

【그림4-17】 노인대학 교육 희망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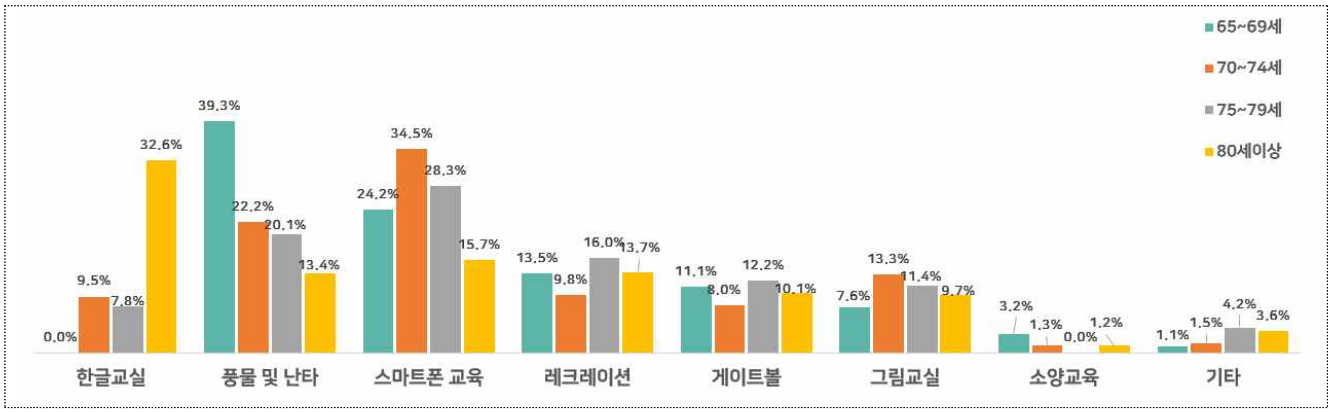

【표4-15】 노인대학 교육 희망강좌

(단위: %)

구분	계	있다	소계	한글교실	풍물 및 난타	스마트폰 교육	레크레이션	게이트볼	그림교실	소양교육	기타	없다
노인 (65세 이상)	**100.0**	**30.7**	**100.0**	**15.4**	**19.3**	**31.5**	**10.8**	**8.4**	**10.3**	**1.5**	**2.8**	**69.4**
남자	100.0	25.1	100.0	2.2	12.9	48.8	7.1	14.6	8.0	1.7	4.8	74.9
여자	100.0	35.0	100.0	22.8	22.8	21.8	12.8	5.0	11.7	1.4	1.7	65.0
65~69세	100.0	29.2	100.0	0.0	38.7	33.1	7.4	7.0	8.0	4.3	1.5	70.8
70~74세	100.0	35.2	100.0	10.4	17.9	41.4	9.0	6.0	13.6	1.7	0.0	64.8
75~79세	100.0	33.3	100.0	7.5	18.5	34.8	11.4	11.2	11.4	0.0	5.1	66.7
80세 이상	100.0	27.1	100.0	39.6	3.9	18.7	14.8	9.6	8.7	0.0	4.6	72.9

자료: 신안군 「2023년 사회조사」
주) 2022.9.1. ~ 2023.8.31. 기준

4-16. 노인 삶에 대한 만족도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6.6점으로 나타남

□ 2023년 신안군 노인의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7점(23.4%)」, 「5점(22.5%)」, 「6점(21.1%)」 순임

○ 연령대별로 보면, 「65~69세」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6.8점으로 높고, 다른 연령대는 평균 6.5점으로 동일함

□ 신안군 전체 인구의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6.8점으로 「7점(24.7%)」, 「8점(23.7%)」, 「6점(20.6%)」 순임

【그림4-18】 삶에 대한 만족도 연령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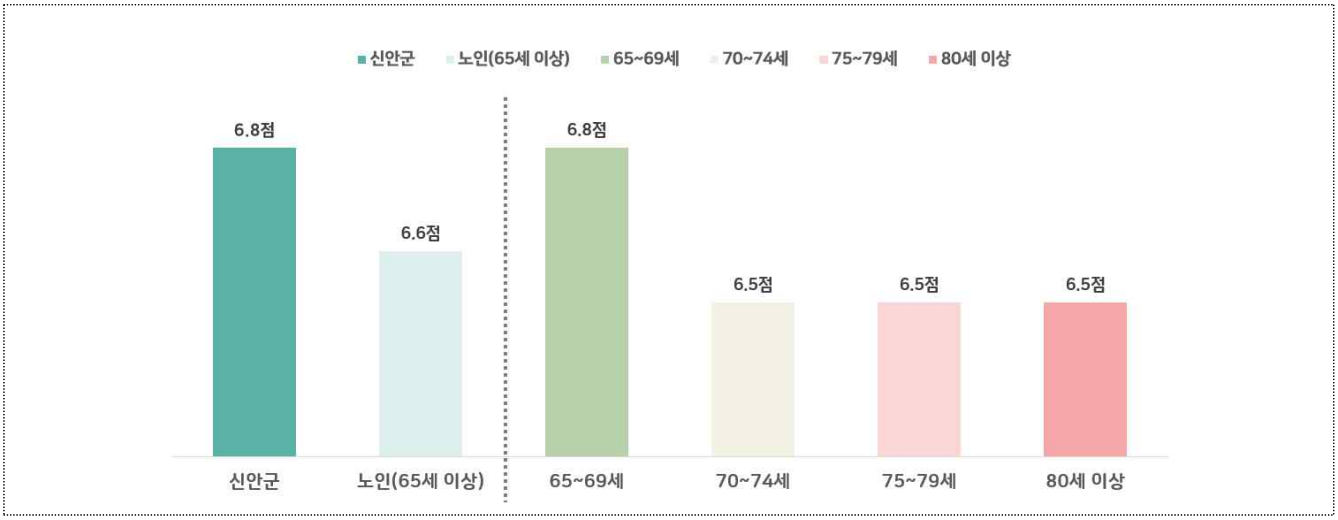

【표4-16】 노인 삶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신안군	**100.0**	**0.2**	**0.2**	**0.4**	**0.8**	**1.4**	**18.4**	**20.6**	**24.7**	**23.7**	**5.9**	**3.6**	**6.8**
노인 (65세 이상)	**100.0**	**0.6**	**0.4**	**0.8**	**1.0**	**2.0**	**22.5**	**21.1**	**23.4**	**18.5**	**5.0**	**4.6**	**6.6**
남자	100.0	0.9	0.4	0.9	1.1	2.0	19.0	16.7	26.9	23.3	4.1	4.9	6.7
여자	100.0	0.4	0.4	0.8	1.0	2.1	25.2	24.6	20.7	14.7	5.7	4.4	6.5
65~69세	100.0	0.0	1.2	1.2	0.0	3.1	12.7	23.8	24.0	25.4	4.0	4.8	6.8
70~74세	100.0	0.8	0.0	0.6	0.7	0.6	26.8	16.7	28.9	18.9	1.6	4.5	6.5
75~79세	100.0	0.7	0.5	1.1	1.2	2.2	23.6	24.6	19.7	16.3	4.4	5.9	6.5
80세 이상	100.0	0.9	0.0	0.6	2.0	2.1	26.9	19.7	21.7	13.9	8.5	3.8	6.5

자료: 신안군 「2023년 사회조사」
주) 2022.9.1. ~ 2023.8.31. 기준

2024년 신안군 노인복지통계

5 건강

5-1. 건강보험 적용인구

5-2. 요양급여실적

5-3. 만성질환(8종) 진료인원

5-4. 만성질환(8종) 1인당 연간 진료비

5-5. 주요 암(6종) 진료인원

5-6. 주요 암(6종) 1인당 연간 진료비

5-7. 연도별 노인 교통사고 건수

5-8.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건수

5-9. 가해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5-10. 운전면허증 반납

5-11.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및 효과 여부 (걷기운동 건강교실)

5-12.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및 효과 여부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5-13.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및 효과 여부 (경로당 중심 낙상예방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5-1. 건강보험 적용인구

2023년 신안군 노인의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14,158명이며, 이 중 「지역」은 6,706명(47.4%), 「직장」은 6,097명(43.1%)임

□ 2023년 신안군 노인의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14,158명이며, 이 중 「지역」은 6,706명(47.4%), 「직장」은 6,097명(43.1%), 「공무원 및 교사(사립학교)」는 1,335명(9.6%) 순임

○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남자 (6,270명)」, 「여자(7,888명)」 순이며, 남녀 모두 「지역」이 가장 많음

○ 연령대별로 보면, 「65~69세」, 「80세 이상」은 「지역」이 가장 많고, 「70~74세」, 「75~79세」는 「직장」이 가장 많음

□ 신안군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37,346명이며, 「지역」 17,730명(47.5%), 「직장」 15,232명(40.8%), 「공무원 및 교사(사립학교)」 4,384명(11.7%) 순임

【그림5-1】 건강보험 적용인구 및 연령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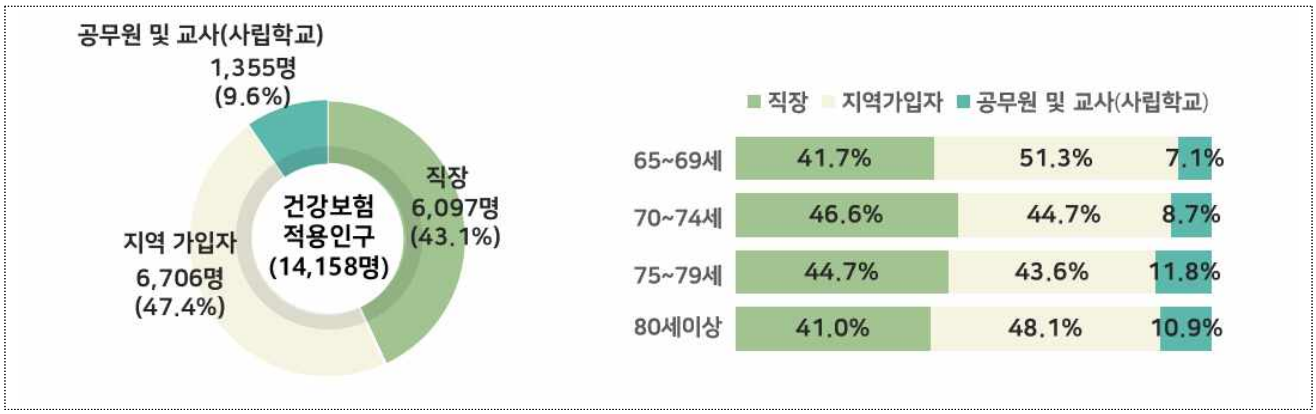

【표5-1】 건강보험 적용인구

(단위: 명, %)

구분	건강보험 적용인구		직장		공무원 및 교사 (사립학교)		지역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37,346**	**100.0**	**15,232**	**40.8**	**4,384**	**11.7**	**17,730**	**47.5**
노인(65세 이상)	**14,158**	**100.0**	**6,097**	**43.1**	**1,355**	**9.6**	**6,706**	**47.4**
남자	6,270	100.0	2,722	43.4	575	9.2	2,973	47.4
여자	7,888	100.0	3,375	42.8	780	9.9	3,733	47.3
65~69세	3,869	100.0	1,612	41.7	274	7.1	1,983	51.3
70~74세	2,952	100.0	1,376	46.6	256	8.7	1,320	44.7
75~79세	2,741	100.0	1,224	44.7	323	11.8	1,194	43.6
80세 이상	4,596	100.0	1,885	41.0	502	10.9	2,209	48.1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주1) 연도 말 기준, 주민등록 실거주지 기준
주2) 건강보험 적용인구 기준이며, 의료급여 제외

5-2. 요양급여실적

2023년 신안군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905억 원이며, 그 중 급여비는 690억 원임

□ 2023년 신안군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905억 원이며, 급여비는 690억 원임

- ○ 「입원」 진료비는 459억 원, 「외래」 진료비는 268억 원, 「약국」 진료비는 178억 원 순임
- ○ 연간 진료비는 「여자(499억 원)」가 「남자(406억 원)」보다 94억 원 많음
- ○ 연령대별로 보면, 「80세 이상」 373억 원, 「75~79세」 184억 원, 「65~69세」 181억 원, 「70~74세」 168억 원 순임

□ 신안군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1,350억 원이며, 급여비는 1,020억 원임

- ○ 「입원」 진료비 635억 원, 「외래」 진료비 446억 원, 「약국」 진료비 269억 원 순임

【그림5-2】 요양급여실적 진료비 및 급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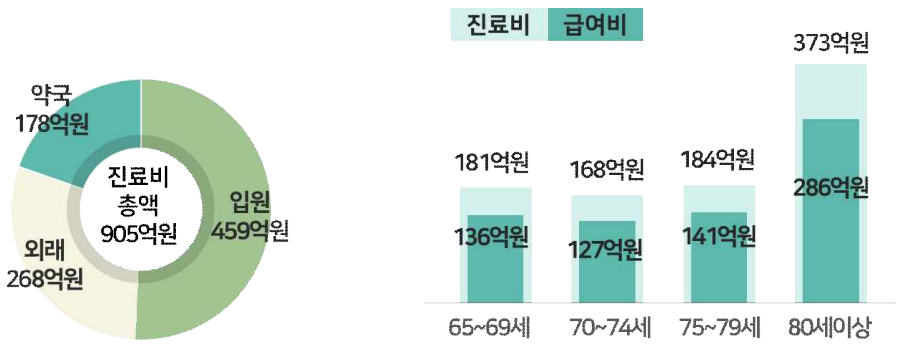

【표5-2】 요양급여실적

(단위: 백만 원)

구분	합계		입원		외래		약국	
	진료비	급여비	진료비	급여비	진료비	급여비	진료비	급여비
신안군	**135,014.4**	**101,987.7**	**63,515.1**	**50,208.1**	**44,642.5**	**32,327.9**	**26,856.7**	**19,451.7**
노인(65세 이상)	**90,510.7**	**69,012.5**	**45,935.0**	**36,338.4**	**26,755.5**	**19,725.0**	**17,820.3**	**12,949.2**
남자	40,578.0	31,217.2	19,502.8	15,727.5	12,759.5	9,465.8	8,315.7	6,023.9
여자	49,932.8	37,795.3	26,432.1	20,610.9	13,996.0	10,259.1	9,504.7	6,925.3
65~69세	18,069.4	13,606.6	7,188.6	5,763.6	6,882.5	4,958.8	3,998.4	2,884.1
70~74세	16,764.7	12,704.9	6,804.6	5,411.4	6,229.3	4,595.6	3,730.8	2,697.9
75~79세	18,360.3	14,055.7	8,643.1	6,904.0	5,871.0	4,347.9	3,846.2	2,803.8
80세 이상	37,316.4	28,645.3	23,298.8	18,259.4	7,772.7	5,822.6	6,245.0	4,563.3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주1) 수진기준(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 및 급여비는 약국포함), 연령(연도 말 기준)
주2)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
주3) 계의 진료실인원은 입원, 외래 간 중복 제외로 단순 합계와 다를 수 있음

5-3. 만성질환(8종) 진료인원

2023년 신안군 노인 중 만성질환(8종) 진료를 받은 인원은 「고혈압(6,573명)」이 가장 많음

□ 2023년 신안군 노인 중 주요 만성질환 진료를 받은 인원은 「고혈압」이 6,573명으로 가장 많고, 「치주질환」 6,546명, 「관절염」 6,463명 순임

○ 노인 성별 진료인원 중 남자는 「당뇨」에서 여자보다 많으며, 여자는 「고혈압」, 「치주질환」 등에서 남자보다 많음

□ 신안군 전체 주요 만성질환(8종) 진료인원은 「치주질환」이 15,684명으로 가장 많고, 「관절염」 10,281명, 「고혈압」 9,913명 순임

【그림5-3】 만성질환 진료인원

【그림5-4】 성별 만성질환 진료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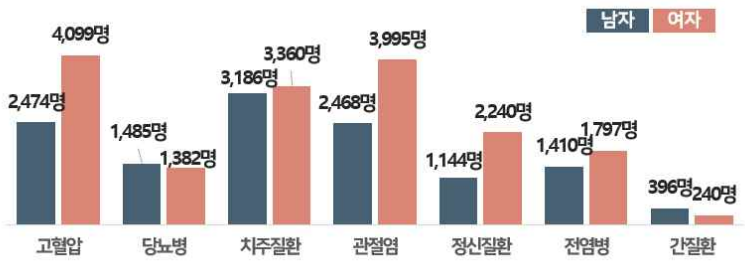

【표5-3】 만성질환(8종) 진료인원

(단위: 명)

구분	합계	고혈압	당뇨	치주질환	관절염	정신질환	치매	전염병	간질환
신안군	**55,029**	**9,913**	**4,928**	**15,684**	**10,281**	**4,612**	**1,977**	**8,108**	**1,503**
노인 (65세 이상)	**29,676**	**6,573**	**2,867**	**6,546**	**6,463**	**3,384**	**1,957**	**3,207**	**636**
남자	12,563	2,474	1,485	3,186	2,468	1,144	544	1,410	396
여자	17,113	4,099	1,382	3,360	3,995	2,240	1,413	1,797	240
65~69세	7,564	1,476	775	2,105	1,663	435	64	874	236
70~74세	6,325	1,272	687	1,600	1,418	480	156	682	186
75~79세	6,092	1,351	624	1,364	1,365	631	318	648	109
80세 이상	9,695	2,474	781	1,477	2,017	1,838	1,419	1,003	105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주1) 수진기준(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는 약국포함), 연령(연도 말 기준)

주2)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

주3) 아래 질병통계 자료는 요양기관에서 환자 진료 중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 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발췌코드:고혈압(110~115),당뇨(E10~E14),치주질환(K00~K01,K03~K08),관절염(M00~M19.M22~M25), 정신질환(F),전염병(A,B),간질환(K70~K77),치매(F00~F03)

주4) 진료 인원은 중복 포함으로 단순 합계와 다를 수 있음

5-4. 만성질환(8종) 1인당 연간 진료비

2023년 신안군 노인의 만성질환(8종)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정신질환」이 2,753천원, 「당뇨」가 995천원 순으로 많음

□ 2023년 신안군 노인의 만성질환(8종)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정신질환(2,753천 원)」, 「당뇨(995천 원)」, 「간질환(815천 원)」순임

○ 노인 성별 1인당 연간 진료비는 남자가 「당뇨」, 「간질환」에서 여자보다 많고, 「고혈압」, 「관절염」 등은 여자가 남자보다 많음

【그림5-5】 성별 주요 만성질환 1인당 연간 진료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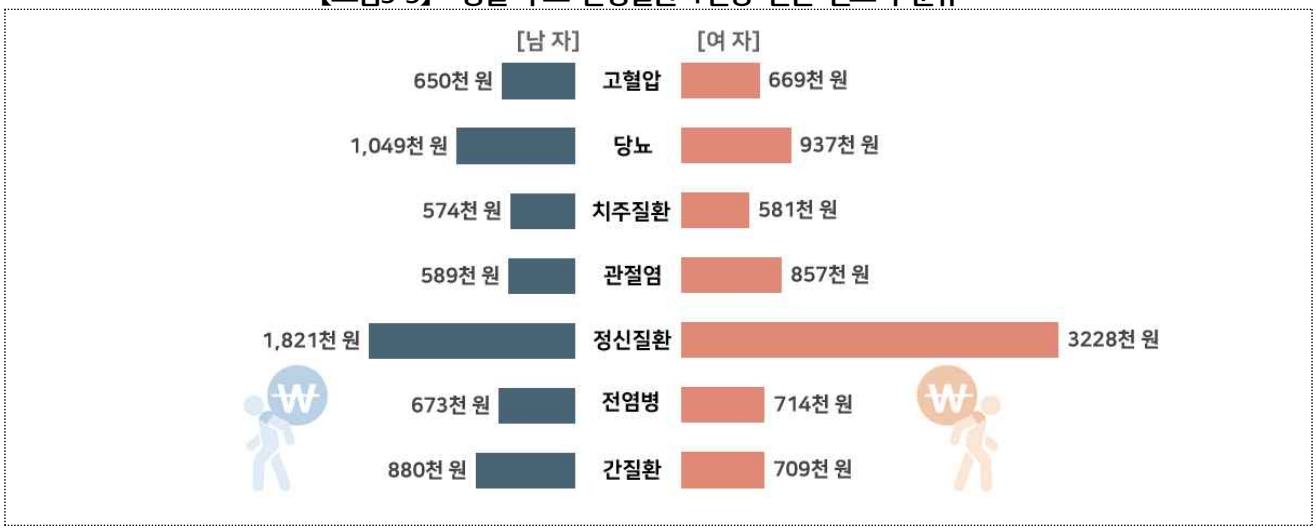

【표5-4】 만성질환(8종) 1인당 연간 진료비

(단위: 천 원)

구분	합계	고혈압	당뇨	치주질환	관절염	정신질환	치매	전염병	간질환
신안군	**684**	**629**	**983**	**329**	**644**	**2,196**	**4,344**	**438**	**729**
노인(65세 이상)	**941**	**662**	**995**	**578**	**755**	**2,753**	**4,369**	**696**	**815**
남자	782	650	1,049	574	589	1,821	3,295	673	880
여자	1,058	669	937	581	857	3,228	4,782	714	709
65~69세	677	613	1,084	616	820	689	1,742	338	495
70~74세	691	637	979	542	810	705	1,257	445	1,238
75~79세	807	671	902	530	776	1,745	3,041	737	809
80세 이상	1,395	698	994	606	648	4,122	5,127	1,153	794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자료」
주1) 수진기준(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는 약국포함), 연령(연도 말 기준)
주2)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
주3) 아래 질병통계 자료는 요양기관에서 환자 진료 중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 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발췌코드:고혈압(110~115),당뇨(E10~E14),치주질환(K00~K01,K03~K08),관절염(M00~M19.M22~M25), 정신질환(F),전염병(A,B),간질환(K70~K77),치매(F00~F03)
주4) 진료 인원은 중복 포함으로 단순 합계와 다를 수 있음

5-5. 주요 암(6종) 진료인원

2023년 신안군 노인 중 암(6종) 진료를 받은 인원은 526명으로 「폐암(135명)」이 가장 많음

□ 2023년 신안군 노인 중 암(6종) 진료를 받은 인원은 526명이며, 「폐암」 135명, 「위암」 134명, 「간암」 117명 순임

○ 성별로 보면, 주요 암 진료인원은 「남자」 324명, 「여자」 202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22명 많으며, 남자는 「폐암」, 여자는 「위암」 진료인원이 가장 많음

□ 신안군 전체 주요 암(6종) 진료인원은 803명이며, 「위암」 181명, 「폐암」 168명, 「간암」 158명 순임

【그림5-6】 주요 암(6종) 진료인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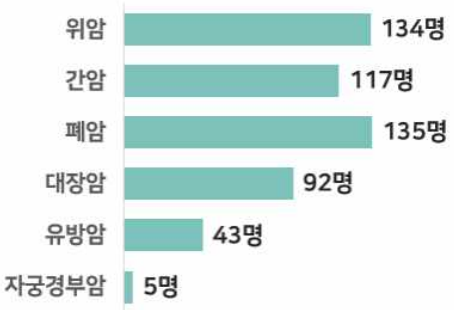

【그림5-7】 성별 주요 암(6종) 진료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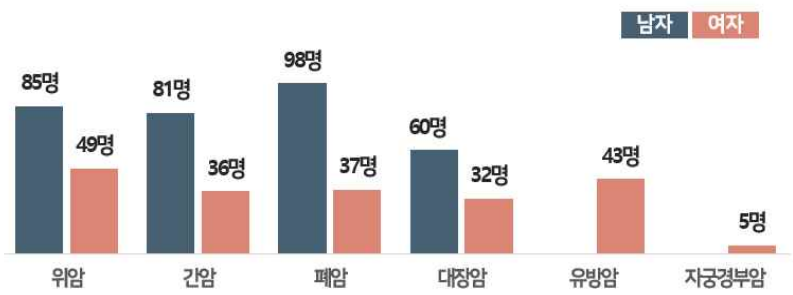

【표5-5】 주요 암(6종) 진료인원

(단위: 명)

구분	계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신안군	**803**	**181**	**158**	**168**	**151**	**128**	**17**
노인 (65세 이상)	**526**	**134**	**117**	**135**	**92**	**43**	**5**
남자	324	85	81	98	60	-	-
여자	202	49	36	37	32	43	5
65~69세	117	28	25	24	18	*	*
70~74세	121	23	33	30	21	*	*
75~79세	135	41	30	38	19	*	*
80세 이상	153	42	29	43	34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주1) 수진기준 (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는 약국포함), 연령(연도 말 기준)
주2)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
주3) 아래 질변통계 자료는 요양기관에서 환자 진료 중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 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발췌코드:위암(C16),간암(C22),폐암(C33~C34),대장암(C18~C20),유방암(C50),자궁암(C53)

5-6. 주요 암(6종) 1인당 연간 진료비

2023년 신안군 노인의 주요 암(6종) 1인당 연간 진료비는 「간암」이 8,130천원, 「폐암」이 7,725천원 순으로 많음

□ 2023년 신안군 노인의 주요 암(6종) 1인당 연간 진료비는 「간암(8,130천 원)」, 「폐암(7,725천 원)」, 「대장암(6,523천 원)」순임

○ 성별 1인당 연간 진료비는 남자가 「위암」, 「간암」에서 여자보다 많고, 「폐암」, 「대장암」은 여자가 남자보다 많음

【그림5-8】 성별 주요 암(6종) 1인당 연간 진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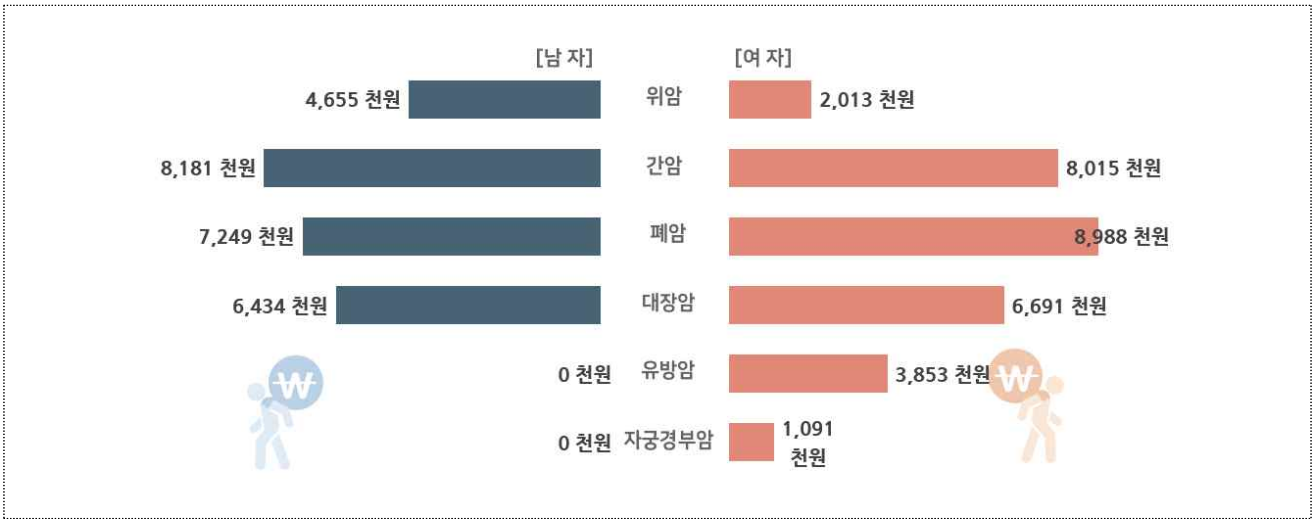

【표5-6】 주요 암(6종) 1인당 연간 진료비

(단위: 천원)

구분	계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신안군	**6,344**	**3,920**	**8,575**	**7,607**	**5,512**	**6,642**	**4,058**
노인 (65세 이상)	**6,197**	**3,689**	**8,130**	**7,725**	**6,523**	**3,853**	**1,091**
남자	6,651	4,655	8,181	7,249	6,434	-	-
여자	5,470	2,013	8,015	8,988	6,691	3,853	1,091
65~69세	7,153	4,774	11,037	10,676	6,026	2,929	1,079
70~74세	5,649	2,440	7,294	5,736	6,189	6,455	807
75~79세	5,390	2,556	8,449	7,005	4,508	2,818	1,703
80세 이상	6,612	4,755	6,246	8,104	8,119	1,540	164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주1. 수진기준(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는 약국포함), 연령(연도 말 기준)
주2)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
주3) 아래 질변통계 자료는 요양기관에서 환자 진료 중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 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발췌코드:위암(C16),간암(C22),폐암(C33~C34),대장암(C18~C20),유방암(C50),자궁암(C53)

5-7. 연도별 노인 교통사고 건수

2023년 신안군 노인 교통사고 건수는 53건으로 부상자는 64명으로 나타남

□ 2023년 신안군 노인 교통사고 건수는 53건으로 사망자 5명, 부상자 64명 중 중상자는 27명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보면 노인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70건) 대비 2023년(53건)에 24.3% 감소함

○ 부상자는 2019년(95명) 대비 2023년(64명)에 32.6%, 중상자는 2019년(37명) 대비 2023년(27명)에 27.0% 감소함

【그림5-9】 연도별 교통사고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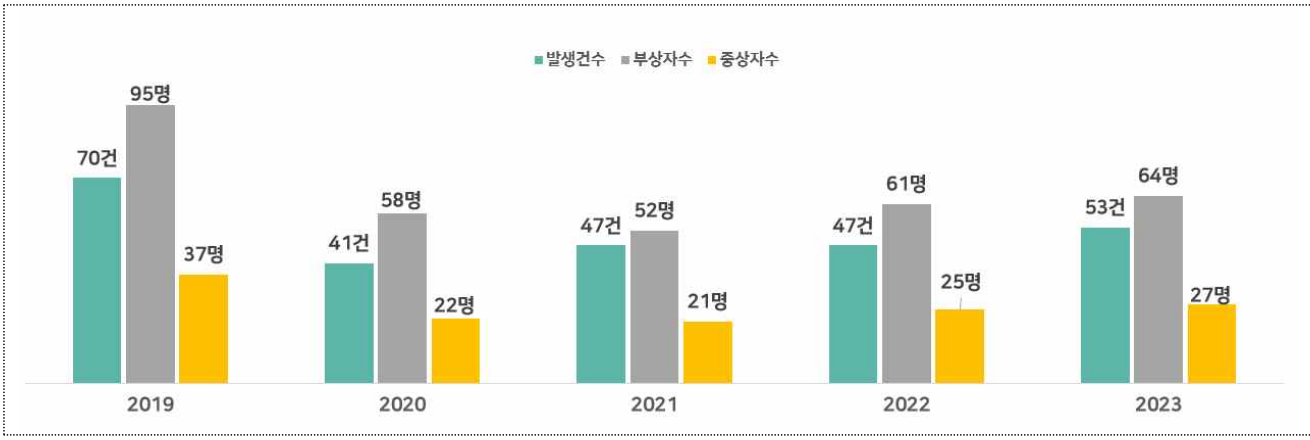

【표5-7】 연도별 노인 교통사고 건수

(단위: 건, 명)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중상자수
2019	70	*	95	37
2020	41	*	58	22
2021	47	*	52	21
2022	47	5	61	25
2023	**53**	**5**	**64**	**27**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경찰DB)
주1) 경찰DB :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된 교통사고DB
주2) 2023.1.1.~12.31. 발생한 교통사고 집계

5-8.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건수

2023년 신안군 노인의 교통사고 유형은 차 대 차(40건) 유형이 가장 많음

□ 2023년 신안군 노인의 교통사고 유형은「차 대 차」40건(75.5%),「차 대 사람」8건(15.1%),「차량 단독」5건(9.5%) 순임

○ 사고유형별 부상자는「차 대 차 측면추돌」39명(38.6%),「추돌」24명(23.8%),「정면추돌」14명(13.9%) 순임

□ 신안군 전체 교통사고 유형은「차 대 차」74건(71.2%),「차 대 사람」19건(18.3%),「차량 단독」11건(10.6%) 순임

【그림5-10】 교통사고 발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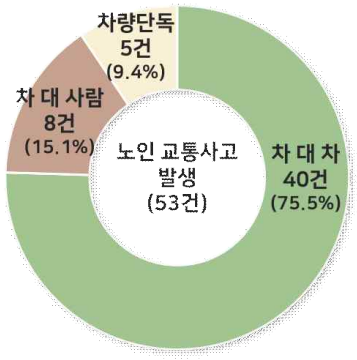

【그림5-11】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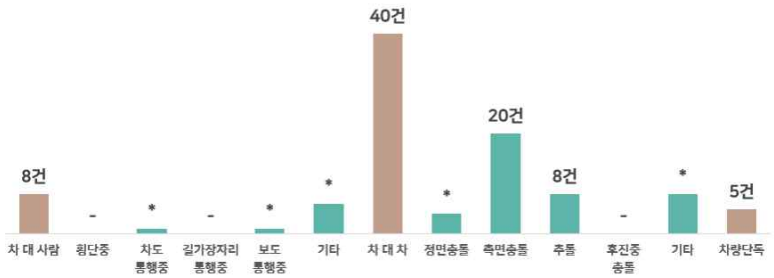

【표5-8】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건수

(단위: 건, 명, %)

구분		합계	차 대 사람						차 대 차						차량 단독
			소계	횡단 중	차도 통행 중	길 가장 자리 통행 중	보도 통행 중	기타	소계	정면 충돌	측면 충돌	추돌	후진 중 충돌	기타	
신안군	발생건수	104	19	*	*	-	*	*	74	13	38	12	*	*	11
	구성비	100.0	18.3	*	*	-	*	*	71.2	12.5	36.5	11.5	*	*	10.6
	사망자수	9	*	-	*	-	-	*	*	-	*	*	-	-	*
	구성비	100.0	*	-	*	-	-	*	*	-	*	*	-	-	*
	부상자수	168	17	*	-	-	*	15	143	34	62	30	*	*	*
	구성비	100.0	10.1	*	-	-	*	8.9	85.1	20.2	36.9	17.9	*	*	*
노인	발생건수	53	8	-	*	-	*	6	40	*	20	8	-	*	5
	구성비	100.0	15.1	-	*	-	*	11.3	75.5	*	37.7	15.1	-	*	9.4
	사망자수	5	*	-	*	-	-	-	*	-	*	*	-	-	*
	구성비	100.0	*	-	*	-	-	-	*	-	*	*	-	-	*
	부상자수	101	8	-	-	-	*	*	90	14	39	24	-	13	*
	구성비	100.0	7.9	-	-	-	*	*	89.1	13.9	38.6	23.8	-	12.9	*

자료: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분석시스템」(경찰DB)
주1) 경찰DB :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된 교통사고DB
주2) 2023.1.1.~12.31. 발생한 교통사고 집계
주3) 사고유형별 분류는 차 대 사람, 차 대 차, 차량 단독, 철길 건널목 사고 4개이며, 철길 건널목 사고는 제외

5-9. 가해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2023년 신안군 가해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31건으로 부상자는 48명으로 나타남

□ 2023년 신안군 가해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31건으로 부상자 48명 중 중상자는 21명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보면 가해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47건) 대비 2023년(31건) 34.0% 감소함

○ 부상자는 2019년(98명) 대비 2023년(48명) 51.0%, 중상자는 2019년(19명) 대비 2023년(21명) 10.5% 증가함

【그림5-12】 가해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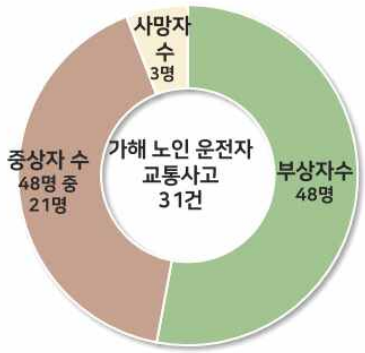

【그림5-13】 교통사고 부상·중상자 수 및 발생건수

【표5-9】 가해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단위: 건, 명)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중상자수
2019년	47	-	98	19
2020년	32	*	59	15
2021년	36	*	54	13
2022년	34	*	52	14
2023년	**31**	*****	**48**	**21**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경찰DB)
주1) 경찰DB :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된 교통사고DB
주2) 2023.1.1.~12.31. 발생한 교통사고 집계

5-10. 운전면허증 반납

2023년 신안군 노인 운전면허증 취득자 5,364명 중 운전면허증 반납은 80명(1.5%)로 나타남

□ 2023년 신안군 노인 운전면허증 취득자 5,364명 중 운전면허증 소유는 5,284명(98.5%), 운전면허증 반납은 80명(1.5%)로 나타남

○ 노인 성별로 보면, 운전면허증 반납 비율은 남자 1.5%(65명), 여자가 1.4%(15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0.1%p 높음

○ 노인 연령대별로 보면, 운전면허증 반납 비율은 「80세 이상(7.3%)」, 「75~79세(3.0%)」, 「70~74세(1.3%)」 순임

【그림5-14】 운전면허증 취득 및 반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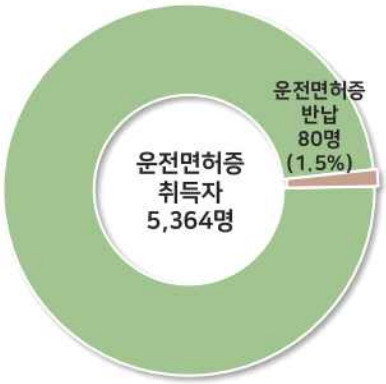

【그림5-15】 연령대별 운전면허증 반납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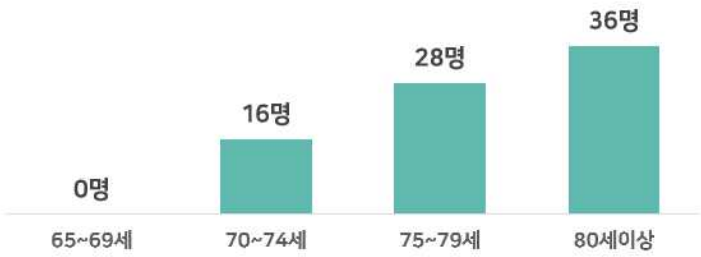

【표5-10】 운전면허증 반납

(단위: 명, %)

구분	주민등록 인구	운전면허증 취득자		운전면허증 소유		운전면허증 반납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노인 (65세 이상)	**14,914**	**5,364**	**100.0**	**5,284**	**98.5**	**80**	**1.5**
남자	6,564	4,289	100.0	4,224	98.5	65	1.5
여자	8,350	1,075	100.0	1,060	98.6	15	1.4
65~69세	3,992	2,699	100.0	2,699	100.0	0	0.0
70~74세	3,109	1,225	100.0	1,209	98.7	16	1.3
75세79세	2,881	944	100.0	916	97.0	28	3.0
80세 이상	4,932	496	100.0	460	92.7	36	7.3

자료: 신안군 「운전면허 관련 자료」

5-11.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및 효과 여부(걷기운동 건강교실)

2023년 신안군 노인 중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걷기운동 건강교실)을 「알고 있음」 40.0%, 「알지 못함」 59.9%로 나타남

□ 2023년 신안군 노인 중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걷기운동 건강교실)을 「알고 있고 참여함(5.8%)」, 「알고 있고 참여하지 않음(34.2%)」, 「알지 못하고 참여하지 않음(59.9%)」로 나타남

○ 「알고 있고 참여함」 중 건강증진 효과여부에 대한 응답은 「효과있음(97.3%)」, 「효과없음(2.7%)」 순임

□ 신안군 전체 인구 중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걷기운동 건강교실)을 「알고 있고 참여함(3.4%)」, 「알고 있고 참여하지 않음(30.0%)」, 「알지 못하고 참여하지 않음(66.7%)」로 나타남

【그림5-16】 보건소 걷기운동 건강교실 참여 비율 및 효과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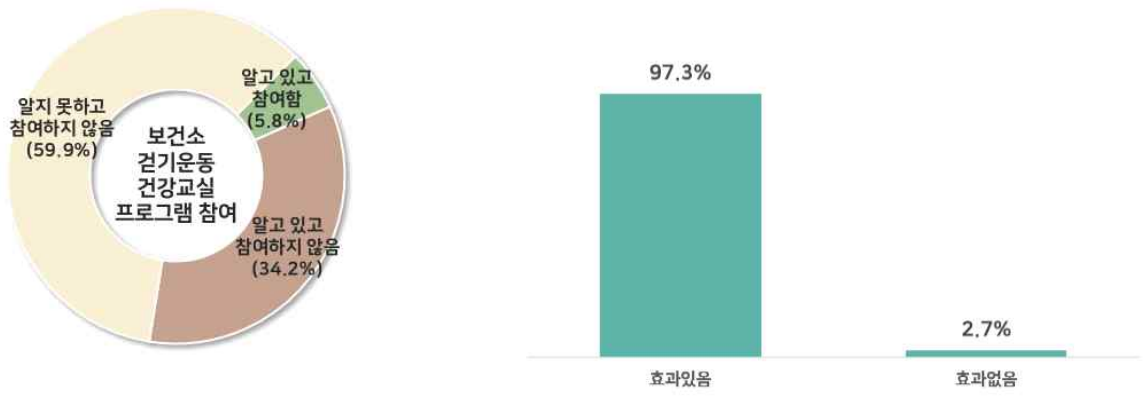

【표5-11】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및 효과 여부(걷기운동 건강교실)

(단위: %)

구분	계	알고 있고 참여함	건강증진 효과여부			알고 있고 참여하지않음	알지 못하고 참여하지않음
			소계	효과있음	효과없음		
신안군	**100.0**	**3.4**	**100.0**	**96.2**	**3.8**	**30.0**	**66.7**
노인(65세 이상)	**100.0**	**5.8**	**100.0**	**97.3**	**2.7**	**34.2**	**59.9**
남자	100.0	5.3	100.0	93.1	6.9	32.1	62.6
여자	100.0	6.3	100.0	100.0	0.0	35.9	57.9
65~69세	100.0	5.3	100.0	88.6	11.4	31.4	63.3
70~74세	100.0	6.6	100.0	100.0	0.0	36.9	56.5
75~79세	100.0	6.9	100.0	100.0	0.0	36.2	56.9
80세 이상	100.0	5.0	100.0	100.0	0.0	33.5	61.5

자료: 신안군 「2023년 사회조사」
주) 2022.9.1. ~ 2023.8.31. 기준

5-12.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및 효과 여부(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2023년 신안군 노인 중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을 「알고 있음」 40.5%, 「알지 못함」 59.6%로 나타남

□ 2023년 신안군 노인 중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을 「알고 있고 참여함(8.7%)」, 「알고 있고 참여하지 않음(31.8%)」, 「알지 못하고 참여하지 않음(59.6%)」로 나타남

○ 「알고 있고 참여함」 중 건강증진 효과여부에 대한 응답은 「효과있음(97.0%)」, 「효과없음(3.0%)」 순임

□ 신안군 전체 인구 중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을 「알고 있고 참여함(4.4%)」, 「알고 있고 참여하지 않음(29.5%)」, 「알지 못하고 참여하지 않음(66.1%)」로 나타남

【그림5-17】 보건소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참여 비율 및 효과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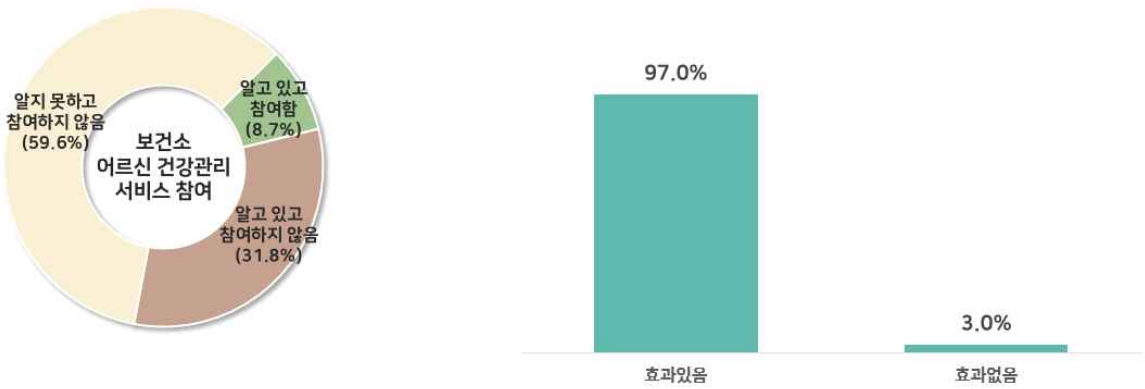

【표5-12】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및 효과 여부(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단위: %)

구분	계	알고 있고 참여함	건강증진 효과여부			알고 있고 참여하지않음	알지 못하고 참여하지않음
			소계	효과있음	효과없음		
신안군	**100.0**	**4.4**	**100.0**	**96.1**	**3.9**	**29.5**	**66.1**
노인(65세 이상)	**100.0**	**8.7**	**100.0**	**97.0**	**3.0**	**31.8**	**59.6**
남자	100.0	6.9	100.0	91.2	8.8	30.9	62.3
여자	100.0	10.1	100.0	100.0	0.0	32.5	57.5
65~69세	100.0	4.9	100.0	85.6	14.4	32.3	62.8
70~74세	100.0	8.3	100.0	100.0	0.0	34.6	57.1
75~79세	100.0	11.4	100.0	100.0	0.0	32.0	56.6
80세 이상	100.0	10.2	100.0	97.6	2.4	29.3	60.4

자료: 신안군 「2023년 사회조사」
주) 2022.9.1. ~ 2023.8.31. 기준

5-13.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및 효과 여부(경로당 중심 낙상예방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2023년 신안군 노인 중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경로당 중심 낙상예방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을 「알고 있음」 40.5%, 「알지 못함」 59.6%로 나타남

□ 2023년 신안군 노인 중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경로당 중심 낙상예방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을 「알고 있고 참여함(10.3%)」, 「알고 있고 참여하지 않음(30.2%)」, 「알지 못하고 참여하지 않음(59.6%)」로 나타남

○ 「알고 있고 참여함」 중 건강증진 효과여부에 대한 응답은 「효과있음(94.8%)」, 「효과없음(5.2%)」 순임

□ 신안군 전체 인구 중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경로당 중심 낙상예방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을 「알고 있고 참여함(4.6%)」, 「알고 있고 참여하지 않음(28.0%)」, 「알지 못하고 참여하지 않음(67.4%)」로 나타남

【그림5-18】 보건소 경로당 중심 낙상예방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참여 비율 및 효과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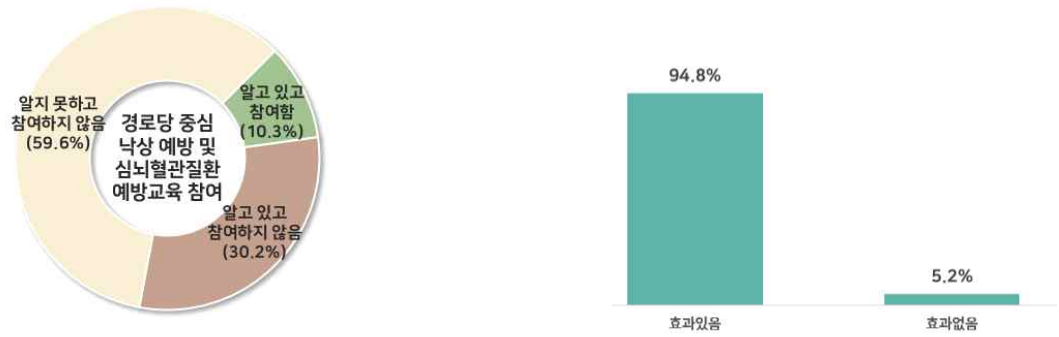

【표5-13】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및 효과 여부(경로당 중심 낙상예방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단위: %)

구분	계	알고 있고 참여함	건강증진 효과여부			알고 있고 참여하지않음	알지 못하고 참여하지않음
			소계	효과있음	효과없음		
신안군	**100.0**	**4.6**	**100.0**	**95.2**	**4.8**	**28.0**	**67.4**
노인(65세 이상)	**100.0**	**10.3**	**100.0**	**94.8**	**5.2**	**30.2**	**59.6**
남자	100.0	6.9	100.0	82.5	17.5	30.7	62.4
여자	100.0	12.9	100.0	100.0	0.0	29.8	57.3
65~69세	100.0	7.9	100.0	82.0	18.0	29.6	62.6
70~74세	100.0	11.2	100.0	100.0	0.0	31.3	57.5
75~79세	100.0	10.1	100.0	100.0	0.0	31.9	58.0
80세 이상	100.0	11.7	100.0	95.6	4.4	28.8	59.5

자료: 신안군 「2023년 사회조사」
주) 2022.9.1. ~ 2023.8.31. 기준

2024년 신안군 노인복지통계

Shinan Senior Welfare Statistics

Ⅳ. 통계표

1. 인구·가구
2. 경제
3. 일자리
4. 복지
5. 건강

1004 신안군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 통계표 목차 |

105 **1. 인구·가구**

107 1-1. 연도별 인구규모
107 1-2. 성별·연령별 인구규모
108 1-3. 성별·지역별 인구규모
109 1-4. 지역별 독거노인 인구
111 1-5. 가구유형별 노인가구
112 1-6. 거처종류별 노인가구
114 1-7. 점유형태별 노인가구
116 1-8. 전남 시·군별 노인인구 및 가구
118 1-9. 연도별 사망률
119 1-10. 사망원인별 사망률
121 1-11. 연도별 순이동
122 1-12. 전입인구
123 1-13. 전입사유
125 1-14. 전출인구
126 1-15. 전출사유
128 1-16. 연도별 전입인구
128 1-17. 연도별 전출인구
129 1-18. 가구원수별 노인가구

131 **2. 경제**

133 2-1. 가구 월평균 소득
134 2-2. 개인소유 주택 현황
135 2-3. 거주지 기준 주택 소유 현황
136 2-4. 자동차 소유

137 **3. 일자리**

139 3-1. 경제활동인구 현황
140 3-2. 연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140 3-3. 가입기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140 3-4. 연도별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자
141 3-5. 연도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142 3-6. 연도별 구직신청건수
143 3-7. 구직희망 고용형태
144 3-8. 구직희망 근무지역
145 3-9. 구직희망 월평균 임금금액
146 3-10. 연도별 사업자등록 현황
146 3-11. 연도별 공공일자리 참여 현황
147 3-12. 일자리 만족도(하는일)
148 3-13. 일자리 만족도(임금/가구소득)
149 3-14. 일자리 만족도(근로시간)
150 3-15. 일자리 만족도(근무환경)

목 차

151 **4. 복지**

153 4-1.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154 4-2. 장애인등록 인구
155 4-3.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인구
155 4-4. 수혜유형별 기초연금 수급인구
155 4-5.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156 4-6.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156 4-7.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157 4-8.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격별 신청판정 현황
157 4-9.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인정자
158 4-10. 노인시설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158 4-11. 연금종류별 공적연금 수급인구
159 4-12. 급여종류별 국민연금 수급인구
161 4-13. 노인복지사업
162 4-14.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163 4-15. 노인대학 교육 희망강좌
164 4-16. 노인 삶에 대한 만족도

165 **5. 건강**

167 5-1. 건강보험 적용인구
168 5-2. 요양급여실적
170 5-3. 만성질환(8종) 진료인원
171 5-4. 만성질환(8종) 1인당 연간 진료비
172 5-5. 주요 암(6종) 진료인원
173 5-6. 주요 암(6종) 1인당 연간 진료비
174 5-7. 연도별 노인 교통사고 건수
174 5-8.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건수
176 5-9. 가해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176 5-10. 운전면허증 반납
177 5-11.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및 효과 여부(걷기운동 건강교실)
178 5-12.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및 효과 여부(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179 5-13.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및 효과 여부
(경로당 중심 낙상예방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2024년 신안군 노인복지통계

1 인구·가구

1-1. 연도별 인구규모

1-2. 성별·연령별 인구규모

1-3. 성별·지역별 인구규모

1-4. 지역별 독거노인 인구

1-5. 가구유형별 노인가구

1-6. 거처종류별 노인가구

1-7. 점유형태별 노인가구

1-8. 전남 시·군별 노인인구 및 가구

1-9. 연도별 사망률

1-10. 사망원인별 사망률

1-11. 연도별 순이동

1-12. 전입인구

1-13. 전입사유

1-14. 전출인구

1-15. 전출사유

1-16. 연도별 전입인구

1-17. 연도별 전출인구

1-18. 가구원수별 노인가구

1-1. 연도별 인구규모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19	40,274	100.0	3,918	9.7	3,152	7.8	3,051	7.6	4,570	11.3	7,361	18.3	18,222	45.2
2020	38,938	100.0	3,600	9.2	2,779	7.1	2,682	6.9	4,324	11.1	7,042	18.1	18,511	47.5
2021	38,217	100.0	3,369	8.8	2,538	6.6	2,469	6.5	4,102	10.7	6,903	18.1	18,836	49.3
2022	37,858	100.0	3,246	8.6	2,398	6.3	2,308	6.1	3,997	10.6	6,768	17.9	19,141	50.6
2023	**38,037**	**100.0**	**3,239**	**8.5**	**2,386**	**6.3**	**2,287**	**6.0**	**3,941**	**10.4**	**6,745**	**17.7**	**19,439**	**51.1**

구분	노인(65세 이상)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세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19	14,072	100.0	3,298	23.4	3,242	23.0	3,343	23.8	2,565	18.2	1,183	8.4	441	3.1
2020	14,291	100.0	3,421	23.9	3,232	22.6	3,174	22.2	2,661	18.6	1,289	9.0	514	3.6
2021	14,411	100.0	3,545	24.6	3,179	22.1	3,030	21.0	2,757	19.1	1,374	9.5	526	3.6
2022	14,655	100.0	3,674	25.1	3,153	21.5	2,901	19.8	2,878	19.6	1,481	10.1	568	3.9
2023	**14,914**	**100.0**	**3,992**	**26.8**	**3,109**	**20.8**	**2,881**	**19.3**	**2,738**	**18.4**	**1,574**	**10.6**	**620**	**4.2**

자료: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
주1) 각 해당연도 12.31. 기준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

1-2. 성별·연령별 인구규모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남자		여자		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38,037**	**100.0**	**20,514**	**53.9**	**17,523**	**46.1**	**117.1**
중부	14,308	100.0	7,628	53.3	6,680	46.7	114.2
북부	9,567	100.0	5,103	53.3	4,464	46.7	114.3
서부	9,570	100.0	5,271	55.1	4,299	44.9	122.6
남부	4,592	100.0	2,512	54.7	2,080	45.3	120.8
19세 이하	3,239	100.0	1,671	51.6	1,568	48.4	106.6
20~29세	2,386	100.0	1,450	60.8	936	39.2	154.9
30~39세	2,287	100.0	1,411	61.7	876	38.3	161.1
40~49세	3,941	100.0	2,649	67.2	1,292	32.8	205.0
50~59세	6,745	100.0	4,167	61.8	2,578	38.2	161.6
60세 이상	19,439	100.0	9,166	47.2	10,273	52.8	89.2

구분	총인구		남자		여자		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노인(65세 이상)	**14,914**	**100.0**	**6,564**	**44.0**	**8,350**	**56.0**	**78.6**
중부	5,876	100.0	2,673	45.5	3,203	54.5	83.5
북부	3,694	100.0	1,569	42.5	2,125	57.5	73.8
서부	3,516	100.0	1,519	43.2	1,997	56.8	76.1
남부	1,828	100.0	803	43.9	1,025	56.1	78.3
65~69세	3,992	100.0	2,217	55.5	1,775	44.5	124.9
70~74세	3,109	100.0	1,558	50.1	1,551	49.9	100.5
75~79세	2,881	100.0	1,304	45.3	1,577	54.7	82.7
80세 이상	4,932	100.0	1,485	30.1	3,447	69.9	43.1

자료: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
주1) 2023.12.31. 기준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
주2) 성비 = (남자인구 / 여자인구) × 100

1-3. 성별·지역별 인구규모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남자		여자		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38,037**	**100.0**	**20,514**	**53.9**	**17,523**	**46.1**	**117.1**
중부	14,308	100.0	7,628	53.3	6,680	46.7	114.2
압해읍	5,966	100.0	3,234	54.2	2,732	45.8	118.4
자은면	2,240	100.0	1,216	54.3	1,024	45.7	118.8
안좌면	3,270	100.0	1,717	52.5	1,553	47.5	110.6
팔금면	909	100.0	452	49.7	457	50.3	98.9
암태면	1,923	100.0	1,009	52.5	914	47.5	110.4
북부	9,567	100.0	5,103	53.3	4,464	46.7	114.3
지도읍	4,583	100.0	2,429	53.0	2,154	47.0	112.8
증도면	1,748	100.0	959	54.9	789	45.1	121.5
임자면	3,236	100.0	1,715	53.0	1,521	47.0	112.8
서부	9,570	100.0	5,271	55.1	4,299	44.9	122.6
비금면	3,527	100.0	1,886	53.5	1,641	46.5	114.9
도초면	2,630	100.0	1,386	52.7	1,244	47.3	111.4
흑산면	3,413	100.0	1,999	58.6	1,414	41.4	141.4
남부	4,592	100.0	2,512	54.7	2,080	45.3	120.8
하의면	1,632	100.0	899	55.1	733	44.9	122.6
신의면	1,474	100.0	807	54.7	667	45.3	121.0
장산면	1,486	100.0	806	54.2	680	45.8	118.5

구분	노인 (65세 이상)		남자		여자		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14,914**	**100.0**	**6,564**	**44.0**	**8,350**	**56.0**	**78.6**
중부	5,876	100.0	2,673	45.5	3,203	54.5	83.5
압해읍	2,240	100.0	1,056	47.1	1,184	52.9	89.2
자은면	953	100.0	451	47.3	502	52.7	89.8
안좌면	1,327	100.0	588	44.3	739	55.7	79.6
팔금면	498	100.0	206	41.4	292	58.6	70.5
암태면	858	100.0	372	43.4	486	56.6	76.5
북부	3,694	100.0	1,569	42.5	2,125	57.5	73.8
지도읍	1,863	100.0	805	43.2	1,058	56.8	76.1
증도면	719	100.0	297	41.3	422	58.7	70.4
임자면	1,112	100.0	467	42.0	645	58.0	72.4
서부	3,516	100.0	1,519	43.2	1,997	56.8	76.1
비금면	1,382	100.0	608	44.0	774	56.0	78.6
도초면	1,029	100.0	446	43.3	583	56.7	76.5
흑산면	1,105	100.0	465	42.1	640	57.9	72.7
남부	1,828	100.0	803	43.9	1,025	56.1	78.3
하의면	686	100.0	303	44.2	383	55.8	79.1
신의면	485	100.0	213	43.9	272	56.1	78.3
장산면	657	100.0	287	43.7	370	56.3	77.6

자료: 통계청「인구총조사」

주1) 성비 = (남자인구 / 여자인구) × 100

주) 노인(65세 이상)의 구성비는 총인구 대비 구성비임

1-4. 지역별 독거노인인구

(단위: 명, %)

구분	노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65세이상, 1인가구)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14,914**	**100.0**	**3,753**	**100.0**	**727**	**19.4**	**643**	**17.1**	**737**	**19.6**	**1,646**	**43.9**
중부	5,876	100.0	1,467	100.0	283	19.3	246	16.8	282	19.2	656	44.7
압해읍	2,240	100.0	477	100.0	107	22.4	86	18.0	88	18.4	196	41.1
자은면	953	100.0	248	100.0	49	19.8	44	17.7	47	19.0	108	43.5
안좌면	1,327	100.0	347	100.0	59	17.0	54	15.6	69	19.9	165	47.6
팔금면	498	100.0	149	100.0	26	17.4	25	16.8	26	17.4	72	48.3
암태면	858	100.0	246	100.0	42	17.1	37	15.0	52	21.1	115	46.7
북부	3,694	100.0	968	100.0	184	19.0	176	18.2	207	21.4	401	41.4
지도읍	1,863	100.0	513	100.0	100	19.5	99	19.3	100	19.5	214	41.7
증도면	719	100.0	204	100.0	35	17.2	33	16.2	48	23.5	88	43.1
임자면	1,112	100.0	251	100.0	49	19.5	44	17.5	59	23.5	99	39.4
서부	3,516	100.0	832	100.0	157	18.9	132	15.9	166	20.0	377	45.3
비금면	1,382	100.0	331	100.0	60	18.1	60	18.1	69	20.8	142	42.9
도초면	1,029	100.0	255	100.0	39	15.3	32	12.5	50	19.6	134	52.5
흑산면	1,105	100.0	246	100.0	58	23.6	40	16.3	47	19.1	101	41.1
남부	1,828	100.0	486	100.0	103	21.2	89	18.3	82	16.9	212	43.6
하의면	686	100.0	181	100.0	34	18.8	40	22.1	33	18.2	74	40.9
신의면	485	100.0	116	100.0	29	25.0	15	12.9	22	19.0	50	43.1
장산면	657	100.0	189	100.0	40	21.2	34	18.0	27	14.3	88	46.6

자료: 통계청「가구통계등록부」

1-4. 지역별 독거노인인구(계속)

(단위: 명, %)

구분	독거노인 (65세이상, 1인가구)		성별			
			남자		여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3,753**	**100.0**	**1,183**	**31.5**	**2,570**	**68.5**
중부	1,467	100.0	497	33.9	970	66.1
압해읍	477	100.0	176	36.9	301	63.1
자은면	248	100.0	89	35.9	159	64.1
안좌면	347	100.0	110	31.7	237	68.3
팔금면	149	100.0	46	30.9	103	69.1
암태면	246	100.0	76	30.9	170	69.1
북부	968	100.0	294	30.4	674	69.6
지도읍	513	100.0	152	29.6	361	70.4
증도면	204	100.0	70	34.3	134	65.7
임자면	251	100.0	72	28.7	179	71.3
서부	832	100.0	235	28.2	597	71.8
비금면	331	100.0	93	28.1	238	71.9
도초면	255	100.0	66	25.9	189	74.1
흑산면	246	100.0	76	30.9	170	69.1
남부	486	100.0	157	32.3	329	67.7
하의면	181	100.0	57	31.5	124	68.5
신의면	116	100.0	35	30.2	81	69.8
장산면	189	100.0	65	34.4	124	65.6

자료: 통계청「가구통계등록부」

1-5. 가구유형별 노인가구

(단위: 명, %)

구분	노인가구(65세 이상) 일반가구		친족가구		비친족가구		1인 가구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8,614**	**100.0**	**4,692**	**54.5**	**169**	**2.0**	**3,753**	**43.6**
남자	5,106	100.0	3,835	75.1	88	1.7	1,183	23.2
여자	3,508	100.0	857	24.4	81	2.3	2,570	73.3
중부	3,412	100.0	1,877	55.0	68	2.0	1,467	43.0
북부	2,138	100.0	1,134	53.0	36	1.7	968	45.3
서부	1,981	100.0	1,106	55.8	43	2.2	832	42.0
남부	1,083	100.0	575	53.1	22	2.0	486	44.9
65~69세	2,010	100.0	1,229	61.1	54	2.7	727	36.2
70~74세	1,786	100.0	1,108	62.0	35	2.0	643	36.0
75~79세	1,777	100.0	1,009	56.8	31	1.7	737	41.5
80세 이상	3,041	100.0	1,346	44.3	49	1.6	1,646	54.1

자료: 통계청「가구통계등록부」
주1) 2023.11.1. 일반가구 가구주 기준

1-6. 거처종류별 노인가구

(단위: 가구, %)

구분	일반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17,055**	**100.0**	**15,604**	**91.5**	**84**	**0.5**	**56**	**0.3**
남자	11,450	100.0	10,431	91.1	45	0.4	35	0.3
여자	5,605	100.0	5,173	92.3	39	0.7	21	0.4
중부	6,383	100.0	6,006	94.1	-	-	20	0.3
북부	4,295	100.0	3,814	88.8	84	2.0	36	0.8
서부	4,234	100.0	3,817	90.2	-	-	-	-
남부	2,143	100.0	1,967	91.8	-	-	-	-
19세 이하	11	100.0	8	72.7	-	-	-	-
20~29세	352	100.0	258	73.3	6	1.7	12	3.4
30~39세	788	100.0	587	74.5	22	2.8	7	0.9
40~49세	1,672	100.0	1,395	83.4	19	1.1	16	1.0
50~59세	3,251	100.0	2,839	87.3	21	0.6	16	0.5
60세 이상	10,981	100.0	10,517	95.8	16	0.1	5	0.0

구분	일반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노인 (65세 이상)	**8,614**	**100.0**	**8,333**	**96.7**	**7**	**0.1**	*****	*****
남자	5,106	100.0	4,917	96.3	*	*	*	*
여자	3,508	100.0	3,416	97.4	*	*	-	-
중부	3,412	100.0	3,327	97.5	-	-	-	-
북부	2,138	100.0	2,047	95.7	7	0.3	2	0.1
서부	1,981	100.0	1,898	95.8	-	-	-	-
남부	1,083	100.0	1,061	98.0	-	-	-	-
65~69세	2,010	100.0	1,903	94.7	*	*	-	-
70~74세	1,786	100.0	1,714	96.0	-	-	*	*
75~79세	1,777	100.0	1,729	97.3	*	*	-	-
80세 이상	3,041	100.0	2,987	98.2	*	*	*	*

자료: 통계청「가구통계등록부」
주1) 2023.11.1. 일반가구 가구주 기준
주2) 기타: 오피스텔,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1-6. 거처종류별 노인가구(계속)

(단위: 가구, %)

구분	다세대주택	구성비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구성비	주택이외 거처	구성비
신안군	**44**	**0.3**	**241**	**1.4**	**1,026**	**6.0**
남자	28	0.2	166	1.4	745	6.5
여자	16	0.3	75	1.3	281	5.0
중부	10	0.2	54	0.8	293	4.6
북부	34	0.8	78	1.8	249	5.8
서부	-	-	93	2.2	324	7.7
남부	-	-	16	0.7	160	7.5
19세 이하	-	-	*	*	*	*
20~29세	*	*	*	*	*	*
30~39세	7	0.9	17	2.2	148	18.8
40~49세	9	0.5	30	1.8	203	12.1
50~59세	17	0.5	79	2.4	279	8.6
60세 이상	*	*	106	1.0	330	3.0

구분	다세대주택	구성비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구성비	주택이외 거처	구성비
노인 (65세 이상)	*****	*****	**67**	**0.8**	**202**	**2.3**
남자	*	*	40	0.8	140	2.7
여자	*	*	27	0.8	62	1.8
중부	-	-	*	*	72	2.1
북부	*	*	22	1.0	57	2.7
서부	-	-	30	1.5	*	*
남부	-	-	*	*	*	*
65~69세	*	*	19	0.9	84	4.2
70~74세	*	*	18	1.0	52	2.9
75~79세	-	-	19	1.1	27	1.5
80세 이상	*	*	11	0.4	39	1.3

자료: 통계청「가구통계등록부」
주1) 2023.11.1. 일반가구 가구주 기준
주2) 기타: 오피스텔,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1-7. 점유형태별 노인가구

(단위: 가구, %)

구분	일반가구		자기 집		전세 (월세 없음)		보증금 있는 월세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16,742**	**100**	**13,849**	**82.7**	**106**	**0.6**	**108**	**0.6**
19세 이하	12	100	10	83.3	-	-	-	-
20~29세	352	100	74	21.0	6	1.7	-	-
30~39세	870	100	437	50.2	22	2.5	*	*
40~49세	1,755	100	1,053	60.0	29	1.7	49	2.8
50~59세	3,328	100	2,569	77.2	20	0.6	37	1.1
60세 이상	10,425	100	9,706	93.1	29	0.3	*	*

구분	일반가구		자기 집		전세(월세 없음)		보증금 있는 월세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노인 (65세 이상)	**8,287**	**100**	**7,800**	**94.1**	**12**	**0.1**	**6**	**0.1**
65~69세	1,803	100	1,619	89.8	8	0.4	*	*
70~74세	1,903	100	1,789	94.0	*	*	*	*
75~79세	1,981	100	1,889	95.4	*	*	*	*
80세 이상	2,600	100	2,503	96.3	-	-	-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0 인구총조사 표본부문)
주1) 연령대별 일반가구(집단가구 및 외국인가구 제외) 가구주 기준으로 산정

1-7. 점유형태별 노인가구(계속)

(단위: 가구, %)

구분	일반가구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관사, 사택 등)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16,742**	**100**	**300**	**1.8**	**136**	**0.8**	**2,243**	**13.4**
19세 이하	12	100	-	-	-	-	*	*
20~29세	352	100	8	2.3	*	*	*	*
30~39세	870	100	31	3.6	*	*	355	40.8
40~49세	1,755	100	77	4.4	36	2.1	511	29.1
50~59세	3,328	100	96	2.9	41	1.2	565	17.0
60세 이상	10,425	100	88	0.8	34	0.3	549	5.3

구분	일반가구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관사, 사택 등)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노인 (65세 이상)	**8,287**	**100**	**54**	**0.7**	**20**	**0.2**	**395**	**4.8**
65~69세	1,803	100	28	1.6	*	*	140	7.8
70~74세	1,903	100	15	0.8	7	0.4	88	4.6
75~79세	1,981	100	*	*	7	0.4	81	4.1
80세 이상	2,600	100	*	*	*	*	86	3.3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0 인구총조사 표본부문)
주1) 연령대별 일반가구(집단가구 및 외국인가구 제외) 가구주 기준으로 산정

1-8. 전남 시·군별 노인인구 및 가구

(단위: 명)

구분		노인인구 (65세이상)	65~69세	70~74세	74~79세	80세 이상
전국		9,730,411	3,411,009	2,265,989	1,700,214	2,353,199
전라남도		470,874	137,522	103,680	86,242	143,430
	신안군	**14,914**	**3,992**	**3,109**	**2,881**	**4,932**
	목포시	42,446	14,080	10,330	8,206	9,830
	여수시	61,135	20,321	14,899	11,202	14,713
	순천시	50,517	16,986	11,435	8,497	13,599
	나주시	28,254	8,353	6,061	5,129	8,711
	광양시	23,650	8,550	5,304	3,721	6,075
	담양군	15,373	4,240	3,258	2,774	5,101
	곡성군	10,576	2,596	2,104	1,838	4,038
	구례군	9,246	2,324	1,883	1,709	3,330
	고흥군	27,061	6,463	5,835	5,074	9,689
	보성군	15,952	3,837	3,290	2,826	5,999
	화순군	18,185	4,909	3,745	3,328	6,203
	장흥군	13,264	3,360	2,639	2,426	4,839
	강진군	12,505	3,163	2,549	2,358	4,435
	해남군	23,293	6,201	5,006	4,425	7,661
	영암군	15,298	4,246	3,195	2,834	5,023
	무안군	19,000	5,627	4,283	3,610	5,480
	함평군	12,326	3,159	2,450	2,253	4,464
	영광군	16,281	4,351	3,589	3,103	5,238
	장성군	14,143	3,755	3,000	2,622	4,766
	완도군	16,776	4,302	3,535	3,335	5,604
	진도군	10,679	2,707	2,181	2,091	3,700

자료: 통계청「가구통계등록부」
주1) 2023.11.1. 일반가구 가구주 기준

1-8. 전남 시·군별 노인인구 및 가구(계속)

(단위: 가구)

구분		노인가구 (65세이상)	65~69세	70~74세	74~79세	80세 이상
전국		5,655,260	1,954,239	1,345,045	1,032,369	1,323,607
전라남도		282,070	76,538	62,277	54,281	88,974
	신안군	**8,614**	**2,010**	**1,786**	**1,777**	**3,041**
	목포시	26,779	8,700	6,641	5,356	6,082
	여수시	36,177	11,455	9,086	7,027	8,609
	순천시	30,054	9,661	6,915	5,320	8,158
	나주시	16,390	4,495	3,472	3,154	5,269
	광양시	13,994	4,954	3,218	2,290	3,532
	담양군	8,767	2,214	1,797	1,722	3,034
	곡성군	6,391	1,368	1,213	1,187	2,623
	구례군	5,574	1,281	1,124	1,069	2,100
	고흥군	16,867	3,594	3,572	3,285	6,416
	보성군	9,768	2,072	1,947	1,819	3,930
	화순군	11,014	2,687	2,259	2,083	3,985
	장흥군	8,335	1,860	1,615	1,607	3,253
	강진군	7,786	1,783	1,554	1,508	2,941
	해남군	14,190	3,385	3,050	2,756	4,999
	영암군	9,150	2,292	1,901	1,800	3,157
	무안군	10,615	2,875	2,489	2,144	3,107
	함평군	7,128	1,645	1,438	1,374	2,671
	영광군	9,697	2,311	2,088	1,987	3,311
	장성군	7,955	1,933	1,687	1,527	2,808
	완도군	10,107	2,371	2,107	2,117	3,512
	진도군	6,718	1,592	1,318	1,372	2,436

자료: 통계청「가구통계등록부」
주1) 2023.11.1. 일반가구 가구주 기준

1-9. 연도별 사망률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구분	신안군	노인 (65세이상)	65세~69세	70세~74세	75세~79세	80세 이상
2014	1,189.7	3,097.0	1,048.8	1,842.3	3,153.2	7,313.6
2015	1,250.2	3,284.7	1,217.7	1,820.9	2,931.2	7,809.7
2016	1,228.1	3,191.9	968.6	1,583.9	2,783.8	7,690.0
2017	1,240.6	3,260.9	1,165.7	1,754.6	2,715.1	7,258.8
2018	1,391.9	3,467.1	976.8	1,664.4	3,183.9	7,419.1
2019	1,430.0	3,527.2	1,015.7	1,426.6	2,703.1	7,913.9
2020	1,466.8	3,330.8	662.3	1,429.7	3,049.9	7,031.4
2021	1,637.9	3,886.0	954.0	1,788.0	2,778.7	8,348.0
2022	1,726.2	3,998.3	805.9	1,645.8	2,870.2	8,649.3
2023	**1,802.3**	**4,124.1**	**784.1**	**1,470.8**	**3,118.0**	**8,991.3**

자료: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주1) 각 해당연도 1.1. ~ 12.31. 사망신고서 기준
주2) 연령별 사망률 = (해당연령 사망자수 / 해당연령 연앙인구) × 100,000

1-10. 사망원인별 사망률

(단위: 10만명당 명)

구분	전체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악성신생물(암)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신경계통의 질환	
			호흡기 결핵	패혈증		위암	간암	폐암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신안군	**1802.3**	**97.8**	**18.5**	**39.6**	**356.8**	**23.8**	**39.6**	**79.3**	**42.3**	**34.4**	**113.6**	**76.6**
남자	1734.0	93.3	29.5	29.5	461.7	34.4	44.2	127.7	44.2	34.4	83.5	44.2
여자	1881.7	103.0	5.7	51.5	234.5	11.4	34.3	22.9	40.0	34.3	148.7	114.4
19세 이하	123.5	0.0	0.0	0.0	0.0	0.0	0.0	0.0	0.0	0.0	30.9	0.0
20~29세	83.9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0~39세	43.7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40~49세	278.8	0.0	0.0	0.0	50.7	0.0	0.0	0.0	0.0	0.0	25.3	0.0
50~59세	446.3	0.0	0.0	0.0	104.1	0.0	14.9	0.0	0.0	0.0	14.9	0.0
60세 이상	2409.8	140.6	26.6	57.0	478.9	34.2	53.2	114.0	60.8	49.4	152.0	110.2

구분	전체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악성신생물(암)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신경계통의 질환	
			호흡기 결핵	패혈증		위암	간암	폐암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노인 (65세 이상)	**2791.8**	**165.0**	**32.1**	**68.8**	**540.9**	**41.3**	**59.6**	**123.8**	**64.2**	**50.4**	**183.4**	**132.9**
남자	3493.8	213.9	71.3	71.3	974.5	83.2	83.2	273.3	83.2	59.4	166.4	107.0
여자	2350.9	134.3	7.5	67.2	268.7	14.9	44.8	29.9	52.2	44.8	194.0	149.3
65~69세	784.1	0.0	0.0	0.0	522.7	52.3	78.4	130.7	26.1	0.0	0.0	0.0
70~74세	1470.8	0.0	0.0	0.0	351.7	0.0	63.9	95.9	32.0	32.0	63.9	0.0
75~79세	3118.0	173.2	69.3	34.6	935.4	34.6	34.6	207.9	69.3	69.3	207.9	34.6
80세 이상	3699.7	258.9	41.8	116.9	501.1	50.1	58.5	108.6	83.5	66.8	267.2	233.8

자료: 통계청「사망원인통계」

주1) 발췌코드: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A00-B99), 호흡기결핵(A15-A16), 패혈증(A40-A41), 악성신생물(암)(C00-C97), 위암(C16), 간암(C22), 폐암(C33-C34),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E00-E88), 당뇨병(E10-E14), 신경계통의 질환(G00-G98), 알츠하이머병(G30), 순환계통의 질환 (I00-I99), 고혈압성질환(I10-I13), 심장질환(I20-I51), 뇌혈관질환(I60-I69), 호흡계통의 질환(J00-J98), 폐렴(J12-J18), 만성 하기도 질환(J40-J47), 소화계통의 질환(K00-K92), 간질환(K70-K76),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V01-Y89), 운수사고(V01-V99), 고의적 자해(자살)(X60-X84)

1-10. 사망원인별 사망률(계속)

(단위: 10만명당 명)

구분	순환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계통의 질환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고혈압성 질환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만성 하기도 질환		간 질환		운수 사고	고의적 자해 (자살)
신안군	**330.3**	**21.1**	**182.3**	**111.0**	**298.6**	**187.6**	**60.8**	**81.9**	**34.4**	**132.1**	**26.4**	**42.3**
남자	270.2	9.8	162.1	93.3	284.9	147.4	68.8	88.4	54.0	162.1	34.4	58.9
여자	400.4	34.3	205.9	131.5	314.6	234.5	51.5	74.4	11.4	97.2	17.2	22.9
19세 이하	30.9	0.0	30.9	0.0	0.0	0.0	0.0	0.0	0.0	30.9	0.0	0.0
20~29세	0.0	0.0	0.0	0.0	0.0	0.0	0.0	0.0	0.0	83.9	42.0	0.0
30~39세	0.0	0.0	0.0	0.0	0.0	0.0	0.0	43.7	43.7	0.0	0.0	0.0
40~49세	0.0	0.0	0.0	0.0	25.3	0.0	0.0	25.3	25.3	101.4	25.3	50.7
50~59세	133.9	14.9	44.6	59.5	0.0	0.0	0.0	59.5	44.6	89.3	29.8	44.6
60세 이상	437.1	26.6	247.1	144.4	425.7	269.9	87.4	95.0	30.4	140.6	22.8	41.8

구분	순환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계통의 질환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고혈압성 질환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만성 하기도 질환		간 질환		운수 사고	고의적 자해 (자살)
노인 (65세 이상)	**508.8**	**32.1**	**288.8**	**165.0**	**508.8**	**325.5**	**105.4**	**105.4**	**27.5**	**142.1**	**18.3**	**41.3**
남자	522.9	11.9	320.9	190.1	665.5	356.5	166.4	118.8	47.5	213.9	35.7	71.3
여자	500.0	44.8	268.7	149.3	410.5	306.0	67.2	97.0	14.9	97.0	7.5	22.4
65~69세	26.1	26.1	0.0	0.0	78.4	26.1	26.1	0.0	0.0	78.4	0.0	26.1
70~74세	287.8	0.0	159.9	127.9	191.8	127.9	0.0	63.9	0.0	159.9	95.9	32.0
75~79세	415.7	0.0	346.4	69.3	519.7	381.1	138.6	173.2	138.6	346.4	34.6	69.3
80세 이상	743.3	50.1	400.9	250.5	726.6	459.3	150.3	133.6	16.7	108.6	0.0	41.8

자료: 통계청「사망원인통계」

주1) 발췌코드: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A00-B99), 호흡기결핵(A15-A16), 패혈증(A40-A41), 악성신생물(암)(C00-C97), 위암(C16), 간암(C22), 폐암(C33-C34),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E00-E88), 당뇨병(E10-E14), 신경계통의 질환(G00-G98), 알츠하이머병(G30), 순환계통의 질환 (I00-I99), 고혈압성질환(I10-I13), 심장질환(I20-I51), 뇌혈관질환(I60-I69), 호흡계통의 질환(J00-J98), 폐렴(J12-J18), 만성 하기도 질환(J40-J47), 소화계통의 질환(K00-K92), 간질환(K70-K76),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V01-Y89), 운수사고(V01-V99), 고의적 자해(자살)(X60-X84)

1-11. 연도별 순이동

(단위: 명)

순이동	신안군 전체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노인 65세이상
2019	**-600**	**-101**	**-331**	**-124**	**-29**	**95**	**-110**	**-97**
2020	-902	-155	-415	-251	-45	79	-115	-123
2021	-46	-102	-304	-88	72	234	142	-4
2022	238	-24	-129	-18	94	205	110	3
2023	749	129	-35	70	185	264	136	0

(단위: %)

순이동률	신안군 전체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노인 65세이상
2019	**-1.5**	**-2.5**	**-10.1**	**-4.0**	**-0.6**	**1.3**	**-0.5**	**-0.5**
2020	-2.3	-4.1	-14.1	-8.9	-1.0	1.1	-0.5	-0.6
2021	-0.1	-2.9	-11.5	-3.5	1.7	3.4	0.6	0.0
2022	0.6	-0.7	-5.2	-0.8	2.3	3.0	0.4	0.0
2023	2.0	4.0	-1.5	3.1	4.7	3.9	0.5	0.0

자료: 통계청「국내인구이동통계」
주1) 순이동 = 총전입-총전출
주2) 순이동률 = (순이동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
주3) 주민등록연앙인구: 각 해당연도 7.1. 기준 주민등록인구

1-12. 전입인구

(단위: 명, %)

구분	주민등록인구	전입이동(총전입)		시·도내 전입		시·군내 이동		시·군간 전입		시·도간 전입		전입인구비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38,037**	**3,896**	**100.0**	**2,408**	**61.8**	**469**	**12.0**	**1,939**	**49.8**	**1,488**	**38.2**	**10.2**
남자	20,514	2,243	100.0	1,343	59.9	253	11.3	1,090	48.6	900	40.1	10.9
여자	17,523	1,653	100.0	1,065	64.4	216	13.1	849	51.4	588	35.6	9.4
중부	14,308	1,364	100.0	898	65.8	160	11.7	738	54.1	466	34.2	9.5
북부	9,567	1,061	100.0	549	51.7	123	11.6	426	40.2	512	48.3	11.1
서부	9,570	1,053	100.0	660	62.7	139	13.2	521	49.5	393	37.3	11.0
남부	4,592	418	100.0	301	72.0	47	11.2	254	60.8	117	28.0	9.1
19세 이하	3,239	538	100.0	423	78.6	94	17.5	329	61.2	115	21.4	16.6
20~29세	2,386	530	100.0	276	52.1	36	6.8	240	45.3	254	47.9	22.2
30~39세	2,287	502	100.0	338	67.3	66	13.1	272	54.2	164	32.7	22.0
40~49세	3,941	635	100.0	435	68.5	85	13.4	350	55.1	200	31.5	16.1
50~59세	6,745	846	100.0	499	59.0	113	13.4	386	45.6	347	41.0	12.5
60세 이상	19,439	845	100.0	437	51.7	75	8.9	362	42.8	408	48.3	4.3

구분	주민등록인구	전입이동(총전입)		시·도내 전입		시·군내 이동		시·군간전입		시·도간전입		전입인구비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노인(65세 이상)	**14,914**	**448**	**100.0**	**241**	**53.8**	**43**	**9.6**	**198**	**44.2**	**207**	**46.2**	**3.0**
남자	6,564	238	100.0	115	48.3	20	8.4	95	39.9	123	51.7	3.6
여자	8,350	210	100.0	126	60.0	23	11.0	103	49.0	84	40.0	2.5
중부	5,876	190	100.0	114	60.0	18	9.5	96	50.5	76	40.0	3.2
북부	3,694	108	100.0	50	46.3	12	11.1	38	35.2	58	53.7	2.9
서부	3,516	101	100.0	53	52.5	*	*	*	*	48	47.5	2.9
남부	1,828	49	100.0	24	49.0	*	*	*	*	25	51.0	2.7
65~69세	3,992	215	100.0	104	48.4	16	7.4	88	40.9	111	51.6	5.4
70~74세	3,109	105	100.0	53	50.5	11	10.5	42	40.0	52	49.5	3.4
75~79세	2,881	48	100.0	28	58.3	7	14.6	21	43.8	20	41.7	1.7
80세 이상	4,932	80	100.0	56	70.0	9	11.3	47	58.8	24	30.0	1.6

자료: 통계청「국내인구이동통계」
주1) 2023.1.1. ~ 12.31.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기준 전입인구(외국인제외)
주2) 시·도내 전입: 전라남도 내에서 신안군으로 전입
주3) 시·군내 이동: 신안군 내에서 읍면동을 달리한 이동
주4) 시·군간 전입: 전라남도 내 타 시·군에서 신안군으로 전입
주5) 시·도간 전입: 전라남도 외 타 시·도에서 신안군으로 전입
주6) 전입인구 비율 = (총전입 / 주민등록인구) × 100(%)

1-13. 전입사유

(단위: 명, %)

구분	전입인구		직업		가족		주택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3,896**	**100.0**	**1,495**	**38.4**	**1,246**	**32.0**	**356**	**9.1**
남자	2,243	100.0	1,007	44.9	581	25.9	209	9.3
여자	1,653	100.0	488	29.5	665	40.2	147	8.9
중부	1,364	100.0	427	31.3	513	37.6	180	13.2
북부	1,061	100.0	355	33.5	333	31.4	118	11.1
서부	1,053	100.0	505	48.0	282	26.8	38	3.6
남부	418	100.0	208	49.8	118	28.2	20	4.8
19세 이하	538	100.0	121	22.5	259	48.1	22	4.1
20~29세	530	100.0	240	45.3	196	37.0	25	4.7
30~39세	502	100.0	266	53.0	146	29.1	20	4.0
40~49세	635	100.0	307	48.3	168	26.5	39	6.1
50~59세	846	100.0	361	42.7	214	25.3	95	11.2
60세 이상	845	100.0	200	23.7	263	31.1	155	18.3

구분	전입인구		직업		가족		주택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노인(65세 이상)	**448**	**100.0**	**78**	**17.4**	**159**	**35.5**	**86**	**19.2**
남자	238	100.0	52	21.8	66	27.7	46	19.3
여자	210	100.0	26	12.4	93	44.3	40	19.0
중부	190	100.0	35	18.4	80	42.1	44	23.2
북부	108	100.0	15	13.9	39	36.1	25	23.1
서부	101	100.0	19	18.8	28	27.7	10	9.9
남부	49	100.0	9	18.4	12	24.5	7	14.3
65~69세	215	100.0	45	20.9	64	29.8	36	16.7
70~74세	105	100.0	18	17.1	39	37.1	23	21.9
75~79세	48	100.0	11	22.9	14	29.2	12	25.0
80세 이상	80	100.0	4	5.0	42	52.5	15	18.8

자료: 통계청「국내인구이동통계」
주1) 2023.1.1. ~ 12.31.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기준 전입인구(외국인제외)

1-13. 전입사유(계속)

(단위: 명, %)

구분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97**	**2.5**	**139**	**3.6**	**229**	**5.9**	**334**	**8.6**
남자	49	2.2	80	3.6	122	5.4	195	8.7
여자	48	2.9	59	3.6	107	6.5	139	8.4
중부	34	2.5	60	4.4	89	6.5	61	4.5
북부	*	*	*	*	59	5.6	150	14.1
서부	41	3.9	44	4.2	57	5.4	86	8.2
남부	*	*	*	*	24	5.7	37	8.9
19세 이하	72	13.4	9	1.7	24	4.5	31	5.8
20~29세	*	*	*	*	16	3.0	37	7.0
30~39세	*	*	*	*	13	2.6	43	8.6
40~49세	11	1.7	19	3.0	37	5.8	54	8.5
50~59세	7	0.8	29	3.4	64	7.6	76	9.0
60세 이상	-	-	59	7.0	75	8.9	93	11.0

구분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노인(65세 이상)	**-**	**-**	**33**	**7.4**	**43**	**9.6**	**49**	**10.9**
남자	-	-	19	8.0	25	10.5	30	12.6
여자	-	-	14	6.7	18	8.6	19	9.0
중부	-	-	11	5.8	14	7.4	6	3.2
북부	-	-	*	*	*	*	22	20.4
서부	-	-	16	15.8	16	15.8	12	11.9
남부	-	-	*	*	*	*	9	18.4
65~69세	-	-	21	9.8	24	11.2	25	11.6
70~74세	-	-	6	5.7	8	7.6	11	10.5
75~79세	-	-	*	*	5	10.4	*	*
80세 이상	-	-	*	*	6	7.5	*	*

자료: 통계청「국내인구이동통계」
주1) 2023.1.1. ~ 12.31.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기준 전입인구(외국인제외)

1-14. 전출인구

(단위: 명, %)

구분	주민등록인구	전출이동(총전입)		시·도내 전출		시·군내 이동		시·군간 전출		시·도간 전출		전출인구비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38,037**	**3,147**	**100.0**	**1,984**	**63.0**	**469**	**14.9**	**1,515**	**48.1**	**1,163**	**37.0**	**8.3**
남자	20,514	1,765	100.0	1,084	61.4	253	14.3	831	47.1	681	38.6	8.6
여자	17,523	1,382	100.0	900	65.1	216	15.6	684	49.5	482	34.9	7.9
중부	14,308	1,069	100.0	671	62.8	164	15.3	507	47.4	398	37.2	7.5
북부	9,567	698	100.0	365	52.3	84	12.0	281	40.3	333	47.7	7.3
서부	9,570	958	100.0	650	67.8	155	16.2	495	51.7	308	32.2	10.0
남부	4,592	422	100.0	298	70.6	66	15.6	232	55.0	124	29.4	9.2
19세 이하	3,239	409	100.0	303	74.1	94	23.0	209	51.1	106	25.9	12.6
20~29세	2,386	565	100.0	268	47.4	36	6.4	232	41.1	297	52.6	23.7
30~39세	2,287	432	100.0	309	71.5	66	15.3	243	56.3	123	28.5	18.9
40~49세	3,941	450	100.0	328	72.9	85	18.9	243	54.0	122	27.1	11.4
50~59세	6,745	582	100.0	368	63.2	113	19.4	255	43.8	214	36.8	8.6
60세 이상	19,439	709	100.0	408	57.5	75	10.6	333	47.0	301	42.5	3.6

구분	주민등록인구	전출이동(총전입)		시·도내 전출		시·군내 이동		시·군간 전출		시·도간 전출		전출인구비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노인(65세 이상)	**14,914**	**448**	**100.0**	**258**	**57.6**	**43**	**9.6**	**215**	**48.0**	**190**	**42.4**	**3.0**
남자	6,564	232	100.0	134	57.8	20	8.6	114	49.1	98	42.2	3.5
여자	8,350	216	100.0	124	57.4	23	10.6	101	46.8	92	42.6	2.6
중부	5,876	189	100.0	106	56.1	18	9.5	88	46.6	83	43.9	3.2
북부	3,694	98	100.0	47	48.0	9	9.2	38	38.8	51	52.0	2.7
서부	3,516	113	100.0	67	59.3	11	9.7	56	49.6	46	40.7	3.2
남부	1,828	48	100.0	38	79.2	5	10.4	33	68.8	10	20.8	2.6
65~69세	3,992	160	100.0	95	59.4	16	10.0	79	49.4	65	40.6	4.0
70~74세	3,109	94	100.0	64	68.1	11	11.7	53	56.4	30	31.9	3.0
75~79세	2,881	53	100.0	30	56.6	7	13.2	23	43.4	23	43.4	1.8
80세 이상	4,932	141	100.0	69	48.9	9	6.4	60	42.6	72	51.1	2.9

자료: 통계청「국내인구이동통계」
주1) 2023.1.1. ~ 12.31.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기준 전출인구(외국인제외)
주2) 시·도내 전출: 신안군에서 전라남도로 전출
주3) 시·군내 이동: 신안군 내에서 읍면동을 달리한 이동
주4) 시·군간 전출: 신안군에서 전라남도 내 타 시·군으로 전출
주5) 시·도간 전출: 신안군에서 전라남도 외 타 시·도로 전출
주6) 전출인구 비율 = (총전출 / 주민등록인구) × 100(%)

1-15. 전출사유

(단위: 명, %)

구분	전출인구		직업		가족		주택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3,147**	**100.0**	**1,106**	**35.1**	**914**	**29.0**	**401**	**12.7**
남자	1,765	100.0	683	38.7	493	27.9	225	12.7
여자	1,382	100.0	423	30.6	421	30.5	176	12.7
중부	1,069	100.0	338	31.6	316	29.6	138	12.9
북부	698	100.0	227	32.5	184	26.4	122	17.5
서부	958	100.0	377	39.4	272	28.4	101	10.5
남부	422	100.0	164	38.9	142	33.6	40	9.5
19세 이하	409	100.0	61	14.9	142	34.7	34	8.3
20~29세	565	100.0	284	50.3	101	17.9	53	9.4
30~39세	432	100.0	183	42.4	116	26.9	58	13.4
40~49세	450	100.0	196	43.6	126	28.0	56	12.4
50~59세	582	100.0	239	41.1	173	29.7	82	14.1
60세 이상	709	100.0	143	20.2	256	36.1	118	16.6

구분	전출인구		직업		가족		주택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노인(65세 이상)	**448**	**100.0**	**61**	**13.6**	**171**	**38.2**	**78**	**17.4**
남자	232	100.0	36	15.5	90	38.8	43	18.5
여자	216	100.0	25	11.6	81	37.5	35	16.2
중부	189	100.0	23	12.2	80	42.3	27	14.3
북부	98	100.0	13	13.3	37	37.8	21	21.4
서부	113	100.0	20	17.7	35	31.0	18	15.9
남부	48	100.0	5	10.4	19	39.6	12	25.0
65~69세	160	100.0	38	23.8	55	34.4	23	14.4
70~74세	94	100.0	15	16.0	34	36.2	24	25.5
75~79세	53	100.0	5	9.4	21	39.6	12	22.6
80세 이상	141	100.0	3	2.1	61	43.3	19	13.5

자료: 통계청「국내인구이동통계」
주1) 2023.1.1. ~ 12.31.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기준 전출인구(외국인제외)

1-15. 전출사유(계속)

(단위: 명, %)

구분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237**	**7.5**	**137**	**4.4**	**51**	**1.6**	**301**	**9.6**
남자	116	6.6	62	3.5	16	0.9	170	9.6
여자	121	8.8	75	5.4	35	2.5	131	9.5
중부	88	8.2	53	5.0	19	1.8	117	10.9
북부	58	8.3	29	4.2	6	0.9	72	10.3
서부	68	7.1	36	3.8	21	2.2	83	8.7
남부	23	5.5	19	4.5	5	1.2	29	6.9
19세 이하	131	32.0	13	3.2	*	*	25	6.1
20~29세	57	10.1	26	4.6	*	*	43	7.6
30~39세	14	3.2	17	3.9	*	*	40	9.3
40~49세	26	5.8	11	2.4	*	*	31	6.9
50~59세	*	*	15	2.6	*	*	61	10.5
60세 이상	*	*	55	7.8	*	*	101	14.2

구분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노인(65세 이상)	**2**	**0.4**	**43**	**9.6**	**28**	**6.3**	**65**	**14.5**
남자	*	*	18	7.8	10	4.3	35	15.1
여자	*	*	25	11.6	18	8.3	30	13.9
중부	-	-	20	10.6	10	5.3	29	15.3
북부	*	*	7	7.1	*	*	16	16.3
서부	-	-	10	8.8	12	10.6	18	15.9
남부	*	*	6	12.5	*	*	2	4.2
65~69세	*	*	11	6.9	7	4.4	24	15.0
70~74세	-	-	11	11.7	*	*	*	*
75~79세	-	-	5	9.4	*	*	6	11.3
80세 이상	-	-	16	11.3	14	9.9	28	19.9

자료: 통계청「국내인구이동통계」
주1) 2023.1.1. ~ 12.31.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기준 전출인구(외국인제외)

1-16. 연도별 전입인구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전입인구		시·군내 전입[1]		시·군간 전입[2]		시·도간 전입		전입인구 비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19년	40,274	3,646	100.0	449	12.3	1,783	48.9	1,414	38.8	9.1
2020년	38,938	3,620	100.0	459	12.7	1,771	48.9	1,390	38.4	9.3
2021년	38,217	3,978	100.0	386	9.7	2,017	50.7	1,575	39.6	10.4
2022년	37,858	3,656	100.0	399	10.9	1,802	49.3	1,455	39.8	9.7
2023년	**38,037**	**3,896**	**100.0**	**469**	**12.0**	**1,939**	**49.8**	**1,488**	**38.2**	**10.2**

구분	노인 (65세이상)	전입인구		전입인구						전입인구 비율
				시·군내 전입[1]		시·군간 전입[2]		시·도간 전입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19년	14,072	401	100.0	32	8.0	177	44.1	192	47.9	2.8
2020년	14,291	400	100.0	35	8.8	158	39.5	207	51.8	2.8
2021년	14,411	476	100.0	41	8.6	182	38.2	253	53.2	3.3
2022년	14,655	425	100.0	29	6.8	185	43.5	211	49.6	2.9
2023년	**14,914**	**448**	**100.0**	**43**	**9.6**	**198**	**44.2**	**207**	**46.2**	**3.0**

자료: 통계청「국내인구이동통계」
주1) 2023. 1. 1. ~ 2023. 12. 31.(1년간)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기준 전입인구 산정(외국인, 동일 행정 읍면동 전입 제외)
1) 시군구내 전입: 이동전후의 시군구는 같고 행정 읍면동이 다른 전입
2) 시군구간 전입: 이동전후의 시군구가 다른 전입

1-17. 연도별 전출인구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전출인구		시군내 전출[1]		시군간 전출[2]		시도간 전출		전출인구 비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19년	40,274	4,246	100.0	449	10.6	2,166	51.0	1,631	38.4	10.5
2020년	38,938	4,522	100.0	459	10.2	2,435	53.8	1,628	36.0	11.6
2021년	38,217	4,024	100.0	386	9.6	2,119	52.7	1,519	37.7	10.5
2022년	37,858	3,418	100.0	399	11.7	1,777	52.0	1,242	36.3	9.0
2023년	**38,037**	**3,147**	**100.0**	**469**	**14.9**	**1,515**	**48.1**	**1,163**	**37.0**	**8.3**

구분	노인 (65세이상)	전출인구		시군내 전출1)		시군간 전출2)		시도간 전출		전출인구 비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19년	14,072	498	100.0	32	6.4	235	47.2	231	46.4	3.5
2020년	14,291	523	100.0	35	6.7	257	49.1	231	44.2	3.7
2021년	14,411	480	100.0	41	8.5	199	41.5	240	50.0	3.3
2022년	14,655	422	100.0	29	6.9	189	44.8	204	48.3	2.9
2023년	**14,914**	**448**	**100.0**	**43**	**9.6**	**215**	**48.0**	**190**	**42.4**	**3.0**

자료: 통계청「국내인구이동통계」
주1) 2023. 1. 1. ~ 2023. 12. 31.(1년간)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기준 전출인구 산정(외국인, 동일 행정 읍면동 전출 제외)
1) 시군구내 전출: 이동전후의 시군구는 같고 행정 읍면동이 다른 전출
2) 시군구간 전출: 이동전후의 시군구가 다른 전출

1-18. 가구원수별 노인가구

(단위: 가구, %)

구분	노인가구(65세 이상) 일반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8,614**	**100.0**	**3,753**	**43.6**	**3,588**	**41.7**	**1,273**	**14.8**
남자	5,106	100.0	1,183	23.2	2,885	56.5	1,038	20.3
여자	3,508	100.0	2,570	73.3	703	20.0	235	6.7
중부	3,412	100.0	1,467	43.0	1,455	42.6	490	14.4
북부	2,138	100.0	968	45.3	866	40.5	304	14.2
서부	1,981	100.0	832	42.0	838	42.3	311	15.7
남부	1,083	100.0	486	44.9	429	39.6	168	15.5
65~69세	2,010	100.0	727	36.2	897	44.6	386	19.2
70~74세	1,786	100.0	643	36.0	843	47.2	300	16.8
75~79세	1,777	100.0	737	41.5	771	43.4	269	15.1
80세 이상	3,041	100.0	1,646	54.1	1,077	35.4	318	10.5

자료: 통계청「가구 DB」
주1) 성별, 연령대별 일반가구(집단가구 및 외국인가구 제외) 가구주 기준으로 산정

2024년 신안군 노인복지통계

2 경제

2-1. 가구 월평균 소득

2-2. 개인소유 주택 현황

2-3. 거주지 기준 주택 소유 현황

2-4. 자동차 소유

2-1. 가구 월평균 소득

(단위: %)

구분	계	50만 미만	50만~100만 미만	100만~200만 미만	200만~300만 미만	300만~400만 미만	400만~500만 미만	500만~600만 미만	600만~700만 미만	700만~800만 미만	800만 이상
신안군	**100.0**	**6.0**	**15.2**	**13.7**	**17.9**	**16.9**	**7.3**	**6.5**	**4.4**	**2.8**	**9.2**
남자	100.0	1.6	6.7	12.1	21.4	19.6	9.2	8.3	5.9	3.6	11.6
여자	100.0	17.8	38.2	17.9	8.6	9.7	2.2	1.5	0.7	0.7	2.7
중부	100.0	9.5	15.6	14.0	13.7	14.1	6.3	10.7	4.8	2.2	9.1
북부	100.0	4.2	14.7	19.0	30.0	16.0	6.3	2.6	2.1	0.5	4.5
서부	100.0	2.7	15.6	8.3	18.2	23.7	10.1	5.3	5.3	5.3	5.5
남부	100.0	5.9	14.8	13.9	8.0	13.5	6.5	4.0	5.7	3.9	24.1
19세 이하	10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20~29세	100.0	0.0	0.0	0.0	73.6	26.4	0.0	0.0	0.0	0.0	0.0
30~39세	100.0	0.0	0.0	0.0	30.2	29.3	0.0	3.6	16.7	0.0	20.3
40~49세	100.0	0.0	0.0	3.8	12.0	44.7	3.4	12.7	3.2	7.8	12.5
50~59세	100.0	0.0	2.1	4.2	20.1	18.2	14.7	9.2	10.2	5.6	15.9
60세 이상	100.0	9.7	23.8	20.1	16.1	9.7	6.4	5.0	1.9	1.4	5.9
중졸 이하	100.0	10.8	27.0	20.4	16.3	9.2	4.9	2.5	2.0	0.6	6.4
고졸	100.0	0.8	2.2	8.5	17.6	22.6	13.6	11.9	4.8	6.3	11.6
대졸 이상	100.0	0.0	0.6	1.6	23.8	31.4	4.1	9.7	11.4	3.8	13.8

구분	계	50만 미만	50만 이상 100만 미만	100만 이상 200만 미만	200만 이상 300만 미만	300만 이상 400만 미만	400만 이상 500만 미만	500만 이상 600만 미만	600만 이상 700만 미만	700만 이상 800만 미만	800만 이상
노인 (65세 이상)	**100.0**	**11.8**	**28.9**	**21.5**	**15.3**	**7.2**	**4.3**	**3.9**	**1.5**	**1.5**	**4.1**
남자	100.0	3.7	15.9	24.8	22.3	11.5	5.7	6.1	2.0	2.3	5.8
여자	100.0	23.0	46.9	17.0	5.5	1.4	2.3	0.8	0.9	0.4	1.8
중부	100.0	16.7	27.7	18.2	14.3	7.6	4.0	4.9	2.1	2.1	2.5
북부	100.0	8.5	28.5	30.1	19.9	2.4	4.1	2.7	0.0	1.1	2.8
서부	100.0	6.3	32.9	18.5	17.0	12.6	7.4	4.4	0.0	0.0	0.9
남부	100.0	12.4	26.9	21.0	6.9	6.1	0.0	2.1	5.1	3.1	16.4
65~69세	100.0	3.7	11.1	12.8	27.3	11.7	7.2	8.7	2.9	3.7	10.9
70~74세	100.0	5.6	21.4	30.3	14.6	12.2	5.8	3.3	1.1	2.0	3.8
75~80세	100.0	7.0	31.4	23.9	18.6	5.7	5.5	4.0	2.9	0.0	0.9
80세 이상	100.0	24.2	45.0	21.1	5.1	1.8	0.5	0.7	0.0	0.5	1.2
중졸 이하	100.0	13.3	32.7	23.5	14.1	6.2	4.1	1.5	1.2	0.8	2.8
고졸	100.0	4.2	7.1	10.1	23.7	11.2	4.9	15.6	4.2	7.1	12.0
대졸 이상	100.0	0.0	8.1	10.0	13.0	24.8	8.0	27.6	0.0	0.0	8.7

자료: 신안군「2023년 사회조사」
주1) 2022.9.1. ~ 2023.8.31. 기준

2-2. 개인소유 주택 현황

(단위: 호, %)

구분	개인 소유 주택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기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13,601**	**100.0**	**13,478**	**99.1**	**25**	**0.2**	**98**	**0.7**	**-**	**-**
남성	8,555	100.0	8,494	62.5	10	0.1	51	0.4	-	-
여성	5,046	100.0	4,984	36.6	15	0.1	47	0.3	-	-
중부	4,902	100.0	4,893	36.0	-	-	9	0.1	-	-
북부	3,346	100.0	3,232	23.8	25	0.2	89	0.7	-	-
서부	3,205	100.0	3,205	23.6	-	-	-	-	-	-
남부	2,148	100.0	2,148	15.8	-	-	-	-	-	-
19세 이하	3	100.0	3	0.0	-	-	-	-	-	-
20~29세	52	100.0	49	0.4	1	0.0	2	0.0	-	-
30~39세	184	100.0	180	1.3	-	-	4	0.0	-	-
40~49세	709	100.0	681	5.0	6	0.0	22	0.2	-	-
50~59세	2,095	100.0	2,033	14.9	10	0.1	52	0.4	-	-
60세 이상	10,558	100.0	10,532	77.4	8	0.1	18	0.1	-	-

구분	개인 소유 주택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기타	
		비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노인 (65세 이상)	**8,603**	**100.0**	**8,592**	**99.9**	**3**	**0.0**	**8**	**0.1**	**-**	**-**
남성	4,940	100.0	4,936	36.3	1	0.0	3	0.0	-	-
여성	3,663	100.0	3,656	26.9	2	0.0	5	0.0	-	-
중부	3,074	100.0	3,073	22.6	-	-	1	0.0	-	-
북부	2,040	100.0	2,030	14.9	3	0.0	7	0.1	-	-
서부	2,031	100.0	2,031	14.9	-	-	-	-	-	-
남부	1,458	100.0	1,458	10.7	-	-	-	-	-	-
65~69세	1,941	100.0	1,936	14.2	1	0.0	4	0.0	-	-
70~74세	1,878	100.0	1,876	13.8	-	-	2	0.0	-	-
75~79세	1,832	100.0	1,832	13.5	-	-	-	-	-	-
80세 이상	2,952	100.0	2,948	21.7	2	0.0	2	0.0	-	-

자료: 신안군「재산세자료」
주1) 개인 소유 주택수 이외의 경우는 법인, 국가, 지자체, 종중, 외국인 등이 소유한 주택을 의미
주2) 거주자 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집계됨
주3)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전업농어가주택 포함(창고 제외)
주4) 기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기숙사 제외)

2-3. 거주지 기준 주택 소유 현황

(단위: 명, 호, %)

구분	주택 개인소유자수[1](A)		군내 거주자		개인 소유주택수(B)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체	**14,693**	**100.0**	**10,932**	**100.0**	**22,451**	**100.0**
노인 (65세 이상)	**8,425**	**100.0**	**7,010**	**100.0**	**13,075**	**100.0**
남자	4,761	56.5	3,927	56.0	6,464	49.4
여자	3,664	43.5	3,083	44.0	6,611	50.6
65~69세	2,058	24.4	1,507	21.5	3,184	68.8
70~74세	1,824	21.6	1,497	21.4	2,896	91.0
75~79세	1,706	20.2	1,504	21.5	2,665	92.0
80세 이상	2,837	33.7	2,502	35.7	4,330	162.5

자료: 신안군「재산세자료」
1) 주택 소유자수는 1호 초과 주택을 소유할 경우 중복을 제외하여 집계
주1) 주택소유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집계

2-4. 자동차 소유

(단위: 명, 대, %)

구분	주민등록 인구	자동차 개인소유자	소유 자동차수	개인소유자 1인당 소유자동차수
신안군	**38,037**	**14,167**	**22,075**	**1.56**
남자	20,514	11,083	17,968	1.62
여자	17,523	3,084	4,107	1.33
중부	14,308	5,377	8,492	1.58
북부	9,567	3,643	5,797	1.59
서부	9,570	3,485	5,216	1.50
남부	4,592	1,662	2,570	1.55
19세 이하	3,239	-	-	-
20~29세	2,386	403	467	1.16
30~39세	2,287	1,174	1,667	1.42
40~49세	3,941	2,409	3,938	1.63
50~59세	6,745	3,913	6,687	1.71
60세 이상	19,439	6,268	9,316	1.49

구분	주민등록 인구	자동차 개인소유자	소유 자동차수	개인소유자 1인당 소유자동차수
노인(65세 이상)	**14,914**	**3,853**	**5,360**	**1.39**
남자	6,564	3,253	4,658	1.43
여자	8,350	600	702	1.17
중부	5,876	1,612	2,302	1.43
북부	3,694	984	1,378	1.40
서부	3,516	840	1,123	1.34
남부	1,828	417	557	1.34
65~69세	3,992	1,834	2,766	1.51
70~74세	3,109	1,067	1,467	1.37
75~79세	2,881	626	771	1.23
80세 이상	4,932	326	356	1.09

자료: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신안군「자동차세 자료」
주1) 2023.12.31. 신안군 소재지 기준 자동차 개인소유자 및 소유자동차 수(국가, 법인 등 단체소유자 및 영업용 제외)

2024년 신안군 노인복지통계

3 일자리

3-1. 경제활동인구 현황

3-2. 연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3-3. 가입기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3-4. 연도별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자

3-5. 연도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3-6. 연도별 구직신청건수

3-7. 구직희망 고용형태

3-8. 구직희망 근무지역

3-9. 구직희망 월평균 임금금액

3-10. 연도별 사업자등록 현황

3-11. 연도별 공공일자리 참여 현황

3-12. 일자리 만족도(하는일)

3-13. 일자리 만족도(임금/가구소득)

3-14. 일자리 만족도(근로시간)

3-15. 일자리 만족도(근무환경)

3-1. 경제활동인구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신안군	**29.3**	**23.5**	**80.1**	**23.4**	**80.0**	**5.8**
남자	15.7	13.4	84.8	13.3	84.5	2.4
여자	13.6	10.1	74.7	10.1	74.7	3.4
19세 이하	0.5	0.0	0.0	0.0	0.0	0.5
20~29세	1.1	1.1	92.8	1.1	92.8	0.1
30~39세	1.9	1.8	95.2	1.8	95.2	0.1
40~49세	3.1	2.7	87.0	2.7	87.0	0.4
50~59세	5.5	5.0	91.5	5.0	90.7	0.5
60세 이상	17.3	13.0	75.2	13.0	75.2	4.3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노인(65세 이상)	**13.3**	**9.5**	**71.1**	**9.5**	**71.1**	**3.8**
남자	6.0	4.5	76.0	4.5	76.0	1.4
여자	7.4	5.0	67.1	5.0	67.1	2.4
65~69세	2.8	2.4	86.5	2.4	86.5	0.4
70~74세	3.2	2.6	80.5	2.6	80.5	0.6
75~79세	3.3	2.6	80.1	2.6	80.1	0.6
80세 이상	4.1	1.9	45.8	1.9	45.8	2.2

자료: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주1) 2023년 하반기 기준 전국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에 대한 조사자료로 시군가중치 사용
(군인,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교도소 수감자 등이 제외되므로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2)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와 실업자 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와 실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가사, 육아,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
주3)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주4) (고용률) 취업자/15세 이상 인구*100(%)

3-2. 연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단위: 명, %)

구분	고용보험 피보험자	구성비	노인 (65세 이상)	구성비	65세~69세	구성비	70세~74세	구성비	75~79세	구성비	80세 이상	구성비
2021년	5,341	100.0	410	7.7	274	5.1	83	1.6	42	0.8	11	0.2
2022년	5,754	100.0	604	10.5	361	6.3	137	2.4	75	1.3	31	0.5
2023년	**5,851**	**100.0**	**727**	**12.4**	**445**	**7.6**	**166**	**2.8**	**83**	**1.4**	**33**	**0.6**

자료: 고용노동부「고용보험자료」
주1) 각 해당연도 1. 1. ~ 12. 31.(1년간) 신안군 소재 사업장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산정

3-3. 가입기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단위: 명, %)

구분	노인인구 (65세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	구성비	1년 미만	구성비	1 ~ 3년 미만	구성비	3 ~ 5년 미만	구성비	5 ~ 10년 미만	구성비	10년 이상	구성비
신안군	**727**	**100.0**	**248**	**34.1**	**263**	**36.2**	**91**	**12.5**	**88**	**12.1**	**37**	**5.1**
남자	386	100.0	127	31.8	120	31.6	51	13.4	57	15.0	31	8.2
여자	341	100.0	121	36.6	143	41.2	40	11.5	31	8.9	6	1.7
일반직	611	100.0	221	36.2	216	35.4	73	11.9	64	10.5	37	6.1
계약직	116	100.0	27	23.3	47	40.5	18	15.5	24	20.7	0	0.0
65~69세	445	100.0	134	30.1	168	37.8	67	15.1	59	13.3	17	3.8
70~74세	166	100.0	68	41.0	53	31.9	16	9.6	20	12.0	9	5.4
74~79세	83	100.0	35	42.2	28	33.7	*	*	*	*	*	*
80세 이상	33	100.0	11	33.3	14	42.4	*	*	*	*	*	*

자료: 고용노동부「고용보험자료」
주1) 2023. 12. 31. 신안군 소재 사업장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산정

3-4. 연도별 고용보험 자격 취득 상실자

(단위: 명, %)

구분	자격 취득자(전체)	구성비	노인(65세 이상)	구성비	65~69세	구성비	70~74세	구성비	75~89세	구성비	80세 이상	구성비
2021년	3,747	100.0	406	10.8	242	6.5	109	2.9	43	1.1	12	0.3
2022년	3,965	100.0	441	11.1	266	6.7	108	2.7	48	1.2	19	0.5
2023년	**3,862**	**100.0**	**476**	**12.3**	**266**	**6.9**	**125**	**3.2**	**53**	**1.4**	**32**	**0.8**

구분	자격 상실자(전체)	구성비	노인(65세 이상)	구성비	65~69세	구성비	70~74세	구성비	75~89세	구성비	80세 이상	구성비
2021년	3,404	100.0	446	13.1	250	7.3	131	3.8	47	1.4	18	0.5
2022년	3,569	100.0	353	9.9	233	6.5	78	2.2	32	0.9	10	0.3
2023년	**3,688**	**100.0**	**480**	**13.0**	**261**	**7.1**	**116**	**3.1**	**65**	**1.8**	**38**	**1.0**

자료: 고용노동부「고용보험자료」
주1) 각 해당연도 1. 1. ~ 12. 31.(1년간) 신안군 소재 사업장 기준 자격 취득•상실자 산정

3-5. 연도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단위: 명,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수급인원	수급금액	1인당 수급금액	수급인원	수급금액	1인당 수급금액	수급인원	수급금액	1인당 수급금액
신안군	**390**	**2,892,699**	**7,417**	**333**	**2,279,237**	**6,845**	**321**	**2,449,365**	**7,630**
남자	249	1,852,839	7,441	201	1,382,584	6,879	194	1,529,670	7,885
여자	141	1,039,860	7,375	132	896,653	6,793	127	919,695	7,242
19세 이하	*	3,848	*	*	3,367	*	*	2,401	*
20~29세	*	230,714	*	*	251,061	*	*	199,869	*
30~39세	43	298,162	6,934	28	189,844	6,780	34	238,941	7,028
40~49세	68	508,456	7,477	41	271,691	6,627	39	292,950	7,512
50~59세	108	820,323	7,596	108	725,610	6,719	93	717,698	7,717
60세 이상	128	1,031,197	27,423	117	837,664	18,657	120	997,506	20,783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수급인원	수급금액	1인당 수급금액	수급인원	수급금액	1인당 수급금액	수급인원	수급금액	1인당 수급금액
노인 (65세 이상)	**27**	**220,280**	**8,159**	**18**	**127,944**	**7,108**	**23**	**161,198**	**7,009**
남자	22	179,007	8,137	12	84,056	7,005	16	114,243	7,140
여자	5	41,272	8,254	6	43,888	7,315	7	46,955	6,708
65~69세	*	185,253	*	*	123,734	*	*	146,724	*
70~74세	*	35,027	*	*	4,210	*	*	14,474	*
75~80세	-	-	-	-	-	-	-	-	-
80세 이상	-	-	-	-	-	-	-	-	-

자료: 고용노동부「고용보험자료」
주1) (수급인원) 각 해당연도 1. 1. ~ 12. 31.(1년간) 신안군 소재 사업장 기준 실업급여 수급대상 인원 산정
주2) (수급금액) 각 해당연도 1. 1. ~ 12. 31.(1년간) 신안군 소재 사업장 기준 실업급여 수급 총액 산정
주3) (1인당 수급금액) 수급금액 총액 / 수급인원
주4) 구직급여(상병급여, 연장급여 포함),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 모두 포함

3-6. 연도별 구직신청건수

(단위: 건, %)

구분	구직신청건수		노인 (65세이상)	
		구성비		구성비
2021년	932	100.0	49	5.3
2022년	823	100.0	54	6.6
2023년	**889**	**100.0**	**54**	**6.1**
’21. 1/4	257	100.0	8	3.1
’21. 2/4	223	100.0	10	4.5
’21. 3/4	204	100.0	6	2.9
’21. 4/4	248	100.0	25	10.1
’22. 1/4	279	100.0	22	7.9
’22. 2/4	210	100.0	9	4.3
’22. 3/4	138	100.0	7	5.1
’22. 4/4	196	100.0	16	8.2
’23. 1/4	304	100.0	10	3.3
’23. 2/4	166	100.0	7	4.2
’23. 3/4	202	100.0	14	6.9
’23. 4/4	**217**	**100.0**	**23**	**10.6**

자료: 고용노동부「구직신청자료」
주1) 2023.1.1.~12.31. (1년 간) 구직신청 건수 산정(1명이 해당연도 내에 n건 구직 신청 시 n건으로 산정)

3-7. 구직희망 고용형태

(단위: 건수, %)

구분	구직신청건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시간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시간제)		일용직		관계없음 (일용직포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889**	**100.0**	**330**	**37.1**	**46**	**5.2**	**63**	**7.1**	**30**	**3.4**	**96**	**10.8**	**324**	**36.4**
남자	442	100.0	128	29.0	7	1.6	30	6.8	13	2.9	36	8.1	228	51.6
여자	447	100.0	202	45.2	39	8.7	33	7.4	17	3.8	60	13.4	96	21.5
19세 이하	23	100.0	12	52.2	-	-	-	-	*	*	*	*	6	26.1
20~29세	166	100.0	63	38.0	*	*	12	7.2	*	*	*	*	67	40.4
30~39세	115	100.0	51	44.3	*	*	8	7.0	7	6.1	18	15.7	28	24.3
40~49세	125	100.0	59	47.2	*	*	8	6.4	*	*	14	11.2	28	22.4
50~59세	233	100.0	79	33.9	14	6.0	26	11.2	8	3.4	25	10.7	81	34.8
60세 이상	227	100.0	66	29.1	9	4.0	9	4.0	6	2.6	23	10.1	114	50.2

구분	구직신청건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시간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시간제)		일용직		관계없음 (일용직포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노인 (65세 이상)	**54**	**100.0**	**15**	**28**	*****	*****	*****	*****	*****	*****	**5**	**9.3**	**26**	**48.1**
남자	31	100.0	7	23	-	-	*	*	-	-	*	*	19	61.3
여자	23	100.0	8	35	*	*	*	*	*	*	*	*	7	30.4

자료: 고용노동부「구직신청자료」
주1) 2023.1.1.~12.31. (1년 간) 구직신청건수 산정(1명이 해당연도 내에 n건 구직 신청 시 n건으로 산정)

3-8. 구직희망 근무지역

(단위 : 명, %)

구분	구직신청인원		신안군		전라남도 (광주,신안제외)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기타지역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889**	**100.0**	**449**	**50.5**	**256**	**28.8**	**57**	**6.4**	**20**	**2.2**	**107**	**12.0**
남자	442	100.0	163	36.9	159	36.0	36	8.1	13	2.9	71	16.1
여자	447	100.0	286	64.0	97	21.7	21	4.7	7	1.6	36	8.1
19세 이하	23	100.0	*	*	7	30.4	8	34.8	*	*	-	-
20~29세	166	100.0	*	*	65	39.2	20	12.0	10	6.0	45	27.1
30~39세	115	100.0	52	45.2	41	35.7	*	*	*	*	*	*
40~49세	125	100.0	89	71.2	27	21.6	*	*	-	-	*	*
50~59세	233	100.0	145	62.2	50	21.5	14	6.0	-	-	24	10.3
60세 이상	227	100.0	135	59.5	66	29.1	6	2.6	*	*	18	7.9

구분	구직신청인원		신안군		전라남도 (광주,신안제외)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기타지역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노인 (65세 이상)	**54**	**100.0**	**30**	**55.6**	14	25.9	*	*	-	-	*	*
남자	31	100.0	12	38.7	*	*	*	*	-	-	*	*
여자	23	100.0	18	78.3	*	*	-	-	-	-	*	*

자료: 고용노동부「구직신청자료」
주1) 2023.1.1.~12.31. (1년 간) 구직신청건수 산정(1명이 해당연도 내에 n건 구직 신청 시 n건으로 산정)

3-9. 구직희망 월평균 임금금액

(단위: 건, %)

구분	구직신청건수		100만 미만		100만~150만 미만		150만~200만 미만		200만~250만 미만		250만원 이상		기타(무응답)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889**	**100.0**	*	*	*	*	21	2.4	495	55.7	324	36.4	42	4.7
남자	442	100.0	*	*	*	*	10	2.3	166	37.6	246	55.7	18	4.1
여자	447	100.0	*	*	*	*	11	2.5	329	73.6	78	17.4	24	5.4
19세 이하	23	100.0	-	-	-	-	-	-	17	73.9	*	*	*	*
20~29세	166	100.0	-	-	*	*	*	*	82	49.4	57	34.3	23	13.9
30~39세	115	100.0	*	*	*	*	*	*	55	47.8	50	43.5	*	*
40~49세	125	100.0	-	-	*	*	*	*	64	51.2	50	40.0	6	4.8
50~59세	233	100.0	*	*	-	-	*	*	143	61.4	83	35.6	*	*
60세 이상	227	100.0	*	*	-	-	7	3.1	134	59.0	80	35.2	5	2.2

구분	구직신청건수		100만 미만		100만~150만 미만		150만~200만 미만		200만~250만 미만		250만 이상		기타(무응답)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노인 (65세 이상)	**54**	**100.0**	*	*	-	-	*	*	34	63.0	15	27.8	*	*
남자	31	100.0	-	-	-	-	*	*	17	54.8	*	*	-	-
여자	23	100.0	*	*	-	-	*	*	17	73.9	*	*	*	*

자료: 고용노동부「구직신청자료」
주1) 2023.1.1.~12.31. (1년 간) 구직신청건수 산정(1명이 해당연도 내에 n건 구직 신청 시 n건으로 산정)

3-10. 연도별 사업자등록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사업등록자		노인 (65세 이상)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19	40,274	6,198	100.0	1,510	24.4	570	9.2	474	7.6	312	5.0	154	2.5
2020	38,938	6,339	100.0	1,637	25.8	636	10.0	504	8.0	316	5.0	181	2.9
2021	38,217	6,783	100.0	1,791	26.4	677	10.0	536	7.9	357	5.3	221	3.3
2022	37,858	7,437	100.0	2,036	27.4	775	10.4	581	7.8	421	5.7	259	3.5
2023	**38,037**	**7,736**	**100.0**	**2,249**	**29.1**	**900**	**11.6**	**603**	**7.8**	**462**	**6.0**	**284**	**3.7**

자료: 통계청「기업통계등록부(SBR)」,「인구DB」또는「 지역통계행정DB」
주) 1명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등록한 경우 중복 제외(등록자 기준 집계)

3-11. 연도별 공공일자리 참여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공공일자리 참여		노인일자리		돌봄사업 (아이,노인)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행정 및 공공기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19	40,274	1,376	3.4	1,243	90.3	92	6.7	-	-	41	3.0
2020	38,938	1,708	4.4	1,544	90.4	88	5.2	-	-	76	4.4
2021	38,217	1,834	4.8	1,710	93.2	*	*	*	*	76	4.1
2022	37,858	2,194	5.8	2,101	95.8	*	*	*	*	65	3.0
2023	**38,037**	**2,196**	**5.8**	2,121	96.6	*	*	*	*	46	2.1

자료: 신안군「공공일자리 자료」

3-12. 일자리 만족도(하는 일)

(단위: %)

구분	전체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신안군	**100.0**	**0.7**	**9.2**	**66.6**	**18.3**	**5.3**
남자	100.0	0.5	8.1	68.9	17.3	5.1
여자	100.0	0.9	10.8	63.2	19.6	5.5
중부	100.0	0.6	13.5	65.5	15.3	5.1
북부	100.0	1.5	5.1	66.8	20.9	5.7
서부	100.0	0.0	3.9	70.3	19.7	6.1
남부	100.0	0.5	14.1	63.3	18.5	3.6
19세 이하	100.0	0.0	0.0	100.0	0.0	0.0
20~29세	100.0	0.0	16.8	67.3	11.8	4.1
30~39세	100.0	2.7	6.3	78.0	10.5	2.6
40~49세	100.0	0.0	8.0	64.1	20.8	7.1
50~59세	100.0	1.1	8.6	59.6	24.8	6.0
60세 이상	100.0	0.5	9.2	68.3	17.0	5.1
중졸 이하	100.0	0.8	9.5	68.6	16.4	4.8
고졸	100.0	0.4	10.1	64.4	20.6	4.5
대졸 이상	100.0	1.0	7.0	65.9	18.4	7.7

구분	전체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노인 (65세 이상)	**100.0**	**0.6**	**9.6**	**67.7**	**16.6**	**5.5**
남자	100.0	0.9	7.9	67.7	19.7	3.8
여자	100.0	0.3	11.3	67.6	13.7	7.1
중부	100.0	0.7	12.4	61.1	15.7	10.1
북부	100.0	0.7	7.3	69.2	18.1	4.8
서부	100.0	0.0	1.7	78.2	18.4	1.7
남부	100.0	1.5	20.7	62.1	12.7	3.0
65~69세	100.0	1.2	9.4	66.6	19.2	3.6
70~74세	100.0	0.0	9.5	73.6	12.0	4.9
75~80세	100.0	1.0	14.4	63.0	15.7	5.9
80세 이상	100.0	0.0	5.1	67.0	19.0	9.0
중졸 이하	100.0	0.8	9.7	67.6	15.8	6.3
고졸	100.0	0.0	9.1	68.5	20.6	1.8
대졸 이상	100.0	0.0	10.2	66.6	23.3	0.0

자료: 신안군「2023년 사회조사」
주1) 2022.9.1. ~ 2023.8.31. 기준

3-13. 일자리 만족도(임금/가구소득)

(단위: %)

구분	전체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신안군	**100.0**	**1.5**	**16.8**	**58.5**	**15.7**	**7.5**
남자	100.0	1.4	17.1	58.2	15.9	7.4
여자	100.0	1.6	16.3	59.0	15.3	7.7
중부	100.0	2.1	13.4	63.0	10.8	10.7
북부	100.0	2.3	17.0	54.7	17.8	8.1
서부	100.0	0.6	14.7	66.7	13.5	4.6
남부	100.0	0.5	27.4	42.0	26.5	3.7
19세 이하	100.0	0.0	0.0	0.0	100.0	0.0
20~29세	100.0	0.0	5.8	71.3	3.9	19.0
30~39세	100.0	2.7	31.3	52.8	6.3	6.9
40~49세	100.0	3.3	13.9	58.3	17.2	7.3
50~59세	100.0	1.2	16.7	53.8	21.2	7.2
60세 이상	100.0	1.2	17.4	60.0	15.3	6.1
중졸 이하	100.0	1.5	17.3	61.0	13.8	6.5
고졸	100.0	0.6	16.0	59.7	17.1	6.7
대졸 이상	100.0	3.2	17.3	50.8	17.4	11.3

구분	전체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노인 (65세 이상)	**100.0**	**1.5**	**18.3**	**60.1**	**14.1**	**5.9**
남자	100.0	1.5	21.1	56.5	15.2	5.7
여자	100.0	1.6	15.7	63.6	13.0	6.1
중부	100.0	3.9	15.9	54.0	15.6	10.6
북부	100.0	0.0	15.0	61.6	17.9	5.5
서부	100.0	0.0	13.2	76.8	9.1	0.9
남부	100.0	1.4	38.3	43.5	12.2	4.7
65~69세	100.0	2.1	15.6	60.0	16.4	5.9
70~74세	100.0	0.7	20.6	62.6	11.8	4.3
75~80세	100.0	3.0	21.4	56.0	13.0	6.6
80세 이상	100.0	0.0	16.7	61.6	14.3	7.4
중졸 이하	100.0	1.5	17.6	61.3	13.0	6.5
고졸	100.0	1.7	23.1	52.7	19.0	3.6
대졸 이상	100.0	0.0	18.3	58.4	23.3	0.0

자료: 신안군「2023년 사회조사」
주1) 2022.9.1. ~ 2023.8.31. 기준

3-14. 일자리 만족도(근로시간)

(단위: %)

구분	전체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신안군	**100.0**	**0.9**	**7.4**	**67.5**	**19.4**	**4.8**
남자	100.0	1.0	6.8	69.3	18.0	5.0
여자	100.0	0.8	8.4	64.8	21.3	4.7
중부	100.0	0.2	13.6	65.3	16.3	4.6
북부	100.0	2.5	6.6	63.3	22.2	5.5
서부	100.0	0.6	0.0	74.7	20.6	4.1
남부	100.0	0.5	5.9	68.3	20.0	5.4
19세 이하	100.0	0.0	0.0	100.0	0.0	0.0
20~29세	100.0	0.0	16.8	65.3	9.2	8.6
30~39세	100.0	4.5	4.2	82.4	8.9	0.0
40~49세	100.0	2.0	6.1	60.4	24.5	7.1
50~59세	100.0	0.6	7.6	61.3	25.6	5.0
60세 이상	100.0	0.4	6.7	70.0	18.5	4.4
중졸 이하	100.0	0.5	8.0	69.0	18.5	4.0
고졸	100.0	0.7	8.9	66.0	19.4	5.0
대졸 이상	100.0	2.3	3.5	66.5	21.2	6.5

구분	전체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노인 (65세 이상)	**100.0**	**0.6**	**7.4**	**69.2**	**18.1**	**4.8**
남자	100.0	0.5	6.7	69.8	19.3	3.8
여자	100.0	0.7	8.0	68.6	17.0	5.7
중부	100.0	0.7	11.7	61.2	18.0	8.4
북부	100.0	0.7	7.9	67.0	20.4	4.1
서부	100.0	0.0	0.0	79.3	19.0	1.7
남부	100.0	1.4	8.9	74.0	12.7	3.0
65~69세	100.0	1.2	7.3	67.7	20.7	3.0
70~74세	100.0	0.0	10.7	71.0	14.1	4.2
75~80세	100.0	1.0	8.4	67.2	17.5	5.9
80세 이상	100.0	0.0	2.2	71.3	19.4	7.1
중졸 이하	100.0	0.7	7.4	68.9	17.5	5.4
고졸	100.0	0.0	6.4	71.2	20.6	1.8
대졸 이상	100.0	0.0	10.2	66.6	23.3	0.0

자료: 신안군「2023년 사회조사」
주1) 2022.9.1. ~ 2023.8.31. 기준

3-15. 일자리 만족도(근무환경)

(단위: %)

구분	전체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신안군	**100.0**	**1.1**	**8.0**	**67.8**	**18.3**	**4.9**
남자	100.0	1.2	8.4	67.9	17.7	4.9
여자	100.0	1.0	7.4	67.7	19.0	4.9
중부	100.0	0.7	12.3	68.5	13.2	5.4
북부	100.0	3.0	7.4	63.2	20.7	5.7
서부	100.0	0.0	2.9	72.3	20.7	4.1
남부	100.0	0.5	6.9	66.9	22.2	3.6
19세 이하	100.0	0.0	0.0	100.0	0.0	0.0
20~29세	100.0	0.0	20.7	61.5	9.2	8.6
30~39세	100.0	2.7	0.0	86.6	10.8	0.0
40~49세	100.0	2.0	4.9	67.3	19.9	6.0
50~59세	100.0	1.1	8.4	60.2	24.0	6.3
60세 이상	100.0	0.8	8.0	69.2	18.0	4.1
중졸 이하	100.0	1.1	7.5	70.0	17.0	4.5
고졸	100.0	0.4	10.6	66.5	17.6	4.9
대졸 이상	100.0	2.3	4.4	65.1	22.4	5.8

구분	전체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노인 (65세 이상)	**100.0**	**0.8**	**8.0**	**69.9**	**16.8**	**4.4**
남자	100.0	0.5	7.7	68.9	19.2	3.8
여자	100.0	1.1	8.3	70.9	14.7	5.1
중부	100.0	1.3	11.8	63.1	16.0	7.8
북부	100.0	0.7	8.1	66.7	21.0	3.6
서부	100.0	0.0	2.1	80.3	15.9	1.7
남부	100.0	1.4	9.4	73.6	12.7	3.0
65~69세	100.0	1.2	10.4	65.8	19.5	3.0
70~74세	100.0	0.0	9.1	73.1	13.6	4.2
75~80세	100.0	1.8	5.9	70.4	16.6	5.3
80세 이상	100.0	0.0	5.1	72.0	16.7	6.2
중졸 이하	100.0	1.0	8.0	69.5	16.6	5.0
고졸	100.0	0.0	8.1	73.2	16.9	1.8
대졸 이상	100.0	0.0	10.2	66.6	23.3	0.0

자료: 신안군「2023년 사회조사」
주1) 2022.9.1. ~ 2023.8.31. 기준

2024년 신안군 노인복지통계

4 복지

4-1.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4-2. 장애인등록 인구

4-3.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인구

4-4. 수혜유형별 기초연금 수급인구

4-5.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4-6.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4-7.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4-8.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격별 신청판정 현황

4-9.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인정자

4-10. 노인시설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4-11. 연금종류별 공적연금 수급인구

4-12. 급여종류별 국민연금 수급인구

4-13. 노인복지사업

4-14.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4-15. 노인대학 교육 희망강좌

4-16. 노인 삶에 대한 만족도

4-1.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단위: 명, %)

구분	주민등록인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일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시설 수급자		특례 수급자	
			구성비	수급비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38,037**	**2,352**	**100.0**	**6.2**	**2,089**	**88.8**	**103**	**4.4**	**122**	**5.2**	**38**	**1.6**
남자	20,386	1,065	100.0	5.2	931	87.4	57	5.4	62	5.8	15	1.4
여자	17,651	1,287	100.0	7.3	1,158	90.0	46	3.6	60	4.7	23	1.8
중부	14,308	962	100.0	6.7	802	83.4	34	3.5	113	11.7	13	1.4
북부	9,567	616	100.0	6.4	570	92.5	33	5.4	4	0.6	9	1.5
서부	9,570	479	100.0	5.0	453	94.6	18	3.8	5	1.0	3	0.6
남부	4,592	295	100.0	6.4	264	89.5	18	6.1	-	-	13	4.4
19세 이하	3,239	366	100.0	11.3	322	88.0	14	3.8	25	6.8	5	1.4
20~29세	2,386	94	100.0	3.9	63	67.0	20	21.3	*	*	*	*
30~39세	2,287	58	100.0	2.5	42	72.4	*	*	9	15.5	*	*
40~49세	3,941	124	100.0	3.1	103	83.1	*	*	8	6.5	*	*
50~59세	6,745	238	100.0	3.5	206	86.6	21	8.8	*	*	*	*
60세 이상	19,439	1,472	100.0	7.6	1,353	91.9	34	2.3	63	4.3	22	1.5

구분	주민등록인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일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시설 수급자		특례 수급자	
			구성비	수급비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노인 (65세 이상)	**14,914**	**1,289**	**100.0**	**8.6**	**1,201**	**93.2**	**13**	**1.0**	**57**	**4.4**	**18**	**1.4**
남자	6,478	434	100.0	6.7	402	92.6	8	1.8	19	4.4	5	1.2
여자	8,436	855	100.0	10.1	799	93.5	5	0.6	38	4.4	13	1.5
중부	5,876	515	100.0	8.8	457	88.7	*	*	49	9.5	5	1.0
북부	3,694	342	100.0	9.3	329	96.2	*	*	*	*	7	2.0
서부	3,516	264	100.0	7.5	255	96.6	*	*	*	*	*	*
남부	1,828	168	100.0	9.2	160	95.2	*	*	-	-	*	*
65~69세	3,992	229	100.0	5.7	214	93.4	*	3.1	7	3.1	*	*
70~74세	3,109	211	100.0	6.8	198	93.8	*	0.9	7	3.3	*	*
75~79세	2,881	193	100.0	6.7	184	95.3	*	1.0	5	2.6	*	*
80세 이상	4,932	656	100.0	13.3	605	92.2	*	0.3	38	5.8	*	*

자료: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 신안군「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주1) 2023.12.31.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외국인 제외)
주2) 수급인구 비율 =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 주민등록인구) × 100(%)

4-2. 장애인등록 인구

(단위: 명, %)

구분	주민등록 인구	장애인등록 인구		남자		여자		장애인등록 인구비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안군	**38,037**	**4,038**	**100.0**	**2,159**	**53.5**	**1,879**	**46.5**	**10.6**
중부	14,308	1,549	100.0	880	56.8	669	43.2	10.8
북부	9,567	1,015	100.0	528	52.0	487	48.0	10.6
서부	9,570	964	100.0	482	50.0	482	50.0	10.1
남부	4,592	510	100.0	269	52.7	241	47.3	11.1
19세 이하	3,239	47	100.0	31	66.0	16	34.0	1.5
20~29세	2,386	57	100.0	42	73.7	15	26.3	2.4
30~39세	2,287	77	100.0	60	77.9	17	22.1	3.4
40~49세	3,941	204	100.0	159	77.9	45	22.1	5.2
50~59세	6,745	436	100.0	329	75.5	107	24.5	6.5
60세 이상	19,439	3,217	100.0	1,538	47.8	1,679	52.2	16.5

구분	주민등록 인구	장애인등록 인구		남자		여자		장애인등록 인구비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노인(65세 이상)	**14,914**	**2,760**	**100.0**	**1,219**	**44.2**	**1,541**	**55.8**	**18.5**
중부	5,876	1,028	100.0	493	48.0	535	52.0	17.5
북부	3,694	697	100.0	291	41.8	406	58.2	18.9
서부	3,516	681	100.0	283	41.6	398	58.4	19.4
남부	1,828	354	100.0	152	42.9	202	57.1	19.4
65~69세	3,992	472	100.0	306	64.8	166	35.2	11.8
70~74세	3,109	493	100.0	270	54.8	223	45.2	15.9
75~79세	2,881	595	100.0	272	45.7	323	54.3	20.7
80세 이상	4,932	1,200	100.0	371	30.9	829	69.1	24.3

자료: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 신안군「장애인등록자료」
주1) 2023.12.31. 기준 장애인등록 인구
주2) 장애인등록 인구 비율 = (장애인등록 인구 / 주민등록인구) × 100(%)

4-3.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인구

(단위: 명, %)

구분	65세 이상 인구	기초연금수급인구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수급인구 비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19	14,072	12,426	100.0	2,445	19.7	2,806	22.6	3,138	25.3	4,037	32.5	88.3
2020	14,291	12,601	100.0	2,552	20.3	2,770	22.0	2,977	23.6	4,302	34.1	88.2
2021	14,411	12,658	100.0	2,624	20.7	2,700	21.3	2,819	22.3	4,515	35.7	87.8
2022	14,655	12,720	100.0	2,660	20.9	2,615	20.6	2,668	21.0	4,777	37.6	86.8
2023	**14,914**	**12,768**	**100.0**	**2,836**	**22.2**	**2,537**	**19.9**	**2,608**	**20.4**	**4,787**	**37.5**	**85.6**

자료: 신안군「기초연금수급 자료」
주1) 각 해당년도 12. 31. 기준 기초연금 수급인구 산정

4-4. 수혜유형별 기초연금 수급인구

(단위: 명, %)

구분	노인인구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인구		1인		1인(부부형)		2인(부부형)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노인 (65세 이상)	**14,914**	**12,768**	**100.0**	**5,664**	**44.4**	**1,011**	**7.9**	**6,093**	**47.7**
남자	6,564	5,212	100.0	1,166	22.4	909	17.4	3,137	60.2
여자	8,350	7,556	100.0	4,498	59.5	102	1.3	2,956	39.1
65~69세	3,992	2,836	100.0	769	27.1	761	26.8	1,306	46.1
70~74세	3,109	2,537	100.0	734	28.9	179	7.1	1,624	64.0
75~79세	2,881	2,608	100.0	993	38.1	43	1.6	1,572	60.3
80세 이상	4,932	4,787	100.0	3,168	66.2	28	0.6	1,591	33.2

자료: 신안군「기초연금수급 자료」
주) 각 해당년도 12. 31. 기준 기초연금 수급인구 산정

4-5.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합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019	10	205	190	134	5	160	154	105	5	45	36	29
2020	7	91	80	64	3	55	53	38	4	36	27	26
2021	11	214	199	144	5	160	150	103	6	54	49	41
2022	11	214	186	134	5	160	150	103	6	54	36	31
2023	**9**	**202**	**173**	**129**	**5**	**166**	**146**	**106**	**4**	**36**	**27**	**23**

자료: 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 현황」
주1) 2023. 12. 31. 기준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 시설수 집계

4-6.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합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시설수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19	412	0	0.0	402	97.6	10	2.4
2020	413	0	0.0	403	97.6	10	2.4
2021	408	0	0.0	400	98.0	8	2.0
2022	414	0	0.0	406	98.1	8	1.9
2023	**417**	**0**	**0.0**	**409**	**98.1**	**8**	**1.9**

자료: 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 현황」
주1) 2023. 12. 31. 기준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 시설수 집계

4-7.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합계				방문요양 서비스				주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019	4	8	120	20	2	0	120	10	1	8	0	2	0	0	0	0
2020	5	34	15	27	2	0	10	11	2	34	5	6	0	0	0	0
2021	5	34	35	11	2	0	10	0	2	34	25	11	0	0	0	0
2022	11	0	138	81	0	0	0	0	0	0	0	0	5	0	54	41
2023	**13**	**30**	**235**	**247**	**0**	**0**	**0**	**0**	**0**	**0**	**0**	**0**	**5**	**0**	**59**	**60**

구분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복지용구 지원 서비스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019	1	0	0	8	0	0	0	0	0	0	0	0	0	0	0	0
2020	1	0	0	10	0	0	0	0	0	0	0	0	0	0	0	0
202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22	6	0	84	40	0	0	0	0	0	0	0	0	0	0	0	0
2023	**7**	**0**	**151**	**172**	**0**	**0**	**0**	**0**	**0**	**0**	**0**	**0**	**1**	**30**	**25**	**15**

자료: 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 현황」
주1) 2023. 12. 31. 기준 노인복지시설 중 재가노인여가복지 시설수 집계

4-8.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격별 신청판정 현황

(단위: 명, %)

구분			합계		일반		경감		의료급여		기초수급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청	합계		2,852	100.0	1,161	40.7	1,336	46.8	34	1.2	321	11.3
	성별	남자	705	100.0	322	45.7	285	40.4	7	1.0	91	12.9
		여자	2,147	100.0	839	39.1	1,051	49.0	27	1.3	230	10.7
판정	합계		2,606	100.0	1,004	38.5	1,288	49.4	32	1.2	282	10.8
	성별	남자	644	100.0	286	44.4	274	42.5	7	1.1	77	12.0
		여자	1,962	100.0	718	36.6	1,014	51.7	25	1.3	205	10.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주1) 2023.12.31. 기준(사망건제외)

4-9.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인정자

(단위: 명, %)

구분		신청자수	판정자수[1]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등급 외	인정률[2]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신안군		2,903	2,647	2,254	70	154	463	1,203	312	52	393	85.2
	남자	743	675	540	18	40	107	274	81	20	135	80.0
	여자	2,160	1,972	1,714	52	114	356	929	231	32	258	86.9
65세 이상		2,852	2,606	2,218	65	151	455	1,187	309	51	388	85.1
	남자	705	644	512	14	37	102	260	80	19	132	79.5
	여자	2,147	1,962	1,706	51	114	353	927	229	32	256	87.0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자료」
1) 판정자: 구비서류 미충족,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미인정, 급성기 질환자, 등급판정 진행중인 자를 제외한 등급판정을 완료한 등급판정자(1등급~인지지원등급 인정자 및 등급외자를 포함)
2) 인정률: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수(1등급~인지지원등급 인정자)/판정자수
주1) 2023년 12월 31일 행망시군구 신안군 기준, 장기요양 등급이 유효한 자(사망, 중복 제외)
주2) 2023년 12. 31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 신청자 기준이며, 연도말 자격유지자 기준(사망건제외)

4-10. 노인시설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단위 : 명)

구분	급여이용 수급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 시설	복지용구	노인요양 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통합재가 서비스
신안군	**1,993**	**1,265**	**583**	*****	**219**	*****	**898**	**430**	**61**	**-**
1등급	53	16	5	*	-	-	18	30	*	-
2등급	170	56	23	*	*	-	70	69	*	-
3등급	484	246	100	*	46	-	201	172	22	-
4등급	1,175	829	392	*	122	*	549	195	26	-
5등급	280	197	92	*	61	-	105	*	-	-
인지지원 등급	10	-	-	-	*	-	*	-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자료」
주1. 2023. 12. 31. 수진기준 산정
주2. 지급기준(사망자 급여실적 포함)
주3. 2023년 연도 말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주4. 각 분류 중복, 기타 값 제거로 이용자수와 단순합계 불일치
주5. 각분류의 이용자수는 중복 제거값

4-11. 연금종류별 공적연금 수급인구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공적연금합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공적연금 수급비율
신안군	**38,037**	**12,222**	**10,258**	**1,883**	**81**	**32.1**
남자	20,514	7,190	5,789	1,343	58	35.0
여자	17,523	5,032	4,469	540	23	28.7
19세 이하	3,239	8	*	*	-	0.2
20~29세	2,386	245	*	*	17	10.3
30~39세	2,287	360	22	332	6	15.7
40~49세	3,941	389	27	357	5	9.9
50~59세	6,745	552	121	424	7	8.2
60세 이상	19,439	10,668	10,064	558	46	54.9

구분	총인구	공적연금합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공적연금 수급비율
노인 (65세 이상)	**14,914**	**9,015**	**8,641**	**347**	**27**	**60.4**
남자	6,564	5,180	4,862	*	*	78.9
여자	8,350	3,835	3,779	*	*	45.9
65~69세	3,992	2,526	2,356	149	21	63.3
70~74세	3,109	1,852	1,746	*	*	59.6
75~79세	2,881	1,864	1,807	*	*	64.7
80세 이상	4,932	2,773	2,732	*	*	56.2

자료 : 통계청「직역연금DB」, 국민연금공단 자료

4-12. 급여종류별 국민연금 수급인구

(단위: 명, 천원)

구분	국민연금 합계			일시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수급인원	수급금액	1인당 수급금액	수급인원	수급금액	1인당 수급금액	수급인원	수급금액	1인당 수급금액
신안군	**10,258**	**42,548,502**	**4,148**	**159**	**864,444**	**5,437**	**30**	**100,828**	**3,361**
남자	5,789	29,782,946	5,145	85	444,256	5,227	12	21,256	1,771
여자	4,469	12,765,556	2,856	74	420,188	5,678	18	79,573	4,421
19세 이하	7	12,925	1,846	-	-	-	-	-	-
20~29세	17	47,565	2,798	*	20,756	*	*	7,751	*
30~39세	22	95,244	4,329	11	56,498	5,136	*	14,179	*
40~49세	27	100,031	3,705	*	36,634	*	-	-	-
50~59세	121	438,331	3,623	*	3,094	*	*	8,709	*
60세 이상	10,064	41,854,407	4,159	136	747,463	5,496	17	70,190	4,129

구분	국민연금 합계			일시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수급인원	수급금액	1인당 수급금액	수급인원	수급금액	1인당 수급금액	수급인원	수급금액	1인당 수급금액
노인 (65세 이상)	**8,641**	**32,736,336**	**3,788**	**20**	**86,084**	**4,304**	**12**	**55,953**	**4,663**
남자	4,862	22,748,057	4,679	9	40,142	4,460	*	3,447	*
여자	3,779	9,988,279	2,643	11	45,942	4,177	*	52,506	*
65~69세	2,356	13,070,170	5,548	15	79,392	5,293	*	18,274	*
70~74세	1,746	7,693,681	4,406	*	5,620	*	*	9,890	*
75~79세	1,807	6,100,634	3,376	*	519	*	*	1,295	*
80세 이상	2,732	5,871,852	2,149	*	552	*	*	26,495	*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자료」
주1) 2023.12.31. 가입자 주소지 기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4-12. 급여종류별 국민연금 수급인구(계속)

(단위: 명, 천원)

구분	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인원	수급금액	1인당 수급금액	수급인원	수급금액	1인당 수급금액	수급인원	수급금액	1인당 수급금액
신안군	**7,794**	**35,700,696**	**4,581**	**56**	**279,727**	**4,995**	**2,219**	**5,602,807**	**2,525**
남자	5,517	28,838,072	5,227	51	261,015	5,118	124	218,347	1,761
여자	2,277	6,862,624	3,014	5	18,711	3,742	2,095	5,384,460	2,570
19세 이하	-	-	-	-	-	-	7	12,925	1,846
20~29세	-	-	-	-	-	-	10	19,059	1,906
30~39세	-	-	-	*	6,228	*	6	18,340	3,057
40~49세	-	-	-	*	25,125	*	14	38,272	2,734
50~59세	11	52,342	4,758	16	84,292	5,268	86	289,895	3,371
60세 이상	7,783	35,648,354	4,580	32	164,082	5,128	2,096	5,224,317	2,493

구분	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인원	수급금액	1인당 수급금액	수급인원	수급금액	1인당 수급금액	수급인원	수급금액	1인당 수급금액
노인 (65세 이상)	**6,625**	**27,653,788**	**4,174**	**22**	**112,826**	**5,128**	**1,962**	**4,827,685**	**2,461**
남자	4,743	22,464,169	4,736	*	108,456	*	87	131,843	1,515
여자	1,882	5,189,618	2,758	*	4,371	*	1,875	4,695,842	2,504
65~69세	2,138	12,404,536	5,802	*	19,397	*	194	548,571	2,828
70~74세	1,424	6,741,972	4,735	7	43,100	6,157	312	893,099	2,862
75~79세	1,315	4,820,966	3,666	9	39,895	4,433	480	1,237,959	2,579
80세 이상	1,748	3,686,315	2,109	*	10,434	*	976	2,148,056	2,201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자료」
주1) 2023.12.31. 가입자 주소지 기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4-13. 노인복지사업

(단위: %)

구분	계	소득보장 일자리제공	의료서비스를 쉽게받도록 서비스제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제공
신안군	**100.0**	**36.3**	**37.1**	**15.4**	**11.2**
남자	100.0	36.7	36.6	15.0	11.8
여자	100.0	35.8	37.7	16.0	10.6
중부	100.0	41.8	32.4	13.9	11.8
북부	100.0	41.0	38.9	13.3	6.8
서부	100.0	27.6	33.6	23.4	15.4
남부	100.0	27.4	51.3	10.5	10.8
19세 이하	100.0	67.0	20.4	0.0	12.6
20~29세	100.0	39.1	18.2	11.6	31.1
30~39세	100.0	34.5	33.9	18.3	13.4
40~49세	100.0	31.4	49.0	10.4	9.2
50~59세	100.0	35.8	37.0	14.8	12.3
60세 이상	100.0	35.8	38.3	17.5	8.4
중졸 이하	100.0	36.3	37.8	17.3	8.6
고졸	100.0	39.8	35.4	13.6	11.2
대졸 이상	100.0	29.8	37.9	13.1	19.3

구분	계	소득보장 일자리제공	의료서비스를 쉽게받도록 서비스제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제공
노인(65세 이상)	**100.0**	**35.0**	**39.4**	**18.5**	**7.2**
남자	100.0	36.4	38.7	16.7	8.2
여자	100.0	33.8	39.9	19.9	6.5
중부	100.0	40.7	34.2	14.7	10.4
북부	100.0	43.5	35.6	16.3	4.6
서부	100.0	25.8	37.6	28.3	8.3
남부	100.0	17.6	64.2	17.1	1.1
65~69세	100.0	32.1	38.0	20.4	9.5
70~74세	100.0	42.3	34.9	16.5	6.3
75~80세	100.0	38.7	32.1	20.1	9.1
80세 이상	100.0	29.9	48.1	17.2	4.8
중졸 이하	100.0	35.2	39.4	18.7	6.7
고졸	100.0	33.8	41.0	17.7	7.5
대졸 이상	100.0	29.5	31.3	12.3	26.9

자료: 신안군「2023년 사회조사」
주1) 2022.9.1. ~ 2023.8.31. 기준

4-14.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단위: %)

구분	계	경제적인 어려움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	소일 거리가 없음	건강 문제	외로움, 소외감	가족으로부터 푸대접	사회 경로 의식 약화	일상 생활 도움 서비스 부족	노인 복지 시설 부족	기타
노인 (65세 이상)	**100.0**	**21.7**	**5.2**	**8.5**	**53.1**	**4.0**	**0.0**	**2.1**	**2.5**	**2.7**	**0.1**
남자	100.0	22.5	5.8	7.5	51.2	4.4	0.0	3.4	2.0	3.3	0.0
여자	100.0	21.1	4.7	9.3	54.7	3.7	0.0	1.2	3.0	2.2	0.2
중부	100.0	23.3	3.9	8.2	50.8	4.8	0.0	4.5	1.1	3.4	0.0
북부	100.0	16.8	9.0	9.2	57.3	2.2	0.0	1.5	2.5	1.1	0.5
서부	100.0	26.4	5.6	8.9	46.6	4.6	0.0	0.0	6.6	1.2	0.0
남부	100.0	18.0	1.3	7.6	63.4	3.7	0.0	0.0	0.0	6.1	0.0
65~69세	100.0	16.6	6.9	8.4	52.5	2.5	0.0	4.4	4.6	3.7	0.5
70~74세	100.0	20.4	4.5	9.7	53.6	3.6	0.0	1.3	3.2	3.7	0.0
75~80세	100.0	23.8	8.2	9.1	49.5	2.1	0.0	2.8	1.8	2.8	0.0
80세 이상	100.0	25.3	2.3	7.4	55.8	6.7	0.0	0.4	0.9	1.2	0.0
중졸 이하	100.0	23.5	4.9	8.5	52.9	3.6	0.0	1.4	2.6	2.5	0.1
고졸	100.0	10.2	7.2	8.8	55.0	7.5	0.0	4.6	3.0	3.6	0.0
대졸 이상	100.0	6.6	7.1	6.6	53.4	0.0	0.0	19.9	0.0	6.6	0.0

자료: 신안군「2023년 사회조사」
주1) 2022.9.1. ~ 2023.8.31. 기준

4-15. 노인대학 교육 희망강좌

(단위: %)

구분	계	있다	소계	한글 교실	풍물 및 난타	스마트폰 교육	레크레이션	게이트볼	그림 교실	소양 교육	기타	없다
노인 (65세 이상)	**100.0**	**30.7**	**100.0**	**15.4**	**19.3**	**31.5**	**10.8**	**8.4**	**10.3**	**1.5**	**2.8**	**69.4**
남자	100.0	25.1	100.0	2.2	12.9	48.8	7.1	14.6	8.0	1.7	4.8	74.9
여자	100.0	35.0	100.0	22.8	22.8	21.8	12.8	5.0	11.7	1.4	1.7	65.0
중부	100.0	25.4	100.0	19.2	13.9	32.5	10.4	7.0	13.0	2.7	1.3	74.6
북부	100.0	19.0	100.0	5.8	26.1	13.9	16.0	19.7	8.3	3.9	6.2	81.0
서부	100.0	60.4	100.0	16.5	24.1	32.6	6.7	6.0	10.8	0.0	3.3	39.7
남부	100.0	17.4	100.0	12.1	0.0	55.8	25.8	6.3	0.0	0.0	0.0	82.6
65~69세	100.0	29.2	100.0	0.0	38.7	33.1	7.4	7.0	8.0	4.3	1.5	70.8
70~74세	100.0	35.2	100.0	10.4	17.9	41.4	9.0	6.0	13.6	1.7	0.0	64.8
75~80세	100.0	33.3	100.0	7.5	18.5	34.8	11.4	11.2	11.4	0.0	5.1	66.7
80세 이상	100.0	27.1	100.0	39.6	3.9	18.7	14.8	9.6	8.7	0.0	4.6	72.9
중졸 이하	100.0	29.5	100.0	18.4	19.2	28.2	12.3	8.3	9.8	1.1	2.8	70.5
고졸	100.0	37.2	100.0	0.0	20.6	46.1	4.0	11.1	14.5	0.0	3.6	62.8
대졸 이상	100.0	42.8	100.0	0.0	15.2	57.5	0.0	0.0	8.2	19.1	0.0	57.2

자료: 신안군「2023년 사회조사」
주1) 2022.9.1. ~ 2023.8.31. 기준

4-16. 노인 삶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신안군	**100.0**	**0.2**	**0.2**	**0.4**	**0.8**	**1.4**	**18.4**	**20.6**	**24.7**	**23.7**	**5.9**	**3.6**	**6.8**
남자	100.0	0.3	0.3	0.3	0.7	1.3	16.3	18.9	25.0	26.6	6.6	3.7	6.9
여자	100.0	0.2	0.2	0.5	0.9	1.6	21.0	22.6	24.3	20.1	5.2	3.5	6.6
중부	100.0	0.2	0.3	0.8	0.9	2.3	21.9	19.1	22.4	25.3	3.8	2.9	6.6
북부	100.0	0.5	0.2	0.5	1.1	1.2	27.5	25.3	13.2	17.2	7.9	5.6	6.6
서부	100.0	0.0	0.0	0.0	0.0	0.0	4.9	19.2	35.6	30.9	6.8	2.6	7.2
남부	100.0	0.4	0.5	0.0	1.2	1.9	15.3	18.6	32.8	19.2	6.6	3.6	6.8
19세 이하	100.0	0.0	0.0	0.0	0.0	0.0	0.0	19.3	39.7	23.8	17.2	0.0	7.4
20~29세	100.0	0.0	0.0	0.0	0.0	1.7	19.5	17.2	36.4	21.9	3.4	0.0	6.7
30~39세	100.0	0.0	0.0	0.0	0.0	0.0	23.0	27.2	12.4	33.4	1.6	2.4	6.7
40~49세	100.0	0.0	0.0	0.0	1.8	0.0	19.9	13.2	19.9	30.6	7.5	7.2	7.1
50~59세	100.0	0.0	0.0	0.0	0.0	1.4	12.0	21.1	27.8	28.5	7.4	1.9	7.0
60세 이상	100.0	0.5	0.4	0.8	1.1	1.9	20.6	21.6	23.8	19.6	5.4	4.3	6.6
중졸 이하	100.0	0.3	0.5	0.8	1.1	2.1	20.6	23.1	23.3	19.4	5.3	3.5	6.6
고졸	100.0	0.2	0.0	0.0	0.5	1.1	18.5	17.7	25.6	27.8	5.8	2.8	6.9
대졸 이상	100.0	0.0	0.0	0.0	0.5	0.0	11.7	18.1	27.2	29.2	8.0	5.2	7.2

구분	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노인 (65세 이상)	**100.0**	**0.6**	**0.4**	**0.8**	**1.0**	**2.0**	**22.5**	**21.1**	**23.4**	**18.5**	**5.0**	**4.6**	**6.6**
남자	100.0	0.9	0.4	0.9	1.1	2.0	19.0	16.7	26.9	23.3	4.1	4.9	6.7
여자	100.0	0.4	0.4	0.8	1.0	2.1	25.2	24.6	20.7	14.7	5.7	4.4	6.5
중부	100.0	0.4	0.8	1.5	0.7	3.9	24.0	16.3	17.7	25.5	3.9	5.3	6.6
북부	100.0	1.1	0.4	1.1	1.8	0.7	30.8	21.8	18.4	10.7	7.1	6.0	6.3
서부	100.0	0.0	0.0	0.0	0.0	0.0	7.8	29.9	32.5	18.1	7.7	4.1	7.0
남부	100.0	1.1	0.0	0.0	2.2	2.4	27.3	19.2	34.1	12.7	0.0	1.1	6.2
65~69세	100.0	0.0	1.2	1.2	0.0	3.1	12.7	23.8	24.0	25.4	4.0	4.8	6.8
70~74세	100.0	0.8	0.0	0.6	0.7	0.6	26.8	16.7	28.9	18.9	1.6	4.5	6.5
75~80세	100.0	0.7	0.5	1.1	1.2	2.2	23.6	24.6	19.7	16.3	4.4	5.9	6.5
80세 이상	100.0	0.9	0.0	0.6	2.0	2.1	26.9	19.7	21.7	13.9	8.5	3.8	6.5
중졸 이하	100.0	0.5	0.5	1.0	1.2	2.2	23.2	22.5	21.7	18.2	5.0	4.2	6.5
고졸	100.0	1.5	0.0	0.0	0.0	1.2	20.3	10.8	36.4	18.8	3.8	7.3	6.8
대졸 이상	100.0	0.0	0.0	0.0	0.0	0.0	6.6	17.6	28.4	27.6	12.6	7.2	7.4

자료: 신안군「2023년 사회조사」
주1) 2022.9.1. ~ 2023.8.31. 기준

2024년 신안군 노인복지통계

5 건강

5-1. 건강보험 적용인구

5-2. 요양급여실적

5-3. 만성질환(8종) 진료인원

5-4. 만성질환(8종) 1인당 연간 진료비

5-5. 주요 암(6종) 진료인원

5-6. 주요 암(6종) 1인당 연간 진료비

5-7. 연도별 노인 교통사고 건수

5-8.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건수

5-9. 가해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5-10. 운전면허증 반납

5-11.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및 효과 여부 (걷기운동 건강교실)

5-12.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및 효과 여부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5-13.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및 효과 여부 (경로당 중심 낙상예방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5-1. 건강보험 적용인구

(단위: 명, %)

구분	건강보험 적용인구		직장				공무원 및 교사(사립학교)				지역	
		구성비	계	구성비	가입자	피부양자	계	구성비	가입자	피부양자	가입자	구성비
신안군	**37,346**	**100.0**	**15,232**	**40.8**	**6,363**	**8,869**	**4,384**	**11.7**	**2,082**	**2,302**	**17,730**	**47.5**
남자	20,299	100.0	7,982	39.3	4,016	3,966	2,400	11.8	1,395	1,005	9,917	48.9
여자	17,047	100.0	7,250	42.5	2,347	4,903	1,984	11.6	687	1,297	7,813	45.8
19세 이하	3,091	100.0	1,196	38.7	8	1,188	466	15.1	5	461	1,429	46.2
20~29세	2,608	100.0	1,147	44.0	626	521	447	17.1	280	167	1,014	38.9
30~39세	2,568	100.0	992	38.6	873	119	474	18.5	448	26	1,102	42.9
40~49세	3,909	100.0	1,460	37.3	1,274	186	646	16.5	603	43	1,803	46.1
50~59세	6,597	100.0	2,563	38.9	1,877	686	751	11.4	630	121	3,283	49.8
60세 이상	18,573	100.0	7,874	42.4	1,705	6,169	1,600	8.6	116	1,484	9,099	49.0

구분	건강보험 적용인구		직장				공무원 및 교사(사립학교)				지역	
		구성비	계	구성비	가입자	피부양자	계	구성비	가입자	피부양자	가입자	구성비
노인 (65세 이상)	**14,158**	**100.0**	**6,097**	**43.1**	**779**	**5,318**	**1,355**	**9.6**	**42**	**1,313**	**6,706**	**47.4**
남자	6,270	100.0	2,722	43.4	503	2,219	575	9.2	25	550	2,973	47.4
여자	7,888	100.0	3,375	42.8	276	3,099	780	9.9	17	763	3,733	47.3
65~69세	3,869	100.0	1,612	41.7	530	1,082	274	7.1	30	244	1,983	51.3
70~74세	2,952	100.0	1,376	46.6	179	1,197	256	8.7	9	247	1,320	44.7
75~79세	2,741	100.0	1,224	44.7	51	1,173	323	11.8	*	*	1,194	43.6
80세 이상	4,596	100.0	1,885	41.0	19	1,866	502	10.9	*	*	2,209	48.1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자료」
주1) 연도 말 기준, 주민등록 실거주지 기준
주2) 건강보험 적용인구 기준이며, 의료급여 제외

5-2. 요양급여 실적

(단위: 명, 천 원)

구분	합계			의료기관			입원		
	진료실 인원	진료비	급여비	진료실 인원	진료비	급여비	진료실 인원	진료비	급여비
신안군	**46,822**	**135,014,390**	**101,987,692**	**46,822**	**108,157,658**	**82,536,026**	**9,605**	**63,515,148**	**50,208,086**
남자	24,598	65,716,895	49,875,621	24,598	52,046,673	40,012,681	4,665	29,578,773	23,668,558
여자	22,224	69,297,494	52,112,070	22,224	56,110,985	42,523,345	4,940	33,936,375	26,539,528
19세 이하	3,806	3,418,199	2,708,680	3,806	2,810,084	2,244,799	717	1,490,844	1,306,679
20~29세	2,784	2,290,186	1,714,384	2,784	1,995,106	1,496,166	298	584,831	445,635
30~39세	2,822	2,897,501	2,124,960	2,822	2,497,393	1,841,004	389	1,020,650	790,282
40~49세	4,402	5,745,373	4,191,515	4,402	4,682,986	3,433,069	641	2,198,239	1,705,437
50~59세	7,791	14,969,634	11,002,475	7,791	11,690,312	8,651,365	1,267	6,029,802	4,709,115
60세 이상	25,217	105,693,497	80,245,677	25,217	84,481,778	64,869,623	6,293	52,190,782	41,250,940

구분	합계			의료기관			입원		
	진료실 인원	진료비	급여비	진료실 인원	진료비	급여비	진료실 인원	진료비	급여비
노인 (65세 이상)	**19,680**	**90,510,746**	**69,012,517**	**19,680**	**72,690,428**	**56,063,341**	**5,175**	**45,934,969**	**36,338,390**
남자	8,721	40,577,969	31,217,233	8,721	32,262,315	25,193,348	2,214	19,502,833	15,727,524
여자	10,959	49,932,777	37,795,285	10,959	40,428,113	30,869,993	2,961	26,432,136	20,610,866
65~69세	5,072	18,069,394	13,606,606	5,072	14,071,030	10,722,469	1,137	7,188,551	5,763,631
70~74세	3,960	16,764,653	12,704,940	3,960	13,033,887	10,007,039	949	6,804,583	5,411,391
75~79세	3,799	18,360,256	14,055,684	3,799	14,514,079	11,251,858	1,006	8,643,059	6,903,990
80세 이상	6,849	37,316,443	28,645,288	6,849	31,071,432	24,081,975	2,083	23,298,775	18,259,379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자료」
주1) 수진기준(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 및 급여비는 약국포함), 연령(연도 말 기준)
주2)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
주3) 계의 진료실인원은 입원, 외래 간 중복 제외로 단순 합계와 다를 수 있음

5-2. 요양급여 실적(계속)

(단위: 명, 천 원)

구분	외래			약국	
	진료실 인원	진료비	급여비	진료비	급여비
신안군	**37,217**	**44,642,511**	**32,327,939**	**26,856,731**	**19,451,666**
남자	19,933	22,467,900	16,344,123	13,670,222	9,862,940
여자	17,284	22,174,610	15,983,817	13,186,509	9,588,726
19세 이하	3,089	1,319,240	938,120	608,116	463,882
20~29세	2,486	1,410,274	1,050,532	295,080	218,218
30~39세	2,433	1,476,744	1,050,722	400,108	283,956
40~49세	3,761	2,484,747	1,727,632	1,062,387	758,446
50~59세	6,524	5,660,510	3,942,250	3,279,322	2,351,110
60세 이상	18,924	32,290,996	23,618,683	21,211,719	15,376,054

구분	외래			약국	
	진료실 인원	진료비	급여비	진료비	급여비
노인 (65세 이상)	**14,505**	**26,755,460**	**19,724,951**	**17,820,318**	**12,949,177**
남자	6,507	12,759,482	9,465,823	8,315,654	6,023,885
여자	7,998	13,995,978	10,259,127	9,504,664	6,925,292
65~69세	3,935	6,882,479	4,958,838	3,998,364	2,884,137
70~74세	3,011	6,229,304	4,595,648	3,730,765	2,697,901
75~79세	2,793	5,871,020	4,347,868	3,846,177	2,803,826
80세 이상	4,766	7,772,656	5,822,596	6,245,012	4,563,313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자료」
주1) 수진기준(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 및 급여비는 약국포함), 연령(연도 말 기준)
주2)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
주3) 계의 진료실인원은 입원, 외래 간 중복 제외로 단순 합계와 다를 수 있음

5-3. 만성질환(8종) 진료인원

(단위: 명)

구분	합계	고혈압	당뇨	치주질환	관절염	정신질환	치매	전염병	간질환
신안군	**55,029**	**9,913**	**4,928**	**15,684**	**10,281**	**4,612**	**1,977**	**8,108**	**1,503**
남자	27,278	4,542	2,878	8,544	4,469	1,756	555	4,098	991
여자	25,544	5,371	2,050	7,140	5,812	2,856	1,422	4,010	512
19세 이하	2,059	*	*	984	60	93	-	891	22
20~29세	1,695	*	*	906	124	99	-	488	39
30~39세	1,947	102	61	841	242	118	-	512	71
40~49세	3,685	410	268	1,373	527	200	*	749	158
50~59세	8,685	1,468	880	2,903	1,446	363	*	1,296	329
60세 이상	36,958	7,912	3,692	8,677	7,882	3,739	1,974	4,172	884

구분	합계	고혈압	당뇨	치주질환	관절염	정신질환	치매	전염병	간질환
노인(65세 이상)	**29,676**	**6,573**	**2,867**	**6,546**	**6,463**	**3,384**	**1,957**	**3,207**	**636**
남자	12,563	2,474	1,485	3,186	2,468	1,144	544	1,410	396
여자	17,113	4,099	1,382	3,360	3,995	2,240	1,413	1,797	240
65~69세	7,564	1,476	775	2,105	1,663	435	64	874	236
70~74세	6,325	1,272	687	1,600	1,418	480	156	682	186
75~79세	6,092	1,351	624	1,364	1,365	631	318	648	109
80세 이상	9,695	2,474	781	1,477	2,017	1,838	1,419	1,003	105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자료」
주1. 수진기준 (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는 약국포함), 연령(연도 말 기준)
주2.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
주3. 아래 질병통계 자료는 요양기관에서 환자 진료 중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 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발췌코드:고혈압(110~115),당뇨(E10~E14),치주질환(K00~K01,K03~K08),관절염(M00~M19.M22~M25),정신질환(F),전염병(A,B),간질환(K70~K77),치매(F00~F03)
주4. 진료 인원은 중복 포함으로 단순 합계와 다를 수 있음

5-4. 만성질환(8종) 1인당 연간 진료비

(단위: 천 원)

구분	합계	고혈압	당뇨	치주질환	관절염	정신질환	치매	전염병	간질환
신안군	**684**	**629**	**983**	**329**	**644**	**2,196**	**4,344**	**438**	**729**
남자	572	619	1,001	311	494	1,433	3,288	417	819
여자	794	637	957	351	759	2,666	4,756	460	554
19세 이하	180	119	746	100	54	692	-	221	161
20~29세	191	555	838	140	98	718	-	161	205
30~39세	272	469	707	146	253	782	-	212	773
40~49세	343	540	860	147	269	677	159	279	790
50~59세	415	567	920	163	431	738	803	295	647
60세 이상	854	647	1,012	477	734	2,540	4,350	618	782

구분	합계	고혈압	당뇨	치주질환	관절염	정신질환	치매	전염병	간질환
노인 (65세 이상)	**941**	**662**	**995**	**578**	**755**	**2,753**	**4,369**	**696**	**815**
남자	782	650	1,049	574	589	1,821	3,295	673	880
여자	1,058	669	937	581	857	3,228	4,782	714	709
65~69세	677	613	1,084	616	820	689	1,742	338	495
70~74세	691	637	979	542	810	705	1,257	445	1,238
75~79세	807	671	902	530	776	1,745	3,041	737	809
80세 이상	1,395	698	994	606	648	4,122	5,127	1,153	794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자료」
주1. 수진기준 (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는 약국포함), 연령(연도 말 기준)
주2.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
주3. 아래 질병통계 자료는 요양기관에서 환자 진료 중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 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발췌코드:고혈압(110~115),당뇨(E10~E14),치주질환(K00~K01,K03~K08),관절염(M00~M19.M22~M25),정신질환(F),전염병(A,B),간질환(K70~K77),치매(F00~F03)
주4. 진료 인원은 중복 포함으로 단순 합계와 다를 수 있음

5-5. 주요 암(6종) 진료인원

(단위: 명)

구분	계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신안군	**803**	**181**	**158**	**168**	**151**	**128**	**17**
남자	460	121	118	118	102	*	-
여자	343	60	40	50	49	*	17
19세 이하	-	-	-	-	-	-	-
20~29세	*	-	-	-	*	-	-
30~39세	*	*	-	-	*	*	*
40~49세	34	*	5	*	5	12	*
50~59세	111	17	*	11	25	44	*
60세 이상	652	157	142	154	118	71	10

구분	계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노인(65세 이상)	**526**	**134**	**117**	**135**	**92**	**43**	**5**
남자	324	85	81	98	60	-	-
여자	202	49	36	37	32	43	5
65~69세	117	28	25	24	18	*	*
70~74세	121	23	33	30	21	*	*
75~79세	135	41	30	38	19	*	*
80세 이상	153	42	29	43	34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자료」
주1. 수진기준 (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는 약국포함), 연령(연도 말 기준)
주2.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
주3. 아래 질변통계 자료는 요양기관에서 환자 진료 중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 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발췌코드:위암(C16),간암(C22),폐암(C33~C34),대장암(C18~C20),유방암(C50),자궁암(C53)

5-6. 주요 암(6종) 1인당 연간 진료비

(단위: 천원)

구분	계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신안군	6,344	3,920	8,575	7,607	5,512	6,642	4,058
남자	6,341	4,530	8,769	7,090	4,863	1,227	0
여자	6,347	2,691	8,001	8,827	6,864	6,685	4,058
19세 이하	-	-	-	-	-	-	-
20~29세	227	-	-	-	227	-	-
30~39세	16,231	18,445	-	-	624	44,665	1,189
40~49세	8,938	6,652	5,541	10,057	7,086	10,369	15,413
50~59세	5,019	3,710	13,594	6,396	2,228	4,889	1,116
60세 이상	6,392	3,746	8,293	7,646	6,273	6,563	1,821

구분	계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노인 (65세 이상)	**6,197**	**3,689**	**8,130**	**7,725**	**6,523**	**3,853**	**1,091**
남자	6,651	4,655	8,181	7,249	6,434	-	-
여자	5,470	2,013	8,015	8,988	6,691	3,853	1,091
65~69세	7,153	4,774	11,037	10,676	6,026	2,929	1,079
70~74세	5,649	2,440	7,294	5,736	6,189	6,455	807
75~79세	5,390	2,556	8,449	7,005	4,508	2,818	1,703
80세 이상	6,612	4,755	6,246	8,104	8,119	1,540	164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자료」
주1. 수진기준 (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는 약국포함), 연령(연도 말 기준)
주2.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
주3. 아래 질변통계 자료는 요양기관에서 환자 진료 중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 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발췌코드:위암(C16),간암(C22),폐암(C33~C34),대장암(C18~C20),유방암(C50),자궁암(C53)

5-7. 연도별 노인 교통사고 건수

(단위: 건, 명)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중상자수
2019	70	*	95	37
2020	41	*	58	22
2021	47	*	52	21
2022	47	5	61	25
2023	**53**	**5**	**64**	**27**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경찰DB)
주1) 경찰DB :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된 교통사고DB
주2) 2023.1.1.~12.31. 발생한 교통사고 집계

5-8.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건수

(단위: 건, 명)

구분		합계	차 대 사람					
			소계	횡단중	차도 통행중	길가장자리 통행중	보도 통행중	기타
신안군 전체	발생건수	104	19	*	*	-	*	*
	구성비	100.0	18.3	*	*	-	*	*
	사망자수	9	*	-	*	-	-	*
	구성비	100.0	*	-	*	-	-	*
	부상자수	168	17	*	-	-	*	15
	구성비	100.0	10.1	*	-	-	*	8.9
노인 (65세이상)	발생건수	53	8	-	*	-	*	6
	구성비	100.0	15.1	-	*	-	*	11.3
	사망자수	5	*	-	*	-	-	-
	구성비	100.0	*	-	*	-	-	-
	부상자수	101	8	-	-	-	*	*
	구성비	100.0	7.9	-	-	-	*	*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경찰DB)
주1) 경찰DB :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된 교통사고DB
주2) 2023.1.1.~12.31. 발생한 교통사고 집계
주3) 사고유형별 분류는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철길건널목사고 4개이며, 철길건널목사고는 제외

5-8.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건수(계속)

(단위: 건, 명)

구분			차 대 차						차량단독
			소계	정면충돌	측면충돌	추돌	후진중 충돌	기타	
신안군 전체	발생건수		74	13	38	12	*	*	11
		구성비	71.2	12.5	36.5	11.5	*	*	10.6
	사망자수		2	-	*	*	-	-	*
		구성비	22.2	-	*	*	-	-	*
	부상자수		143	34	62	30	*	*	*
		구성비	85.1	20.2	36.9	17.9	*	*	*
노인 (65세이상)	발생건수		40	*	20	8	-	*	5
		구성비	75.5	*	37.7	15.1	-	*	9.4
	사망자수		2	-	*	*	-	-	*
		구성비	40.0	-	*	*	-	-	*
	부상자수		90	14	39	24	-	13	*
		구성비	89.1	13.9	38.6	23.8	-	12.9	*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경찰DB)
주1) 경찰DB :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된 교통사고DB
주2) 2023.1.1.~12.31. 발생한 교통사고 집계
주3) 사고유형별 분류는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철길건널목사고 4개이며, 철길건널목사고는 제외

5-9. 가해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단위: 건, 명)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중상자수
2019년	47	-	98	19
2020년	32	*	59	15
2021년	36	*	54	13
2022년	34	*	52	14
2023년	**31**	*****	**48**	**21**

자료: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분석시스템」(경찰DB)
주1) 경찰DB :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된 교통사고DB
주2) 2023.1.1.~12.31. 발생한 교통사고 집계

5-10. 운전면허증 반납

(단위: 명, %)

구분	주민등록 인구	운전면허증 취득자		운전면허증 소유		운전면허증 반납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노인 (65세 이상)	**14,914**	**5,364**	**100.0**	**5,284**	**98.5**	**80**	**1.5**
남자	6,564	4,289	100.0	4,224	98.5	65	1.5
여자	8,350	1,075	100.0	1,060	98.6	15	1.4
65~69세	3,992	2,699	100.0	2,699	100.0	-	0.0
70~74세	3,109	1,225	100.0	1,209	98.7	16	1.3
75~79세	2,881	944	100.0	916	97.0	28	3.0
80세 이상	4,932	496	100.0	460	92.7	36	7.3

자료: 신안군「운전면허 관련 자료」

5-11.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및 효과 여부(걷기운동 건강교실)

(단위: %)

구분	계	알고 있고 참여함	건강증진 효과여부			알고 있고 참여하지않음	알지 못하고 참여하지않음
			소계	효과있음	효과없음		
신안군	**100.0**	**3.4**	**100.0**	**96.2**	**3.8**	**30.0**	**66.7**
남자	100.0	2.8	100.0	95.6	4.4	26.7	70.6
여자	100.0	4.1	100.0	96.7	3.3	33.8	62.2
중부	100.0	4.9	100.0	96.3	3.7	24.2	71.0
북부	100.0	2.4	100.0	100.0	0.0	42.9	54.6
서부	100.0	2.0	100.0	100.0	0.0	26.6	71.4
남부	100.0	3.2	100.0	87.0	13.0	28.0	68.8
19세 이하	100.0	0.0	100.0	0.0	0.0	0.0	100.0
20~29세	100.0	0.0	100.0	0.0	0.0	4.8	95.2
30~39세	100.0	0.0	100.0	0.0	0.0	15.5	84.5
40~49세	100.0	2.8	100.0	79.8	20.2	33.2	64.1
50~59세	100.0	0.4	100.0	100.0	0.0	31.2	68.4
60세 이상	100.0	5.5	100.0	97.7	2.3	35.2	59.3
중졸 이하	100.0	4.5	100.0	97.4	2.6	29.2	66.3
고졸	100.0	2.8	100.0	92.4	7.6	31.5	65.7
대졸 이상	100.0	0.8	100.0	100.0	0.0	29.5	69.6

구분	계	알고 있고 참여함	건강증진 효과여부			알고 있고 참여하지않음	알지 못하고 참여하지않음
			소계	효과있음	효과없음		
노인(65세 이상)	**100.0**	**5.8**	**100.0**	**97.3**	**2.7**	**34.2**	**59.9**
남자	100.0	5.3	100.0	93.1	6.9	32.1	62.6
여자	100.0	6.3	100.0	100.0	0.0	35.9	57.9
중부	100.0	8.0	100.0	95.0	5.1	25.1	66.9
북부	100.0	4.3	100.0	100.0	0.0	40.2	55.5
서부	100.0	3.8	100.0	100.0	0.0	36.8	59.4
남부	100.0	5.6	100.0	100.0	0.0	45.8	48.6
65~69세	100.0	5.3	100.0	88.6	11.4	31.4	63.3
70~74세	100.0	6.6	100.0	100.0	0.0	36.9	56.5
75~80세	100.0	6.9	100.0	100.0	0.0	36.2	56.9
80세 이상	100.0	5.0	100.0	100.0	0.0	33.5	61.5
중졸 이하	100.0	5.4	100.0	100.0	0.0	33.1	61.5
고졸	100.0	8.8	100.0	83.5	16.5	42.1	49.1
대졸 이상	100.0	6.6	100.0	100.0	0.0	39.2	54.2

자료: 신안군「2023년 사회조사」
주1) 2022.9.1. ~ 2023.8.31. 기준

5-12.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및 효과 여부(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단위: %)

구분	계	알고 있고 참여함	건강증진 효과여부			알고 있고 참여하지않음	알지 못하고 참여하지않음
			소계	효과있음	효과없음		
신안군	100.0	4.4	100.0	96.1	3.9	29.5	66.1
남자	100.0	3.0	100.0	93.3	6.7	26.7	70.3
여자	100.0	6.0	100.0	97.7	2.3	32.8	61.3
중부	100.0	3.1	100.0	100.0	0.0	25.5	71.4
북부	100.0	4.5	100.0	90.1	9.9	42.4	53.2
서부	100.0	2.3	100.0	100.0	0.0	26.0	71.8
남부	100.0	10.9	100.0	96.2	3.8	23.4	65.7
19세 이하	100.0	0.0	100.0	0.0	0.0	0.0	100.0
20~29세	100.0	0.0	100.0	0.0	0.0	8.8	91.2
30~39세	100.0	0.0	100.0	0.0	0.0	13.1	86.9
40~49세	100.0	2.8	100.0	79.6	20.4	33.7	63.5
50~59세	100.0	0.0	100.0	0.0	0.0	31.6	68.4
60세 이상	100.0	7.5	100.0	97.3	2.7	33.9	58.6
중졸 이하	100.0	6.3	100.0	94.8	5.2	28.1	65.6
고졸	100.0	3.1	100.0	100.0	0.0	31.5	65.5
대졸 이상	100.0	0.9	100.0	100.0	0.0	30.4	68.8

구분	계	알고 있고 참여함	건강증진 효과여부			알고 있고 참여하지않음	알지 못하고 참여하지않음
			소계	효과있음	효과없음		
노인(65세 이상)	100.0	8.7	100.0	97.0	3.0	31.8	59.6
남자	100.0	6.9	100.0	91.2	8.8	30.9	62.3
여자	100.0	10.1	100.0	100.0	0.0	32.5	57.5
중부	100.0	4.8	100.0	100.0	0.0	25.1	70.1
북부	100.0	9.3	100.0	88.5	11.5	37.3	53.4
서부	100.0	4.4	100.0	100.0	0.0	36.2	59.4
남부	100.0	26.0	100.0	100.0	0.0	33.6	40.4
65~69세	100.0	4.9	100.0	85.6	14.4	32.3	62.8
70~74세	100.0	8.3	100.0	100.0	0.0	34.6	57.1
75~80세	100.0	11.4	100.0	100.0	0.0	32.0	56.6
80세 이상	100.0	10.2	100.0	97.5	2.5	29.3	60.4
중졸 이하	100.0	8.3	100.0	96.3	3.7	30.4	61.4
고졸	100.0	12.2	100.0	100.0	0.0	41.4	46.4
대졸 이상	100.0	6.6	100.0	100.0	0.0	39.2	54.2

자료: 신안군「2023년 사회조사」
주1) 2022.9.1. ~ 2023.8.31. 기준

5-13.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및 효과 여부(경로당 중심 낙상예방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단위: %)

구분	계	알고 있고 참여함	건강증진 효과여부			알고 있고 참여하지않음	알지 못하고 참여하지않음
			소계	효과있음	효과없음		
신안군	**100.0**	**4.6**	**100.0**	**95.2**	**4.8**	**28.0**	**67.4**
남자	100.0	2.6	100.0	84.5	15.5	26.5	70.9
여자	100.0	7.0	100.0	100.0	0.0	29.7	63.4
중부	100.0	2.2	100.0	91.9	8.1	24.5	73.3
북부	100.0	6.5	100.0	90.5	9.5	39.5	54.1
서부	100.0	2.3	100.0	100.0	0.0	25.7	72.1
남부	100.0	11.3	100.0	100.0	0.0	20.9	67.8
19세 이하	100.0	0.0	100.0	0.0	0.0	0.0	100.0
20~29세	100.0	0.0	100.0	0.0	0.0	4.8	95.2
30~39세	100.0	0.0	100.0	0.0	0.0	13.1	86.9
40~49세	100.0	0.0	100.0	0.0	0.0	31.2	68.8
50~59세	100.0	0.5	100.0	100.0	0.0	30.2	69.3
60세 이상	100.0	8.4	100.0	95.1	4.9	32.6	59.1
중졸 이하	100.0	7.5	100.0	98.1	2.0	26.6	65.9
고졸	100.0	2.1	100.0	77.8	22.2	29.6	68.3
대졸 이상	100.0	0.4	100.0	100.0	0.0	29.1	70.5

구분	계	알고 있고 참여함	건강증진 효과여부			알고 있고 참여하지않음	알지 못하고 참여하지않음
			소계	효과있음	효과없음		
노인(65세 이상)	**100.0**	**10.3**	**100.0**	**94.8**	**5.2**	**30.2**	**59.6**
남자	100.0	6.9	100.0	82.5	17.5	30.7	62.4
여자	100.0	12.9	100.0	100.0	0.0	29.8	57.3
중부	100.0	4.7	100.0	91.1	8.9	24.8	70.6
북부	100.0	14.8	100.0	89.9	10.1	35.6	49.6
서부	100.0	4.4	100.0	100.0	0.0	36.2	59.4
남부	100.0	28.2	100.0	100.0	0.0	25.8	46.0
65~69세	100.0	7.9	100.0	82.0	18.0	29.6	62.6
70~74세	100.0	11.2	100.0	100.0	0.0	31.3	57.5
75~80세	100.0	10.1	100.0	100.0	0.0	31.9	58.0
80세 이상	100.0	11.7	100.0	95.6	4.4	28.8	59.5
중졸 이하	100.0	10.1	100.0	97.9	2.1	29.0	61.0
고졸	100.0	12.7	100.0	75.1	24.9	37.8	49.5
대졸 이상	100.0	6.6	100.0	100.0	0.0	39.2	54.2

자료: 신안군「2023년 사회조사」
주1) 2022.9.1. ~ 2023.8.31. 기준

2024년 신안군 노인복지통계

Shinan Senior Welfare Statistics

Ⅴ. 주요 용어 정의 및 행정자료 서식

1. 주요 용어 정의

2. 행정자료 서식

1004 신안군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1. 주요 용어 정의

1 인구·가구

【인구】

○ **(노인)** 통계작성일 기준('23.12.31.) 신안군 주민등록인구 중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함(외국인 제외)

○ **(성비)** 여자 100명당 남자 인구(남자 인구/여자 인구 × 100(%))

【인구이동】

○ **(전입)** 행정구역 경계(시·도, 시·군·구, 읍·면·동)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특정지역으로 이동해 온 경우

○ **(전출)** 행정구역 경계(시·도, 시·군·구, 읍·면·동)를 넘어 특정 지역에서 다른지역으로 이동해 간 경우

○ **(시내 이동)** 신안군 내에서 행정 읍·면·동을 달리한 이동

○ **(시·군간 전입)** 전라남도 내 타 시·군에서 신안군로 전입

○ **(시·도간 전입)** 전라남도 외 타 시·도에서 신안군로 전입

○ **(시·군간 전출)** 신안군에서 전라남도 내 타 시·군으로 전출

○ **(시·도간 전출)** 신안군에서 전라남도 외 타 시·도로 전출

○ **(순이동)** 전입인구와 전출인구의 차이

○ **(순이동률)** 주민등록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

– (순이동자/주민등록연앙인구 × 100(%))

【사망】

○ **(사망)** 우리나라 국민이 「통계법」 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국의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한 사망신고서의 신고내용을 기초로 함

○ **(연령별 사망률)** 해당연령의 사망자 수를 해당연령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분비로 나타낸 것

$$\text{연령별 사망률} = \frac{\text{해당연령 사망자 수}}{\text{해당연령의 연앙인구}} \times 100{,}000$$

○ **(사망원인)** 사망진단서에 기록되는 사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모든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함

【가구】

○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

- **(일반가구)** ①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②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③1인 가구 ④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는 일반가구로 분류
- **(집단가구)** ①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②기숙사나 노인요양시설, 보육원 등 사회시설에 집단으로 살고 있는 가구
- **(외국인가구)**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집단시설가구)** 기숙사나 노인요양시설, 보육원 등 사회시설에 집단으로 살고 있는 가구

○ **(친족가구)**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 **(1세대 가구)** 가구주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친족들만 함께 사는 가구
- **(2세대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 2세대가 함께 사는 가구
- **(3세대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구

○ **(비친족가구)** 남남이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 **(1인가구)**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점유형태】

○ **(자기 집)** 실제로 가구주나 가구원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 **(전세-월세 없음)** 월세 없이 전세금만 내고 세 들어 사는 경우

○ **(보증금이 있는 월세)**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집세(방세)를

지불하는 경우

- **(월세)** 보증금 없이 매월 집세(방세) 지불

○ **(사글세)** 1년 또는 10개월분의 집세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매월 1개월분의 집세를 공제하는 경우

○ **(무상)** 관사, 사택 또는 친척 집 등에서 세 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

2 경제

【재산】

○ **(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 **(주택 소유자)** 직접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대장 등에 등재된 법적인 소유권자를 의미

○ **(소유지분율)** 한 주택을 n명(또는 가구)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지분을 각각 1/n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 지분

○ **(주택소유건수)** 소유 물건 수는 지분을 고려하지 않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소유건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한 가구 내에서 동일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1건으로 산정함

○ **(개별주택가격)**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건물시가표준액)** 토지만의 가격은 공시지가, 건물의 가격은 건물과 토지의 가격이 더해져서 기준시가 또는 표준시가라고 함. 기준시가는 평가 상 건물의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하여 결정함

○ **(월평균 가구소득)** 가구주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함께 거주하는 모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및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월평균 금액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영업겸용 단독주택)

○ **(아파트)** 5층 이상의 공동주택(4층 이하 아파트로 허가를 받은 건물, 주상복합아파트)

○ **(연립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각 호별로 각각 분리하여 매매 가능)

○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 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주택

○ **(주택 이외의 거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으로 오피스텔,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3 일자리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인구)** 매반기 조사월(4월, 10월)의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

○ **(취업자)** 아래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①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②동일 가구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조사대상주간에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③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기간 중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휴가,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실업자)** 아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음 ②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③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함

○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

○ **(경제활동참가율)**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text{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만 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 **(고용률)**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 수}}{\text{만 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 **(실업률)**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 수}}{\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개정, 2024년)】

대분류	항목명	산업군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05~08)	광·제조업
C	제조업(10~34)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전기·운수·통신·금융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사업·개인·공공서비스
F	건설업(41~42)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45~47)	도소매·음식숙박업
H	운수 및 창고업(49~52)	전기·운수·통신·금융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도소매·음식숙박업
J	정보통신업(58~63)	전기·운수·통신·금융
K	금융 및 보험업(64~66)	
L	부동산업(68)	사업·개인·공공서비스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P	교육 서비스업(85)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U	국제 및 외국기관(99)	

【한국직업분류(제7차 개정, 2018년)】

대분류	항목명	직업군
1	관리자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사무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판매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종사상 지위】

○ **(종사상 지위)**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

- **(임금근로자)**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현물 등의 형태로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통상 상용·임시·일용근로자로 구분
- **(상용근로자)** ①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②고용계약 미체결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
- **(임시근로자)** ①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②고용계약 미체결자는 한시적 기간(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 **(비임금근로자)**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예술가, 프리랜서 등 일정 형태의 사업체를 갖추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구직신청】

○ **(구직신청건수)** 해당 기간 고용24에 등록된 구직건수

○ **(상용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계약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시간제)**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로하게 되는 고용

○ **(일용직)**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를 받고 근로하는 고용

○ **(희망임금)** 구직자가 구인업체에 희망하는 임금

○ **(고용보험)**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

- **(피보험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단,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 제외됨
-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 1. 1. ~ 12. 31.(1년 간) 함평군 소재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자

-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1. 1. ~ 12. 31.(1년 간) 함평군 소재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직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 **(실업급여)**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수급자격인정자)** 실업급여신청자에 대해 소정의 수급요건이 충족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된 자

【한국고용직업분류】

대분류	항목명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구인
3	보건·의료직
4	예술·방송·디자인·스포츠직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7	건설·채굴직
8	설치·정비·생산직
9	농림어업직

【사업체】

○ **(등록사업체)**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 활용하며, '사업장'의 개념임

-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국민연금법)

  ※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하나의 사업자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존재할 수 있음

- **(사업체)**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

○ **(사업자 등록상태)** '22. 12. 31. 기준 사업자 등록 상태

- **(유지_계속)** 2022년 이전에 개업하고 2022년에 계속 영업 중인 사업체

- (**유지_신규**) 2022년에 개업한 사업체
- (**폐업_계속**) 2022년 이전에 개업하고 2022년에 폐업한 사업체
- (**폐업_신규**) 2023년에 개업하고 2023년에 폐업한 사업체

○ (**조직형태**) 사업체 경영주체의 법적 조직형태
- (**개인사업체**)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 혼자 소유, 경영하거나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 (**회사법인**)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 (**회사이외 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외의 법인
- (**비법인단체**) 법인격이 없는 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직 구성원의 신분이 공무원인 기관

4 복지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이며 부양능력 있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 능력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
- (**일반수급자**) 일반 가정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
- (**시설수급자**) 수급자 중 보장시설* 등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 시설 등

【장애】

○ (**장애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장애유형)

- **(지체)** 다방면에 걸쳐서 발생하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일상생활 활동의 제약을 초래하는 신체적 기능의 손상, 골격, 근육, 신경계 중 어느 부분에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한 신체기능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
- **(뇌병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상지와 하지의 마비가 나타나 주로 보행 장애와 일상생활동작의 제한을 받게 되는 장애
- **(시각)**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고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상태
- **(청각)** 소리와 말을 듣는 귀 즉 외이, 중이, 내이로 연결되어지는 청신경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말과 음을 잘 듣지 못하는 상태
- **(언어)** 신체적인 원인 또는 뇌기능의 장애, 심리적 원인으로 언어의 발달이 느리거나 언어 관련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것, 이것으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장애가 있는 것
- **(안면)** 얼굴, 목, 머리에 눈에 띄는 수술이나 외상 후에 생긴 흉터, 그 흉터가 커지고 함몰되거나 어느 조직 하나가 없어지거나 색소침착, 모발결손이 생기는 장애
- **(신장)** 신장의 기능 저하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이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
- **(심장)**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것
- **(간)** 간 기능의 손상이나 이상으로 일상생활 활동이 어려워지는 것
- **(호흡기)** 일생동안 어느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지속되고 반복해야 살 수 있는 중요한 호흡이 그 운동과정 및 폐에 이상이 생기고 결국

산소-이산화탄소 교환과정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장애

- **(장루, 요루)** 장이나 항문이 기능이 못하고 방광도 제 기능을 못 할 때 각각 장루와 요루라는 것을 만들어 각각의 기능을 하게 하는 것
- **(뇌전증)** 간질이라고도 하며 뇌에 있는 수억 개의 뇌세포들이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장애
- **(지적)** 지적 기능과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기술로 표현되는 적응행동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상태
- **(자폐증)** 다른 사람과 상호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정서적인 유대감도 일어나지 않는 아동기 증후군으로 '자신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것' 같은 상태
- **(정신)** 정신 기능에 이상을 나타내어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

【연금】

○ **(국민연금)**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노령, 장애, 사망)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제도

※ 가입대상: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연금법을 적용 받는 자 제외

-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60세 근로자와 사업주
- **(지역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소득이 없어 잠시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는 납부예외자 등
- **(임의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여 신청을 통해 가입한 자
- **(임의계속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 65세

이전에 신청하여 가입한 자

○ (**공무원연금**)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제도

○ (**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장애에 대해 급여를 제급하는 제도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경로당**) 지역노인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교실)** 노인에게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그 밖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함
- **(야간보호서비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야간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 **(단기보호서비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 **(방문목욕서비스)** 목욕 장비를 갖추고 일상생활하는 가정의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및 처치, 교육, 상담,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지역의 각종 자원을 연계 지원

5 건강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임의계속가입자, 건설일용직에 해당하는 사람

○ **(공·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단,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유공자 등의 의료급여대상자는 제외), 농어업인, 자영업자 등

○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함

- **(의료기관)** 환자를 진료(투약)하는 기관으로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을 총칭하며, 약국을 제외한 요양기관을 '의료기관'이라 함
-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보험자부담금)과 환자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총 진료비 중 심사 결정된 진료비
- **(급여비)** 심사 결정된 총 진료비(약제비) 중 법이 정한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자(공단)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
- **(진료실인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1년간 실제 진료 받은 환자수로 상병별, 월별, 요양기관종별로 실인원을 각각 산정
- **(만성질환)** 갑작스러운 증상이 없어 서서히 발병하여 치료와 치유에도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질환
-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의 운행중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교통사고 인적피해)**
  - **(사망)** 교통사고 발생 시로부터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 **(중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노인운전자사고)** 가해운전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사고

2. 행정자료 서식

1 전입신고서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6. 18.>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 이 신고서는 세대가 모두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전입자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에 살던 곳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세대주 성명(※ 세대주가 신고할 때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소		※ 주택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까지 작성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작성합니다)
전입 사유 (※주된 1가지)	[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 그 밖의 사유 ( )	[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 주거 환경 (교통, 문화・편의 시설 등) [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유의사항

1.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2.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라 인구 이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작성방법

1.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2.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 또는 준주택인 경우에 '주택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 주소(동・층・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2 사망신고서

사망신고서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사망자	성명	*한글	(성) /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1 남 2 여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관계	의
	*사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사망지 시각: 24시각제로 기재)				
	*사망 장소	장소				
		구분	1 주택 3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양로원, 아동양육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5 도로 7 산업장 9 병원 이송 중 사망 10 기타( )	2 의료기관(병원, 요양병원 등) 4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6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8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② 기타 사항						
③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자격	1동거친족 2비동거친족 3동거자			*관계	
		4기타(보호시설장/사망장소관리자 등)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이메일	
④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사망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 최종졸업학교	1 학력 없음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 6 대학원 이상
㉯ 혼인 상태	1 미혼 2 배우자 있음 3 이혼 4 사별

※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년 월 일 (인)	

작 성 방 법	※ 사망신고서는 1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 망 자	· 등록기준지: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사망일시: <예시>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밤 12시 30분(×) → 다음날 0시 30분(○)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사망하였다면 사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 사망 장소 구분: 1 주택은 사망장소가 사망자의 집이거나 부모·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 10 기타는 예시 외에 비행기, 선박, 기차 등 기타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 · 사망 장소의 기재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② 기타 사항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미첨부시 그 사유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히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③ 신 고 인	· 자격란에는 해당항목에 '영표(○)'로 표시하되 4 기타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④ 제 출 인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최 종 졸업학교	· 사망자의 최종 졸업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중퇴)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의 해당 번호에 '영표(○)'로 표시를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4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첨 부 서 류

1.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
2.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아래 중 1부.
   ①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예시: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 정부기록보관소 보존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②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③ 기타: 증명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1호 별지 양식)
   – 증명인이 동·리·통장일 경우: 1명의 증명으로 족하고, 원칙적으로 동·리·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증명인이 인우인일 경우: 2명 이상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중 1부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대한 안내

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의 의	–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 – 상속포기: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
2. 방 식	–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상속포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합니다.
3. 신고기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제1항)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 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4. 관 할	–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관할 법원

3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5.3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1] :)					휴대전화[2]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1. 배우자 관계[3]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여권 소지자명[4]: _____, _____
3. 국외출생자명[5]: _____, _____ 4. 복수국적자명[6]: _____, _____

부양의무자[7]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급여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8]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작성방법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 중 임차가구에 한함)
2) 원활한 결과 통지를 위해 신청인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3),4) 해당자에 한함
5),6) 아동수당,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7)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8)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2쪽)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자가 [ ]임차[9] [ ]기타[10])	
	[ ]교육급여 (바우처 제공)	※ 유의사항 -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사회서비스 이용권)로 제공됩니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보장결정된 이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을 방문하여 바우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대상자 이름 :)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아동수당	[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아동 · 청소년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인터넷통신사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주민번호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 ]연장신청)	
노 인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장 애 인	[ ]장애인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 타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입소 [ ]자산형성 [ ]타법 의료급여[11] (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자격구분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 기초연금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 전기요금	[ ] TV수신료 면제	[ ] 휴대전화요금
		[ ] 지역난방요금	[ ] 도시가스요금	[ ] 시내 · 외유선전화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 :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사업자명 : 고객번호 :)
- 시내 · 외유선전화 (계약자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자: [ ]KT [ ]SK브로드밴드 [ ]LG유플러스)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가족 사항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과 초중고 교육비지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4쪽 중 3쪽)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시내 · 외유선전화사업자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	[ ]

선택적 동의	동 의 (√ 체크)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3.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신청한 것에 동의합니다.	[ ]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의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6.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금융·신용·보험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에 한함)	[ ]
7.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만2세 연령 도래시 양육수당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유 의 사 항	확 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시내 · 외유선전화요금 : 시내 · 외유선전화사업자	
7. 맞춤형 급여 안내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안내해 드리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거부 의사가 없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가구 단위로 신청되며, 가구원은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통해 안내된 사회보장급여는 정보통신망에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확인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안내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등 구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안내 및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읍 · 면 · 동 에너지바우처 담당부서(산업부서 등)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2]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9)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10)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2)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4쪽 중 4쪽)

안 내 사 항		
처 리 기 한	- 14일 : 유아학비, 양육수당(연장시 30일)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부모급여(연장시 60일),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관 계 법 률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 ·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 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 의료급여[13],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자산형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자산형성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 외국여권 사본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노인, 아동 · 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산형성)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13)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4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2. 9. 6.>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장애인 (본인)	성명	여권상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 ]남 [ ]여
	사회보장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휴대전화
	(현)주소		전화번호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성명	장애인(본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복지욕구	[ ]직접적 소득(장애인연금 등) [ ]간접적 소득(감면 등) [ ]건강 및 의료 [ ]고용 [ ]주거 [ ]일상생활 [ ]보육 및 교육 [ ]문화 및 여가 [ ]안전 및 권익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해당 [ ]비해당

[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류		신청 구분	비고
[ ]장애인등록 신청		[ ]신규 [ ]조정 [ ]재판정	·재발급 사유 [ ]기간만료 [ ]훼손 [ ]분실 [ ]기재사항 변경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교부신청 [ ]카드전환(-) [ ]기타 ·반납사유 [ ]사망 [ ]양도·증여 [ ]폐차 [ ]등록말소 [ ]기타
[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 [ ] 포함 [ ] 미포함 [ ] 신용기능 [ ] 직불기능	[ ]신규 [ ]재발급 [ ]정보변경 [ ]반납	
[ ](구)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		[ ]정보변경 [ ]반납	
[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티커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 ]교부 [ ]대여 [ ]수리	
[ ]장애인활동지원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 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 ]거주시설 입소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 ] 진단서 발급비 [ ] 검사비	

[감면서비스 (대행)신청]

[ ]휴대전화요금 [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 ]지역난방비
[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이용료 [ ]TV 수신료 [ ]자동차관련 지방세(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타기관 서비스 의뢰]

[ ]고용 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성공패키지 [ ]직업훈련 [ ]직업진로상담 [ ]취업지원 및 상담 [ ]직업생활 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 ]의료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카드구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신청인	[ ]본인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본인과의 관계:)		
직 장 ※직장이 있는 경우만 기재	직 장 명	부서명	
	직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대금결제	대금청구지 [ ]자택 [ ]직장 [ ]전자우편( )		
	대금결제일 매월 일(1일~27일 중에서 선택)		
자동이체 신청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직불카드 신청시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기재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신청]

기존 장애인등록증 발급기관		첨부 (등기 우편료)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주민등록기관 방문 [ ]개인 등기우편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발급(재발급)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단체·시설	단체·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종류 [ ]장애인복지단체·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장애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승차정원/최대적재량	용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주거형태	[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그 밖의 형태					
희망보조기구	[ ]장애인보조기구명( )					
수리가 필요한 부위			교부(대여·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가장 최근에 교부받은실적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신청금액 (지원금액)		계좌번호/금융기관/ 예금주(관계)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4쪽 중 제3쪽)

신청인 제출서류	
① 장애인등록 신청	1. 사진(3.5㎝×4.5㎝) 1장 ※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7세 이상인 경우).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장애 정도 심사 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판정하기 위해 이전 심사 시 공단에 제출한 자료,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심사자료,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심사자료,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장애인등록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장애인등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장애인등록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고속도로 할인가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 시 발급수수료 4,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빙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②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1. 장애인등록증(장애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고속도로 할인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 시 발급수수료 4,000원
③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발급 신청	1.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증(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명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재발급 신청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⑤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신청	1. 수급자의 복지계좌 통장사본 1부 2.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영수증

요금 감면 및 서비스 제공 관련 개인정보 제공·처리 동의서

본인은 장애인 등록에 따른 요금 감면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장애인대상 요금 감면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이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장애유형 · 장애 정도에 관한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 사전 신청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 수급 희망자로서 서비스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 받기 위한 서비스 이력관리를 사전 신청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수급자격이 없는 서비스에 대해 추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다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때까지 수급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제2항에 따라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 정도 확인 등을 위하여 심사자료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본인에 대한 진료기록 자료나 검사결과 자료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안내 및 동의사항

1. 처리기간은 신청한 서비스에 따라 다릅니다.
2.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차량을 교체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 중 기재사항 변경란에 "√" 표시하고 자동차란에 새로 취득한 차량의 정보를 적습니다.
4.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관련
   가. 신청기관 방문 또는 주민등록기관 방문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에서 장애인등록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 등기우편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시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반송 처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우편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지자체별 상이)
   다. 개인 등기우편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적은 주소로 장애인등록증이 발송되며, 해당 주소로 발송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발급 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처리에 관하여 개인 등기우편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료를 납부하고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반납(분실 재발급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해야 등기우편 발송이 가능하며, 등기우편 발송 시 반송지는 신청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6.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처리를 위해 재발급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의 장애인 등록정보 등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7. 본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8. 본인은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장기이식 관련정보(이식장기, 이식일, 이식기관 등 장애 정도 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를 조회·제공·이용 및 장애 정도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4쪽 중 제4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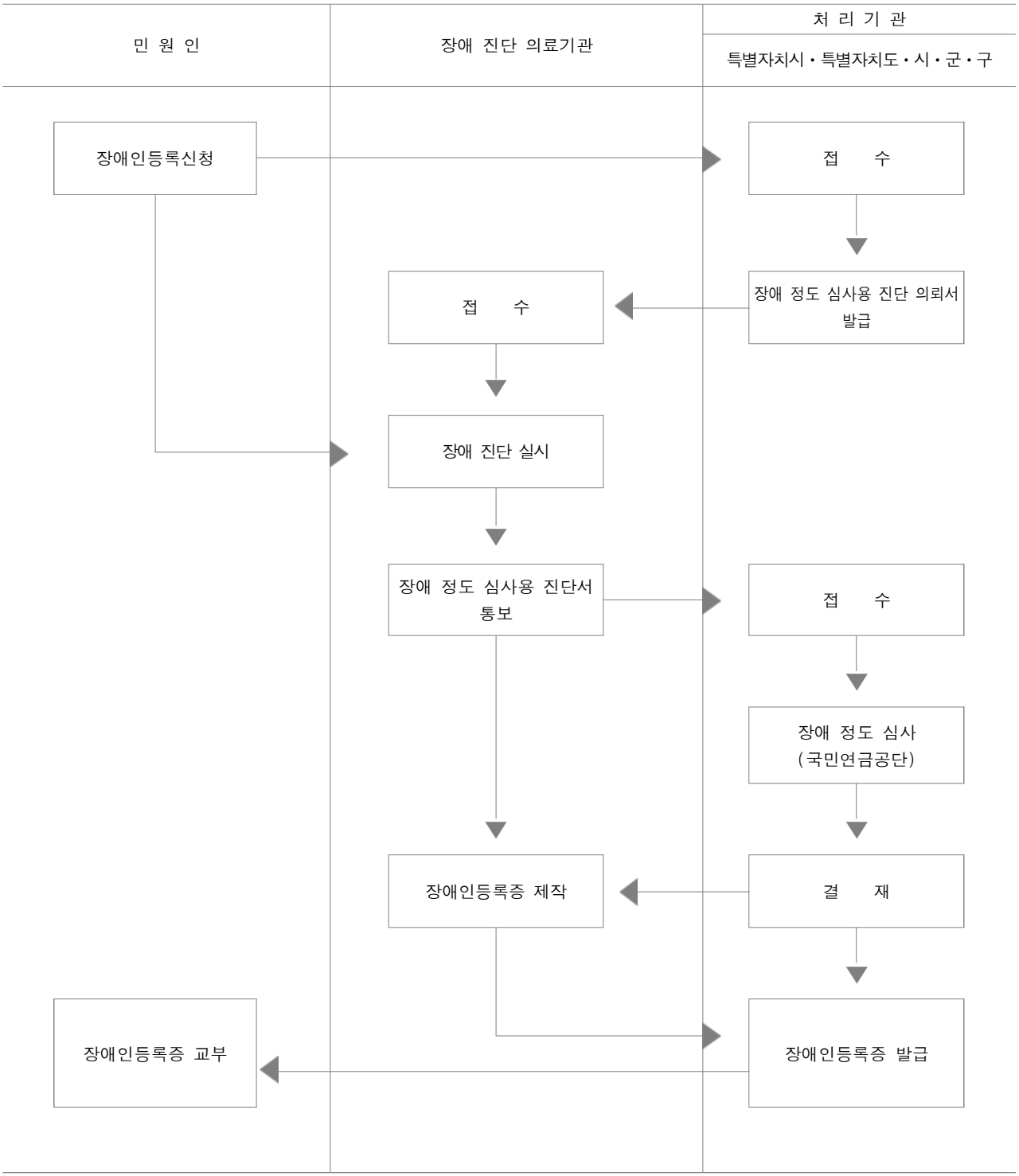

5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개정 2023. 6. 30.>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 각각의 자격취득일 또는 월 소득액(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5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 · 산재보험은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 )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구분	성명	국적	대표자 여부	월 소득액 (소득월액·보수월액·월평균 보수액)(원)	자격 취득일 (YYYY.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체류자격				자격 취득 부호	특수직종 부호	직역연금 부호	자격 취득 부호	보험료 감면 부호	공무원·교직원 회계명/부호	공무원·교직원 직종명/부호	직종 부호	1주 소정 근로 시간	계약 종료 연월 (계약직만 작성)	보험료 부과구분 (해당자만 작성) 부호	보험료 부과구분 (해당자만 작성) 사유
1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2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3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4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1. 23.>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없을 때,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있을 때 (증번호:)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국민연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	
	주소		우편번호( )	
	고지서 수령장소		우편번호( )	
	자격취득 연월일		월 소득액	전자우편주소
	특수직종 근로자	[ ]광원 [ ]부원	종사업종 및 직업명	업종코드
	취득월 납부여부	[ ]납부희망 [ ]납부 미희망		
	해당자의 경우	납부예외	사유부호	
			기간	
		적용제외	사유부호	

보험료 자동이체신청 [ ] 자동이체 계좌 [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이체희망일	[ ]납기일 [ ]납기전월 말일	

전자고지 신청	고지방법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수신처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지(외국인등록지·국내거소신고지)					우편번호( )				
		고지서 수령장소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				
		보험료 감면부호					지역가입자 자격여부 [ ]예 [ ]아니오				
	가입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취득(변동)일자	취득(변동)부호	장애인/국가유공자 부호/등급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록일	외국인 국적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체류기간	추가발급코드

위와 같이 자격 취득(변동)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세대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국민연금	1.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자격취득신고시에 특수직종근로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격취득신고시 납부 예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건강보험	1.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재학증명서, 재소확인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보험료 감면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D-1, D-2, D-4, D-5, D-7, D-8, E-4), 고용계약서 등(E-1부터 E-3까지, E-5부터 E-7까지, E-10), 소득명세서(D-3, D-5부터 D-9까지), 임금명세서(E-1부터 E-10까지, H-1, H-2),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D-10) 3.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인 경우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유의사항

건강보험	1. 외국인은 해당 체류자격이 있어야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료 감면신청은 첨부서류 및 해당사실 확인 관계로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동일세대에 가입대상(아래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이 다수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고지서 수령 장소”란에는 주소와 고지서 수령 장소가 다른 경우만 적되, 고지서를 받으려는 장소를 적습니다. 2.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취득·납부예외·감면부호를 적습니다. 3. “보험료 자동이체신청”란에는 “자동이체계좌”인지 “환급계좌”인지를 표시하고,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협·수협 등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적되, 대신 납부하거나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4.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고지 신청”란에서 원하는 고지방법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전자우편(E-mail)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휴대전화로 신청할 경우 본인명의 확인을 위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1. “월 소득액”란에는 자격취득 당시 종사하는 업종에서 얻는 각종 실제소득(농업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한 평균 월 소득액을 적습니다. 2. “업종코드”는 국세청 업종코드를 적습니다(부여합니다). 3.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건강보험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자격취득부호 등

	[적용제외사유 부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사유 부호]
국민연금	1. 18세 미만, 60세 이상인 사람 2. 국외거주자(귀국예정 없는 사람) 3. 27세 미만으로서 학생,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 4.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 5. 타 공적연금 가입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6.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타공적연금)등 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 특수직종으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9.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및 그 무소득배우자 10. 기타 11. 협정국 연금 가입 12. 1년 이상 행방불명	1. 실직 2. 병역의무수행 3. 재학 4. 교정시설 수용 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월 이상 입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대상 9. 사업 중단 10. 휴직(기타사유) 11. 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12. 휴직(산전후휴가·육아휴직) 13. 휴직(산재요양) 14. 기타
건강보험	[취득부호]: 최초취득 〈00〉, 출생 〈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4〉, 직장 피부양자 상실 <06>, 유공자 등 건강보험적용신청 〈10〉,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14〉, 국적취득 〈17〉, 기타 〈13〉 [변동부호]: 직장에서 퇴직 〈05〉, 특수시설(교도소등)수용해제 〈11〉, 입국 〈12〉, 군 제대 〈15〉, 특수시설(교도소등) 수용 〈20〉, 출국 〈21〉, 군 입대 〈22〉 [감면부호]: 11. 섬 거주, 12. 벽지 거주, 2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31. 등록장애인, 32. 국가유공자 등, 41. 소년소녀가장세대, 51. 모자가정세대, 52. 부자가정세대, 53. 조손가정세대, 54. 55세 이상 여성단독세대, 61.사업장화재, 62. 사업장부도, 63. 재산경매, 64. 재산압류, 71. 장기수용자, 72. 행방불명, 73. 만성질환자, {재해: 81.(인적 물적 피해), 82.(인적피해), 83.(물적피해)}{농어촌경감: 91.(농업) 92.(어업) 93.(임업) 94.(광업) 95.(기타)} [장애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취득(변동) 확인 통지	➔	수 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인

7 구직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3. 17.>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구직신청서(상용직용)

구직인증번호(접수번호)	접수담당자 작성란	접수일	년	월	일	(처리기간 1 일)

□ 다음 사항을 읽고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구직신청서 제출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아래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부(최초로 구직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참여자 및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 및 국외 취업희망자는 예외)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취업알선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으려면 구직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3. 구직등록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에는 구직신청한 기관이나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통해 **구직 마감 요청**을 해야 합니다.

□ 구직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읽고 동의 여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구직자의 취업알선을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 원활한 취업알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합한 구인자의 알선을 위해 **다른 기관(시스템)에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제공기간: 신청자의 구직신청 유효기간).

   [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그 밖의 취업지원 기관 [ ] 동의하지 않음

   ※ 다른 기관의 구직자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고용보험 가입 이력, 구직급여 등 수급 이력, 직업훈련 이력, 자격정보 및 지원받은 각종 고용서비스 내용을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고용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워크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제공기간: 구직신청일부터 1년)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비공개 사유:)

   ※ 예) 이름, 성별, 나이, 직종, 희망임금, 희망근무지역, 경력, 학력 등이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제공됩니다.

□ 취업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읽고 동의 여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하기 전에 일용근로를 희망하는지 여부 [ ] 희망 [ ] 희망하지 않음
2. 구직신청의 목적(이유)

   [ ] 취업알선 [ ] 구직급여 [ ] 국민취업지원제도 [ ] 직업훈련 [ ] 기타( )
3. 취업알선 희망시기 [ ] 즉시 [ ] 대기 기간 필요 (년 월 일까지)

   ※ 직업훈련 또는 그 밖의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짜를 적습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 다음날부터 취업알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4. 취업희망풀 가입 동의 여부(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및 도서지역거주자만 해당합니다)

   동의([ ] 여성가장 [ ] 중증장애인 [ ] 섬 지역 거주자 [ ] 희망하지 않음)

   ※ 취업희망풀에 가입하여 고용센터 등의 구직알선을 통해 취업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희망자는 가입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구직신청 마감 시 유선 확인을 통한 재신청 희망 여부 [ ] 희망 [ ] 희망하지 않음

   ※ 희망하지 않거나 체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210 ㎜ × 297 ㎜ [백상지(80 g/㎡) 또는 중질지(80 g/㎡)]

□ 필수 작성 사항

(뒤쪽)

※ 아래의 사항은 모두 적고,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현 거주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알림수신 설정 [ ] 전자우편 [ ] 문자 서비스	
학력사항	최종학력		전공(부전공)		재학기간	~
		[ ]졸업(예정) [ ]수료 [ ]재학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무학				

희망취업조건	희망직종	직종명	희망입사형태 (경력기간)	희망 세부 직무내용
			[ ]신입 [ ]경력 (년 개월)	
			[ ]신입 [ ]경력 (년 개월)	
			[ ]신입 [ ]경력 (년 개월)	
	근무지역	1순위 ( )시・도 ( )구・군 2순위 ( )시・도 ( )구・군 [ ] 지역무관		
	희망임금	[ ] 연봉 [ ] 월급 [ ] 일급 [ ] 시급 ( )원 이상 [ ] 면접 후 결정 가능		
	고용형태 (복수선택 가능)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 시간(선택)제	
		[ ] 교대제 근무 [ ] 파견근로 [ ] 대체 인력* [ ] 관계 없음	[ ] 재택근무 희망	
		* 출산휴가,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 인력을 말합니다.		
		근무가능(희망)시간	(: ~ :), (: ~ :)	

□ 선택 작성 사항

※ 아래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적고,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구직정보 추가확인사항	경력사항	근무처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보유자격 (면허)	(년 월 일 취득, 발급기관:)			
		(년 월 일 취득, 발급기관:)			
	교육훈련 이수현황	훈련 과정명	훈련기간	세부훈련내용	훈련기관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전산 활용능력	[ ] 문서 작성 [ ] 스프레드시트 [ ] 프레젠테이션 [ ] 회계프로그램 [ ] 기타( )	운전 능력	[ ] 운전면허증 [ ] 차량 소지자	
	외국어 능력	외국어명	수준	공인시험 명칭	응시일	등급・점수
			[ ]상 [ ]중 [ ]하		년 월 일	급(점)
			[ ]상 [ ]중 [ ]하		년 월 일	급(점)
	병역대체 근무희망	[ ] 산업기능요원	[ ] 현역병 입영대상자 [ ] 보충역 대상자	[ ] 전문연구요원	국외취업 희망여부	[ ] 희망
	※ 그 밖의 희망사항(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통근버스 운영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1. 3. 17.>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구인신청서(일용직용)

구인인증번호(접수번호)	접수담당자 작성란	접수일	년	월	일	(처리기간 1 일)

□ 다음 사항을 읽고 구인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구인신청서는 **모집 직종별로 각각 작성**해야 하며, 신청인이 구인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인신청의 유효기간(15일 ~ 2개월의 범위에서 선택 가능) 동안 같은 직종에 대해 다시 구인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채용이 완료되거나 신청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인신청한 기관에 연락하여 **채용 마감 또는 신청 내용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3.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47조제6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구인신청인의 정보 제공 등에 관한 다음 사항을 읽고 동의 여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적합한 구직자의 알선을 위해 **다른 기관(시스템)에 신청인의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그 밖에 워크넷을 이용하는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 ] 동의하지 않음

2. 신청인의 구인정보를 **워크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비공개 사유:)

3.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체명 대표자 또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210 mm × 297 mm [백상지(80 g/㎡) 또는 중질지(80 g/㎡)]

※ 아래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적고,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뒤쪽)

업체현황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종		근로자수	명
	사업내용					
	주 소	(우편번호:) (사업자등록증명상 주소를 적습니다)				

구인사항	채용제목					
	모집직종		인원	명	채용기간	일
	직무내용	※ 워크넷으로 구인신청하는 경우에는 표준 직무내용이 구인신청인에게 제공됩니다.	경력	년 월 이상 [ ] 무관		
	자격·면허	1. 2.	학력	[ ] ~ [ ] [ ] 무관		

근로조건	임 금	[ ] 시급 [ ] 일급 [ ]원 ~ [ ]원	임금지급일	
	근무시간	: ~ : (휴게시간 : ~ :)	식사제공	
	근무장소	(우편번호 :)	( )식 [ ]없음	

작업환경	작업장소	[ ] 실내	[ ] 실내·외	[ ] 실외
	드는 힘	[ ] 5kg 이내의 물건을 다룸	[ ] 5~20kg의 물건을 다룸	[ ] 20kg 이상의 물건을 다룸
	서거나 걷기	[ ] 서거나 걷는 일 거의 없음	[ ] 일부 서서 하는 일	[ ] 오랫동안 서거나 걷는 일
	듣고 말하기	[ ] 듣고 말하는 작업 거의 없음	[ ] 간단한 듣고 말하기 필요	[ ] 듣고 말하기 중요
	시 력	[ ]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정도	[ ] 비교적 큰 인쇄물을 읽을 수 있는 정도	[ ] 아주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
	손작업	[ ] 큰 물품의 조립작업	[ ] 작은 물품의 조립작업	[ ] 정밀한 조립작업
	양손사용	[ ] 한 손으로 작업	[ ] 한 손으로 보조하는 작업	[ ] 양손으로 작업

전형사항	제출서류	[ ] 이력서 [ ] 자기소개서 [ ] 경력증명서 [ ] 졸업(예정)증명서 [ ] 기타( )
	접수방법	[ ] 방문 [ ] 전자우편 [ ] 자사 채용사이트(주소:) [ ] 우편 [ ] 팩스 [ ] 기타( )
	접수마감일	[ ] 마감일(년 월 일) [ ] 채용시까지(2개월 이내)
	채용담당자	성명 전화 팩스
		휴대전화 [ ] 공개, [ ] 비공개
		전자우편 [ ] 공개, [ ] 비공개

그 밖의 구인기업 희망사항

※ 그 밖에 구직자가 참고할 만한 사항 및 구인기업의 희망사항

8 실업급여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개정 2023. 6. 30.>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1쪽 및 2쪽 모두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수급자격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휴대전화번호(없는 경우 전화번호):]	

④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⑤실업인정대상기간

⑥지급계좌	신규신청[ ] 변 경 [ ]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계좌가 압류되어 있다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발급받아서 적습니다.	
⑦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취업사실 등 확인	근로사실 및 소득발생	없음[ ]	
		있음[ ]	근로 또는 소득 내용 [ ] 근로날짜 [ ] 소득금액 [ ] 소득예정금액 [ ]
	사업자등록 (자영업개시)	[ ] 없음 [ ] 있음 (등록일(시작일): 사업내용:)	
	산재휴업급여	[ ] 없음 [ ] 있음 (수급기간:)	

⑧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활동 확인	구직활동	일자	업체명	전화번호	직종	구직방법	구직활동 결과
	자영업 준비활동						
	취업(예정)내역	[ ] 취직 [취직(예정)일: 회사명: 전화번호:] [ ] 자영업 [시작(예정)일: 사업내용:]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내용	[ ] 고용센터 집체교육 [ ] 직업지도 참여(취업특강 등) [ ] 집단상담 프로그램 [ ] 직업훈련 수강 [ ] 기타 [ ]	[ ] 취업확정자 [ ] 사회봉사활동 참여자 [ ] 부당해고 구제신청자 [ ] 재취업활동 없는 자			

⑨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 ※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이메일:)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3항·제69조의9·제77조의5제2항·제77조의10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66조·제93조의2·제104조의8제8항·제104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제115조의5·제125조의4·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실업인정을 신청하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쪽에 추가 작성란 있습니다.** ※아래의 난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 유형	[ ] 실업인정일 변경 [ ] 증명서에 따른 실업인정 [ ] 잠정실업인정 [ ]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실업인정 [ ] 상병급여 청구와 병행 [ ] 유족의 청구에 따른 실업인정						
지급 사항	처리	실업인정일수		구직급여 산출명세		지급액	
		미지급사유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지청장	결재연월일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첨부 서류	1. 수급자격증 1부 2. (상해)진단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면접확인서, 구직활동 내역서 등「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0조에 따른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의 각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구직급여 수급 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 제외)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을 이미 한 경우에는 빈칸으로 둡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음에 체크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①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여부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②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서 수령 방법	[ ] 우편 [ ] 전자우편 (주소:) [ ] 휴대전화 등을 통한 전자전송
③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자동이체 희망 여부(구직급여 수급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④ 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담당 직원이「국민연금법 시행령」제25조의2에 따른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소득자 또는 고액재산가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담당 직원이「국민연금법 시행령」제25조의2에 따른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아래 내용은 서식 작성 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부분으로 접수・보관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그 금액의 2배 또는 5배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5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실업인정 신청 후 3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1, 2쪽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3쪽 중 3쪽)

작성방법

1. 실업인정 신청서는 매 실업인정일마다 작성합니다.
2. ①・②・③란은 모두 적습니다.
3. ⑤란에는 이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출석일(실업인정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4. ⑥란에는 최초 실업인정 시의 지급계좌를 적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적습니다("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은 실업인정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5. ⑦란의 근로사실 및 소득발생란 작성방법<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공공근로, 일용, 아르바이트,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취업형태 구분 없이 모두 작성)을 했거나 소득이 발생했다면 있음을, 없으면 없음을 선택합니다.
   - 있음을 선택 경우에는 아래 내용에 따라 오른쪽 칸의 내용을 적습니다.
   - 근로 또는 소득 내용: 어떤 일을 했는지 또는 어떤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는지 적습니다.(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한 일 또는 발생한 소득만 적습니다)
   - 근로날짜: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한 날의 날짜를 모두 적습니다.
   - 소득금액: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받은 소득의 총액을 적습니다.
   - 소득예정금액: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을 했지만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을 하고 받기로 예정된 금액을 적습니다.
6. ⑦란 중 사업자등록란에는 본인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 또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더라도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7. ⑦란 중 산재휴업급여란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현재 산업재해로 인한 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면 적습니다.
8. ⑧란 중 자영업 활동계획란은 자영업계획이 있는 사람만 적습니다.
9. ⑧란 중 취업(예정)내역란은 취직 또는 자영업이 확정된 경우에 적습니다.

유의사항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1.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누적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며, 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신청인이 보험료의 1/4을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인 3/4이 지원됩니다.

처리절차

<실업인정 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검토	→	급여 지급 여부 결정・통지	→	급여 수급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신청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전산입력	→	산입여부 결정・통지	→	통지서 수령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2024년 신안군 노인복지통계
(Shinan Senior Welfare Statistics)

발 행 일 : 2024년 12월 인쇄
2024년 12월 발행

발 행 처 : 신안군 기획홍보실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홈페이지 : http://www.shinan.go.kr
전화 : 061.240.8207
팩스 : 061.240.8575

협 업 기 관 : 호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홈페이지: http://kostat.go.kr/office/hnro
전화 : 062.370.6344
팩스 : 062.370.6303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